

연구보고 2012-2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양미선 임지희

머 리 말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와 더불어 2012년 시행된 0~2세 무상보육, 5세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부모들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대기자 수가 10만 명이 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보육서비스 및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질 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부모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개선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본 보고서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기여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시군구 보육 담당자, 보육 정보센터장,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 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1
4. 용어의 정의	20
5. 선행연구	21
II. 관련법 및 제도	27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27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33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39
III.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47
1. 설치 및 이용 현황	47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및 필요성	53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례	71
4. 소결	86
IV.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89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89
2. 위탁기간 및 횟수	92
3. 위탁채 선정	98
4. 소결	132
V.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135
1. 어린이집 특성	135
2. 취약보육	145
3. 원아 관리	151

4. 보육프로그램	169
5. 보육서비스 질 관리	176
6. 보육교직원 관리	185
7. 소결	190
VI. 정책 제언	193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193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 방안	202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207
4. 맺는말	213
참고문헌	214
ABSTRACT	219
부록	221
1.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조사 표본설계	223
2. 부록 표	227
3. 국공립어린이집 조사표	251
4.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표	264
5. 보육정보센터장 조사표	272
6. 부모 조사표	277

표 차례

〈표 I-3- 1〉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시설수	11
〈표 I-3- 2〉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조사 표본배분	12
〈표 I-3- 3〉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조사 내용	12
〈표 I-3- 4〉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조사 참여 시설 특성	13
〈표 I-3- 5〉 원장의 일반적 특성: 어린이집 조사	14
〈표 I-3- 6〉 보육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15
〈표 I-3- 7〉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15
〈표 I-3- 8〉 보육정보센터장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16
〈표 I-3- 9〉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설문조사 내용	17
〈표 I-3-10〉 부모조사 응답자 자녀의 특성	17
〈표 I-3-11〉 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	18
〈표 I-3-12〉 심층면담 일정	19
〈표 II-2-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재정 지원	32
〈표 II-2- 2〉 시·도별 보육 관련 조례 유형	38
〈표 II-3- 1〉 입소우선순위: 2012	40
〈표 II-3- 2〉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2년 기준	42
〈표 II-3- 3〉 환경개선비 지원기준 및 단가	45
〈표 II-3- 4〉 운영비 지원	46
〈표 III-1- 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2000~2011	47
〈표 III-1- 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수: 2000~2011	48
〈표 III-1- 3〉 연도별·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총족률	50
〈표 III-1- 4〉 지역규모별 정원 대비 현원: 2011	50
〈표 III-1- 5〉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51
〈표 III-1- 6〉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	53
〈표 III-2- 1〉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증감률	55
〈표 III-2- 2〉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및 예산: 2008~2012년	56
〈표 III-2- 3〉 지역규모별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시군구 조사	57
〈표 III-2- 4〉 확충방식별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시군구 조사	58

〈표 III-2- 5〉	개원 년도: 어린이집 조사	59
〈표 III-2- 6〉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1+2순위	59
〈표 III-2- 7〉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1순위	60
〈표 III-2- 8〉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2순위	61
〈표 III-2- 9〉	지역 특성: 어린이집 조사	61
〈표 III-2-10〉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1+2순위): 시군구 조사	62
〈표 III-2-11〉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1순위); 시군구 조사	62
〈표 III-2-12〉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2순위): 시군구 조사	63
〈표 III-2-13〉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1+2순위): 시군구 조사	63
〈표 III-2-14〉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1순위); 시군구 조사	64
〈표 III-2-15〉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2순위); 시군구 조사	64
〈표 III-2-16〉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시군구 조사	65
〈표 III-2-17〉	추가 확충 시 필요한 시설수: 시군구 조사	66
〈표 III-2-18〉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확충 시 설치지역: 시군구 조사	67
〈표 III-2-1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우선 설치지역: 어린이집 조사	67
〈표 III-2-20〉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1+2순위): 시군구 조사 ·	68
〈표 III-2-21〉	시군구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1순위): 시군구 조사 ·	69
〈표 III-2-22〉	시군구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2순위): 시군구 조사 ·	69
〈표 III-2-2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2순위	69
〈표 III-2-2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순위	70
〈표 III-2-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2순위	71
〈표 III-3- 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72
〈표 III-3-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73
〈표 III-3- 3〉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77
〈표 III-3- 4〉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77
〈표 III-3-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아동 수	78
〈표 III-3-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및 보육 아동수: 2011~2012년	82
〈표 III-3- 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국비	82
〈표 III-3- 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83
〈표 IV-1-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 시군구 조사	89
〈표 IV-1- 2〉	위탁 형태: 어린이집 조사	90

〈표 IV-1- 3〉	바람직한 위탁체 형태: 시군구 조사	91
〈표 IV-2- 1〉	위탁기간 제한한 보육조례	92
〈표 IV-2- 2〉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신규 위탁): 시군구 조사	93
〈표 IV-2- 3〉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재위탁): 시군구 조사	94
〈표 IV-2- 4〉	현 위탁 계약기간: 어린이집 조사	95
〈표 IV-2- 5〉	재위탁 횟수 제한 관련 보육조례	96
〈표 IV-2- 6〉	위탁 횟수: 어린이집 조사	96
〈표 IV-2- 7〉	총 운영기간: 어린이집 조사	97
〈표 IV-3- 1〉	위탁방법(공개경쟁) 제시한 보육조례: 신규·변경위탁	98
〈표 IV-3- 2〉	최초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99
〈표 IV-3- 3〉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시군구 조사	100
〈표 IV-3- 4〉	재위탁 시 최근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101
〈표 IV-3- 5〉	보육조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103
〈표 IV-3- 6〉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103
〈표 IV-3- 7〉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원(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104
〈표 IV-3- 8〉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비율: 시군구 조사	105
〈표 IV-3- 9〉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선정 시 고려조건: 시군구 조사	106
〈표 IV-3-10〉	위탁 심의위원 자격 요건: 어린이집 조사	107
〈표 IV-3-11〉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시군구 조사	108
〈표 IV-3-12〉	위탁심사 시 심사기준: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109
〈표 IV-3-13〉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 필요성: 시군구 조사	110
〈표 IV-3-14〉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 필요성: 어린이집 조사	110
〈표 IV-3-15〉	신규·변경 위탁 심사항목(‘적용’ 응답비율): 시군구 조사	111
〈표 IV-3-16〉	재위탁 심사항목(‘적용’ 응답비율): 시군구 조사	112
〈표 IV-3-17〉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의 적절성(5점 척도)	112
〈표 IV-3-18〉	재위탁 심사항목의 적절성(5점 척도)	113
〈표 IV-3-19〉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별 배점: 시군구 조사	114
〈표 IV-3-20〉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114
〈표 IV-3-21〉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별 적정점수: 시군구	115
〈표 IV-3-22〉	재위탁 심사항목별 배점	116
〈표 IV-3-23〉	재위탁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시군구 조사(5점 평균)	117

〈표 IV-3-24〉	재위탁 심사항목별 적정 접수	117
〈표 IV-3-25〉	신규·변경 위탁 추가 자료요청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119
〈표 IV-3-26〉	재위탁 시 추가자료 요청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119
〈표 IV-3-27〉	신규위탁 시 추가자료 제출 여부 및 종류: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120
〈표 IV-3-28〉	재위탁 시 추가 심사자료: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121
〈표 IV-3-29〉	보육조례: 보육교직원(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의 연령 제한 조항·	122
〈표 IV-3-30〉	보육교직원 연령: 어린이집 조사	122
〈표 IV-3-31〉	위탁 심사절차: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123
〈표 IV-3-32〉	위탁심사 시 현장관찰 실시 여부 및 시기: 어린이집 조사	124
〈표 IV-3-33〉	위탁 심사절차 및 결과 공개 여부: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125
〈표 IV-3-34〉	신규위탁 시 위탁금 제시 여부: 시군구 조사	125
〈표 IV-3-35〉	위탁운영체 기여 여부 및 기여형태(복수응답): 어린이집 조사	126
〈표 IV-3-36〉	위탁운영체 기여금: 어린이집 조사	127
〈표 IV-3-37〉	부지 및 건물 소유형태: 어린이집 조사	128
〈표 IV-3-38〉	위탁심사 개선사항: 어린이집 조사(1+2순위)	128
〈표 IV-3-39〉	위탁계약 시 보증보험료: 어린이집 조사	130
〈표 IV-3-40〉	재위탁 탈락 및 유지: 시군구 조사	131
〈표 V-1- 1〉	어린이집 건축년도: 어린이집 조사	135
〈표 V-1- 2〉	건물형태: 어린이집 조사	136
〈표 V-1- 3〉	어린이집 정원: 2012	137
〈표 V-1- 4〉	평일 보육 시작시간: 어린이집 조사	138
〈표 V-1- 5〉	평일 보육 종료시간: 어린이집 조사	139
〈표 V-1- 6〉	지역 및 정원별 운영시간(평일): 어린이집 조사	140
〈표 V-1- 7〉	지역 및 정원별 시간연장보육 종료시간(평일): 어린이집 조사	141
〈표 V-1- 8〉	토요보육 운영 횟수: 어린이집 조사	142
〈표 V-1- 9〉	토요보육 시작시간: 어린이집 조사	143
〈표 V-1-10〉	토요보육 종료시간: 어린이집 조사	144
〈표 V-1-11〉	토요보육 운영시간: 어린이집 조사	144
〈표 V-2- 1〉	어린이집 유형별 취약보육 운영 현황: 2012년 4월	145
〈표 V-2- 2〉	국공립어린이집 취약보육 실시 여부: 2012	146
〈표 V-2- 3〉	취약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147

〈표 V-2- 4〉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어린이집 조사	148
〈표 V-2- 5〉	우선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1+2순위): 어린이집 조사	149
〈표 V-2- 6〉	국공립 우선 제공 취약보육(1순위): 어린이집 조사	150
〈표 V-2- 7〉	우선 제공 취약보육(2순위): 어린이집 조사	150
〈표 V-3- 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2012	151
〈표 V-3- 2〉	정원충족률	152
〈표 V-3- 3〉	반별 현원률: 어린이집 조사	153
〈표 V-3- 4〉	초과보육 운영 이유: 어린이집 조사	154
〈표 V-3- 5〉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연령: 어린이집 조사	155
〈표 V-3- 6〉	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대기자 수: 2009	156
〈표 V-3- 7〉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대기자 수: 2010	156
〈표 V-3- 8〉	입소 대기신청(복수응답)과 입소신청자 관리방법: 어린이집 조사	157
〈표 V-3- 9〉	입소대기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방문 여부: 부모조사	158
〈표 V-3-10〉	입소 대기아동 관리 주기: 어린이집 조사	159
〈표 V-3-11〉	대기등록 어린이집 수: 부모조사	160
〈표 V-3-12〉	어린이집 입소 전 대기기간: 부모조사	161
〈표 V-3-13〉	대기연장 신청제도 도입의 필요성(5점 척도): 어린이집 조사	162
〈표 V-3-14〉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 시 연장 신청주기: 어린이집 조사	163
〈표 V-3-15〉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신청주기: 부모조사	164
〈표 V-3-16〉	입소순위 외 적용 기준: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165
〈표 V-3-17〉	연령 진급에 따른 재입소 방법: 어린이집 조사	166
〈표 V-3-18〉	입소순위별 입소자격: 어린이집 조사	166
〈표 V-3-19〉	입소 우선순위(1+2순위): 부모조사	167
〈표 V-4 1〉	보육과정 운영 현황: 어린이집 조사	169
〈표 V-4 2〉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어린이집 조사	170
〈표 V-4 3〉	영유아 대상 특별활동 수: 어린이집 조사	171
〈표 V-4 4〉	영아반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조사	172
〈표 V-4 5〉	유아반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조사	173
〈표 V-4 6〉	무료 운영 특별활동수: 어린이집 조사	174
〈표 V-4 7〉	특별활동 무료 운영 시 부담액: 어린이집 조사	175
〈표 V-5- 1〉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176

〈표 V-5- 2〉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유지율	177
〈표 V-5- 3〉	평가인증 년도: 어린이집 조사	177
〈표 V-5- 4〉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평균 점수	178
〈표 V-5- 5〉	신규 평가인증 점수: 어린이집 조사	179
〈표 V-5- 6〉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어린이집 조사	179
〈표 V-5- 7〉	운영위원회 구성원별 인원수: 어린이집 조사	180
〈표 V-5- 8〉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어린이집 조사	181
〈표 V-5- 9〉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어린이집 조사	182
〈표 V-5-10〉	재정운영의 어려움: 어린이집 조사	184
〈표 V-5-11〉	재정 투명성 확보 방법(1+2순위): 어린이집 조사	184
〈표 V-6- 1〉	정원규모별 보육교직원수	185
〈표 V-6- 2〉	보육교사 자격별 비율	186
〈표 V-6- 3〉	담당 아동 연령별 보육교사 호봉: 어린이집 조사	187
〈표 V-6- 4〉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어린이집 조사	189
〈표 V-6- 5〉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시간외 수당: 어린이집 조사	189
〈표 VI-1-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계	195
〈표 VI-1-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규모	196
〈표 VI-1- 3〉	국공립과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비교	199
〈표 VI-1- 4〉	위탁체 심사관리기준표 개정(안)	206
〈표 VI-1- 5〉	보육서비스 이용 우선순위(안)	210

그림 차례

[그림 III-1-1] 연도별 어린이집 수: 2000~2011	48
[그림 III-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점유율 : 2000~2011	49
[그림 III-1-3]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52
[그림 III-2-1]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추이	55
[그림 III-2-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2008~2012년	56
[그림 III-2-3]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 1+2순위	60
[그림 III-2-4]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1+2순위)	68
[그림 III-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1+2순위)	70
[그림 III-3-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규모	72
[그림 III-3-2]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78
[그림 IV-2-1]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 비교(신규위탁): 시군구 조사	93
[그림 IV-2-2]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 비교(재위탁): 시군구 조사	94
[그림 IV-3-1] 최초 위탁 시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100
[그림 IV-3-2]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시군구 조사	101
[그림 IV-3-3] 재위탁 시 최근 위탁방법	102
[그림 IV-3-4] 신규·변경 위탁 심사항목별 적정 점수	115
[그림 IV-3-5] 재위탁 심사항목별 적정점수	118
[그림 IV-3-6] 위탁 심사절차	123
[그림 IV-3-7] 위탁심사 개선사항	129
[그림 IV-3-8] 재위탁 탈락 및 유지율	131
[그림 V-2-1]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1+2순위)	149
[그림 V-3-1] 연령별 현원률: 어린이집 조사	153
[그림 V-3-2] 입소우선순위: 1+2+3순위	167
[그림 V-3-3] 입소우선순위(1+2순위): 부모조사	168
[그림 V-4-1] 영유아별 특별활동 수: 어린이집 조사	172
[그림 V-5-1] 재정 투명성 확보 방법	185
[그림 V-6-1] 지역 및 정원별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조사	188
[그림 V-6-2] 지역 및 정원별 보육교사 월평균 시간외 수당: 어린이집 조사	190
[그림 VI-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계: 이용 아동 30% 기준	194

부표 차례

〈부표 II-2-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	227
〈부표 II-2-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	229
〈부표 II-3- 1〉 연도별 입소우선순위 : 2008~2012 ……	231
〈부표 II-3- 2〉 서울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2년 기준 ……	233
〈부표 II-3- 3〉 경기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2년 ……	234
〈부표 IV-3- 1〉 위탁심사 개선사항: 어린이집 조사(1순위) ……	235
〈부표 IV-3- 2〉 위탁심사 개선사항: 어린이집 조사(2순위) ……	235
〈부표 V-2- 1〉 영아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	236
〈부표 V-2- 2〉 시간연장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	236
〈부표 V-2- 3〉 장애아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	237
〈부표 V-2- 4〉 다문화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	237
〈부표 V-2- 5〉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어린이집 조사 ……	238
〈부표 V-2- 6〉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	238
〈부표 V-2- 7〉 일시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	239
〈부표 V-2- 8〉 휴일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	239
〈부표 V-2- 9〉 24시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	240
〈부표 V-2-10〉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	240
〈부표 V-2-11〉 다문화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	241
〈부표 V-3- 1〉 입소우선순위(1순위): 어린이집 조사 ……	242
〈부표 V-3- 2〉 입소우선순위(2순위): 어린이집 조사 ……	243
〈부표 V-3- 3〉 입소우선순위(3순위): 어린이집 조사 ……	244
〈부표 V-5- 1〉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 인증율 ……	245
〈부표 V-5-2〉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재인증율: 2011 ……	245
〈부표 V-5-3〉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 인증 평가인증 평균점수 ……	246
〈부표 V-5-4〉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재인증 평균점수 ……	246
〈부표 V-5-5〉 재무회계 담당자: 어린이집 조사 ……	247
〈부표 V-5-6〉 개보수비 어린이집 부담액: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	247
〈부표 V-5-7〉 영·유아반 보육교사 비율: 어린이집 조사 ……	248

〈부표 V-5-8〉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1순위): 어린이집 조사	248
〈부표 V-5-9〉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2순위): 어린이집 조사	249
〈부표 V-6-1〉 정원 및 지역규모별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급수 비율 ..	249
〈부표 VII-1-1〉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긴 이유	250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육 수요를 충족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선행연구 및 조례 검토, 통계자료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탁운영, 운영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방안 제시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안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문헌,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통계자료 수집, 분석
 -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 보육담당 공무원 174명, 보육정보센터장 45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1,037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서울, 인천,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 검토, 분석
 - 보육담당 공무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및 대기자 부모 등 집단 심층면담 실시
 - 보육담당 공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하여 조사표 구성 및 정책 관련 의견 수렴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174개 시군구 보육담당자와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 조사결과를 분석함.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는 시군구당 평균 1개소 미만임.
 - 2011년까지 주로 중소도시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었으나 2012년 이후 대도시 중심으로 확충이 추진됨.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2010년 중소도시 중심인 반면, 2012년 이후는 대도시가 40%대로 가장 많음.
 -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은 중소도시,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지역에 상관없이 매년 꾸준히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2013년에는 대도시에 많이 설치될 예정임.
-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을 조사한 결과,
 - 1순위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33.7%, 농어촌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 20%대 정도를 차지함. 2순위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26.7%, 저소득밀집지역 22.7%로 차이가 크지 않음.
 - 도시지역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 많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 1순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의한 예산 지원이 50.6%, 지방비가 30.1%로 많음.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은 13.2% 정도임.
 - 2순위는 지방비가 41.0%로 가장 많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이 20% 내외로 비슷한 수준임.
-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에 대해 5점 평균 2.5점으로 대체로 부족하다고 지적함. 지역 차이없이 전반적으로 2점대를 나타냄.
 -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의견은 읍면지역이 60.0%로 대도시보다 많고,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은 도시일수록 높은 편임.
-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시군구 대상으로 추가 확충 시설수와 지역, 확충방식을 조사한 결과,
 - 평균 6.8개소 추가 확충이 필요함. 중소도시가 평균 8.6개소로 가장 많고, 대도시 7.8개소, 읍면지역 1.8개소임.
 - 추가확충 지역은 저소득밀집지역이 31.3%로 가장 많고, 어린이집 미설치지

역도 28.9% 정도로 많음.

- 추가확충 방식은 1순위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55.7%,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과 공동주택어린이집 전환은 10%대로 비슷하고, 2순위는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43.1%로 가장 많음.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이유로 1순위 예산 부족 69.5%, 부지 확보의 어려움 16.1%임. 2순위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44.8%, 예산 부족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등은 20% 내외를 차지함.

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는 개인위탁이 42.2%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순으로 많음.
 - 시군구 보육담당자 36.2%는 사회복지법인, 23.0%는 개인위탁, 20.1%는 시군구 직영이 바람직한 위탁형태라고 생각함.
 -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을 선호함.
- 실제 위탁기간은 신규위탁시 3년이 70.5%, 5년 23.1%이고, 재위탁은 3년이 68.8%, 5년 21.4%로 신규위탁과 비슷한 수준임.
- 위탁 횟수는 평균 3회, 위탁체나 위탁자의 총 운영기간은 평균 8.3년임.
- 어린이집 조사에서 최초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80.9%로 가장 많음. 지역규모나 위탁형태별로도 공개경쟁이 가장 많음.
 - 시군구 조사에서 단독 평가 후 재위탁 62.6%, 완전 공개경쟁 20.7%,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나 자동 재위탁, 기타 방법은 10.0% 미만임.
-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에 대해 단독 평가 후 재위탁과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가 30%대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경쟁도 25.3%를 차지함.
- 위탁체 선정심사위원별 구성 비율은 보육,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20.0%로 가장 많고, 부모 대표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19.3%, 16.7% 순으로 많음.
 -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위탁 선정심사위원 자격조건으로 공정성 54.0%,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도 33.3%를 지적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47.1%, 공정성 39.8% 순으로 중요하다고 봄.

- 재위탁 시 위탁체선정기준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군구 담당자 57.5%, 어린이집 원장 5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위탁체선정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 신규·변경 위탁심사기준에서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평균 3.7점으로 가장 높고, 재정능력이 3.5점으로 가장 낮음.
 - 재위탁 심사기준은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각각 평균 3.9점, 3.8점으로 가장 높음. 재정능력은 3.6점으로 신규·변경 위탁과 동일하게 가장 낮음.
-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체 모집 공고의 64% 정도가 공개되고, 심의결과 29.2%, 선정결과 45.3%가 공개됨. 비공개는 14.3%임.

4.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률은 다문화보육 61.0%, 시간연장 51.7%, 장애아통합 23.4%, 휴일보육 4.5%로 민간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 높음.
- 취약보육 실시 이유는 영아보육은 위탁조건 30.9%, 시간연장은 학부모 요청 40.4%, 장애아 보육은 원장의 보육철학 41.4%, 다문화보육 또한 학부모 요청 43.9%임.
-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인건비 추가 지원, 인건비 지원율 조정 등 인건비 관련 요구가 많음.
- 정원 내 현원률은 1세반 107.9%, 2세반 107.2%로 주로 영아반이 정원의 10~20% 이상을 초과 보육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입소대기를 신청한 어린이집은 평균 1.3개소이고, 신청 후 바로 입소하였다는 비율은 28.8%로 1/3정도를 차지함.
 - 대기기간은 평균 5.2개월로 1~3개월이 22.4%, 4~6개월 19.6%로 절반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신청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음.
-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66.5%와 부모 7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연장신청 주기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1년 42.2%, 6개월 29% 순으로 많고, 부모는 4~6개월 31/6%, 3개월 29.9%로 많음.
- 입소우선순위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어린이집 조사에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3.8%,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89.9%, 아동복지시설영유아, 장애부모자녀, 맞벌이부모 자녀 각각 70~80% 정도를 차지함. 2순위는 입양 영유아 45.1%,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43.5%, 다문화가족자녀 39.3%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부모는 1순위로 맞벌이 부모 자녀가 43.6%로 많고, 저소득가구 32%였고, 2순위도 맞벌이 부모 자녀가 23.5%, 저소득가구 20%로 많음.
- 영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활동은 평균 1.4개로 특별활동 2개가 25%로 1/4 정도 되며, 3개 22.6%, 1개 20.1%임.
 - 유아 대상 특별활동은 평균 2.4개로 영아보다 1개 많음. 특별활동 3개가 30.5%로 많고, 2개도 24.6% 정도임. 특별활동 미실시 비율은 16%로 낮음.
-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는 2012년 상반기 평균 1.9회로 2회가 59.4%로 가장 많고, 1회 24.4%임.
 -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위원 일정조정의 어려움 41.2%, 지역위원 인선의 어려움 26.5%, 운영위원의 낮은 참여도 11.9%, 운영위원회 체계 및 절차숙지 부족 7.2% 순으로 많음.
-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1순위는 클린카드 사용 제도화와 재무회계 전담 사무인력 배치가 각각 38% 정도임. 2순위도 재무회계 전담인력 배치가 23.6%로 가장 많음.
-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6.2시간으로 초과근무가 없다는 비율은 37.3%로 보육교사 약 2/3 정도가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하고 있음.
 - 초과근무 시 지급한 시간의 수당은 교사 1인당 월평균 68,247.7원으로, 초과근무를 하지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약 10%임.

5. 정책 제언

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

- 이용 아동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5,379개소가 필요하며, 이용 아동은 399,68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단가 2.4억 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총 7,831억원 필요, 부지 매입비를 비롯한 건축비, 장비비 등 총 설치비 20억원 기준 산출 시 총 6조 5천억원 필요.

□ 장기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5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

-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2015년 7,172개소를 설치해야 하며, 이용 아동은 532,91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용 아동 5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시 2015년 8,966개소 설치가 필요하며, 이용 아동수는 666,141명으로 증가하게 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확보함.

- 단기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전체 보육사업 국고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0.8%에서 2009년 0.5%, 2010년 0.1%로 감소함.
 - 보육사업 예산 0.5%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확대함.
-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
 -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고려함.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조정 및 지역별 균형배치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므로 이 지역을 우선 확충지역으로 설정함.
- 중장기 방안으로 1개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

□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최대 면적을 현행 최대 330㎡에서 450㎡로

확대함.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단가를 30%까지 상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함.
- 중장기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설치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중앙정부의 신축비 지원 시 건축비 이외의 부지 매입비 일부를 중앙 정부가 부담함.

어린이집 설치 관련법 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면적 증가 불가, 증축 후 층수 2층 이내로 제한하는 어린이집 별도 기준 적용을 삭제하고, 근린시설기준을 적용함.
- 「택지개발촉진법」의 유치원 우선 설치 조항을 어린이집 우선 설치로 개정함.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 방안

- 어린이집 위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체의 비영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인보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 운영권 부여함.
- 재위탁 심사시에도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함.
- 재위탁 심사절차에서 현장관찰을 의무화함.
- 위탁심의절차 및 기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함.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운영함.
- 중장기 방안으로 심의위원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 경험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조건으로 위탁체 심의위원 자격기준을 마련함.
-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배점을 조정함.
 - 신규변경 위탁심사관리기준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3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0점으로 하향 조정함. 운영체 시설 운영실적 20점, 재정능력 10점으로 상향조정함. 운영체의 공신력 종전대로 10점 배점함.

- 재위탁 기준에서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25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재정능력 10점으로 상향조정함. 나머지 심사항목은 종전 기준을 적용함.

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탁운영권을 회수하는 등의 처벌 규정을 도입함.
- 취약보육 인건비 비율을 80%에서 90%로 늘려 어린이집 재정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함. 이 외에도 보조교사 인건비를 보조함.
- 중장기 방안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보육 할당제를 도입함.
- 취약보육 유형에 따라 지원을 다양화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아이사랑보육포털 기능을 확대하여 입소신청을 받고 입소대기자를 관리함.
- 부모 책임성 강화, 입소대기자 실수요 파악 위해 어린이집 입소신청 6개월 후 입소신청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보육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영유아 기준을 재설정함.
- 정원내 초과보육 시 0~2세 영아반은 20% 이상 초과보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함.
- 영아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도록 특별활동 관리감독을 강화함.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함.
-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원장교육을 보육정보센터 중심으로 운영하고 컨설팅을 지원함.
-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함. 중장기 방안으로 재무회계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함.
- 3세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육아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 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700개소로 늘리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도 2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5개년(2006~2010년)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30%까지 늘린다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05년 1,352개소에서 2008년 1,826개소로 늘어나는 비약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2차 중장기 보육계획 「아이사랑 플랜 2009-2012」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질 향상과 취약지역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 감소로 정책방향이 선회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확대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불구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5.3%, 이용 아동수도 10.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호는 여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총 대기자 수는 2010년 3월 기준 11만 명을 초과하고, 시설당 평균 대기아동 수는 60여명에 이르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11). 특히 서울·경기 지역의 대기자 비율이 전체 대기자의 92.9%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한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3년부터 3,4세 누리과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본 방향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민간시설이 진입을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을 우선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서문희·신나리·유은영, 2007; 신나리·이정원·송신영·이은경, 2009).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달하고(통계청, 2011a),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용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환경 마련 방향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근 영유아 인구가 많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하여 2014년까지 총 280개소를 설치, 시간연장 및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보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접근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서울시, 2012), 경기도와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고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설치 후 인건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불균형을 해소 및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수요자의 요구 파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설치·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요구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법 및 제도,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을 발표한 서울, 경기,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및 요구,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원아 관리, 취약보육, 보육프로그램, 보육서비스 질 등)의 관리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나. 조사연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 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담당 공무원 및 보육정보센터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가) 조사 개요

본 연구는 도시화 정도 및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5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대상 어린이집 선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협조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2012년 4월 기준 어린이집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159개소 명단을 제공받았다.

〈표 1-3-1〉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시설수

구분	39명 이하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이상		계	
	수	(비율)										
대도시	102	(29.7)	149	(51.6)	314	(45.1)	243	(50.4)	212	(60.7)	1,020	(47.2)
중소도시	128	(37.2)	72	(24.9)	192	(27.6)	154	(32.0)	105	(30.1)	651	(30.1)
읍면	114	(33.1)	68	(23.5)	190	(27.3)	85	(17.6)	32	(9.2)	489	(22.6)
계	344	(100.0)	289	(100.0)	696	(100.0)	482	(100.0)	349	(100.0)	2,160	(100.0)

단위: 개소(%)

표본추출을 위하여 1차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지역 층화하고,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을 고려하여 5개 규모로 층화하여 표본 500개소를 최종 추출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배분은 <표 I-3-2>에 제시하였다.

<표 I-3-2>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조사 표본배분

구분	단위: 개소					계
	39명 이하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 이상	
대도시	25	34	73	56	49	236
중소도시	33	17	50	36	25	161
읍면	22	15	39	18	8	103
계	80	66	160	112	82	500

어린이집 대상으로 실시한 본 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본 추출된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으로 조사 협조를 구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어린이집에 이메일, 팩스, 우편 등 응답자가 요청한 양식으로 조사표를 발송하였다. 조사표를 수령한 어린이집 응답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을 설명하였고, 1주일 후에 조사표를 수거하였다.

조사표가 어린이집 재정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정보를 담고 있어 주로 어린이집 원장이 조사문항에 응답하였다. 수거된 조사표 중 무응답이나 응답 내용이 잘못 기재된 문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응답률 및 정확도를 높였다.

조사 내용은 <표 I-3-3>와 같이,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 운영 실태 및 요구와 원장 일반사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3-3>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조사 내용

구분	내용
1. 어린이집 설치·위탁운영 실태 및 요구	- 개원일, 지역특성, 운영형태 - 위탁 관련: 위탁 방법 및 횟수, 계약기간, 심사 절차 및 기준, 현장관찰 여부, 위탁심사 시 추가 요청 자료, 위탁관련 사항 공개여부, 선정심의위원 자격조건, 위탁심사의 보완점, 위탁운영체 기여, 보증보험 가입비용
2. 운영 실태 및 요구	2-1. 일반사항 - 건축년도, 건축형태 - 평일, 시간연장보육, 토요보육 운영시간

(표 I-3-3 계속)

구분	내용
2. 운영 실태 및 요구	2-2. 취약보육 - 취약보육 운영 현황, 실시 이유, 추가 지원
	2-3. 원아 관리 - 아동 정원 및 현원, 연령별 반수, 초과보육 여부 - 입소 대기 신청 및 관리 방법, 대기자 관리주기 입소 우선순위 외 고려사항, 입소순위 개편 및 대기 연장제도 의견 연장 신청주기 및 방법, 연령별 진급에 의한 재입소 방법
	2-4. 보육프로그램 - 표준보육과정 및 5세 누리과정 운영 여부,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특별활동 수, 이용 아동수, 운영시간, 특별활동비 등
	2-5. 원아 - 평가인증(신규 및 재인증) 여부 및 접수 -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위원 구성, 애로사항 - 재무회계 담당자, 재정운영의 어려움, 재정 투명성 확보 방법
	2-6. 보육 교직원 관리 - 보육교직원 재직 및 이직 현황, 이직 이유, 보육교사 수급 어려움 - 보육교사재교육 현황, 초과근무시간 및 수당 지급, 원장 기본사항 등

나) 조사결과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159개소 중 24%에 해당하는 총 517개소가 어린이집 조사에 참여하였다(표 I-3-4 참조). 표본 추출된 국공립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하였다가 재참여한 어린이집 등이 포함되어 총 517개소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가 247개소 47.8%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 154개소 29.8%, 읍면 116개소 22.4% 순이다. 정원별로는 50~79인 이하가 34.4%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20% 이하이다.

〈표 I-3-4〉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조사 참여 시설 특성

단위: 개소(%)

구분	39명 이하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이상		계
	수	(비율)									
대도시	28	(32.9)	37	(52.1)	78	(46.7)	56	(50.0)	48	(58.5)	247 (47.8)
중소도시	30	(35.3)	19	(26.8)	43	(25.7)	36	(32.1)	26	(31.7)	154 (29.8)
읍면	27	(31.8)	15	(21.1)	46	(27.5)	20	(17.9)	8	(9.8)	116 (22.4)
계	85	(100.0)	71	(100.0)	167	(100.0)	112	(100.0)	82	(100.0)	517 (100.0)

한편, 어린이집 조사에 응답한 원장의 일반적 특성은 <표 I-3-5>와 같다.

응답자 중 여성이 95.9%로 과반수이며, 연령은 45~50세와 40~45세가 각각 26.5%, 25.9%로 가장 많고, 학력은 54.9%가 대학원 이상, 4년제 대학 30.9%로 80% 이상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이다. 평균 원장 경력은 9.7년이고, 이들의 교사 경력은 원장경력과 비슷한 수준인 9.2년이다. 원장 경력은 5~10년이 25.1%로 가장 많고, 교사 경력은 6~10년이 32.3%로 가장 많다.

<표 I-3-5> 원장의 일반적 특성: 어린이집 조사

		단위: %(명)	
구분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교사경력	
여자	95.9(496)	없음	1.4(7)
남자	4.1(21)	1~3년	11.0(57)
연령		4~5년	8.7(45)
40세 미만	14.1(73)	6~10년	32.3(167)
40세 이상 45세 미만	25.9(134)	11~15년	25.9(134)
45세 이상 50세 미만	26.5(137)	16~20년	10.3(53)
50세 이상 55세 미만	20.5(106)	21년 이상	2.9(15)
55세 이상 60세 미만	8.7(45)	원장경력	
60세 이상	4.3(22)	3년 이하	18.8(7)
학력		3~5년	13.3(9)
고졸	1.4(7)	5~10년	25.1(130)
대졸(3년제 이하)	12.4(64)	10~15년	23.0(119)
4년제 대학 재학	0.4(2)	15~20년	14.1(73)
4년제 졸	30.9(160)	21년 이상	5.6(29)
대학원 이상	54.9(284)		
전체	100.0(517)	전체	100.0(517)

2) 보육전문가 조사

가) 조사 개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운영 현황과 위탁체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232개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 공무원과 63개 보육정보센터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 I-3-6 참조).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전국 시군구 보육정보센터협의회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2012년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담당공무원, 보육정보센터장의

지문회의와 국공립어린이집 심층면담을 통해 1차 추출하였고, 조사표 작성 후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전문가 서면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시군구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및 계획, 위탁 현황, 신규·변경과 재위탁 심사기준과 배점의 적절성,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보육정보센터장의 조사내용도 시군구 조사내용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표 1-3-6〉 보육전문가 설문조사 내용

대상	구분	내용
시군구 담당공무원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및 계획, 확충 재원 국공립 우선 설치지역, 확충 방법, 확충의 어려움
시군구 담당공무원, 보육정보센터장	2. 위탁현황	위탁 현황, 위탁선정심사위원회 구성원 및 인원수, 선정심사위원 자격, 시군구 적용 위탁심사기준표
	3. 위탁심사기준의 적절성	신규, 재위탁 심사항목 및 배점의 적절성,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재위탁 탈락 및 유지율, 재위탁 선정기준표 의무 사용에 대한 의견

나) 조사 결과

시군구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7>과 같다.

〈표 1-3-7〉 시군구 보육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구분	단위: %(명)		
	백분율(수)	구분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64.9(113)	고졸	2.9(5)
남자	35.1(61)	대학졸(3년제 이하)	16.1(28)
연령		4년제 대졸	73.6(128)
35세 미만	23.0(40)	대학원 졸	7.5(13)
35~40세 미만	13.2(23)	직급	
40~45세 미만	27.0(47)	9급	2.3(4)
45~50세 미만	23.6(41)	8급	21.8(38)
50세 이상	13.2(23)	7급	50.0(87)
		6급	25.9(45)
전체	100.0(174)	전체	100.0(174)

먼저, 232개 시군구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총 174명의

로 응답률은 75%이다.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중 여자가 64.9%, 남자 35.1%로 여자가 두배 정도 많다. 연령은 40~50세 미만이 절반을 차지하고 직급은 7급이 50%, 다음으로 8급과 6급이 20%대이다.

다음 <표 I-3-8>은 보육정보센터장의 일반적 특성이다. 63개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장 중 45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71.4%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여자가 91.1%로 과반수 이상이며, 연령은 40대가 51.1%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조사에 응답한 보육정보센터장의 보육경력은 평균 14년으로 15~20년이 40%로 가장 많다.

<표 I-3-8> 보육정보센터장의 일반적 특성: 시군구 조사

구분	백분율(수)	구분	단위: %(명)
			백분율(수)
성별		학력	
여자	91.1(41)	4년제 대졸	6.7(3)
남자	8.9(4)	대학원 졸	93.3(42)
연령		보육 경력	
40세 미만	26.7(12)	10년 미만	24.4(11)
40~45세 미만	22.2(10)	10~15년 미만	24.4(11)
45~50세 미만	28.9(13)	15~20년 미만	40.0(18)
50세 이상	22.1(10)	20년 이상	13.2(5)
전체	100.0(45)	전체	100.0(45)

3) 부모 설문조사

가) 조사 개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협조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호자 4,000명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¹⁾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 부모 대상 조사 내용은 <표 I-3-9>와 같다.

아동 및 부모 특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기간과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입소 중복등록 및 대기 경험 여부, 입소 대기기간,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대기연장 신청주기 및 신청방법 등이 있다.

1) 본 전화조사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2012. 3. 29) 이전에 제공받은 자료임.

〈표 1-3-9〉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1. 아동 특성	- 아동 연령, 성별, 보육료 지원 유형
2. 부모 특성	- 부모 연령, 학력, 취업상태, 가구 소득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 이용 기간, 대기 등록 어린이집 수, 입소 중복등록 및 대기경험 여부, 대기기간 -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대기연장 신청주기, 대기 연장 신청방법

나) 조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조사 결과는 <표 1-3-10>과 <표 1-3-11>에 제시하였다.

부모조사 응답자는 총 1,037명이다. 이들 자녀의 성별은 남아 50%, 여아 50%로 동일하다. 보육연령은 1세 21.4%, 0세 19.4%, 2세 18.2% 순으로 영아가 유아보다 많다. 보육료 지원 자격은 영유아가 73.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거주지역은 차이가 없으나 읍면지역이 36.5%로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다(표 1-3-10 참조).

〈표 1-3-10〉 부모조사 응답자 자녀의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보육료 지원 자격	
남	50.0(518)	영유아(법정)	1.5(16)
여	50.0(519)	영유아	73.2(759)
보육 연령		일반아동	10.5(109)
0세	19.4(201)	기타(장애아,다문화)	4.8(50)
1세	21.4(222)	만 5세아	9.9(103)
2세	18.2(189)	거주지역	
3세	16.5(171)	대도시	34.4(357)
4세	13.8(143)	중소도시	29.1(302)
5세	10.7(111)	읍면지역	36.5(378)
전체	100.0(1,037)	전체	100.0(1,037)

다음 <표 1-3-11>은 조사 응답자 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다.

부모 연령은 36~40세 이하가 39.9%로 가장 많고, 다음이 31~35세 이하 33.1%로 30대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미취업이 37.2%로 1/3이

며, 종일제 출근은 41.6%, 시간제나 자영업, 재택작업 등의 종일제 이외의 일하는 어머니들이 약 20% 정도를 차지한다. 조사대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1~300만원 사이가 19.1%로 가장 많고, 151~200만원 16.8%, 400~500만원 13.1%, 201~250만원 13.0% 순으로 많다.

〈표 1-3-11〉 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부 모		구분	단위: %(명)
	부	모		백분율(수)
연령			월평균 가구소득	
30세 이하	7.3(76)	18.7(194)	150만원 이하	9.7(101)
31~35세 이하	33.1(343)	46.6(483)	151~200만원	16.8(174)
36~40세 이하	39.9(414)	27.4(284)	201~250만원	13.0(135)
40세 이상	197(204)	7.4(76)	251~300만원	19.1(198)
취업상태			301~350만원	6.5(67)
종일제 출근	75.7(785)	41.6(431)	351~400만원	12.7(132)
시간제 출근	1.6(17)	9.1(94)	400~500만원	13.1(136)
자영업(가족고용)	19.1(198)	7.0(73)	501만원 이상	9.1(94)
재택작업	0.4(4)	0.8(8)		
휴직 중	0.4(4)	2.9(30)		
미취업	3.4(14)	37.2(386)		
기타	0.2(2)	0.7(7)		
부재	1.3(13)	0.8(8)		
합계	100.0(1,037)	100.0(1,037)	합계	100.0(1,037)

4) 분석 방법

조사결과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조사는 어린이집 규모, 지역규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F검증 및 Duncan 사후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는 지역규모별로 교차분석과 F검증 및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고, 보육정보센터장 대상의 조사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초분석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조사는 영유아 연령, 보육료 지원 여부, 모 취업형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교차분석과 t-test, F검증 및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 사례연구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업 사회복지재단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라. 집단 심층면담

보육담당 공무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및 대기자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이용 접근성 등과 관련된 문제점 및 욕구 등 설문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도출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보완하였다(표 I-3-12 참조).

〈표 I-3-12〉 심층면담 일정

구분	장소(일시)	면담자	내용
부모	서울(4.2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5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시작시기, 대기 기간, 입소 순위, 국공립어린이집 선택 이유, 입소순위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견 등
	경기(4.20)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5명	
	서울(10.12)	국공립어린이집 대기등록 부모 5명	현재 이용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신청 이유, 입소 우선순위, 입소 대기기간, 대기등록 연장 신청제도 도입 관련 의견
원장 및 보육정보센터장	서울(7.17)	원장 2명	
	인천(4.24)	원장 3명	
	충북(5.15)	원장 3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위탁제, 위탁방법, 위탁제 선정기준 관련 의견, 위탁제 심의 시 애로사항, 대기자 관리, 입소우선순위, 보육교직원 채용의 어려움 및 인건비, 재정운영의 어려움 등
	강원(5.15)	원장 3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전남(5.24)	원장 3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전북(5.24)	원장 3명, 보육정보센터장 1명	
공무원	서울(8.30/9.17)	공무원 2명	위탁제 선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 자문회의 및 간담회

보육담당 공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육정보센터장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표 구성 및 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용어의 정의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위탁 운영을 포함한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나, 소규모 농어촌 어린이집의 경우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 기준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가 기관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및 활동을 수행,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재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아 관리, 취약보육,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직원 관리 등으로 한정하였다.

5. 선행연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탁운영, 운영 등으로 구분되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입소순위와 대기자 관리, 취약보육, 보육서비스 질, 이용 부모의 만족도와 요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설치 주체이고,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보다 공급이 쉽지 않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 관련한 연구는 공급 부족 원인을 파악하고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과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차원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김현숙(2006)은 국공립보육시설²⁾ 신설 실적이 계획 대비 부진한 이유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들었고, 부지 제공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 보육시설 공급을 또는 설치비용 부담 등의 문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모두 공립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시설에 의해 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거주지역 등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정부가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기보다 민간보육시설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보육시설 기준이나 보육교사 수준, 인건비 등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서문희·신나라·유은영, 2007)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각 시군구에 총괄 거점형 보육시설을 지역 규모에 따라 설치하고, 시설을 중앙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확충 방안으로 신축비와 기존 시설 매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 지방정부 부담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의

2) 본 절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 전에 수행된 연구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

무설치, 보육시설을 이용한 무상 및 유상 임대, 기존 시설의 국공립시설로의 전환, 증축 및 확대 이전을 통해 국공립시설 확보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밖에도 공공건물, 학교, 국 관사, 공원 등의 부지 및 건물 확보, 이를 이용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절약하면서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상설화된 조직,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은 농림부 지원으로 516개 보육시설 미설치 읍면 지역의 인근 지역 보육시설로의 접근성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공급 우선 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83개 시군구 140개 읍면에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 공급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진(2007)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초과수요 추정과 지역 소득에 기반한 조정과정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우선설치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소득이 다소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아동수 대비 초과 수요가 있다 해도 이를 국공립시설이 해소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시설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급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요한 보육서비스 공급자 수준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거나 공동주택이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건설하는 형태로 계획없이 확대해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신나리·이정원·송신영·이은경(2009)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취약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설치지역을 농촌, 도시로 나누고, 다시 농촌은 이용 가능한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도시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변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내 아동수, 유치원 및 보육시설 개소수로, 도시지역은 해당 지역 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과 정원 충족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과 기초생활 수급 아동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방향으로 BTL 방식을 통한 복합시설 이용, 기업재단 및 단체의 민간투자 유치,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대학 내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 임대 등을 제안하였다.

백선희(2011)도 국공립보육시설이 빈곤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우선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공립보육시설 분포는 실제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도시에 빈곤지역이 많아서 보다는 재정 여건이 안정적이고, 보육

정책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므로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공공시설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로는 서문희 외(2007)의 연구가 있다. 연구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방안으로 시설복지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을 개인보다 우선순위로 고려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보육조례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자는 관내에서 2개 이상 보육시설을 수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관내외에서 타 보육시설을 수탁하거나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되어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의 양도, 재위탁 불가 명시도 제안하였다. 위탁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3년 및 5년 이하로 통일해야 하며, 재위탁은 2회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완전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심의 절차 및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고, 사후에 접수 등을 공개하며, 운영체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위탁체 선정 기준안을 마련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 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제도에 대한 지역별 사례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박경주(2002)는 구리시의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한금(2002)은 경남·마산·통영지역을 조사하였고, 손순옥(2008)은 강원, 남성애(2011)는 충남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제도를 연구하였다.

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1) 입소순위와 대기자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선호에 따른 쏠림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대기자 수 파악과 그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강기숙·정지연, 2010; 유희정 외, 2009)가 소규모로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전무하다.

김명순 외(2009)의 연구에서 입소순위 내 우선 적용 순서의 필요성과 기준 및 방법을 조사한 결과, 입소 우선 적용대상으로 시설장은 법정저소득 영유아,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우선대상으로, 부모는 최선순위와 차선순위로 모두 장애 부모의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꼽았다. 연구자는 단기 정책으로 정부지원시설에 한

하여 보육 우선권 영유아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입소순위에 대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의 보완 구축이 필요하며, 맞벌이 대상자 기준 검토를 통한 맞벌이 적용 확대, 중복 해당자에 대한 입소우선권 부여를 주장하였다. 중장기 정책으로 취약보육 대상자에 대한 우선 보육권 보장, 입소순위의 선별기준 점수화를 제언하였다.

홍승아·김은지·이영미(2010)는 일본 보육시설 입소기준표처럼 입소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취업 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부모 자녀의 국공립보육시설 최우선 입소 조항 설치를 주장하였다.

장기숙·정지연(2010)은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에 위치한 국공립보육시설 중 정원 대비 대기율이 가장 높은 8개 시설의 대기자 부모를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현 체제는 등록 개수는 기간 제한이 없어 가수요를 발생시키므로 대기자 등록 신청 수 일정기간 주기로 대기 등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선호 이유는 비용 때문이므로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간 부모의 보육료 부담 차이를 줄이고,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 취약보육

국공립어린이집이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이 기피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육서비스로 영아 전담, 시간제 보육,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등의 취약보육을 들 수 있다.

서문희 외(2007)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 실태를 조사하였다. 장애아 통합보육을 실시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율이 낮았다. 장애아 통합보육 미실시 이유는 인력 확보 어려움이 가장 컸고, 시간연장보육과 휴일보육, 휴일보육은 수요가 없어서, 방과후 보육은 공간 부족이었다. 24시간 보육은 향후 실시 의사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신나리 외, 2009)의 연구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의 취약보육 제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서문희 외(2007)의 연구와 다

르게 취약보육 범주에 영아전담, 일시 보육을 추가하였고, 방과후 보육은 제외시켰다.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많이 실시하는 취약보육은 영아보육, 시간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순이며,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은 낮았다. 취약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취약보육 실시 이유는 학부모 요청이 많았고,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은 지자체 요청이 많았다. 취약보육 실시가 부적절한 유형은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이며,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조부모 가정에 대한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보육서비스의 질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은 시설유형별 운영, 환경, 프로그램, 건강·영양·안전 등의 차이를 분석하여 질을 평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김인(2004)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운영 관리, 보육인력, 교육 운영 및 평가, 보육 환경, 건강·영양·안전, 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6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보육시설 유형별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은 민간법인시설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민간개인시설, 국공립시설 순이었다. 운영관리는 민간법인시설이 우수하였고, 보육인력관리는 국공립시설과 민간법인시설이 우수하였다. 이 외에도, 교육운영 및 평가와 보육환경은 민간시설, 건강·영양·안전관리와 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는 민간법인시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평가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서문희 외(2010)는 평가인증 통과 평균점수가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경우 직장, 국공립시설 순으로 높고, 39인 이하도 동일한 순서였다. 즉,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보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다.

라. 부모의 요구와 만족도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요구와 이용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시설 유형별 이용 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김경화, 2008; 김문자, 2008; 김영아, 2009; 민행숙,

2009; 송지윤, 2011; 최영, 2010)와 서비스 욕구(권정윤·한유미, 2007; 김학숙, 2006) 등이 진행되었다.

홍승아·김은지·이영미(2010)의 취업 부모의 자녀양육서비스 이용실태 연구에서 보육시설 선택 이유로 등·하원의 편리함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등하원의 편리보다는 보육프로그램, 일하는 부모를 배려한 운영시간, 시설 수준, 교사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보육시설은 보육프로그램 내용이 좋아서, 가정보육시설은 일하는 부모를 배려한 운영시간이 높았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시설유형 중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나, 차량이용 용이, 주거지에서의 거리, 주변 환경의 안전성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평가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부모는 아이가 보다 좋은 보육환경에 있다는 만족감과 업무 몰입도,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이용 부모는 업무 몰입도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순배·권기성(2011)은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가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안정성, 의사소통, 정중성, 프로그램 운영 능력, 급식의 질, 심미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급식의 질, 심미성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시설 간에 동일한 영향 관계가 있으나 안정성, 정중성, 프로그램 운영 능력에서는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의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과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I. 관련법 및 제도

제2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위탁운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는 기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설치 및 위탁 운영, 운영 관련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시설 중에서 직장어린이집³⁾을 제외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해야 하고 최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는 시설로서,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법 제11조의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과 다른 공보육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준은 동법 제15조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동법 별표 1의 1항은 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하고, 상시 인원은 11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이나

3)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국공립 가정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이다. 또한 보육실 설치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나. 기타 법규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법규는 영유아보육법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 외에도 주택건설이나 택지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법,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농업진흥구역 등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가하는 조항이 있다. 각각의 법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건축법 시행령은 어린이집을 노유자 시설의 아동관련 시설로 명시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이를 복리시설에 포함시키고 있어 주택건설 시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법 52조는 유치원을 유치원 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함께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대지를 확보하여 유치원 설치 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법 55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연면적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게 하고 남은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우선 설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어린 연령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린이집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은 개발제한 지역이라도 용도 변경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 가능하며, 이러한 시설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또한 동법 별표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한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설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가능하며, 설치 시에는 건축면적이 증가되어서는 안 되며, 증축 후의 층수도 2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이러한 시설로는 입주 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일곱째,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용도 변경과 농지전용 신고를 통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토지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법 제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5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를 통해 전용이 가능하고, 동법 시행령 제36조는 농지전용 신고대상 시설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다.

다. 관련 제도

앞서 살펴본 영유아보육법 및 기타 관련 법규 외에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국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과 보육 수요가 존재하나 이용할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정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으로 기능보강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기능보강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설 매입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지자체 구입비 지원,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시설 신축

국공립시설 신축은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국방부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국공립시설 개소당 330㎡까지이며,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단가는 국비, 지방비 포함하여 1,201,300원/㎡이고, 국비 최대 지원액은 237,857천원이다(표 II-1-1 참조).

국공립시설 신축을 위해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 읍면동 청사 신축·증개축 시 어린이집을 복합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대학 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건물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 확충이 가능하며, 장애전담시설을 국공립으로 적극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설 매입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시설 매입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은 신축 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 확충이 불필요할 경우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축비는 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의 경우에만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며, 건물 감정평가액과 시설 리모델링비 포함하여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한도액 237,857천원까

지 지원한다(표 II-1-1 참조). 특히,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민간시설 매입 시 국민연금기금('94~'97년)을 받아 설립한 어린이집을 우선 검토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시설에는 전문가의 공사 견적이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50,000천원이다. 특히, LH공사가 임대주택 어린이집을 무상 제공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 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시설 운영자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어린이집을 우선하고,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단서 3호에 따라 국공립 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하지 않고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세대주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라) 개원 예정인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기자재 구입비는 연 내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장애아전담시설 신축은 개소당 80,000천원, 일반시설 신축은 개소당 60,000천원, 이전 또는 대체 신축은 개소당 30,000천원, 민간시설 매입 개소당 20,000천원, 공동주택 개소당 40,000천원을 지원한다. 기자재 구입비는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은 구매 가능하나, 차량구입비 및 시설 공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마) 장애전담시설 신축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담시설에 대하여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점검 후 최종 결정된다.

〈표 II-2-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재정 지원

구분	지원금
1. 국공립시설 신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330㎡까지 지원, 단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 지원 · 지원단가: 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국비 최대 지원액 237,857천원 (설계용역비 제외)
2. 시설 매입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237,857천원
3.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가: 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4. 기자재 구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80,000천원/개소 · 일반 시설 신축 60,000천원/개소 · 이전 또는 대체 신축 30,000천원/개소 · 민간시설 매입 20,000천원/개소 · 공동주택 40,000천원/개소
5.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396㎡ 지원 · 지원단가: 1,201,300/㎡(국비, 지방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 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운영 현황을 감안하여 지원하며,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담시설 폐·휴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396㎡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국비, 지방비 포함하여 1,201,300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2)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영유아의 보육지원 등에 관한 조항에서는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며, 그 밖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농어촌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이 소수일 경우 분원으로도 운영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상시 영유아 3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다. 설치비는 지방비와 국고보조율 70%로 개소당 130백만원을 지원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가. 중앙 정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최초 위탁 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며,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

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위탁 관련해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보육정책위원회가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공고 방법, 심의절차 및 방법,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항목, 재위탁 방법, 변경위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선정 시기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심사결정을 해야 한다. 단,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해야 한다. 이는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위탁체 선정이 가능하다.

나)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신규 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 경쟁해야 하며,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단,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및 방법, 심의 결과는 위탁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 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가능하며,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운영체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마) 운영 조건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 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 실시 후 그 적용 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바) 선정심사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의원들로 구성해야 한다.

사) 심사원칙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표를 사용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다. 단,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 가능하다. 또한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

에 있는 자는 위원을 제척하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을 결정한다.

아) 운영 위탁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취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수탁자가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영유아 방임 또는 학대한 경우,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운영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 위탁을 취소한다.

2)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에 따른 위탁체 선정 시 세부 심사기준은 신규·변경위탁, 재위탁에 따라 다르며, 각 세부항목은 <부표 II-2-1>와 <부표 II-2-2>에 제시하였다.

먼저, 위탁체 신규·변경 심사기준은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심사항목으로 구성된다.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과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은 다시 세부항목으로 나뉜다(부표 II-2-1 참조).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총점 40점으로 보육사업 계획 20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점, 예산의 적절성 10점으로 배점을 둔다.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은 총점 35점으로 평가인증 참여 여부 10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점,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5점,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및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10점이다.

재위탁 심사기준은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3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0점), 어린이집 운영계획(25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운영체의 재정능력(5점) 5개 심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신규·변경 심사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부표 II-2-2 참조). 운영체의 공신력과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은 동일하나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40점에서 25점으로,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은 35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이 낮아지고,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은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으로 항목명이 추가되었고 배점도 10점에서 30점으로 높아졌다.

세부항목별 배점을 보면,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은 시설 운영 관리, 보육사업 계획대비 실적, 회계 관리의 적절성 각각 10점씩이며,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은 평가인증 참여 여부 10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점,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실적 5점,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 의지, 향후 발전계획 5점이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보육사업계획 10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점, 예산의 적절성 5점으로 배점을 두고 있다.

3)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위탁

이 외에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위탁 관련하여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보육교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소규모 어린이집을 분원형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탁 운영 시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준을 따른다.

나. 지방 정부

1) 보육조례 유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9항에서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과 관련한 조례를 정하고 있다.

16개 시·도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5개 시·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223개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2007년에는 지방자

치단체가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조례와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각기 따로 두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규정을 제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위탁운영과 보육시설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육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있다.

〈표 II-2-2〉 시도별 보육 관련 조례 유형

단위: 시군구

구분	2007년 ¹⁾						2012년 ²⁾						
	보육 조례	국공립 시설 위탁운 영 조례	보육시 설관리 및 운영 조례	보육 위원회 운영 조례	없음	계	보육 조례	국공립 시설 위탁운 영 조례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기타	없음	계
전체	46	67	68	16	35	232	116	8	35	66	1	5	231
서울	13	4	5	1	2	25	23	-	1	2	-	-	26
부산	-	1	15	-	-	16	2	-	1	13	-	-	16
인천	4	3	1	-	2	10	10	-	-	-	-	-	10
대구	-	1	7	-	-	8	2	-	6	-	-	-	8
대전	1	-	4	-	-	5	1	-	1	3	-	-	5
울산	1	4	-	-	-	5	-	5	-	-	-	-	5
광주	-	-	4	-	1	5	2	-	3	-	-	-	5
경기	12	10	2	1	6	31	27	1	-	3	-	-	31
강원	3	12	1	1	1	18	16	-	-	2	-	-	18
충북	1	8	-	2	1	12	7	-	1	4	-	-	12
충남	2	5	2	1	6	16	9	1	4	1	-	1	16
전북	5	6	-	-	5	14	5	-	6	2	-	1	14
전남	1	4	5	9	1	22	4	-	3	13	-	2	22
경북	2	9	9	-	2	23	2	-	8	11	1	1	23
경남	1	-	13	1	1	20	6	1	-	12	-	-	19
제주	-	-	-	-	-	2	-	-	1	-	-	-	1

주: 전남 강진, 전남 화평, 경북 군위,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으로 보육 관련 조례를 두고 있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 각년도 시군구 보육조례.

각 시·도별로 보육관련 조례의 명칭 및 수록 내용은 차이가 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지역은 보육 조례를 두고 있는 반면, 부산, 전남, 경남은 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조례를 두는 산하 자치단체가 더 많다. 이 외에도 울산 지역은 산하 자치단체 모두 보육시설 위탁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는 보육 조례 대신 농촌정보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두고 있고,

제주도는 행정구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보육 조례를 공통 적용한다.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보육 대상,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 명부의 작성·비치, 보육시간, 운영규정, 보육료 수납, 비용의 지출, 보험(공제) 가입, 장부 등의 비치,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육 대상, 취약보육, 필요경비, 운영위원회 등으로 한정하여 법규와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보육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등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29조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이상과 같은 법 조항을 기초로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1, 2

순위로 구분하여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으로 점수화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표 I-3-1 참조).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부표 II-3-1 참조), 사실상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한 자격조건 대부분이 1순위에 배치되어 입소순위를 1, 2순위로 차등화한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입소 아동의 형제자매, 대기기간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의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일 입소 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 순위가 될 수 없고,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3-1〉 입소우선순위: 2012

구분	자격	배점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00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50점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시설은 반드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고,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집 입소 시 맞벌이 부부의 자녀와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 가정어린이

집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나. 취약보육

영유아보육법 제2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 장애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는 취약보육의 종류 및 개념과 정원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취약보육에는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보육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아동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 기타 필요경비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육사업안내에서는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은 민간개인어린이집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시도별 필요경비 각 항목별 상한액은 <표 II-3-2>와 같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각기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부표 II-3-2, II-3-3 참조).

필요경비 각 항목별로 보면, 입학준비금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경기도가 가장 비싸다. 특별활동비는 서울 강남이 21만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이 3만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현장학습비는 2만 5천원에서 22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표 11-3-2〉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2년 기준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연)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 비(월)	현장학습 비(분기)	행사비 (연)	아침·저녁 급식비(월)	특성화 비용(월)
서울	5만원	구별 위임	구별 위임	구별 위임	-	-	-
부산	9만원	6만원	-	3만2천원	6만원	1천원(1식)	-
대구	9만원	6만원	2만원	2만5천원	6만원	1천원(1식)	-
인천	8만천원	3만원	-	01세:22만원/25세:18만원	-	-	-
광주	8만원	9만원	5천원	3만원	5만원	5천원	-
대전	9만원	5만원	5천원	5만5천원	5만원	-	2만원
울산	9만원	8만5천원	-	5만원	10만원	1,745(1식)	-
경기	10만원	시군 위임	1만6천원	시군 위임	시군 위임	시군 위임	-
강원	7만원	7만원	1만5천원	3만원	-	-	-
충북	9만원	9만원	2만원	2만원	5만원	2만원	-
충남	9만원	10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1,000(1식)	2만원
전북	5만원	9만5천원	4만원	3만원	12만원	2만원	3만원
전남	9만원	7만원	6천원	5만원	9만원	1만원	5만원(연)
경북	8만원	6만원	1만원	3만원	6만원	1만5천원	-
경남	8만원	8만원	1만원	2만5천원	5만원	-	-
제주	6만원	6만원	1만5천원	12.5천원	6만원	2만원	-

자료: 각 시도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고시문.

라.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와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해야 하며, 주로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개정, 예산 및 결산 보고,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시간·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과 보육환경 개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마. 재정

영유아보육법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 등의 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 보육 등의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정 운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능보강비 지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 등의 정부지원시설에 대하여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능보강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증개축비,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비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를 제외한 기능보강비 지원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가) 증개축비

증·개축비는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증·개축 면적에 따라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751,440원/㎡이다.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개축의 경우 부분 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시설 설치 연도, 지원 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재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 급이하 시설 등은 예외로 한다.

시설 증·개축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준수 여부와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개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설 개·보수비

시설 개·보수비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증개축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고,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공무원 확인 후 결정할 수 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30,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

다) 장비비

장비비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비 노후화 및 보육 아동이 증가한 경우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 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의 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2,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며,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비는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실내공기질 개선물품(공기청정기 등), 기타(손씻기 시설 등) 등이다. 지원 시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표 II-3-3〉 환경개선비 지원기준 및 단가

구분	지원 기준 및 단가
증개축비	· 개소당 132㎡ 지원, 증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 지원단가: 751440원/㎡
시설 개보수비	· 시설 규모, 개보수 필요 정도에 따라 지원 ·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장비비	· 2,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2)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대상이다. 대체로 영아교사는 인건비 80%를 지원하고 유아 교사는 30%를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농어촌지역이나 폐광지역, 도서벽지 등의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와 취사부 인건비 100%를 각 1명씩 지원하고, 그 외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표 II-3-4 참조).

시설규모별로는 20인을 기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원장 인건비 80%와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취사부 1명의 인건비 100%를 지원하지만 20인 이하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없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에 혼합반의 낮은 연령 기준으로 인건비 80%가 지원된다.

프로그램별 지원은 시간연장,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방과후 보육이 이에 해당된다. 시간연장보육과 24시간보육은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에 보육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휴일보육은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을 지원하며, 방과후 보육은 2004년 이전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장애이통합어린이집은 전담교사 인건비 80%를 지원하며,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 현원 9명 이상,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일 경우 원장 인건비 80%를 지원한다. 보육교사와 특수교사는 아동 3명 기준으로 2명까지 인건비 80%를 지원하며, 특수교사는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으로 장애아동 9명 기준으로 치료사 1명의 인건비 100%, 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취사부 1명의 인건비 100%

와 차량운영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 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출산휴가자 대체교직원은 출산휴가자 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육아휴직 및 산재휴직 등의 대체 교직원은 대체교사의 호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표 II-3-4〉 운영비 지원

구분	지원내용
2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인건비 : 유아반 교사 30%, 영아반 교사 80% - 원장 인건비 지원 없음
21인 이상 어린이집	- 원장 인건비 80% 영아반 교사 80%, 유아반 교사 30% - 추가지원 : 농어촌, 도서벽지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 인건비 100%, 차량운영비 개소당 월 20만원 -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시설 취사부 1명 인건비 100%(별도 채용 시)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방과후 보육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24시간 보육교사 인건비 80%(별도 채용 시) - 휴일보육 3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 시 5만원 - 방과후 보육 인건비 50%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 혼합반 낮은 연령 기준 인건비 80%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전담교사 인건비 80% - 특수교사 수당 월 10만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 원장(18명 이상 장애아 종일반 3개반 이상) 인건비 80% - 보육교사 인건비 80%, 특수교사 인건비 80% (3명 기준 2명까지 지원) - 특수교사 수당 10만원 - 치료사 인건비 100%, 수당 월 10만원(장애아동 9명기준)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교사 3명 기준 인건비 100% 지원 - 취사부 인건비 1명 100% - 차량운영비 월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Ⅲ.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제3장에서는 어린이집 설치 및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와 확충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과 계획, 확충지역, 재원조달 방식, 추가 확충 계획 시 시설수와 설치지역 및 확충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설치 및 이용 현황

가. 국공립어린이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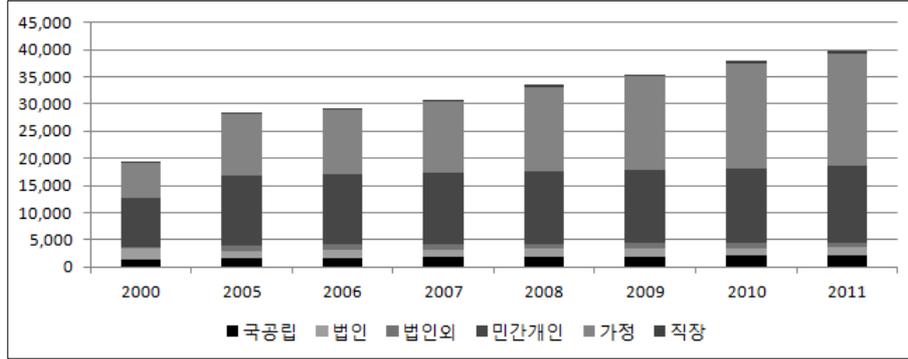
국공립어린이집은 2011년 기준 2,116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39,842개소 중 5.3%를 차지한다.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00년 19,276개소에서 2011년 39,842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2000년 1,295개소에서 2011년 2,116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증가율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III-1-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2000~2011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개인	가정	직장	단위: 명
								부모 협동
2000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204	미분류
2005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006	29,233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007	30,856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2008	33,499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2009	35,550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2010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401	74
2011	39,842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년도). 각년도 보육통계.

이에 반해, 민간어린이집은 8,970개소에서 14,134개소로 늘어났고, 가정어린이집은 6,473개소에서 20,722개소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 도입된 기본보육료와 시설환경개선 용자금 지원으로 가정어린이집이 급격히 늘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이루어져도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다.



[그림 III-1-1] 연도별 어린이집 수: 2000~2011

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2011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4만 3천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35만여명 중 약 10.6%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0년 686,000명에서 2011년 1,348,729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0년 99,666명에서 2011년 143,035명으로 약 40% 정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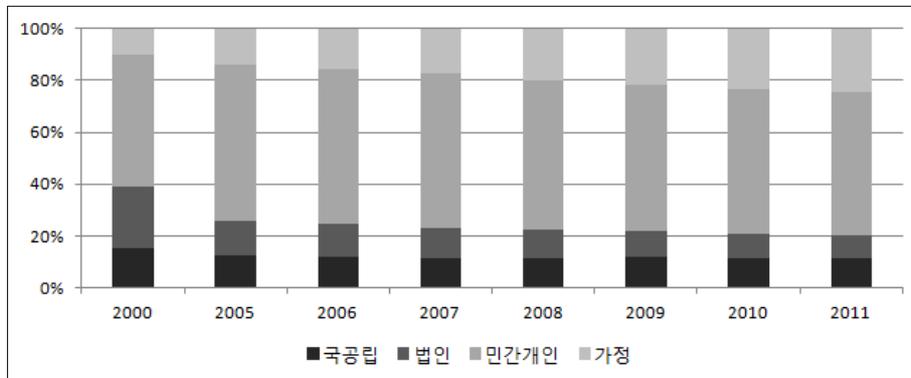
<표 III-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수: 2000~2011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00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미분류
2005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12,985	933
2006	1,040,361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4,538	1,238
2007	1,099,933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5,124	1,444
2008	1,135,50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6,809	1,491
2009	1,175,04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8,794	1,655
2010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21,901	1,898
2011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각 년도 보육통계.

이에 반해 민간개인과 가정어린이집의 이용 아동수는 시설수 증가와 함께 2000년 336,625명, 67,960명에서 2011년 민간개인어린이집 706,647명, 가정어린이집 308,410명으로 민간개인은 2배, 가정어린이집은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4.5% 정도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1년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민간부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점유율은 2000년 59%에서 2011년 75.3%로 10%p 이상 늘어났다. 특히 민간개인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정어린이집은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그림 III-1-2]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점유율 : 2000~2011

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1)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보육 아동 정원 대비 현원인 정원 충족률은 대부분의 어린이집 유형이 200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III-1-3 참조).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가장 높은 정원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5년에는 92.5%였으나 2006년 이후 88~89%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에는 90.7%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8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2005년 67.4%대였으나 2011년 84.9%로 15%p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정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정원충족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3〉 연도별·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충족률

단위: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2005	81.0	92.5	84.8	86.3	81.5	67.4	79.3	82.9
2006	81.3	89.1	82.2	84.4	81.6	73.7	77.0	76.9
2007	81.8	88.1	81.6	81.9	82.0	78.5	72.8	81.9
2008	79.5	87.3	79.0	80.7	78.7	78.1	72.7	78.1
2009	79.3	88.5	77.8	80.4	78.1	78.5	75.0	84.4
2010	82.2	89.5	79.3	81.5	81.1	83.3	77.3	85.3
2011	83.2	90.7	79.4	82.1	82.0	84.9	76.8	83.9

자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년도). 각 년도 보육통계.

2) 지역별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85.9%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는 83.3%로 평균 수준이며 농어촌은 78.8%로 평균에 다소 못 미친다.

〈표 III-1-4〉 지역규모별 정원 대비 현원: 2011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정원								
대도시	608,743	80,450	39,462	19,778	327,986	123,143	1,381	16,543
중소도시	606,113	43,599	27,498	16,285	322,147	184,162	1,015	11,407
농어촌	407,092	33,429	75,006	25,645	211,971	56,125	330	4,586
전체	1,621,948	157,748	141,966	61,708	862,104	363,430	32,536	2,726
현원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06,252	1,128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154,630	869	8,596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47,528	289	3,233
전체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4,987	2,286
정원충족률								
대도시	85.9	91.6	82.9	84.1	85.2	86.3	81.7	79.5
중소도시	83.3	92.5	82.7	85.8	81.9	84.0	85.6	75.4
농어촌	78.8	86.7	76.3	78.3	77.1	84.7	87.6	70.5
전체	83.2	90.7	79.4	82.1	82.0	84.9	76.8	83.9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의 전체 평균 정원충족률은 90.7%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90%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고 농어촌은 평균보다 낮아 지역차를 보인다.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전체 평균 82%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8%p 정도 낮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정원충족률이 낮다. 이에 반해,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이 84.9%로 민간개인어린이집보다 다소 높지만 지역차 없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표 III-1-5>와 같이,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은 2011년 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공급률은 58.4%, 이용률 48.6%로 절반 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급률 5.7%, 이용률 5.2%로 매우 낮다. 2010년과 비교하면 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은 약 2%p 정도 증가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0.1~0.2%p 증가하여 전체 증가율에 못 미친다.

<표 III-1-5>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단위: 명, %

구분	0~5세 영유아 수 (a)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b)	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정원 (d)	현원 (e)	공급률 (d/a)	이용률 (e/a)	정원충족률 (e/d)
전체	2,777,209	1,621,948	1,348,729	58.4	48.6	83.2	157,748	143,035	5.7	5.2	90.7
서울	502,766	243,440	214,863	48.4	42.7	88.3	55,150	51,294	11.0	10.2	93.0
부산	156,472	80,583	68,050	51.5	43.5	84.4	11,485	10,237	7.3	6.5	89.1
대구	124,198	77,218	63,118	62.2	50.8	81.7	2,412	2,034	1.9	1.6	84.3
인천	158,758	82,245	71,381	51.8	45.0	86.8	6,934	6,319	4.4	4.0	91.1
광주	87,003	60,943	49,983	70.0	57.4	82.0	2,811	2,220	3.2	2.6	79.0
대전	89,215	52,821	44,573	59.2	50.0	84.4	1,623	1,511	1.8	1.7	93.1
울산	67,754	35,621	29,976	52.6	44.2	84.2	2,122	1,973	3.1	2.9	93.0
경기	748,040	409,956	344,326	54.8	46.0	84.0	35,143	32,811	4.7	4.4	93.4
강원	75,635	53,498	42,996	70.7	56.8	80.4	6,119	5,309	8.1	7.0	86.8
충북	87,291	59,175	48,251	67.8	55.3	81.5	4,025	3,530	4.6	4.0	87.7
충남	123,274	78,245	63,236	63.5	51.3	80.8	3,892	3,433	3.2	2.8	88.2
전북	97,233	72,700	57,114	74.8	58.7	78.6	3,227	2,778	3.3	2.9	86.1
전남	96,196	66,655	53,988	69.3	56.1	81.0	4,934	4,016	5.1	4.2	81.4
경북	136,529	93,839	72,261	68.7	52.9	77.0	6,641	5,599	4.9	4.1	84.3
경남	192,054	124,478	99,100	64.8	51.6	79.6	9,507	8,593	5.0	4.5	90.4
제주	34,791	30,540	25,513	87.8	73.3	83.5	1,453	1,378	4.2	4.0	94.8
2010년	2,734,976	1,556,806	1,279,910	56.9	46.8	82.2	153,792	137,604	5.6	5.0	89.5

자료: 행정안전부(2010, 2011).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건복지부(2010, 2011). 보육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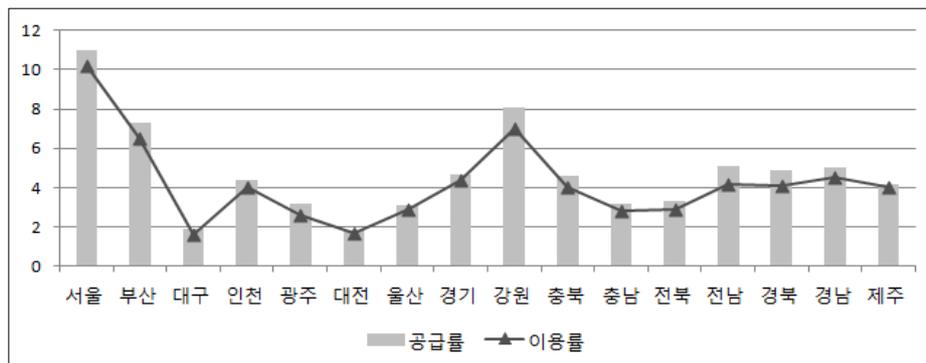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평균 90.7%로 2010년보다 1%p 정도 높아졌다. 전체 어린이집의 평균 83.2%보다 약 7%p 정도 높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지역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어린이집 공급률은 서울이 48.4%로 가장 낮고 제주가 87.8%로 가장 높다. 이용률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낮고, 부산, 인천, 경기, 울산 지역도 전반적으로 5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률은 서울이 11%로 가장 높지만 대전과 대구는 1.8%, 1.9%로 매우 낮다. 서울, 부산, 강원, 전남, 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5% 미만 수준이다.

0~5세 영유아 대비 보육 이용률은 제주가 73.3%로 가장 높고 나머지 지역은 40~50%대이다. 반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서울이 10%대로 가장 높고 다음이 강원 7%, 부산 6.5%이고 나머지는 5% 미만 수준이다.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0% 내외로 시도별로 차이가 크지 않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주가 94.8%, 서울 93%로 가장 높고, 광주 79%, 전남 81.4%로 10%p 이상의 지역차를 보인다.



[그림 III-1-3]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과 이용률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 공급률에서 지역차가 나타난 것과 같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도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III-1-6 참조).

2011년 기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440읍면과 34개동 총 474개 지역이다. 이에 반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1,022개 읍면, 938개 동 총 1,960개 지역으로 전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가 많고, 특히 경북지역은 93개 읍면·동이 미설치 지역으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전남이 189개 읍면과 46개 동이 미설치

지역으로 많고, 이 외에도 경북, 경남 지역은 200개 곳이 넘는다. 대도시 중에는 대구와 부산이 108개, 106개로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가장 많다.

〈표 III-1-6〉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단위: 읍면·동

구분	설치지역						미설치지역					
	어린이집 수			설치지역 수			어린이집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계	읍면	동
계	39,842	7,009	32,833	3,026	989	2,037	474	440	34	1,960	1,022	938
서울	6,105	-	6,105	422	-	422	2	-	2	34	-	34
부산	1,740	89	1,651	207	5	202	7	-	7	106	2	104
대구	1,561	131	1,430	139	9	130	-	-	-	108	5	103
인천	1,998	27	1,971	136	11	125	10	9	1	65	11	54
광주	1,205	-	1,205	91	-	91	3	-	3	70	-	70
대전	1,599	-	1,599	76	-	76	1	-	1	52	-	52
울산	818	152	666	52	9	43	4	3	1	29	6	23
경기	11,825	1,966	9,859	529	131	398	18	10	8	208	69	139
강원	1,147	347	800	168	94	74	25	25	-	122	80	42
충북	1,133	332	801	124	73	51	32	32	-	117	81	36
충남	1,857	953	904	172	132	40	53	50	3	159	133	26
전북	1,580	257	1,323	177	97	80	64	62	2	199	139	60
전남	1,161	534	627	217	153	64	79	77	2	235	189	46
경북	2,162	885	1,277	238	147	91	93	91	2	221	151	70
경남	3,399	1,229	2,170	236	116	120	82	81	1	209	149	60
제주	552	107	445	42	12	30	1	-	1	26	7	19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및 필요성

가. 확충 규모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당위성

국공립어린이집은 공보육체제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육료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확충의 근거를 두어 왔다(신나리 외, 2009).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국가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재정을 지원해 통

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질 향상과 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농산어촌이나 저소득밀집지역 등의 취약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민간어린이집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11년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모델인 공공형어린이집을 도입하여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채 양적 팽창만 가져왔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급식, 안전 및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집단휴업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집단행동까지 불사하면서 정부와 대치하기도 하였다. 민간어린이집의 이와 같은 행태에 맞서 보육정책을 굳건히 펴 나가기 위해서는 공보육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9.7%로 20여년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특히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경제활동참여율은 32.7%로(서문희 외, 2011) 출산과 육아기 동안에 경활율이 저조해지는 M자형을 나타낸다. 즉, 출산과 육아, 가사 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이처럼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은 출산률에도 영향을 미쳐 201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통계청, 2010).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정책의 기초를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모 자녀가 필요한 때에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를 위해서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며 대기자 수가 2011년 정원의 1.08배에서 2012년 1.18배에 이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이유로는 저렴한 보육료가 가장 큰 이유였으나(서문희 외, 2009), 최근에는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등의 보육료 지원 확대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가가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하고 보육서비스 질이 높으며,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질이 보장되었다는 점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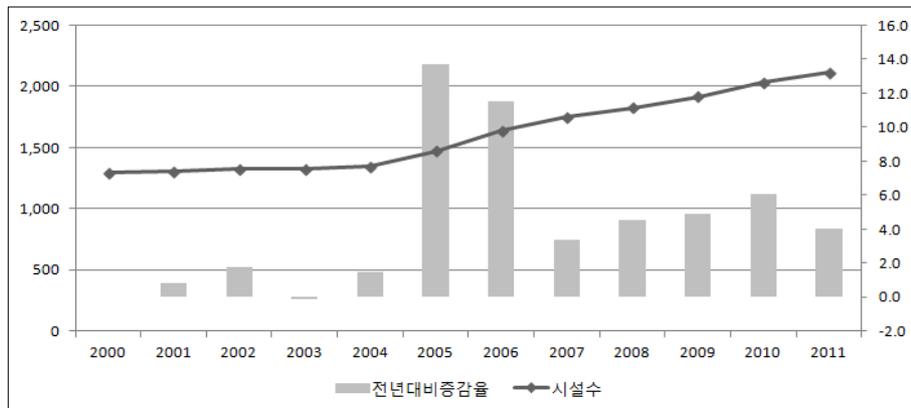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율이 1% 내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담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24개소, 2006년 170개소로 전년대비 13.7%, 11.5%가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정부의 보육공공성 확대정책과 맞물려 국공립어린이집이 현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이후에도 매년 70~110개소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었으나 증가율은 5%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표 III-2-1>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증감률

단위: 개소,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295	1,306	1,330	1,329	1,349	1,473	1,643	1,748	1,826	1,917	2,034	2,116
설치수	-	11	24	-1	20	124	170	105	78	91	117	82
전년대비 증감률	-	△0.8	△1.8	▽0.1	△1.5	△13.7	△11.5	△3.4	△4.5	△4.9	△6.1	△4.0

자료: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그림 III-2-1]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추이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및 계획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표 III-2-2>와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는 2008년 91개소였으나 2010년에는 1/3로 줄어든 30

개소가 확충되었고, 사업량은 매년 30개소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설치 예산도 2008년 115억원에서 2010년 27억원으로 약 1/4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2011년 이후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3년에도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의 사업량과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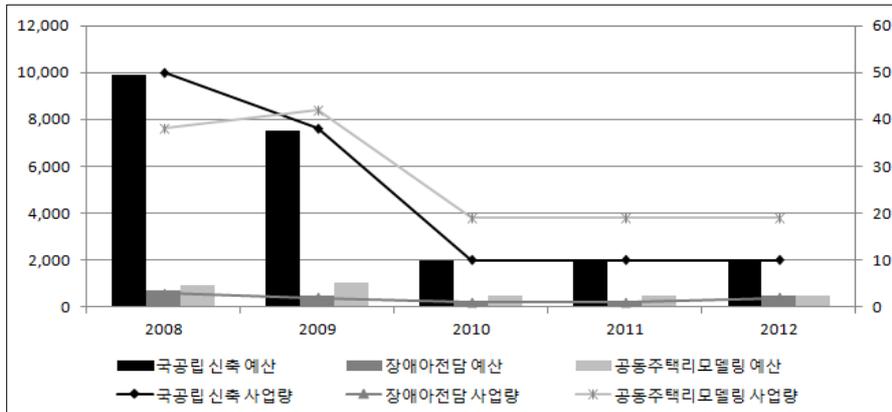
한편, 확충방식을 보면 2008년에는 주로 신축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10개소 정도이고 신축보다 지원단가가 낮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실적을 올리는 데는 이점이 있으나 정원 규모가 작아 보육 공급률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III-2-2〉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및 예산: 2008~2012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전체	91	11,575	82	9,058	30	2,695	30	2,695	31	2,933
국공립 신축	50	9,911	38	7,532	10	1,982	10	1,982	10	1,982
장애아전담 신축	3	714	2	476	1	238	1	238	2	476
공동주택리모델링	38	950	42	1,050	19	475	19	475	19	475

자료: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그림 III-2-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2008~2012년

앞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지방정부 자체 재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III-2-3>은 174개 시군구 보육담당자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130개소, 99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었지만 시군구 평균 설치수는 1개소도 채 안된다. 2012년에는 전년도보다 60여 개소 정도 늘어난 158개소가 설치되었고, 2013년도 추가 확충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및 계획을 지역별로 보면, 2011년까지는 주로 중소도시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추진되었다. 2010년 중소도시는 89개소로 대도시와 읍면지역보다 3배 이상 많다. 2011년에는 중소도시가 50개소 설치로 크게 줄어든 반면, 대도시는 34개소로 10개소 이상 늘어났고, 2012년과 2013년도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III-2-3> 지역규모별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수: 시군구 조사

단위: 개소,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전체	130	100.0	99	100.0	158	100.0	152	100.0
대도시	23	17.7	34	34.3	89	56.3	80	52.6
중소도시	89	68.5	50	50.5	43	27.2	56	36.8
읍면지역	18	13.8	15	15.2	26	16.5	16	10.5

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 사회공헌사업 등의 지원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모두 포함한 수치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별 설치수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2010년에는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 중심으로 확충이 추진된 반면, 2012년 이후에는 대도시가 40%대로 가장 많다.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의한 확충은 2010년에는 실적이 없었으나 2011년 이후 대도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표 III-2-4 참조).

다음으로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은 중소도시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지역에 상관없이 매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2013년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대도시 중심으로 확충이 추진될 예정이다.

〈표 III-2-4〉 확충방식별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 시군구 조사

단위: 개소, %

구분	2010		2011		2012		2013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전체	130	100.0	99	100.0	158	100.0	152	100.0
신축								
전체	84	100.0	49	100.0	69	100.0	77	100.0
대도시	12	14.3	13	26.5	27	39.1	33	42.9
중소도시	56	66.7	25	51.0	23	33.3	30	39.0
읍면지역	16	19.0	11	22.4	19	27.5	14	18.2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체	-	-	3	100.0	14	100.0	5	100.0
대도시	-	-	3	100.0	14	100.0	5	100.0
중소도시	-	-	-	-	-	-	-	-
읍면지역	-	-	-	-	-	-	-	-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전체	21	100.0	27	100.0	50	100.0	35	100.0
대도시	4	19.0	9	33.3	29	58.0	17	48.6
중소도시	16	76.2	14	51.9	16	32.0	17	48.6
읍면지역	1	4.8	4	14.8	5	10.0	1	2.9
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 전환								
전체	25	100.0	20	100.0	25	100.0	35	100.0
대도시	7	28.0	9	45.0	19	76.0	25	71.4
중소도시	17	68.0	11	55.0	4	16.0	9	25.7
읍면지역	1	4.0	-	-	2	8.0	1	2.9

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사회공헌사업을 모두 포함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표 III-2-5>는 어린이집 조사에 참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년도를 조사한 표이다.

1990년 이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23.6%,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개원한 어린이집 21.9%로 가장 많다. 2009년 이후는 17%로 1/5이 조금 못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2000년 이전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2009년 이후는 10% 정도이다. 반면에 중소도시는 2009년에서 2012년이 24.7%, 2006년에서 2008년 사이가 19.5%로 가장 많다. 읍면지역도 2006년과 2008년이 22.4%, 2009년과 2012년 사이가 21.6%로 많다.

이상을 종합하며, 최근까지 읍면지역과 중소도시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대도시의 미설치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 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5〉 개원 년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1990 이전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08	2009~2012					계(수)	X ² (df)
						2009	2010	2011	2012	소계		
전체	23.6	21.9	14.9	8.1	14.5	5.4	5.2	4.3	2.1	17.0	100.0(517)	
대도시	27.1	26.7	19.0	9.3	7.7	4.0	2.4	2.8	0.8	10.1	100.0(247)	
중소도시	19.5	15.6	13.6	7.1	19.5	7.1	8.4	6.5	2.6	24.7	100.0(154)	48.5(16) ^{***}
읍면	21.6	19.8	7.8	6.9	22.4	6.0	6.9	4.3	4.3	21.6	100.0(116)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다. 확충 지역

정부는 그동안 보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이 진입을 기피하는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동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왔다. 이상과 같은 법적 근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는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지역, 군관사지역, 다문화가족 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군구 조사에서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3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어촌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 20%대 정도이다. 2순위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26.7%로 많지만, 저소득밀집지역도 22.7%로 차이가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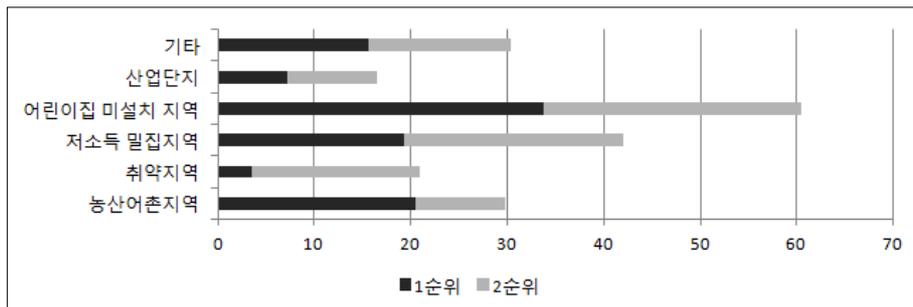
〈표 III-2-6〉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1+2순위

단위: %(시군구)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 단지	기타	계(수)
1순위	20.5	3.6	19.3	33.7	7.2	15.7	100.0(83)
2순위	9.3	17.3	22.7	26.7	9.3	14.7	100.0(75)
1+2순위	29.8	20.9	42.0	60.4	16.5	3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으로 설정한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과 다소 상이한 결과로 우선 설치지역에 대한 기준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3]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 1+2순위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역 1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는 산업단지 지역 확충이 10%대로 타 지역보다 높다. 읍면지역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산어촌 지역 확충이 6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표 III-2-7>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1순위

단위: %(시군구)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산업 단지	기타	계(수)
전체	20.5	3.6	19.3	33.7	7.2	15.7	100.0(70)
대도시	-	5.9	29.4	47.1	5.9	11.8	100.0(34)
중소도시	11.5	-	19.2	38.5	11.5	19.2	100.0(26)
읍면	60.9	4.3	4.3	8.7	4.3	17.4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확충지역 2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모두 저소득 밀집지역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대도시는 취약지역, 중소도시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취약지역 순이다.

〈표 III-2-8〉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역: 2순위

단위: %(시군구)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산업 단지	기타	계(수)
전체	9.3	17.3	22.7	26.7	9.3	14.7	100.0(75)
대도시	3.3	16.7	36.7	13.3	10.0	20.0	100.0(30)
중소도시	13.0	17.4	26.1	21.7	13.0	8.7	100.0(23)
읍면	13.6	18.2	-	50.0	4.5	13.6	100.0(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 지역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일반주택 지역이 47.6%로 많고, 공동주택단지 26.7%, 농어가 지역 16.4% 순이다. 상가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은 5% 미만이다(표 III-2-9 참조).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일반주택지역은 대도시, 읍면지역은 농어가 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위탁형태별로도 전반적으로 일반주택지역이 많지만, 특히 사회복지법인과 시군구 직영은 공동주택단지에 많고, 개인 위탁은 농어가 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표 III-2-9〉 지역 특성: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일반주택 지역	상가지역	농어가 지역	산업단지	공동주택 단지	기타	계(수)
전체	47.6	4.8	16.4	2.7	26.7	1.7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63.2	4.5	0.4	2.4	27.1	2.4	100.0(247)
중소도시	47.4	7.1	4.5	3.2	37.0	0.6	100.0(154)
읍면	14.7	2.6	66.4	2.6	12.1	1.7	100.0(1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56.8	3.4	5.1	0.8	33.1	0.8	100.0(118)
종교법인	60.9	7.8	10.9	1.6	17.2	1.6	100.0(64)
학교법인	52.4	19.0	-	4.8	19.0	4.8	100.0(21)
단체	39.1	8.7	17.4	8.7	26.1	-	100.0(23)
개인	40.3	4.4	25.2	3.4	25.2	1.5	100.0(206)
시군구직영	42.1	1.3	19.7	2.6	32.9	1.3	100.0(76)
기타	55.6	-	11.1	-	11.1	22.2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라. 재원

앞서 살펴본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2-10>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 1순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의한 예산 지원이 50.6%로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만으로 추진된 경우가 30.1%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은 10% 정도이다. 다음으로 2순위는 시·군구비로 지원되는 지방비가 41%로 많고, 중앙정부와 지방비 매칭이 25.3%,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18%, 기타 재원이 15.7%를 차지한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75.9%, 지방비 71.1% 순으로 많다. 나머지는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나 기타의 방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예산 지원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와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10>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1+2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방비 (시·군구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기타	계(수)
1순위	50.6	30.1	13.2	6.0	100.0(83)
2순위	25.3	41.0	18.0	15.7	100.0(83)
1+2순위	75.9	71.1	31.2	2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표 III-2-11>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1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방비 (시·군구비)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사업	기타	계(수)
전체	50.6	30.1	13.2	6.0	100.0(83)
대도시	35.3	50.0	11.7	2.9	100.0(34)
중소도시	50.0	30.8	15.4	3.8	100.0(26)
읍면	73.9	-	13.0	-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 1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재정자주도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보다는 절반 정도를 지방정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이 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50%를 차지하고, 지방비가 30%대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중이 크다. 읍면지역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의한 재원이 73.9%로 전적으로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2-11 참조).

2순위는 지방비가 가장 많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은 1순위의 절반 수준인 25.3%로 낮아졌고, 사회공헌사업은 18.0%로 5%p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과 지방비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주로 추진되고 있지만 중소도시는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사업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다. 읍면지역 2순위는 지방정부 예산이 절반 이상이다(표 III-2-12 참조).

〈표 III-2-12〉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2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방비 (시·군구비)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사업	기타	계(수)
전체	25.3	41.0	18.0	15.7	100.0(83)
대도시	32.4	38.2	17.7	11.8	100.0(34)
중소도시	19.2	26.9	30.7	11.5	100.0(26)
읍면	21.7	60.9	4.3	13.0	100.0(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2012년에 이어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는 시군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 1순위를 보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61.5%로 가장 많고 지방비,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기타 순이다. 2순위는 지방비 비중이 47.4%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비 매칭,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표 III-2-13〉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1+2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방비 (시·군구비)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사업	기타	계(수)
1순위	61.5	20.5	10.2	7.7	100.0(78)
2순위	28.2	47.4	16.6	7.7	100.0(78)
1+2순위	89.7	67.9	26.8	1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90%로 정도로 앞서 살펴본 2012년 재원보다 다소 높다. 2012년 지원 예산과의 차이는 기타 재원이 5%p 정도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 예산이나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의 비중도 다소 낮아졌다. 중앙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2013년도 2012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 1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중앙정부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다. 대도시가 46.7%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77.8%로 차이가 크다. 대도시는 지방비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40%로 타 지역보다 많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도시의 재정 상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표 III-2-14 참조).

2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의 지방정부 비중이 높고, 대도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타 지역보다 2배 정도 많다(표 III-2-15 참조).

〈표 III-2-14〉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1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방비 (시·군구비)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사업	기타	계(수)
전체	61.5	20.5	10.2	7.7	100.0(78)
대도시	46.7	40.0	10.0	3.3	100.0(30)
중소도시	66.7	13.3	13.3	6.7	100.0(30)
읍면	77.8	-	5.6	16.7	100.0(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표 III-2-15〉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2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 (시·군구비)	기업(재단)의 사회공헌사업	기타	계(수)
전체	28.2	47.4	16.6	7.7	100.0(78)
대도시	43.3	40.0	13.4	3.3	100.0(30)
중소도시	20.0	46.7	20.0	13.3	100.0(30)
읍면	16.7	61.1	16.7	5.6	100.0(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

1) 충분성

<표 III-2-16>은 시군구 보육담당자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충분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을 5점 척도로 산출한 결과 평균 2.5점으로 적정 수준에 다소 못미친다. 읍면지역이 2.7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가 2.4점으로 가장 낮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응답 구간별로는,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응답이 42%로 절반 가까이 되고, 36.2%는 대체로 부족하다이고, 매우 부족도 10% 이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47.2%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많다는 의견은 10% 정도로 적다.

지역별로 보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의견은 읍면지역일수록 많다. 읍면지역이 대도시의 두 배정도 많다. 반면에 부족하다는 의견은 도시일수록 많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지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응답비율이 구간별로 비슷한 수준이다. 2007년 조사에서도 적정하다는 비율이 41.6%로 가장 많다. 대체로 부족과 매우 부족이 50.4%로 본 조사에서 다소 낮아졌지만, 시군구 절반 정도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결과이다.

<표 III-2-16>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매우 부족	대체로 부족	적정	대체로 많은 편	매우 많음	계(수)	평균 (5점)
전체	11.5	36.2	42.0	8.6	1.7	100.0(174)	2.5
대도시	16.9	39.0	28.8	11.9	3.4	100.0(59)	2.5 ^{ab}
중소도시	10.9	47.3	36.4	3.6	1.8	100.0(55)	2.4 ^b
읍면	6.7	23.3	60.0	10.0	-	100.0(60)	2.7 ^a
$X^2(df)/F$			-				2.7 [#]
2007년 조사 ¹⁾	11.9	38.5	41.6	5.8	2.2	100.0(122)	2.5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 추가 확충 시 시설수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시군구 대상으로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추가 확충이 필요한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표 III-2-17>과 같이, 조사 대상 시군구 중 47.7%는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52.3%는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추가 확충 시 평균 6.8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1개소와 3개소가 8.6%, 7.5%로 가장 많다. 6~10개소도 12.6%를 차지하며, 11개 이상도 5.7%나 된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평균 8.6개소, 대도시 7.8개소로 많고, 읍면지역이 1.8개소로 가장 적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구간별로 보면, 추가 확충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읍면지역일수록 많다. 읍면지역이 70%를 차지하여 도시지역의 두 배 가까이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확충까지는 읍면지역일수록 많지만 3개소 이상부터는 도시지역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1개소 설치는 읍면지역이 15%로 도시지역보다 많고, 6~10개소는 도시지역이 10~20%대를 나타낸다.

<표 III-2-17> 추가 확충 시 필요한 시설수: 시군구 조사

구분	없음	단위: %(시군구), 개소								필요시 추가설치수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10개소	11개소 이상	계(수)	
전체	52.3	8.6	5.2	7.5	1.1	6.9	12.6	5.7	100.0(174)	6.8
대도시	44.1	3.4	3.4	8.5	3.4	11.9	16.9	8.5	100.0(59)	7.8 ^a
중소도시	41.8	7.3	3.6	9.1	-	7.3	21.8	9.1	100.0(55)	8.6 ^a
읍면	70.0	15.0	8.3	5.0	-	1.7	-	-	100.0(60)	1.8 ^b
$X^2(df)/F$					-					6.1 ^{**}

** $p < .0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3) 추가 확충 시 설치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시 설치지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소득 밀집지역이 31.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28.9%로 많다(표 III-2-18 참조).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 많고, 중소도시는 저소득 밀집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순으로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읍면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농산어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확충 지역과 동일한 결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18〉 국공립어린이집 추가확충 시 설치지역: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농산어촌 지역	취약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산업단지	기타	계(수)
전체	15.7	10.8	31.3	28.9	3.6	9.6	100.0(83)
대도시	-	9.1	33.3	42.4	6.1	9.1	100.0(33)
중소도시	6.2	15.6	37.5	28.1	3.1	9.4	100.0(32)
읍면	61.1	5.6	16.7	5.6	-	11.1	100.0(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대해 의견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39.3%이다. 이 외에도 도시 주거밀집 지역도 30.6%로 1/3을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인 농산어촌 지역은 5%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도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특히 읍면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농산어촌 확충이 14.7%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월등히 높고, 도시밀집지역 확충은 읍면지역이 10%p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인다.

〈표 III-2-1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우선 설치지역: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농산어촌	도시주거 밀집 지역	저소득 밀집지역	전국적 확충	계(수)	X ² (df)
전체	5.0	30.6	25.1	39.3	100.0(517)	
대도시	3.2	31.2	25.9	39.7	100.0(247)	
중소도시	0.6	33.1	25.3	40.9	100.0(154)	30.6(6)***
읍면	14.7	25.9	23.3	36.2	100.0(116)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4) 추가 확충 방식

시군구가 선호하는 확충방식을 1, 2순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다음 <표 III-2-20>과 같이, 1순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55.7%로 가장 많고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과 공동주택어린이집 전환이 10%대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2순위는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43.1%로 가장 많고 다음은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신축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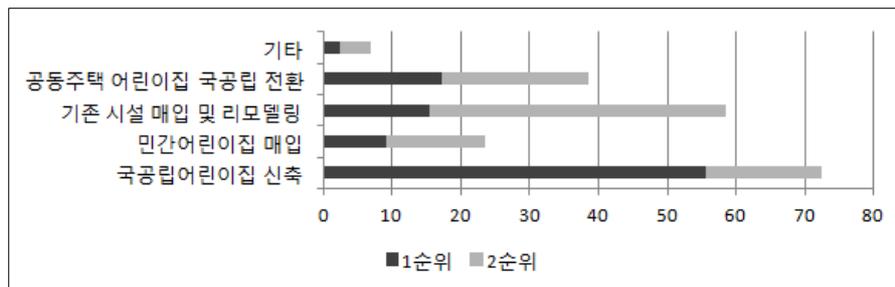
종합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72.4%로 다수이지만 신축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도 10%p 정도 낮은 58.6%로 많아 각 시군구가 신축이나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20〉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1+2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민간 어린이집 매입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기타	계(수)
1순위	55.7	9.2	15.5	17.2	2.3	100.0(174)
2순위	16.7	14.4	43.1	21.3	4.6	100.0(174)
1+2순위	72.4	23.6	58.6	38.5	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그림 III-2-4]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1+2순위)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1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일수록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는 신축 외에도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 다양한 확충 방식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표 III-2-21 참조).

2순위는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읍면지역이 53.3%로 도시지역보다 많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매입이 타 지역의 2배 정도 많다.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지역이 많다.

시군구 보육담당자 심층면담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건축비 등의 예산 규모가 커서 추진이 쉽지 않지만,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와 용도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2-21〉 시군구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1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기타	계(수)
전체	55.7	9.2	15.5	17.2	2.3	100.0(174)
대도시	49.2	11.9	13.6	20.3	5.1	100.0(59)
중소도시	50.9	5.5	16.4	25.5	1.8	100.0(55)
읍면	66.7	10.0	16.7	6.7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표 III-2-22〉 시군구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2순위):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기타	계(수)
전체	16.7	14.4	43.1	21.3	4.6	100.0(174)
대도시	11.9	11.9	44.1	30.5	1.7	100.0(59)
중소도시	29.1	10.9	30.9	21.8	7.3	100.0(55)
읍면	10.0	20.0	53.3	11.7	5.0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5) 확충의 어려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이유를 1, 2순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표 III-2-2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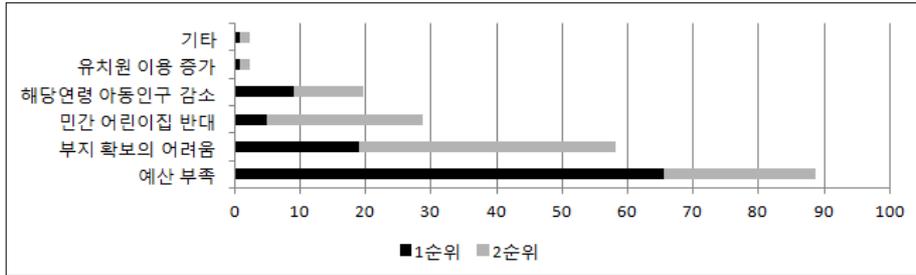
〈표 III-2-2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2순위
단위: %(시군구)

구분	예산 부족	부지 확보의 어려움	민간 어린이집 반대	해당연령 아동인구 감소	유치원 이용 증가	기타	계(수)
1순위	69.5	16.1	5.2	8.0	0.6	0.6	100.0(173)
2순위	19.5	44.8	21.8	10.3	1.7	1.7	100.0(174)
1+2순위	89.0	60.9	27.0	18.3	2.3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1순위는 예산 부족이 6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16.1%이다.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도 10% 가까이 된다. 2순위는 부

지확보의 어려움이 44.8% 정도 되고, 예산 부족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등은 20% 내외로 많다. 해당연령 아동인구 감소도 1순위와 비슷한 수준인 10% 정도이다. 종합하면, 예산부족과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많다.



[그림 III-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1+2순위)

이를 지역별로 보면, 1순위에서는 예산 부족이 대도시 81.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10%대이다. 중소도시도 예산부족이 가장 많지만 대도시보다 20%p 정도 낮은 61.8%이고, 부지확보의 어려움은 반대로 대도시보다 2배 정도 많다. 읍면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가 15%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2배 이상 많아 확충의 어려움도 지역차를 나타낸다.

<표 III-2-2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순위

구분	단위 % (시군구)						계(수)
	예산 부족	부지 확보 어려움	민간 어린이집 반대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	유치원 이용 증가	기타	
전체	69.5	16.1	5.2	8.0	0.6	0.6	100.0(173)
대도시	81.4	13.6	3.4	1.7	-	-	100.0(59)
중소도시	61.8	25.5	3.6	7.3	-	1.8	100.0(54)
읍면	65.0	10.0	8.3	15.0	1.7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2순위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약 40% 정도로 가장 많지만, 1순위와 다르게 민간어린이집의 반대가 21.8%로 예산부족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민간어린이집의 반대는 읍면지역일수록 높다. 특히 읍면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이 항목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2순위

구분	예산 부족	부지 확보의 어려움	민간 어린이집 반대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	유치원 이용 아동 증가	단위 %(시군구)	
						기타	계(수)
전체	19.5	44.8	21.8	10.3	1.7	1.7	100.0(174)
대도시	11.9	59.3	16.9	8.5	-	3.4	100.0(59)
중소도시	27.3	49.1	21.8	-	-	1.8	100.0(55)
읍면	20.0	26.7	26.7	21.7	5.0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례

본 절에서는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발표한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이나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한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사업과 기업복지재단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서울특별시 사례

1) 개요

서울시가 2012년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2년 0~2세 및 만5세 무상보육 실시, 2013년 무상보육 대상 확대 등의 보육정책 변화에 따라 2014년 어린이집 부족으로 12,188명의 아동이 시설 이용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서울시는 전체 어린이집의 89%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6,126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76개소로 11.1% 정도이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약 10만명으로 입소신청 후 평균 1~3년 정도를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⁴⁾. 또한 동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수도 지역차가 매우 크

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2020년까지 전체 시설의 30%, 현재 이용 아동의 2배까지 국공립이 보육하겠다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 방향은 공공성 강화, 사회참여 확대, 편의성 증대, 맞춤보육 제공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공공건축물 사업초기에 어린이집 설치 검토를 의무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한다. 둘째, 민간 연대 확충사업을 공모하며,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주거지 인근에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시 24시간 보육 및 시간연장, 시간제보육, 장애아 및 다문화가정 등의 취약보육 실시로 맞춤보육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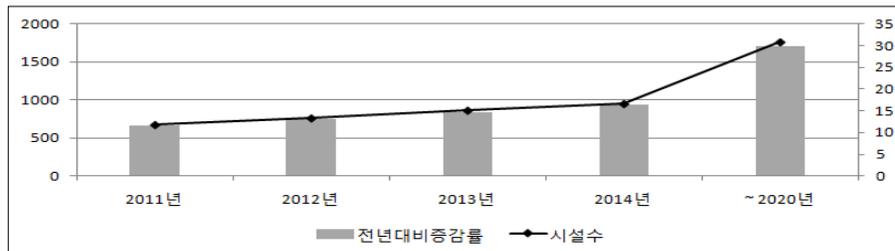
서울시의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80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100개소, 2020년까지 801개소를 추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보육 아동수는 5만 7천여명에서 12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표 III-3-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단위: 개소,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2020년
시설수	679	759	859	959	1,760
설치수	36	80	100	100	801
보육아동수	56,861	61,661	67,661	73,661	121,721

자료: 서울특별시(20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안.



[그림 III-3-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 규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 890억원이 소요될 예정

이며, 2013년부터는 매년 1,27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2020년부터는 400억원 증액된 1,650억원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표 III-3-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위: 천만원 ~ 2020년
소요예산	2,200	8,900	12,700	12,700	매년 16,530

자료: 서울특별시(20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안.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대규모로 확충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내외로 총 7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설 심의 및 지원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로는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및 대상지역별 예산 신청 내역의 타당성을 심의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지원 시설과 규모, 기업이나 재단, 단체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연대 공모사업 등의 심의를 선정한다.

2) 세부 확충계획

서울시는 자치구 확충 신청사업 지원과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공모사업, 사회공헌사업,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등 다각도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가 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구 확충 신청사업이 있다. 신축, 매입, 리모델링,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며,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70~90% 시비를 지원한다. 시비 지원 기준 및 범위는 서울시 국공립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둘째, 민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사업으로 중소기업이나 단체 등의 민간 자원과 연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대상 중소기업이나 상암 DMC, 구로디지털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시설과 연대하여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기능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공간을 기부채납, 무상임대 또는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면 해당기업 아동을 일정비율 우선입소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의무 보육시설이 없는 아파트단지 특히, 주택건설기준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2006.1.6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중에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하면 시에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주 아동 우선입소와 최초 운영권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놀이터 정비의 혜택을 준다.

이외에도 종교시설 내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종교시설이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하면 시가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며, 종교시설에 최초 운영권을 부여한다. 기타 단체가 건물을 기부채납, 무상임대, 토지 및 건축비 등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면, 시가 리모델링비, 신축, 매입비 등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최초 운영권을 부여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는 구비 부담분을 면제 또는 감액하는 혜택을 주며, 지원 금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총 사업비의 20%이내이다.

셋째, 사회공헌기업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에 응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LG복지재단 사회공헌사업 등 사회공헌기업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 공모에 응시하여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확보한 자치구나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치구에 기업 후원액으로 확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자치구 부담분을 면제 또는 감액해 준다. 총 사업비 20% 민관 연대 사업비 이내에서 지원한다.

넷째, 종교단체·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기타 단체 등 국공립어린이집 사업 취지에 맞는 외부자원과 연대하여 확충사업을 실시한다. 단체가 공간을 기부채납, 무상임대 등 기본 여건을 제공하면 시가 설치비, 운영비, 최초 운영권 부여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자치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서울만들기' 평가 사업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실적 분야를 평가지표로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사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사업수행과정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3)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현재까지 중앙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강력한 공보육 체제 확립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막대한 예산 투입과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경제 여건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및 인센티브와 평가제도 도입, 대규모 확충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 추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의 사례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확충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확보의 문제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시설로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으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정부 인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 상 공립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자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에 발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게 내놓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가 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가로막기보다는 운영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거나 운영비 지원 대신 설치비 지원 단가 상향 조정 등의 차선책을 마련하여 확충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입소 우선순위 조정의 필요성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대상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시설과 연대하여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기능의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간을 기부채납, 무상임대 또는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면 해당 기업 아동을 일정비율 우선입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의무 이행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보육 수요가 많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국공립 기능의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제도와 해당 기업 아동 할당제, 입소 우선순위 예외 규정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012년 추가된 입소 우선순위 중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의 국공립 기능화 시설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 아동에게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서울시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공간 무상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부합되는 공간이 많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 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 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른 어린이집 유형보다 완화된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부지 및 공간 확보이다. 기업이 나 공공기관의 무상임대를 활용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므로 건물 안전점검을 통과한 시설이나 비상재해대피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인천광역시 사례

1) 개요

인천광역시는 2012년부터 0~2세 및 만4~5세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 보장,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 공공부문 보육 분담

를 확대 등 공보육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인천광역시, 2012).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1년 기준 100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5.3%를 차지하며, 이용 아동수도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의 16.3%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중구, 동구, 강화, 옹진군 등 구도심권은 아동 분담률 20% 이상을 차지하나 부평, 계양, 서구 등 북부권역은 10% 미만으로 지역 편중도 매우 심각하다. 또한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2011년 6월 기준 입소대기지는 국공립어린이집 103개소 5,017명으로 1개소당 평균 48.7명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시는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 확충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00개소 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법은 중앙 정부가 주로 추진하는 민간건축물 및 공공기관 매입 리모델링과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인천시 확충 방안 중 주목할 점은 인천대 도서관 활용과 도서관 건물의 장기 무상임대를 들 수 있다.

〈표 III-3-3〉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구분	단위: 개소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전체	13	19	24	25	19	100
신축	3	3	4	6	9	25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3	3	3	-	-	9
공동주택 리모델링	3	2	6	8	-	19
민간건축물 및 공공기관 매입 리모델링	3	5	6	6	6	26
기타 공공기관, 사유지 활용	-	2	2	2	3	9
전경련 기증사업	1	1	1	1	1	5
인천대 학산도서관 활용	-	-	-	-	-	1
신규분양주택 의무보육시설전환	-	2	1	2	-	5
인천대 내 장기무상임대	-	-	-	-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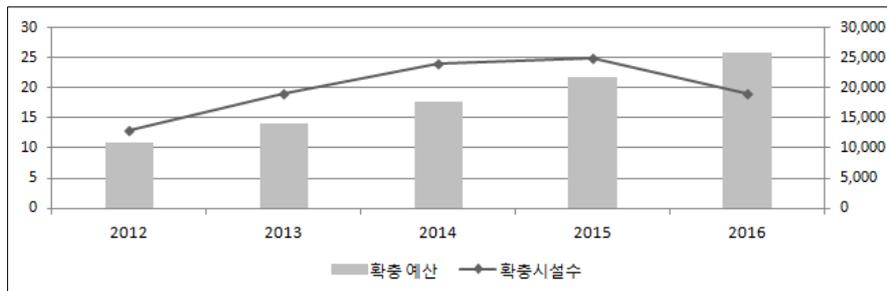
자료: 인천광역시(2012).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

〈표 III-3-4〉 연차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구분	단위: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전체	10,831	14,000	17,760	21,740	25,960	90,291(100.0)
국비	273	769	1,042	1,488	1,833	5,407(6.0)
시비	5,726	7,138	10,032	12,601	14,441	49,939(55.3)
군구비	4,331	5,592	6,685	7,650	9,685	33,944(37.6)
민간	500	500	-	-	-	1,000(1.1)

자료: 인천광역시(2012).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예산을 연차별로 보면, 2016년까지 100개소를 추가 설치할 경우 총 90,291백만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예산 구성을 보면, 시비 55%, 구비 37%로 90% 이상을 인천시가 부담하게 된다(표 III-3-4 참조).



[그림 III-3-2]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인천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11년 기준 6,395명으로 확충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총 14,646명을 분담하게 된다. 연차별 보육아동 증감률을 보면, 24개소가 확충되는 2014년은 23.3%로 가장 증가율이 크고 전반적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3-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아동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 아동수	6,395	7,292	8,722	10,751	12,841	14,646
전년대비 증가율	-	△14.0	△12.3	△23.3	△19.3	△14.3

자료: 인천광역시(2012).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

2) 세부 확충계획

인천광역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인천광역시, 2012).

첫째, 부지 매입 및 건축비용 확보 문제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시급히 필요한 신도시나 농어촌,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을 신축한다. 2016년까지

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소요예산은 총 42,590백만원 정도이다. 국공립 설치 우선지역인 청라지구, 남동공단, 용진군 등에 2012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된다. 청라지구에 설치될 어린이집은 국비와 시비, 군구비 예산으로 추진되나 남동공단이나 용진군은 시비와 군구비만으로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둘째,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 분양주택 내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장기 임대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LH 회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시 내 건설 중에 있는 19개 지역에 총 19개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임대계약기간은 20년 장기 무상 또는 유상임대를 고려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4,435백만원 정도이다. 특히 2012년에 서구와 중구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총사업비는 국비 10~20%, 시비 약 40%, 구비 40%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셋째, 신규 민간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규입주 일반분양 주택단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8개소로 이중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치 예산은 1개소당 총 340백만원으로 2015년까지 총 1,700백만원이 소요된다.

다섯째, 부지매입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건축물 및 공공기관 매입 후 리모델링 확충을 추진한다. 강화군과 용진군을 제외한 8개구에 민간어린이집 26개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치안센터와 우체국 통폐합에 따른 시설을 매각하는 곳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3개구 소재 민간건축물을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며, 시비와 군구비만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이 외에도 주민센터, 복지회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시 1층 유휴공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복합화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시·구유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군구별로 1개소씩 총 9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활용할 경우에는 개소당 700백만원, 시·구유지 활용시에도 개소당 70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총 6,300백만원이 소요된다.

일곱째, 전경련 및 후원기업 등의 기부채납을 유치하여 산업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한다. 2012년부터 매년 1개소씩 총 5개소를 2016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내 산업단지는 남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 4개구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된다. 설치예산은 1개소당 시군구비 약 460백만원, 전경련 500~1,0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덟째, 앞서 살펴본 방법 외에도 인천대학교 내 학산도서관을 활용한 어린이집 신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서관 활용 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게 된다. 리모델링비와 교재교구비 등만 들기 때문에 신축보다 설치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도서관을 활용한 확충 예산은 총 700백만원 정도이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대가 직장어린이집 목적으로 신축한 어린이집이 대학 내 보육수요만으로 운영이 어려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다. 인천대학교가 연수구청에 무상임대하는 형태이며, 인천대학교와 연수구청이 공동 운영하게 된다. 설치예산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어 국공립 신축 시 지원하는 지자체 구입비 150백만원만 지원한다.

3) 시사점

이상과 같이, 인천시는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소 추가 확충을 위해 전통적인 확충 방식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및 공공기관 매입,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시의 재정자주도는 77.1%로 6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나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공공기관 매입 추진 시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결과에 따라 확충 계획 추진이 크게 변경될 소지가 있다. 인천시 사례를 기초로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인천시는 부지 매입 예산 절감 방안의 하나로 공원 부지를 이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가능하고, 설치 시에는 건축면적이 증가되어서는 안 되며, 층수도 2층 이내로 제한하는 등 설치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전국 도시공원 조성수는 19,600개로 경기도가 5,096개로 가장 많고 서울도

2,073개나 된다(국토해양부, 2012). 앞서 살펴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에 대한 시군구 조사에서 부지 확보를 지적하였듯이 도시공원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률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린공원 면적을 하향조정하고, 2층 이내 층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나)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확충 사업에 대한 재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국공립 확충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과의 기관 업무 협조 체결이 필수적이다. 또한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 내 병설유치원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병설유치원 취원 아동과 대상 연령이 중첩되어 설치가 매우 어렵다.

인천시도 2012년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할 교육청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을 변경한 상태이다.

유아교육계에서는 2012년 5세 누리과정 시행과 2013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치원 이용 아동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립유치원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한 어린이집 확충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다. 경기도 사례

1) 개요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이 502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11,825개소 중 5.8% 정도이다. 이용 아동수도 32,811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1.4%를 차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2012년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추진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는 현 공보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다(경기도, 2012).

경기도는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와 전경련 기부채납 4개소, 산업단지

내 공립어린이집 15개소 총 25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 분담률을 11%까지 높이기 위하여 매년 3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표 III-3-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및 보육 아동수: 2011~2012년

단위: 개소, 명

구분	2011년	2012년			
		국비	시군구비	전경련	계
시설수	502	6	15	4	527
보육아동수	32,811	522	1,548	430	41,701

자료: 경기도(2012). 경기도 내부자료.

2) 세부 추진계획

경기도는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신축 및 대체신축,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시·군구비 자체 예산,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을 받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지원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비 지원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신축 4개소, 리모델링 2개소로 총 6개소가 설치된다. 설치 지역은 주로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과 농어촌이며, 예산은 총 828,286천원이다. 신축 및 대체신축은 개소당 평균 2억원, 리모델링 2,5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표 III-3-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국비

단위: 천원

구분	시군	유형	예산	지역특성
전체			828,286	
신축	연천군	신축	144,156	농어촌 지역
	이천시	대체신축	198,165	농어촌 지역
	고양시	신축	198,165	국공립 미설치지역
	안양시	리모델링	25,000	국공립 미설치지역
장애아 전담	김포시	신축	237,800	국공립 미설치지역
공동주택리모델링	오산시	리모델링	25,000	국공립 미설치 지역

자료: 경기도(2012). 경기도 내부자료.

둘째, 경기도는 2012년 반월, 시화 등의 산업단지과 광주, 오산시 공장밀집지

역, 신도시로 개발된 오산 세교와 일산 대화동 등의 인구밀집지역에 총 1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다.

확충 예산은 시비와 도비 50:50이며, 도비는 시설당 최대 5억까지 부담하며 나머지 부족분은 시가 추가 부담하고 있다. 시설당 시비 5억과 도비 5억 총 10억 정도가 소요되어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국공립 확충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예산을 확정하여 해당 시에 전달하고,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수립, 시공 및 건축비, 교재교구비 등의 세부항목까지 계획을 세워 구에 배분하고 있다.

셋째, 이 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으로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총 4개소를 설치하고 있다. 설치지역은 정부가 우선 설치지역으로 지정한 산업단지, 다문화 밀집지역 외에도 일반주택지역, 도농복합지역 등 다양한 지역이다. 용인시에 설치한 어린이집은 연내에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개원·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2013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I-3-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시군	지역특성	시설규모	정원
용인시	다문화 밀집지역	462㎡, 2층	70명
화성시	일반 주택 지역	825㎡, 3층	100명
시흥시	산업단지 인근지역	396㎡, 1층	160명
안성시	도농복합지역	825㎡, 3층	100명

자료: 경기도(2012). 경기도 내부자료.

경기도는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으나 2012년 확충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3) 시사점

경기도는 농산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정부가 지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보다 산업단지, 인구밀집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서울시나 인천시의 사례에서도 인구 밀집지역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추진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기준이 사회적 변화에 맞춰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살펴보면, 주로 산업단지 지역

중심의 규모 100명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다.

경기도는 영유아수가 16개 시도 중 최고 수준이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4%, 국공립어린이집은 93.4%로 높은 편이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보육 수요 추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어린이집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기준으로 접근성이 고려되고 있다. 산업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경우 자녀를 동반하여 출퇴근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가 어느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라. 기업재단 및 민간단체

1)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취업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어린이집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저소득밀집지역, 농공산업단지 중 어린이집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지역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25억원을 투입하여 총 50개소 어린이집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획을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도 100개소로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이 확장되었다.

전경련은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2009년 1차 보육지원사업은 서울시 도봉구를 비롯한 8개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2010년 12개, 2011년 16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전경련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자체에 기부하며, 운영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나 위탁운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2) LG 복지재단

LG복지재단은 2008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여 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을 지원,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기증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부지확보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대상지는 취업모가 많은 공단지역이 주로

선정되고 있고, 어린이집 정원도 100명 이상으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건립되고 있다.

LG복지재단은 2008년 파주시를 시작으로 구미, 오산, 여수, 청주지역에 어린이집을 건립, 기증하였고, 2012년에는 청주시와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6개 생명보험사의 출연금으로 설립, 200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후, 저출산 해소, 자살예방, 희귀난치성질환자, 저소득 치매노인, 보육서비스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왔다.

본 재단은 기존의 보육서비스지원사업(보육사각지대해소)과 다르게 2012년 신규사업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 중 영유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약 1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30개소까지 설치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지자체 신청을 받은 후 재단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2012년 서울 구로구, 경기 오산과 이천, 광주 남구 등 4개 지자체가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지자체와 MOU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에게는 어린이집 설치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와 비품, 소모품 기자재 등의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5년 신규위탁 받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또한 재단의 관리를 받는다.

4)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재단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복지재단이나 공익재단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전경련은 2009년부터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3년 연장하여 1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전경련 지원 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LG복지재단의 경우 주로 취업모가 많은 공단지역에 어린이집 설치비

를 지원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인 농산어촌이나 저소득밀집지역 등의 취약지역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신규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개소당 약 3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이 현실성 있어 보인다. 또한 보육서비스지원사업(보육사각지대해소)과 차별화하여 중소도시 이상의 영유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 설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최근 도시밀집지역 보육서비스 공급 부족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사업은 앞서 설명한 전경련이나 LG복지재단과 다르게 설치비 외에 교재교구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대신 재단에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관리 등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4. 소결

174개 시군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 및 필요성과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차원의 대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시 지역 보육 수급률을 고려한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조사 대상 174개 시군구에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130개소, 99여 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있으나 시군구 평균 설치수는 1개소가 채 안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2011년까지 중소도시 중심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대도시에서 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주택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식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사업이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급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군구 조사에서 추가 확충 시 시설수는 평균 6.8개소로 1개소와 3개소가 각각 8.6%, 7.5%로 가장 많았고, 6~10개소 이상이 12.6%였다. 추가 확충이 필요 없다는 지역이 52.3%로 절반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평균 8.6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대도시 7.8개소, 읍면지역 1.8개소로 도시지역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와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 1순위는 국비·지방비 매칭이 50.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지방비가 많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은 10%정도이다. 2순위는 지방비가 41.0%로 가장 많았고, 국비·지방비 매칭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등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재정자주도가 높은 대도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외에도 지방비만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지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국비·지방비 매칭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01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재원도 2012년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기준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 1순위는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어촌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 20% 내외였다. 2순위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26.7%로 많지만, 저소득밀집지역도 22.7%로 많았다.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주로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확충 지역도 2012년과 동일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시 설치 지역으로 31.3%가 저소득밀집지역을 지적하였고, 어린이집 미설치지역도 28.9%로 많았다. 한편,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39.3%, 도시 주거밀집지역 30.6%로 각각 1/3 정도를 차지하였고, 우선 설치지역으로 지정된 농산어촌 지역은 5% 정도였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시군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식은 신축이 주를 이룬다. 2010년에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중 64.6%가 신축이었고, 나머지는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과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었다. 2011년에는 신축이 49.5%, 2012년 43.7%, 2013년 50.7%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다른 확충방식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시군구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 1순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이 55.7%,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과 공동주택어린이집 전환이 10%대이며, 2순위는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43.1%이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과 신축이 21.3%였다. 종합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이 가장 많다. 또한 읍면지역일수록 국공립어린이집 신

축을 선호하며, 대도시는 신축을 선호하나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기존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 다양한 확충 방법을 선호하였다. 중소도시는 공동주택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많아 지역차를 나타내었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부담 비율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 1순위는 예산 부족으로 69.5%를 차지하였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16.1%로 많았다. 2순위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44.8%, 예산 부족과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등이 각각 19.5%, 21.8%였다. 또한 도시지역은 예산 부족과 부지 확보가 가장 많지만, 읍면지역은 예산부족 외에도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및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가 도시지역보다 많다.

여섯째,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및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서울시 사례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공간 무상임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건물 안전점검을 통과한 시설이나 비상재해대피시설이 설치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의 경우 설치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천시 사례에서 도시공원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준에 미달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시공원 내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 및 층수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IV.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제4장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전문가 조사 중 위탁운영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육조례와 제도를 분석하고, 어린이집 조사와 시군구 보육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대상으로 조사한 위탁운영 실태 및 요구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가. 위탁형태

174개 시군구 보육담당자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1>과 같이, 조사에 참여한 174개 시군구가 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764개소 중 개인위탁이 42.2%로 가장 많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종교, 학교, 단체법인이 위탁하고 있고 시군구 직영은 8.7%로 낮다.

〈표 IV-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 시군구 조사

구분	단위 % (개소)							
	시군구 직영	사회복지 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단체 법인	개인	기타	계(수)
전체	8.7	18.7	4.5	14.9	7.2	42.2	3.9	100.0(1,764)
대도시	3.0	28.5	6.3	22.2	11.1	23.4	5.4	100.0(863)
중소도시	13.2	9.9	3.5	7.8	3.8	59.4	2.5	100.0(719)
읍면	17.6	6.6	-	8.2	2.2	63.2	2.2	100.0(182)
2007년 조사 ¹⁾	8.5 ⁵⁾	20.4		28.3		37.5	4.3	100.0(1,65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5) 서문희 외(2007)년 조사에서 지역별 위탁형태에서 특별시·광역시 5.6%, 중소도시 11.2%, 군지역 12.6%로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시군구 직영 비율이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이 28.5%로 가장 많고, 종교법인과 개인위탁도 20%대로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반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개인위탁이 60% 내외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읍면지역은 시군구 직영이 17.6%로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시군구 위탁형태를 전수 조사한 2007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서문희 외, 2007),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개인위탁 비율이 다소 높아졌다. 2007년 조사에서는 중소도시와 군지역이 10%대로 대도시의 두 배정도 많았으나 본 조사는 중소도시의 시군구 직영 비율이 다소 낮아졌고, 읍면지역은 높아졌다. 이는 농어촌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직영함에 따라 시군구 직영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어린이집 조사에 참여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형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개인위탁 비율이 39.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22.8%, 종교법인 12.4% 순이며 시군구 직영도 15%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IV-1-2〉 위탁 형태: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단체	개인	기타	시군구 직영	계(수)	X ² (df)
전체	22.8	12.4	4.1	4.4	39.8	1.7	14.7	100.0(486)	
지역									
대도시	37.7	17.8	4.9	3.6	20.2	3.2	12.6	100.0(235)	
중소도시	11.0	8.4	4.5	7.1	57.1	-	11.7	100.0(149)	123.0(20)***
읍면	6.9	6.0	1.7	2.6	58.6	0.9	23.3	100.0(102)	
정원									
39인 이하	16.5	3.5	1.2	2.4	57.6	1.2	17.6	100.0(85)	
40~49인	18.3	9.9	2.8	7.0	43.7	2.8	15.5	100.0(71)	
50~79인	23.6	17.4	5.1	2.8	36.5	1.1	13.5	100.0(178)	-
81~99인	25.7	9.9	5.0	6.9	37.6	1.0	13.9	100.0(101)	
100인 이상	28.0	15.9	4.9	4.9	28.0	3.7	14.6	100.0(82)	
2009년 조사 ¹⁾		71.1		4.3	7.1	0.9	33.0	100.0(21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1) 유희정 외(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이 37.7%로 많고, 시군구 직영이 12.6% 정도를 차지한다.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이 절반 이상이며, 사회복지법인과 시군

구 직영이 10%대를 나타낸다. 읍면지역도 개인위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시군구 직영이 23.3%로 타 지역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도시일 수록 많고, 개인위탁은 읍면지역이 많다.

정원규모별로 보면, 개인위탁은 39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57.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회복지법인은 1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28%로 많다. 시군구 직영은 규모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나. 위탁체에 대한 의견

시군구 조사에서 보육담당자의 위탁형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인 36.2%로 가장 많고, 개인위탁과 시군구 직영 순으로 많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가장 선호하는 위탁형태는 사회복지법인으로 38.3%이며, 시군구 직영도 26.7%이다. 대도시도 사회복지법인이 절반 가량으로 많지만,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이 40%로 지역차를 보인다. 특히, 읍면지역은 도시보다 직영 비율이 높는데, 이는 보육 대상 영유아가 적어 개인이나 법인들이 위탁을 기피하기 때문에 시군구 직영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3〉 바람직한 위탁체 형태: 시군구 조사

구분	단위 % (명)							계(수)
	시군구 직영	사회복지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단체 법인	개인	기타	
전체	20.1	36.2	11.5	5.2	2.3	23.0	1.7	100.0(171)
대도시	18.6	49.2	15.3	1.7	-	11.9	3.4	100.0(57)
중소도시	14.5	20.0	14.5	5.5	3.6	40.0	1.8	100.0(54)
읍면	26.7	38.3	5.0	8.3	3.3	18.3	-	100.0(60)
2007년 조사 ¹⁾	18.9	41.2	7.0		3.5	25.9	3.5	100.0(2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7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시군구 직영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높아졌지만, 사회복지법인은 5% 정도 낮아졌다. 특히 학교, 종교법인 등의 기타 법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학교나 종교법인 같은 경우는 위탁체의 도덕성이나 공신력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며, 시군구 직영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지도·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선호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2. 위탁기간 및 횟수

가. 위탁기간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명시한 조항이 '5년 이내로 한다'에서 '5년으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일부 시군구는 법 개정에 따라 보육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는 개정 중이거나 아직 개정작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군구가 정하고 있는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 기준을 따르고 있다.

보육 조례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184개(89.8%)로 과반수 이상이며,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기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시군구의 조례는 14개(6.8%)에 불과하다.

충북 단양군은 위탁기간이 1년, 경북 문경시는 4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타 시군구와 차이를 보인다. 이 외에도 연천군은 신규 개원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이 3년이지만, 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별로 위탁만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따라 위탁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표 IV-2-1〉 위탁기간 제한한 보육조례

단위: %(시군구)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년	1	-	-	-	-	-	-	-	-	-	1	-	-	-	-	-	-
2년	5	-	-	-	-	-	1	-	1	-	-	1	1	1	-	-	-
3년	184	22	15	7	10	4	1	1	27	15	10	13	10	17	14	17	1
4년	1	-	-	-	-	-	-	-	-	-	-	-	-	-	1	-	-
5년	14	2	1	1	-	-	1	-	1	1	-	-	-	2	4	1	-

자료: 각 시군구 보육 조례

<표 IV-2-2>는 시군구 조사에서 보육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위탁기간과 실제 위탁기간과의 차이를 조사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위탁기간 제한 조례와 같이 보육조례는 3년이 70.5%로 가장 많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은 23.1% 정도이다. 지역별로 보면, 위탁기간 3년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다. 5년은 도시일수록 비율이 높은데, 대도시가 28.8%로 읍면 16.7%의 두 배

가까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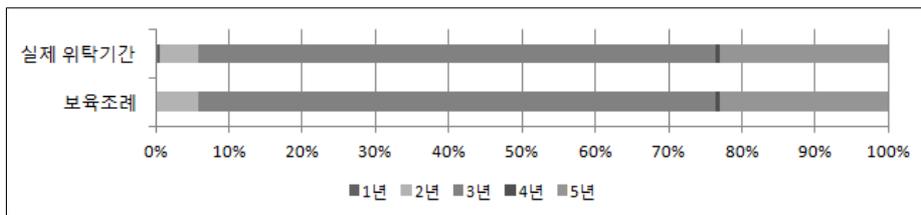
보육조례 상의 위탁기간과 달리 실제 위탁기간이 다른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위탁기간을 보면, 3년이 70.5%로 보육조례 상의 3년 위탁과 동일한 수준이나 위탁기간 1년은 보육조례로 정한 시군구는 없으나 실제 위탁기간에서는 0.6%나 되었다. 위탁기간 4년과 5년도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 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보면 차이가 나타난다. 대도시는 보육조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기간은 5년인 시군구가 있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육조례와 다르게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서울시 구로구는 보육조례 상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기간은 5년이며, 남양주시도 조례는 2년이나 실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청송군은 보육조례는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IV-2-2〉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신규 위탁): 시군구 조사

구분	보육조례					실제 위탁기간					
	2년	3년	4년	5년	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수)
전체	5.8	70.5	0.6	23.1	100.0(173)	0.6	5.2	70.5	0.6	23.1	100.0(173)
대도시	1.7	69.5	-	28.8	100.0(59)	-	1.7	66.1	-	32.2	100.0(59)
중소도시	7.4	68.5	-	24.1	100.0(54)	-	5.6	74.1	-	20.4	100.0(54)
읍면	8.3	73.3	1.7	16.7	100.0(60)	1.7	8.3	71.7	1.7	16.7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그림 IV-2-1]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 비교(신규위탁): 시군구 조사

재위탁의 경우도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위탁과 마찬가지로 보육조례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시군구가

69.8%로 가장 많고, 5년이 22.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재위탁 기간이 1년인 시군구도 0.6%나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재위탁 3년과 5년은 도시지역일수록 많고, 2년이나 4년은 읍면지역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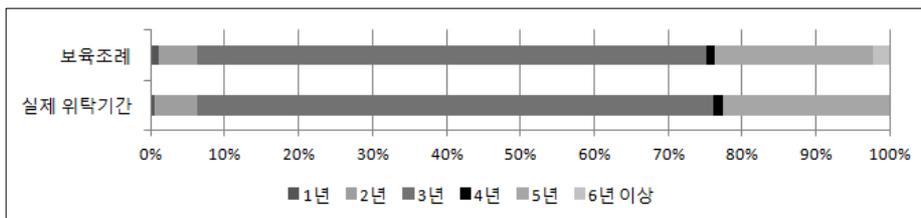
실제 위탁기간을 보면, 재위탁 기간 2년과 3년, 5년이 다소 줄었고 1년은 반대로 다소 늘었다. 특히 보육조례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위탁기간을 6년 이상 정하는 곳도 2.3%나 되었다. 장성군의 경우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재위탁 기간은 2배가 넘는 7년이며, 청송군은 보육조례는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신규 위탁과 마찬가지로 실제 재위탁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시군구가 보육조례와 다르게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 정서나 정치적인 상황 등의 영향으로 지자체가 보육조례와 별개로 위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육조례에 따라 운영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 IV-2-3〉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재위탁):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보육조례						실제 위탁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계(수)
전체	0.6	5.8	69.8	1.2	22.7	100.0(172)	1.2	5.2	68.8	1.2	21.4	2.3	100.0(173)
대도시	-	3.4	70.7	-	25.9	100.0(58)	-	3.4	69.5	-	25.4	1.7	100.0(59)
중소도시	1.9	5.6	70.4	-	22.2	100.0(54)	1.9	5.6	72.2	-	16.7	3.7	100.0(54)
읍면	-	8.3	68.3	3.3	20.0	100.0(60)	1.7	6.7	65.0	3.3	21.7	1.7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그림 IV-2-2] 보육조례와 실제 위탁기간 비교(재위탁): 시군구 조사

다음 <표 IV-2-4>는 어린이집 조사에서 현 위탁 계약기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와 같이, 3년이 88.5%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5% 미만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은 4.9% 정도로 소수였다.

2007년 조사와 비교할 때(서문희 외, 2007), 위탁기간 3년은 비슷한 수준이나 2년은 8.2%에서 4.1%로 절반 가량 줄었고, 5년은 1.2%에서 4.9%로 4배 정도 늘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조례의 위탁기간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3년이 80%대로 가장 많다. 2년은 읍면지역이 많고 도시일수록 비율이 낮아진다. 반면, 5년은 대도시가 5.5%이며 읍면이 3.9%로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시군구 조사와 비교해 보면, 위탁기간 3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위탁기간 5년은 1/4 수준으로 매우 낮아 차이를 보인다.

〈표 IV-2-4〉 현 위탁 계약기간: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명)						계(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상	
전체	0.4	4.1	88.5	0.6	4.9	1.4	100.0(486)
대도시	-	3.8	88.1	0.9	5.5	1.7	100.0(235)
중소도시	0.7	4.0	89.9	-	4.7	0.7	100.0(149)
읍면	1.0	4.9	87.3	1.0	3.9	2.0	100.0(102)
2007년 조사 ¹⁾	0.7	8.2	88.7	0.5	1.2	0.7	100.0(5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나. 위탁 횟수 및 운영기간

1) 위탁 횟수

보육 조례 상에서 위탁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61개 시군구이다. 재위탁 1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1개로 경기도가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이다. 재위탁 2회로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 3개 지역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중 파주시와 동두천시, 연천군이 재위탁 2회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심사위원회 평가,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두천시도 시장이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운영 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천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회까지 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강남구와 종로구가 재위탁 2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구청장이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 횟수는 2회에 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로구도 구청장이 기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다. 즉, 위탁기간 평균 3년을 기준으로 재위탁 2회 받았을 경우 위탁체나 위탁자가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의 10년 동안 장기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표 IV-2-5〉 재위탁 횟수 제한 관련 보육조례

단위: 시군구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재위탁1회	51	9	1	-	-	2	-	1	11	6	3	6	3	1	2	6	-
재위탁2회	10	2	1	1	1	-	-	-	3	1	-	1	-	-	-	-	-

자료: 각 시군구 보육 조례

<표 IV-2-6>는 어린이집 조사에서 현 위탁체나 위탁자의 위탁 횟수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2-6〉 위탁 횟수: 어린이집 조사

단위: %(명), 회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7.3	26.0	15.4	9.0	7.4	15.0	100.0(488)	3.0
지역								
대도시	20.8	22.0	15.7	10.2	8.5	22.9	100.0(236)	3.6 ^a
중소도시	32.9	29.5	17.4	7.4	4.7	8.1	100.0(149)	2.5 ^b
읍면	34.0	30.1	11.7	8.7	8.7	6.8	100.0(103)	2.5 ^b
$X^2(df)/F$			33.4(10) ^{***}					17.7 ^{***}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22.1	22.1	8.0	11.5	13.3	23.0	100.0(113)	3.7 ^{ab}
종교법인	15.9	19.0	15.9	12.7	12.7	23.8	100.0(63)	3.9 ^a
학교법인	19.0	42.9	14.3	9.5	4.8	9.5	100.0(21)	2.7 ^{abc}
단체	17.4	30.4	17.4	8.7	4.3	21.7	100.0(23)	3.4 ^{abc}
개인	32.2	27.8	19.0	7.8	4.4	8.8	100.0(205)	2.6 ^c
기타	25.0	25.0	12.5	12.5	12.5	12.5	100.0(8)	3.5 ^{abc}
시군구직영	40.0	27.3	16.4	3.6	1.8	10.9	100.0(55)	2.4 ^c
$X^2(df)/F$								7.0 ^{***}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현 위탁체나 위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한 횟수는 평균 3회로 1~2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3회 이상도 절반 정도로 위탁체가 어린이집을 한번 위탁 받으면 계속적으로 위탁받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3.6회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평균 2.5회로 동일하다. 대도시는 6회 이상,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1~2회가 가장 많아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계속적으로 위탁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위탁형태별로 보면, 종교법인이 평균 3.9회로 가장 많이 위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위탁은 2.6회로 가장 적다.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은 6회 이상이 23%대로 가장 많은데 반해, 학교법인이나 단체, 개인 위탁은 1~2회가 많아 위탁형태별로도 위탁횟수의 차이를 보인다.

2) 운영기간

위탁체나 위탁자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총 기간은 평균 8.3년이다.

〈표 IV-2-7〉 총 운영기간: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년							평균
	1년 미만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이상	계(수)	
전체	7.6	41.4	20.1	14.5	11.7	4.7	100.0(488)	8.3
지역								
대도시	5.9	30.9	20.3	16.9	18.6	7.2	100.0(236)	10.2 ^a
중소도시	8.1	53.7	18.8	11.4	4.7	3.4	100.0(149)	6.5 ^b
읍면	10.7	47.6	21.4	13.6	5.8	1.0	100.0(103)	6.5 ^b
$X^2(df)/F$			42.8(10) ^{***}					20.3 ^{***}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7.1	30.1	12.4	16.8	27.4	6.2	100.0(113)	11.0 ^a
종교법인	-	28.6	22.2	25.4	15.9	7.9	100.0(63)	11.2 ^a
학교법인	9.5	38.1	33.3	9.5	9.5	-	100.0(21)	6.9 ^{bc}
단체	8.7	39.1	17.4	8.7	13.0	13.0	100.0(23)	9.7 ^{ab}
개인	9.8	49.8	21.5	11.7	4.4	2.9	100.0(205)	6.5 ^{bc}
기타	-	50.0	-	25.0	12.5	12.5	100.0(8)	9.5 ^{ab}
시군구직영	9.1	49.1	27.3	10.9	1.8	1.8	100.0(55)	5.8 ^c
$X^2(df)/F$				-				10.3 ^{***}
2007년 조사 ¹⁾	39.8		35.7	11.8	2.9	2.9	100.0(560)	7.6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앞서 살펴본 보육조례 상의 위탁 계약기간 3년과 위탁횟수 평균 2.6회를 감안하면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 운영기간별로 보면, 1~5년이 41.4%로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10.2년으로 가장 길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각각 6.5년으로 동일하다. 운영기간별로는 전반적으로 1~5년이 가장 많지만, 대도시의 경우 16~20년이 18.6%로 다른 지역보다 4배 정도 많고, 읍면지역은 1년 미만이 10.7% 정도이다.

위탁형태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이 평균 11년으로 가장 길고, 시군구직영이 5.8년으로 가장 짧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의 운영기간이 길고 개인과 학교법인은 반대로 짧다. 즉, 대도시 소재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 위탁체가 지속적으로 위탁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5년 이하와 16년 이상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고, 6~15년 사이가 감소하였다.

3. 위탁체 선정

가. 위탁 방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신규 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 방법을 제시한 보육조례를 살펴보면, 최초 위탁 시 위탁 방법으로 공개 경쟁 조항을 두고 있는 시군구는 총 93개로, 전남 15개 자치단체가 최초 위탁 시 공개경쟁을 명시하고 있고, 경남은 가장 적은 3개 자치단체이다. 보육조례에 재위탁 시 위탁방법으로 공개경쟁을 명시하고 있는 시군구는 서울 도봉구와 부산 중구 2곳뿐이다.

〈표 IV-3-1〉 위탁방법(공개경쟁) 제시한 보육조례: 신규변경위탁

단위: 시군구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초 위탁	93	18	7	3	9	1	-	2	10	8	5	8	4	15	-	3	-
재위탁	2	1	1	-	-	-	-	-	-	-	-	-	-	-	-	-	-

자료: 각 시군구 보육 조례.

<표 IV-3-2>는 어린이집 조사에서 최초 위탁 시 위탁방법을 조사한 결과로, 최초 위탁 시 80.9%가 공개경쟁으로 위탁받았다고, 나머지는 임의위탁이나 기타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 경우로는 기부채납자 우선 위탁 등이 있다.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임의위탁 비율은 4%p 정도 낮아졌고, 공개경쟁이 다소 증가하여 위탁체 선정과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공개경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읍면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공개경쟁 비율이 낮고, 임의위탁이나 직영비율이 높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읍면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보육 아동수 감소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위탁체가 위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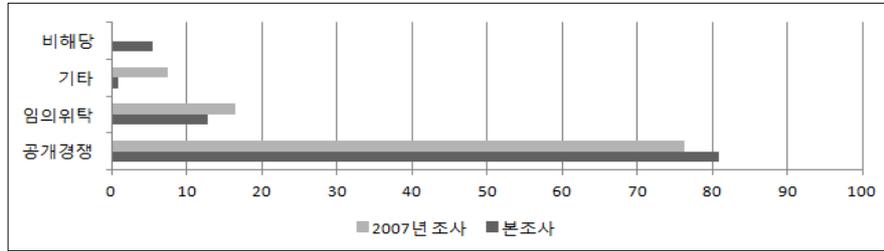
위탁형태별로도 공개경쟁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지만, 특히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90% 내외로 가장 많다. 종교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임의위탁 비율이 다른 위탁형태보다 다소 높다.

<표 IV-3-2> 최초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공개경쟁	임의위탁	기타	비해당	계(수)
전체	80.9	12.8	0.8	5.4	100.0(514)
지역					
대도시	80.8	14.3	0.8	4.1	100.0(245)
중소도시	87.6	8.5	0.7	3.3	100.0(153)
읍면	72.4	15.5	0.9	11.2	100.0(1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88.0	7.7	-	4.3	100.0(117)
종교법인	70.3	26.6	1.6	1.6	100.0(64)
학교법인	90.0	10.0	-	-	100.0(20)
단체	69.6	26.1	4.3	-	100.0(23)
개인	88.8	10.2	0.5	0.5	100.0(205)
시군구직영	60.5	11.8	1.3	26.3	100.0(76)
기타	66.7	22.2	-	11.1	100.0(9)
2007년 조사 ¹⁾	76.2	16.4	7.4	-	100.0(57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그림 IV-3-1] 최초 위탁 시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시군구 대상으로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을 조사한 결과, 현 재위탁 방법으로 단독 평가후 재위탁이 62.6%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경쟁도 20%대로 많다.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나 자동 재위탁, 기타 방법은 10% 미만으로 낮다(표 IV-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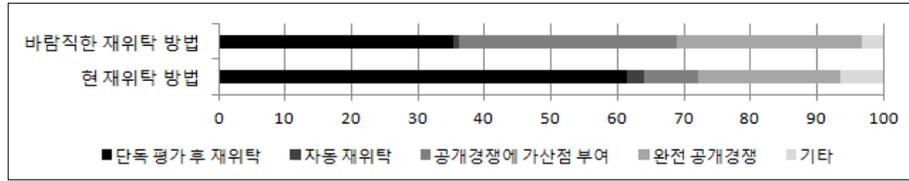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도시일수록 단독 평가후 재위탁 비율이 높다. 대도시가 72.9%로 읍면지역보다 20% 이상 많다. 반대로 완전 공개경쟁은 읍면지역 비율이 높는데 대도시가 5%, 읍면지역이 10%대로 차이를 보인다.

현 재위탁 방법과 다르게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이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단독 평가 후 재위탁과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가 30%대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경쟁도 25.3%이다. 정리하면, 각 시군구는 재위탁 심사시 단독 평가후 재위탁 방법을 많이 적용하지만,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공개경쟁에 가산점 부여도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3>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시군구 조사

구분	현 재위탁 방법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단독 평가 후 재위탁	자동 재위탁	공개 경쟁 가산점 부여	완전 공개 경쟁	기타	계(수)	단독 평가 후 재위탁	자동 재위탁	공개 경쟁 가산점 부여	완전 공개 경쟁	기타	계(수)
전체	62.6	2.3	8.6	20.7	5.7	100.0(174)	34.5	0.6	36.8	25.3	2.9	100.0(174)
대도시	72.9	-	5.1	16.9	5.1	100.0(59)	37.3	-	35.6	20.3	6.8	100.0(59)
중소도시	63.6	3.6	9.1	20.0	3.6	100.0(55)	36.4	-	36.4	25.5	1.8	100.0(55)
읍면	51.7	3.3	11.7	25.0	8.3	100.0(60)	30.3	1.7	38.3	30.3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그림 IV-3-2]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시군구 조사

다음 <표 IV-3-4>는 어린이집 조사에서 재위탁시 최근 위탁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재위탁 시 위탁방법으로는 단독 평가 후 재위탁이 56%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경쟁도 25% 정도 된다. 나머지 방법은 5% 미만이다.

<표 IV-3-4> 재위탁 시 최근 위탁방법: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단독 평가 후 재위탁	자동 재위탁	공개경쟁 가산점부여	완전 공개경쟁	기타	신규위탁	계(수)
전체	56.0	2.6	2.6	25.0	0.5	13.2	100.0(416)
지역							
대도시	64.2	1.9	2.4	19.8	0.5	11.3	100.0(212)
중소도시	42.9	2.5	2.5	38.7	0.8	12.6	100.0(119)
읍면	54.1	4.7	3.5	18.8	-	18.8	100.0(85)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57.7	1.9	3.8	24.0	-	12.5	100.0(104)
종교법인	61.8	5.5	1.8	25.5	-	5.5	100.0(55)
학교법인	52.6	5.3	-	26.3	-	15.8	100.0(19)
단체	66.7	4.8	-	23.8	-	4.8	100.0(21)
개인	56.2	1.2	2.5	26.5	1.2	12.3	100.0(162)
기타	71.4	-	-	14.3	-	14.3	100.0(7)
시군구직영	39.6	4.2	4.2	22.9	-	29.2	100.0(48)
2007년 조사 ¹⁾	46.3	11.3	5.8	21.2	10.5	4.9	100.0(5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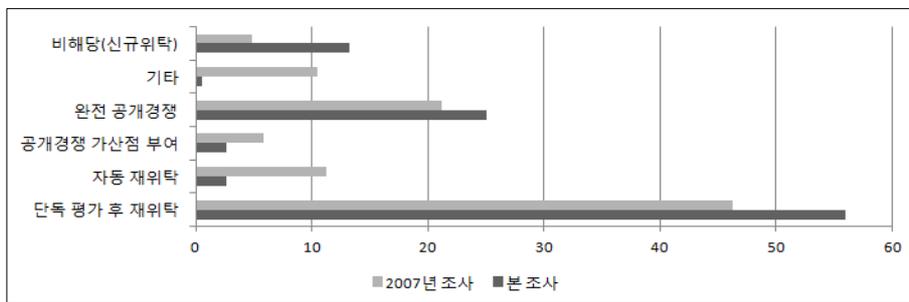
1) 서문희 외(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7년 조사와 비교하면, 단독 평가후 재위탁이 10% 증가한 반면, 자동 재위탁과 기타 방법은 10% 정도 줄었다. 자동 재위탁일 경우 운영체가 운영권 확보로 어린이집을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권은 확보해 주되 평가를 통해 운영 전반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단독 평가 후 재위탁 방법

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단독 평가 후 재위탁이 64.2%로 가장 많고, 완전공개경쟁은 중소도시가 40% 가까이 되어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2배 정도 된다. 자동 재위탁은 읍면지역일수록 비율이 높다.

위탁형태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어 단독평가 후 재위탁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은 자동 재위탁이 5%대로 높다.



[그림 IV-3-3] 재위탁 시 최근 위탁방법

나.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1) 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위탁체 선정과정 및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군구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5%,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로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표 IV-3-5>과 같이, 보육 조례 대부분이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조항을 두고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 위원도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입소 아동의 보호자, 시군구 의원, 관계 공무원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3-5〉 보육조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단위 : 시군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¹⁾	25	16	8	10	5	5	5	31	18	10	15	13	20	22	19	1
조례 ²⁾	23	3	2	10	2	1	-	29	14	8	7	7	5	2	6	1

주: 1) 각 시도별 보육조례, 2)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자료: 시군구 보육관련 조례.

한편 시도별 보육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을 조사한 결과, 시군구 중 50% 이상이 원장 및 교사, 보육전문가, 보호자를 지방보육정책위원으로 임명하고 있고, 관계공무원, 공익 대표자, 시군구 의원 순으로 위원을 임명하고 있다.

〈표 IV-3-6〉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단위 : 시군구(%)

구분	보육 전문가	원장/ 교사	보호자	시군구 의원	관계 공무원	공익 대표자	의회 추천자	시민단체	기타
전체	118 (52.9)	119 (53.4)	113 (50.7)	46 (20.6)	106 (47.5)	84 (37.7)	16 (7.2)	17 (7.6)	15 (6.7)
서울	23	23	23	15	23	19	2	-	-
부산	2	2	2	1	2	2	-	-	-
대구	2	2	2	1	2	2	-	-	-
인천	10	10	10	5	10	9	2	-	-
광주	2	2	2	-	2	2	-	-	-
대전	1	1	1	1	1	-	-	-	-
경기	27	27	22	6	19	13	9	4	6
강원	14	14	14	5	14	12	1	3	-
충북	7	7	7	1	7	5	1	1	3
충남	10	10	9	5	8	5	-	3	1
전북	6	7	7	-	7	5	-	3	1
전남	5	5	5	2	5	3	1	-	2
경북	2	2	2	1	2	2	-	-	-
경남	6	6	6	2	3	5	-	2	2
제주	1	1	1	1	1	-	-	1	-

자료: 시군구 보육관련 조례.

보육 조례 중 서울 광진구, 중랑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종로구와 충남 당진군은 구의원 수를 제한하고 있고, 서울 관악

구는 보육전문가 3인, 어린이집 원장 3인, 교사 2인, 보호자 3인, 구의원 3인, 관계 공무원 1인으로 위원별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경기 평택, 과천, 강원 태백, 고성군은 관계 공무원의 직급을 5급 이상, 전남 광양시는 4급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도 지역은 의회 추천자, 시민단체 등의 보육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사람을 보육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시군구 보육담당자 대상으로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표 IV-3-7 참조).

위탁체 선정심사위원에 부모가 포함된 시군구가 93.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육교사,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학과 교수가 각각 80%대이다. 지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시군구도 80% 가까이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회장이 구성원에 포함된 시군구는 50~60%대로 절반 정도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자체 단체장은 읍면지역이 40% 정도로 10% 내외의 도시지역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수치이다. 이에 반해 보육 및 유아교육학과 교수 비율은 도시지역이 90%가 넘고, 읍면지역은 61.7%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외에도 뚜렷한 차이는 읍면지역의 교육청 담당자 비율을 들 수 있다. 읍면지역이 35%로 도시지역의 두 배가 넘는다.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보육 관련 전문가 인력풀이 한정되어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선임에 어려움이 도시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IV-3-7〉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원(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담당 공무원	보육, 유아교 육학과 교수	국공립 어린이 집 원장	민간 어린이 집 원장	보육 교사	부모 대표	교육청 담당자	연합회 회장	기타	(수)
전체	19.5	79.9	82.2	54.0	64.9	86.8	93.7	22.4	47.7	47.7	(174)
대도시	10.2	78.0	93.2	59.3	67.8	86.4	96.6	13.6	44.1	50.8	(59)
중소도시	9.1	87.3	92.7	47.3	70.9	83.6	85.5	18.2	52.7	54.5	(55)
읍면	38.3	75.0	61.7	55.0	56.7	90.0	98.3	35.0	46.7	38.3	(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2) 위탁 선정심사위원 구성비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선정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표 IV-3-8>와 같이, 각 선정심사위원의 구성비율은 보육·유아교육학과 교수가 20%로 가장 많고, 부모 대표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19.3%, 16.7% 순이다. 보육교사와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15.7%, 14.9%로 많다.

본 조사 결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 조직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비율로 2012년 하반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과 비교해 보면, 현 구성 비율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학과 교수 등의 보육전문가와 부모대표 비율은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보육교사 대표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전문가 심층면담에서는 보육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공무원이나 공익을 대표하는 자나 학부모, 교사 대표의 비율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부모 대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육관련 전문성이 떨어져 서류나 면접 심사만으로는 위탁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범주에 보육분야와 관련이 적은 단체 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선정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서 선정심사위원 구성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외되었는데, 일부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시 결정권자가 없어 심사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이 대조적이었다.

<표 IV-3-8>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비율: 시군구 조사

단위: %

구분	지자체 단체장	지자체 담당 공무원	보육, 유아교육 학과 교수	국공립어 린이집 원장	민간어 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	부모 대표	교육청 담당자	연합회 회장	기타
전체	11.4	16.7	20.0	10.5	14.9	15.7	19.3	12.0	12.8	25.4
대도시	16.3	16.9	21.7 ^a	10.2	13.9	14.1 ^b	17.5 ^b	7.6	16.4 ^a	23.8
중소도시	11.2	16.7	21.1 ^a	9.8	14.1	15.4 ^{ab}	17.5 ^b	11.1	11.3 ^b	26.5
읍면	10.2	16.4	16.0 ^b	11.4	17.0	17.6 ^a	22.6 ^a	14.1	10.9 ^b	26.1
F	1.6	0.1	5.1 ^{**}	1.2	2.4 [#]	3.6 [*]	6.5 ^{**}	1.9	6.5 ^{**}	0.2

[#] $p < 0.1$, ^{*} $p < .05$,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3) 위탁 선정심사위원 자격 조건

위탁체 선정심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탁체 선정심사위원의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표 IV-3-9>는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선정 시 보육담당자들이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이다. 시군구 담당자 절반 이상이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을 가장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도 33.3%로 1/3을 차지한다. 반면, 보육 수요자의 요구 반영이나 지역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등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저조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지역차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은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이 높고, 읍면지역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높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보육수요자의 요구 반영이 중소도시보다 높다.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지역색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선정심사위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3-9>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선정 시 고려조건: 시군구 조사

구분	단위: %(명)					계(수)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보육 수요자 요구 반영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기타	
전체	54.0	33.3	10.9	1.1	0.6	100.0(174)
대도시	57.6	30.5	10.2	1.7	-	100.0(59)
중소도시	63.6	25.5	9.1	-	1.8	100.0(55)
읍면	41.7	43.3	13.3	1.7	-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한편, 어린이집 조사에서 원장이 응답한 위탁 심의위원 자격 조건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47.1%, 다음이 공정성 39.8%, 정치적 중립성 8.6% 순이다(표 IV-3-10 참조).

시군구 조사와 비교해 보면, 보육현장의 이해는 어린이집 원장이 10% 이상 많고, 공정성은 시군구가 15% 이상 높다. 이는 운영권을 얻어야 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보육 현장을 잘 아는 심의위원이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위탁체 선정심사를 주관하는 시군구는 공정한 심사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약 50% 정도로 중소도시보다 10%p 정도 높고, 공정성은 중소도시가 10%p 이상 높다. 앞서 살펴본 시군구 조사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위탁형태별로 보면, 개인위탁의 경우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공정성이 각각 40%대로 동일하고, 단체 위탁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21.7%로 가장 낮고, 공정성은 69.6%로 높아 다른 위탁형태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표 IV-3-10〉 위탁 심의위원 자격 요건: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지역 특성이해	보육 수요자 요구 반영	기타	계(수)
전체	8.6	39.8	47.1	3.1	1.2	0.2	100.0(488)
지역							
대도시	10.6	35.6	50.4	3.0	0.4	-	100.0(236)
중소도시	6.0	49.0	40.9	2.0	2.0	-	100.0(149)
읍면	7.8	35.9	48.5	4.9	1.9	1.0	100.0(103)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13.3	37.2	46.0	1.8	0.9	0.9	100.0(113)
종교법인	7.9	23.8	63.5	3.2	1.6	-	100.0(63)
학교법인	14.3	28.6	52.4	4.8	-	-	100.0(21)
단체	-	69.6	21.7	4.3	4.3	-	100.0(23)
개인	7.8	44.4	44.4	2.0	1.5	-	100.0(205)
기타	-	25.0	62.5	12.5	-	-	100.0(8)
시군구직영	5.5	40.0	47.3	7.3	-	-	100.0(5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다.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1) 위탁체 선정 시 적용 기준

위탁체 선정 시 적용하는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역의 보육여건이나 시설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시군구 조사에서 신규·변경 위탁과 재위탁 시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조사한 결과, 신규·변경위탁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심사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제시한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표로 85.6%를 차지한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

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표를 적용한다는 비율은 5.2%, 8% 정도로 적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위탁 시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선정기준 적용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표 IV-3-11 참조).

심사기준표 적용에 있어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도시는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은 지방 보육조례 관련 기준이나 지자체 자체 기준표를 적용한다는 비율이 높다. 이는 선정기준표 심사항목 중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이나 재정 능력 등이 도시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읍면지역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재위탁도 신규·변경위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가 82.2%로 가장 많고,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표는 신규·변경위탁보다 3%p 많은 11.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신규위탁과 마찬가지로 도시일수록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다. 지자체 관련 조례 적용 비율도 읍면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표 적용 비율은 신규·변경 위탁보다 재위탁이 더 많다.

〈표 IV-3-11〉 위탁체 선정 심사기준: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신규·변경위탁					재위탁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	지자체 관련 조례	지자체 자체 선정 기준표	기 타	계(수)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표	지자체 관련 조례	지자체 자체 선정 기준표	기 타	계(수)
전체	85.6	5.2	8.0	1.1	100.0(174)	82.2	5.2	11.5	1.1	100.0(174)
대도시	89.8	3.4	6.8	-	100.0(59)	84.7	3.4	11.9	-	100.0(59)
중소도시	85.5	3.6	7.3	3.6	100.0(55)	81.8	5.5	10.9	1.8	100.0(55)
읍면	81.7	8.3	10.0	-	100.0(60)	80.0	6.7	11.7	1.7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와 보육정보센터장 조사」 자료.

한편, 어린이집 조사에서 신규위탁 시 적용한 심사기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가 77.4%를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기준표 적용이 절반 수준인 35%대이다(표 IV-3-12 참조).

지역별로 보면,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중소도시의 경우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가 69.4%로 타 지역보다 낮지

만,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표는 50% 가까이 되어 높다.

재위탁의 경우,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를 적용한다는 비율이 78.9%로 높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나 자체 선정기준표가 각각 33~34%대로 비슷하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신규위탁과 동일하게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68%로 가장 낮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선정기준표 적용이 40%로 타 지역보다 10~20% 정도 많다. 지방자치단체관련 조례 적용은 읍면지역이 38.2%로 가장 많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지역 특성이나 요구도 반영을 위해 보육조례나 자체 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3-12〉 위탁심사 시 심사기준: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신규				재위탁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지방자치 단체 관련조례	지방자치 단체 자체선정 기준표	(수)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지방자치 단체 관련조례	지방자치 단체 자체선정 기준표	(수)
전체 지역	77.4	35.3	34.6	(133)	78.9	34.6	33.0	(355)
대도시	85.7	28.6	26.5	(49)	85.6	34.2	32.6	(187)
중소도시	69.4	49.0	49.0	(49)	68.0	33.0	40.0	(100)
읍면	77.1	25.7	25.7	(35)	76.5	38.2	23.5	(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2)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에 대한 의견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규·변경 위탁 심사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위탁 심사는 종전대로 위탁체 선정기준표 적용을 권장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군구 보육담당자와 보육정보센터장,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재위탁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 적용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57.5%, 보육정보센터장들도 68.9%로 절반 이상이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 적용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표 IV-3-13 참조).

이를 지역별로 보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은 중소도시가 70.9%로 가장 높고,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50%대이다.

〈표 IV-3-13〉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 필요성: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불 필요	필요	잘 모름	계(수)	X ² (df)/F
시군구					
전체	20.7	57.5	21.8	100.0(174)	
대도시	22.2	50.8	27.1	100.0(59)	8.6(4)*
중소도시	20.0	70.9	9.1	100.0(55)	
읍면	20.0	51.7	28.3	100.0(60)	
보육정보센터					
전체	31.1	68.9	-	100.0(45)	-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조사」 자료.

한편,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5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시군구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IV-3-14〉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화 필요성: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불 필요	필요	잘 모름	계(수)	X ² (df)
전체	25.8	57.4	16.8	100.0(488)	
지역					
대도시	28.4	50.8	20.8	100.0(236)	
중소도시	20.8	63.8	15.4	100.0(149)	11.0(4)*
읍면	27.2	63.1	9.7	100.0(103)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24.8	56.6	18.6	100.0(113)	
종교법인	28.6	47.6	23.8	100.0(63)	
학교법인	23.8	61.9	14.3	100.0(21)	
단체	17.4	65.2	17.4	100.0(23)	-
개인	27.8	60.0	12.2	100.0(205)	
기타	25.0	50.0	25.0	100.0(8)	
시군구직영	21.8	56.4	21.8	100.0(55)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필요하다는 비율이 60%대로 비슷하지만 대도시는

50%로 평균보다 낮다.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자체 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아 기존에 공통 심사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는 대도시보다 공통 심사기준표의 의무화에 대해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탁형태별로는 종교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탁형태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3) 위탁체 선정기준표의 적절성

가) 위탁심사 시 심사항목 적용 여부

(1) 신규·변경위탁

신규·변경 위탁 시 위탁체 심사기준표에 제시된 심사항목의 위탁심사 시 적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신규·변경 위탁 시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과 어린이집 운영계획 심사항목 적용 비율이 91.4%, 90.2%로 가장 높다. 나머지 심사항목도 80%대로 대부분의 시군구가 위탁체 선정기준표의 심사항목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은 읍면지역이 93.3%로 가장 높은 반면, 중소도시는 89.1%로 낮다.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모두 도시지역의 적용 비율이 높다. 특히, 중소도시는 기타 심사항목의 적용 비율이 21.8%로 높은 편이다. 읍면지역은 운영체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심사항목의 적용 비율이 70%대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의 지자체 보육조례나 자체 기준표 사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적용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기타 적용항목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외에 어린이집 원장 1년 이상을 심사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시군구가 있다.

〈표 IV-3-15〉 신규·변경 위탁 심사항목(‘적용’ 응답비율):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기타	(수)
전체	90.2	91.4	87.9	83.3	82.8	6.9	(174)
대도시	93.2	91.5	93.2	88.1	89.8	-	(59)
중소도시	89.1	89.1	85.5	85.5	81.8	21.8	(55)
읍면	88.3	93.3	85.0	76.7	76.7	-	(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2) 재위탁

신규위탁과 다르게 재위탁은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계획 3가지 심사항목만 적용 비율이 90% 이상을 나타내었다. 운영체의 공신력과 재정능력도 80% 이상으로 신규위탁보다 다소 높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대부분의 항목이 적용한다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읍면지역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도시지역보다 적용 비율이 낮다. 특히, 운영체의 재정능력이 78.3%로 가장 저조하다. 중소도시는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이 87.3%로 대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낮아 차이를 보인다. 기타 심사항목을 적용하는 비율은 중소도시가 14.5%로 많다. 기타 적용 항목으로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도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이 있다.

<표 IV-3-16> 재위탁 심사항목('적용' 응답비율): 시군구 조사

구분	운영체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기타	단위: %(명)
							(수)
전체	95.4	92.0	92.0	86.2	83.9	5.2	(174)
대도시	96.6	93.2	93.2	89.8	91.5	1.7	(59)
중소도시	96.4	87.3	90.9	85.5	81.8	14.5	(55)
읍면지역	93.3	95.0	91.7	83.3	78.3	-	(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나) 심사항목의 적절성

(1) 신규·변경 위탁

다음 <표 IV-3-17>은 시군구 보육담당자와 보육정보센터장 대상으로 위탁체 심사항목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는 5점 평균 3.8점, 보육정보센터장은 평균 4.2점이다.

<표 IV-3-17>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의 적절성(5점 척도)

구분	어린이집 운영 계획의 적절성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 공신력	재정 능력	단위: 점(명)	
						전체	(수)
시군구 담당자	3.9	3.9	3.9	3.8	3.7	3.8	(174)
보육정보센터장	4.6	4.5	3.9	4.2	3.9	4.2	(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조사」 자료.

심사항목별로 보면, 모든 심사항목에서 보육정보센터장이 시군구 보육담당자보다 적절성 점수가 더 높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공신력이 평균 4점 이상으로 시군구 담당자와 차이를 보인다. 재정 능력은 시군구 담당자와 보육정보센터장이 공통적으로 가장 낮게 평가한 심사항목이다.

(2) 재위탁

신규·변경 위탁과 마찬가지로 재위탁 심사항목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시군구 보육담당자보다 보육정보센터장이 더 높게 평가하였다. 보육정보센터장은 5점 평균 4.3점, 시군구 담당자 평균 3.9점이다.

심사항목별로는 재정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 모두 보육정보센터장의 적절성 점수가 더 높다. 특히 보육정보센터장은 4개 항목 모두 평균 4점이 넘으며, 특히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평균 4.6점으로 가장 높다. 시군구 담당자는 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사업 실적 항목만 평균 4점 이상이고 나머지는 평균 3점대이다. 보육정보센터장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시군구는 시설 운영이나 실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다.

〈표 IV-3-18〉 재위탁 심사항목의 적절성(5점 척도)

구분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단위: 점(명)	
						전체	(수)
시군구 담당자	4.0	3.9	3.9	3.8	3.7	3.9	(174)
보육정보센터장	4.4	4.5	4.6	4.1	3.7	4.3	(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조사」 자료

다) 심사항목별 배점 및 배점의 적절성

(1) 신규·변경 위탁

신규·변경 위탁 시 각 시군구가 적용하는 심사기준의 항목별 배점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34.8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1.1점으로 가장 높고, 운영체 재정 능력은 8.5점으로 가장 낮다.

위탁체 선정기준표의 기준점수와 비교하면, 시군구가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과 재정능력은 기준 점수보다 높게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항목은 낮게 배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심사항목별 배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운영체의 공신력과 재정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운영체의 공신력은 읍면지역이 평균 13.4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평균 10.9점, 10.9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운영체의 재정능력도 읍면지역이 평균 11.1점인데 반해 대도시 평균 7.4점, 중소도시 평균 7.3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소도시가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다.

〈표 IV-3-19〉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별 배점 : 시군구 조사

단위: 점(명)					
구분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전체	34.8	31.1	16.5	11.6	8.5
대도시	34.2	31.7	16.0	10.9 ^b	7.4 ^b
중소도시	37.2	30.5	17.0	10.9 ^b	7.3 ^b
읍면지역	33.3	31.1	16.5	13.4 ^a	11.1 ^a
F	2.3	0.3	0.1	4.3 [*]	4.8 ^{**}
(수)	(156)	(157)	(149)	(143)	(142)

* $p < .05$,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다음은 위탁체 공통 심사기준표에 제시되어 있는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보육정보센터장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3-20>와 같이, 시군구 담당자보다 보육정보센터장이 심사항목의 배점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 계획의 적절성에서 차이가 크다.

시군구 담당자는 항목별 평균 점수가 3.5~3.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보육정보센터장들은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4.2점으로 가장 높고 재정 능력이 3.6점으로 낮아 항목 간에 차이를 나타낸다.

〈표 IV-3-20〉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단위: 점(명)						
구분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 공신력	재정 능력	전체 (수)
시군구 담당자	3.6	3.7	3.5	3.6	3.5	3.6 (174)
보육정보센터장	4.2	4.0	3.6	3.8	3.6	3.8 (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조사」 자료.

심사항목별 배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점수에 대해 추가 조사 하였다.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점수와 비교하면,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평균 28.1점으로 공통 심사기준 40점보다 낮고,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도 평균 27.2점으로 기준 점수 35점보다 낮다. 이와 반대로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은 평균 20.5점으로 기준점수보다 10점 이상 높다. 운영체의 공신력과 재정능력도 평균 13.3점, 10.9점으로 공통 심사기준표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이 읍면지역 25.7점으로 도시지역보다 다소 낮고, 재정능력은 13.3점으로 도시지역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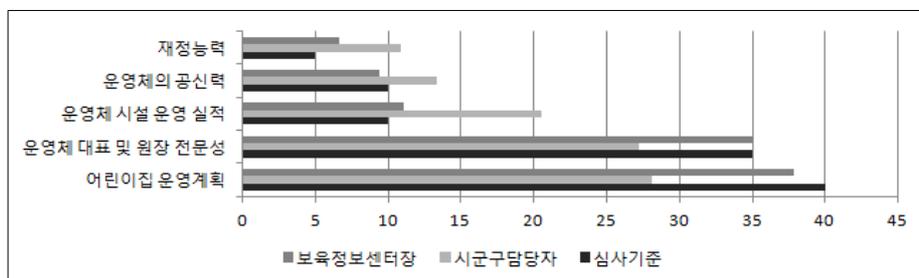
보육정보센터장은 모든 항목이 기준 점수와 큰 차이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기준점수보다 다소 낮은 평균 37.9점이었고, 운영체 시설 운영실적과 재정능력은 평균 11.1점, 6.6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3-21〉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별 적정점수: 시군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35점)	운영체 시설 운영실적(10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재정 능력(5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시군구담당자 전체	28.1(7.2)	27.2(8.3)	20.5(7.5)	13.3(6.4)	10.9(6.3)
대도시	29.6(6.6)	26.4(9.3)	20.4(9.1)	14.3(7.8)	9.3(4.3)
중소도시	29.5(6.4)	29.0(8.8)	19.5(6.4)	12.3(5.7)	9.7(5.1)
읍면지역	25.7(8.0)	26.7(7.5)	21.3(6.9)	13.0(5.6)	13.3(7.9)
F	1.4	0.3	0.2	0.3	1.8
보육정보센터장 전체	37.9(10.7)	35.0(8.2)	11.1(6.0)	9.4(6.5)	6.6(4.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조사」 자료.



[그림 IV-3-4] 신규변경 위탁 심사항목별 적정 점수

시군구 담당자와 보육정보센터장의 의견을 종합하면,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점수 배점을 낮추고, 운영체 시설운영 실적과 재정능력은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재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시군구가 적용하는 배점을 조사한 결과, 운영체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이 28.2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이 평균 28.1점, 어린이집 운영계획 25.6점, 운영체의 공신력 11.7점, 재정능력 8.8점이다(표 IV-3-22 참조).

지역별로 심사항목별 배점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심사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운영체의 공신력은 읍면지역이 13.6점으로 도시지역보다 다소 높다. 재정능력도 읍면지역 12점, 대도시 7.4점, 중소도시 7.3점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즉, 신규·변경위탁과 동일하게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위탁체 선정 시 운영체의 공신력과 재정능력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 IV-3-22〉 재위탁 심사항목별 배점

구분	단위: %(명)				
	운영체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전체	28.2	28.1	25.6	11.7	8.8
대도시	28.8	29.0	25.4	10.7 ^a	7.4 ^a
중소도시	30.4	27.9	27.0	10.8 ^a	7.3 ^a
읍면지역	25.5	27.4	24.4	13.6 ^b	12.0 ^b
F	2.1	0.8	1.0	7.9 ^{**}	6.7 ^{**}
(수)	(165)	(158)	(158)	(147)	(144)

$p < 0.1$,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신규·변경위탁과 마찬가지로 재위탁 심사항목의 배점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시군구 담당자는 5점 평균 3.7점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육정보센터장도 평균 3.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신규·변경 위탁 심사항목의 배점의 적절성과 차이가 거의 없다(표 IV-3-23 참조).

심사항목별로는 시군구 담당자는 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이 평균 3.9점으로 가장 높고, 재정능력이 3.6점으로 낮다. 보육정보센터장은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과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이 각각 평균 4.2점으로 가장

높고, 재정능력이 3.6점으로 가장 낮다. 두 집단 모두 신규·변경위탁과 동일하게 재정능력의 적절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 담당자는 재위탁 심사항목에서도 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실적의 적절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고, 보육정보센터장은 신규·변경위탁과 다르게 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의 적절성을 다른 심사항목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표 IV-3-23〉 재위탁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시군구 조사(5점 평균)

구분	어린이집 시설운영 운영체 대표 및 어린이집 운영체 재정					전체 (수)
	및 사업실적	원장의 전문성	운영 계획	공신력	능력	
시군구 담당자	3.9	3.8	3.8	3.7	3.6	3.7 (174)
보육정보센터장	4.2	4.2	4.1	3.8	3.6	3.9 (45)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재위탁 심사항목별 적정 점수를 조사한 결과, 시군구 담당자는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은 적정점수가 평균 24.5점으로 심사기준 점수 30점보다 약 5 점 정도 낮게 나타났다. 운영체의 공신력과 재정 능력은 심사기준 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과 어린이집 운영 계획은 심사기준 점수와 차이가 거의 없다.

〈표 IV-3-24〉 재위탁 심사항목별 적정 점수

구분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3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0점)	어린이집 운영계획(25점)	운영체의 공신력(10점)	재정능력 (5점)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시군구 전체	29.2(7.3)	24.5(7.3)	25.6(8.8)	12.3(7.9)	8.4(6.1)
대도시	31.1(6.5)	27.2(7.5)	26.7(9.4)	8.9(6.1)	6.1(3.3) ^{ab}
중소도시	31.0(7.4)	20.6(8.5)	27.0(12.0)	16.0(5.4)	5.4(4.6) ^b
읍면지역	26.5(7.8)	24.0(6.1)	24.0(7.0)	13.5(12.0)	12.0(7.1) ^a
F	1.2	1.4	0.3	1.6	3.7 [*]
보육정보센터 전체	30.0(10.3)	33.5(6.3)	25.5(6.4)	7.6(3.5)	3.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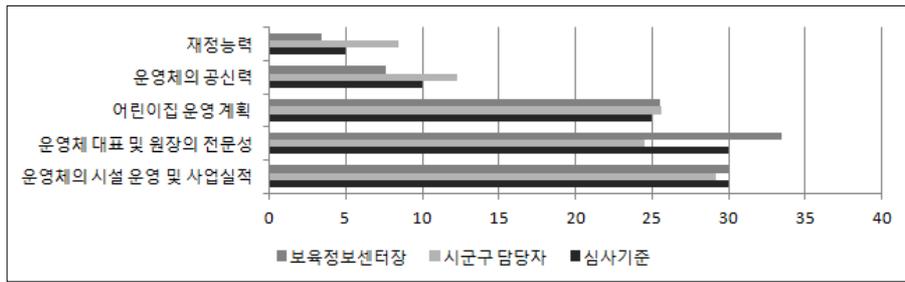
단위: 점

* $p < .05$,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은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이 평균 26.5점으로 도시지역보다 낮고, 기준점수와도 차이가 있다. 또한 신규위탁과 동일하게 재정능력에서 12점으로 도시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기준점수와도 7점 이상 차이가 난다. 중소도시는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이 평균 20.6점으로 기준점수보다 10점 정도 낮다. 또한 운영체의 공신력은 평균 16점으로 대도시의 2배 정도이며 기준점수보다 높다.

정리하면,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과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은 현 기준점수보다 다소 낮춰야 하며, 운영체의 공신력이나 재정능력은 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보육정보센터장은 대체로 기준점수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운영체의 공신력이나 재정능력이 기준점수보다 다소 낮아 시군구 담당자와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IV-3-5] 재위탁 심사항목별 적정점수

4) 추가 심사자료

<표 IV-3-25>는 신규·변경 위탁 시 위탁 신청자에게 기본 심사자료 외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지와 자료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추가 자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시군구는 55.2%로 절반 이상이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60%대로 읍면지역보다 많다.

추가 요청자료는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자료가 40.8%,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 37.4% 정도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일수록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와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다. 대도시가 47.5%로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30%로 낮다. 평가인증결과 증빙 자료는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40%, 39%로 가장 많다.

〈표 IV-3-25〉 신규변경 위탁 추가 자료요청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단위: %(명)

구분	추가자료 있음	심사자료			(수)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 자료	평가인증 결과 증빙 자료	기타	
전체	55.2	40.8	37.4	2.9	(174)
대도시	61.0	47.5	39.0	3.4	(44)
중소도시	61.8	45.5	40.0	3.6	(35)
읍면지역	43.3	30.0	33.3	1.7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다음은 재위탁 시 추가 심사자료 요청 여부와 자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시군구가 재위탁 시 자료를 요청한다는 비율은 신규위탁 55.2%와 비슷한 수준인 54%이다(표 IV-3-26 참조).

지역별로는 도시일수록 추가 자료를 받는다는 비율이 높다. 대도시가 62.7%이고 읍면지역이 43.3%로 약 20% 정도 차이가 난다.

〈표 IV-3-26〉 재위탁 시 추가자료 요청 여부 및 종류(복수응답):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추가 자료 있음	심사자료						(수)
		재직교사 경력	재직교사 근속년수	교사 이직률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	기타	
전체	54.0	13.2	13.2	9.8	39.1	37.4	4.0	(174)
대도시	62.7	16.9	15.3	11.9	45.8	40.7	6.8	(44)
중소도시	56.4	7.3	9.1	7.3	43.6	38.2	3.6	(35)
읍면지역	43.3	15.0	15.0	10.0	28.3	33.3	1.7	(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추가 심사자료는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가 39.1%,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가 37.4%로 가장 많다. 이 외에도 재직교사 경력 13.2%, 재직교사 근속년수 13.2%, 교사 이직률 9.8%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주로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며, 신규위탁보다 요청 자료의 종류가 많다(표 IV-3-26 참조).

제출 자료를 지역별로 보면,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자료와 평가인증 자료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10% 이상 많다. 재직교사 경력이나 재직교사 근속년수, 교사 이직률 등의 보육교사 관련자료는 중소도시보다 대도시나 읍면지역

이 더 많다. 이는 위탁체 선정 세부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심사자료만으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심사자료에 대한 재검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재위탁 심사자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위탁심사 시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출한다는 비율이 시군구 조사 55.2%보다 다소 높은 61.1%이다.

지역별로는 시군구 조사와 반대로 읍면지역이 추가 심사자료를 제출한다는 비율이 높다. 읍면지역이 65.7%, 대도시가 54.2%로 10%p 정도 차이가 난다.

추가 제출하는 심사자료는 시군구 조사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가 32.1%로 가장 많고, 재직교사 근속년수와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가 20~29%로 많다. 이 외에도 재직교사 경력, 교사이직률을 제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표 IV-3-27〉 신규위탁 시 추가자료 제출 여부 및 종류: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추가 자료 제출	추가 심사자료						(수)
		재직교사 경력	재직교사 근속년수	교사 이직률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	기타	
전체	61.1	20.6	29.8	4.6	32.1	29.0	7.6	(131)
지역								
대도시	54.2	22.9	22.9	10.4	29.2	27.1	12.5	(48)
중소도시	64.6	20.8	27.1	2.1	37.5	27.1	4.2	(48)
읍면지역	65.7	17.1	42.9	-	28.6	34.3	5.7	(35)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54.2	25.0	20.8	12.5	37.5	29.2	12.5	(24)
종교법인	60.0	10.0	20.0	-	10.0	10.0	20.0	(10)
학교법인	75.0	-	-	-	25.0	-	-	(4)
단체	25.0	-	-	-	-	-	-	(4)
개인	66.2	41.5	24.6	1.5	40.0	32.3	3.1	(65)
기타	-	-	-	-	-	-	-	(2)
시군구직영	63.6	22.7	18.2	9.1	22.7	40.9	13.6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재직교사 근속년수 42.9%,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 34.3%로 20%대의 도시지역보다 많다.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는 중소도시가 37.5%로 많다. 대도시는 교사 이직률이 10.4%로 가장 많다.

위탁형태별로는 개인위탁이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는 의견이 타 위탁형태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개인위탁은 재직교사 경력과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가 41.5%, 40.0%로 많고, 시군구 직영은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가 40.9%를 차지한다(표 IV-3-27 참조).

<표 IV-3-28>과 같이, 재위탁 시 심사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는 응답은 63%로 앞서 살펴본 시군구 조사 54%보다 약 10%p 정도 높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70.3%로 높고, 위탁형태별로는 신규위탁과 동일하게 개인위탁이 72.9%로 많았다.

추가 제출하는 심사자료는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와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가 39.8%, 36.1%로 가장 많고, 재직교사 경력과 근속년수가 21.0%이다.

지역별로는 지역사회 기여 등의 활동자료와 평가인증 결과는 중소도시가 가장 많다. 재직교사 경력이나 근속년수, 교사 이직률 등의 교사관련 자료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다.

<표 IV-3-28> 재위탁 시 추가 심사자료: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추가 자료 제출	추가 심사자료						(수)
		재직교사 경력	재직 교사 근속년수	교사 이직률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 자료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	기타	
전체	63.0	25.5	21.0	9.0	39.8	36.1	12.6	(357)
지역								
대도시	60.1	27.7	27.1	11.2	39.4	35.1	21.8	(188)
중소도시	70.3	23.8	16.8	7.9	42.6	37.6	2.0	(101)
읍면	60.3	22.1	10.3	4.4	36.8	36.8	2.9	(68)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59.6	29.2	27.0	13.5	40.4	31.5	21.3	(89)
종교법인	56.6	26.4	26.4	9.4	43.4	32.1	18.9	(53)
학교법인	52.9	17.6	11.8	-	41.2	41.2	11.8	(17)
단체	36.8	10.5	10.5	-	15.8	21.1	15.8	(19)
개인	72.9	26.4	19.3	8.6	40.0	40.0	7.1	(140)
기타	50.0	16.7	-	-	33.3	33.3	16.7	(6)
시군구직영	63.6	24.2	18.2	9.1	45.5	45.5	-	(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위탁형태별로 시군구 직영이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자료와 평가인증 결과자료를 제출하는 비율이 높고, 사회복지법인은 교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비율이

다른 위탁형태보다 많다. 기타에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나 기능보장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5) 연령 제한

시군구 보육조례 중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기타 보육교직원의 연령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총 55개 시군구가 연령 제한 조항을 두고 있고, 대도시보다 농어촌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원장보다는 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의 제한 연령이 낮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의 제한 연령이 55세에서 65세이고, 중소도시는 58세에서 65세까지로 65세 이상은 아직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없다.

〈표 IV-3-29〉 보육조례: 보육교직원(교사 및 기타 보육교직원)의 연령 제한 조항
단위: 시군구

구분	전체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5세
원장										
대도시	9	-	-	1	-	-	2	1	3	2
중소도시	19	-	-	-	1	-	7	3	-	2
농어촌	27	-	-	1	-	-	12	2	1	4
보육교직원										
대도시	7	1	1	3	1	-	1	-	-	-
중소도시	19	-	-	5	5	-	3	-	-	-
농어촌	27	-	-	13	3	-	1	-	1	2

자료: 시군구 보육관련 조례

〈표 IV-3-30〉 보육교직원 연령: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시군구							계(수)
	30세 미만	30~35세 미만	35~40세 미만	40~45세 미만	45~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원장	0.2	4.1	9.9	25.9	26.5	29.2	4.3	100.0(517)
보육교사	51.9	23.7	11.5	8.0	3.3	1.5	0.1	100.0(3,475)
취사부	1.2	0.8	2.7	15.2	32.9	42.4	4.8	100.0(66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표 IV-3-30>는 어린이집 조사에서 원장과 보육교사 및 취사부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이다. 원장은 60세 이상이 4.3%이고, 보육교사는 0.1%로 극소수이며 취사부는 원장과 비슷한 수준인 4.8%이다.

라. 위탁 심사절차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 심사절차를 조사한 결과, 신규위탁 시 서류심사가 있었다는 비율이 91.0%로 가장 많고, 발표 78.9%, 면접 72.9% 순이었다. 어린이집 현장관찰이 12.0%로 가장 낮는데, 이는 보육정책위원회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규모별 비율도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현장관찰 비율은 대도시가 22.4%로 10% 미만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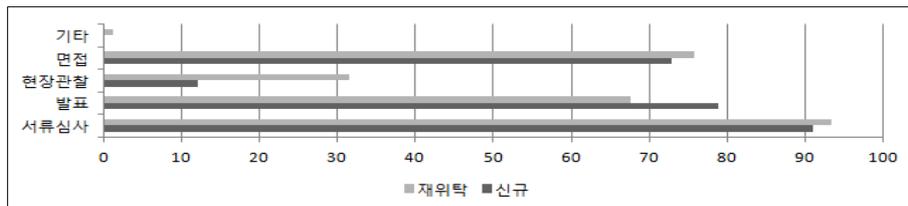
재위탁의 경우, 신규위탁보다 발표가 10%p 이상 줄어든 반면 현장관찰이 20%p 이상 늘어나 보육정책위원회의 객관적인 현장관찰을 통한 재위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현장관찰 비율이 40.6%로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많다. 읍면지역은 발표와 면접이 절반 정도인 51.5%, 55.9%로 주로 서류심사만으로 재위탁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31〉 위탁 심사절차: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신규					재위탁					
	서류 심사	발표	현장 관찰	면접	(수)	서류 심사	발표	현장 관찰	면접	기타	(수)
전체	91.0	78.9	12.0	72.9	(133)	93.5	67.6	31.5	75.8	1.1	(355)
지역규모											
대도시	93.9	75.5	22.4	69.4	(49)	93.0	67.4	40.6	82.4	0.5	(187)
중소도시	91.8	83.7	4.1	73.5	(49)	93.0	79.0	25.0	77.0	2.0	(100)
읍면	85.7	77.1	8.6	77.1	(35)	95.6	51.5	16.2	55.9	1.5	(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그림 IV-3-6] 위탁 심사절차

다음은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 심사절차 중 현장관찰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현장관찰이 실시되었다는 비율은 약 1/3인 29%였다.

현장관찰 시기는 1주일 전에 실시되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절반 정도였고, 다음으로 심사당일 26.6%, 한달 전 8.6% 순이다. 기타 응답으로 2주전이나 3주 전, 또는 2~3일 전 등에 현장 관찰을 실시하였다는 응답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현장관찰 실시비율은 대도시가 41.7%로 타 지역보다 많다. 현장 관찰시기는 1주일 전과 심사당일 순이며, 중소도시의 경우 한달 전에 실시했다는 비율이 18.5%로 타 지역보다 3배 정도 많다.

〈표 IV-3-32〉 위탁심사 시 현장관찰 실시 여부 및 시기: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실시 여부		현장관찰 시기				계(수)
	실시	계(수)	1주일 전	심사당일	한달전	기타	
전체	29.0	100.0(487)	53.2	26.6	8.6	11.5	100.0(139)
지역규모							
대도시	41.7	100.0(235)	53.1	29.2	6.3	11.5	100.0(96)
중소도시	18.1	100.0(149)	51.9	18.5	18.5	11.1	100.0(27)
읍면	15.5	100.0(103)	56.3	25.0	6.3	12.5	100.0(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38.4	100.0(112)	53.7	26.8	7.3	12.2	100.0(41)
종교법인	44.4	100.0(63)	53.6	28.6	10.7	7.1	100.0(28)
학교법인	23.8	100.0(21)	80.0	20.0	-	-	100.0(5)
단체	13.0	100.0(23)	33.3	-	-	66.7	100.0(3)
개인	22.4	100.0(205)	50.0	28.3	10.9	10.9	100.0(46)
기타	25.0	100.0(8)	50.0	-	-	50.0	100.0(2)
시군구직영	25.5	100.0(55)	57.1	28.6	7.1	7.1	100.0(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 심사절차 및 결과 등의 정보공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체 모집 공고는 절반 이상인 64% 정도가 공개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심의결과는 29.2%, 선정결과 45.3% 정도만 공개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모두 비공개라고 응답한 비율도 14.3%나 된다(표 IV-3-33 참조).

지역별로 보면, 위탁체 모집 공고나 위탁절차 및 방법은 중소도시가 70%대로 가장 많고, 심의결과는 대도시가 33.2%로 가장 많다. 선정결과 공개는 지역에 상관없이 40%대로 차이가 거의 없다. 모두 비공개도 10%대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위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특히, 심의결과나 선정결과 등의 정보 공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IV-3-33〉 위탁 심사절차 및 결과 공개 여부: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위탁체 모집공고	위탁절차 및 방법	심의 결과	선정 결과	모두 비공개	(수)
전체	64.0	64.4	29.2	45.3	14.3	(517)
지역규모						
대도시	59.1	64.8	33.2	43.7	15.8	(247)
중소도시	74.0	70.1	24.0	49.4	12.3	(154)
읍면	61.2	56.0	27.6	43.1	13.8	(1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마. 위탁체 기여

다음은 시군구 보육담당자 대상으로 신규위탁 시 위탁체에게 위탁금을 제시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표이다(표 IV-3-34 참조).

신규위탁 시 위탁금을 내지 않도록 한다는 비율이 81.6%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위탁금을 명시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을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는 10.9%, 신규위탁 신청 시 위탁금액을 명시하는 경우는 7.5% 소수이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위탁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율이 75%로 가장 낮다. 특히, 위탁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10%로 도시지역보다 많고, 위탁금을 명시하지 않지만 일정 금액을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경우는 15%로 타 지역보다 많다. 대도시도 위탁금을 명시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을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비율이 10.2%로 높다.

〈표 IV-3-34〉 신규위탁 시 위탁금 제시 여부: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위탁금액 명시	위탁금 명시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	위탁금 내지 않음	계(수)
전체	7.5	10.9	81.6	100.0(174)
대도시	8.5	10.2	81.4	100.0(59)
중소도시	3.6	7.3	89.1	100.0(55)
읍면지역	10.0	15.0	75.0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한편,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운영체의 기여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기여가 있었다는 비율이 30.8%로 시군구 조사보다 2배 정도 많다(표 IV-3-35 참조).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41.3%로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18.1%로 낮아 도시 지역일수록 기여 비율이 높다. 이는 시군구 조사와 반대의 결과이다.

위탁형태별로는 종교법인과 단체가 기여한다는 비율이 50%대로 많고 개인이나 시군구 직영이 10%대이다. 또한 정원규모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기여했다는 비율이 높다. 특히 100인 이상은 37.8%나 된다.

〈표 IV-3-35〉 위탁운영체 기여 여부 및 기여형태(복수응답):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기여 여부		기여 형태				
	기여	계(수)	건물	부지	위탁금	기능보강 일정금액 기여	(수)
전체	30.8	100.0(517)	3.9	4.3	15.0	7.4	(488)
지역규모							
대도시	41.3	100.0(247)	3.0	2.5	25.8	10.2	(236)
중소도시	23.4	100.0(154)	3.4	4.7	7.4	7.4	(149)
읍면	18.1	100.0(116)	6.8	7.8	1.0	4.9	(103)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40.7	100.0(118)	1.8	1.8	24.8	12.4	(113)
종교법인	56.3	100.0(64)	3.2	11.1	31.7	14.3	(63)
학교법인	42.9	100.0(21)	-	-	14.3	9.5	(21)
단체	52.2	100.0(23)	8.7	4.3	21.7	13.0	(23)
개인	17.0	100.0(206)	3.9	3.9	4.9	4.9	(205)
기타	44.4	100.0(9)			37.5	-	(8)
시군구직영	19.7	100.0(76)	9.1	5.5	7.3	3.6	(55)
정원							
39인 이하	14.1	100.0(85)	4.9	-	3.7	4.9	(81)
40~49인	33.8	100.0(71)	2.9	5.8	11.6	10.1	(69)
50~79인	35.3	100.0(167)	3.6	6.1	17.0	7.3	(165)
80~99인	29.5	100.0(112)	4.3	2.2	19.4	11.8	(93)
100인 이상	37.8	100.0(82)	3.8	6.3	20.0	7.5	(8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건물, 부지, 위탁금 등의 기여 형태를 살펴보면, 위탁금 기여가 15%로 가장 많고 건물이나 부지는 5%미만이다(표 IV-3-35 참조).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위탁금 기여 비율이 25.8%, 기능보강에 일정 금액 사용이 10.2%로 타 지역보다 많다. 읍면지역일수록 건물이나 부지 기여가 많고, 도시지역일수록 현금 기여 비율이 높다.

위탁형태별로 보면, 종교법인의 기여가 대체로 많다. 위탁금 기여는 31.7%이고, 부지 및 기능보강에 일정금액 사용이 10%대이다. 사회복지법인도 위탁금 기

여가 24.8%, 기능보장에 일정금액 사용 12.4%로 높은 편이다.

정원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위탁금 기여 비율이 높다. 100인 이상이 20%로 가장 많다. 기능보장에 일정금액 사용은 80~99인 11.8%, 40~49인이 10.1% 순이다. 건물이나 부지 기여는 전반적으로 5% 미만 수준이다.

위탁 시 건물이나 부지, 위탁금 등을 기여한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한 결과, 기여 금액 중 부지가 269,000천원, 건물 기여 174,800천원 순으로 많다. 위탁금 및 기능보장 기여는 10,000~20,000천원 정도이다.

지역 차는 없으나 읍면지역은 건물과 위탁금 기여 금액이 많고, 부지는 중소도시가 많다. 기능보장에 일정 금액 기여는 대도시가 많다.

<표 IV-3-36> 위탁운영체 기여금: 어린이집 조사

단위: 천원

구분	건물	부지	위탁금	기능보장 일정액 기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174,800(196,079)	269,000(285,480)	13,094(15,798)	20,893(36,544)
대도시	104,600(137,120)	300,000(433,012)	12,750(16,165)	22,459(42,773)
중소도시	225,000(247,487)	466,666(230,940)	14,600(14,990)	17,307(29,665)
읍면지역	265,000(332,340)	97,500(68,495)	18,000(-)	21,250(8,539)
F	0.5	1.7	0.1	0.1
(수)	(8)	(10)	(69)	(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다음은 어린이집 조사에서 부지 및 건물소유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3-37>과 같이, 과반수 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위탁자 또는 위탁체 소유가 5%, 주택공사가 6% 정도로 일부에서는 위탁 시 부지나 건물 기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가장 많다. 읍면지역과 대도시는 부지 및 건물 소유가 위탁체나 위탁자인 경우가 5.2%, 4.9%, 중소도시는 주택공사가 11.7%로 타 지역보다 많다.

위탁형태별로는 부지 및 건물 소유가 위탁체 또는 위탁자인 경우는 종교법인이 12.5%로 다른 위탁형태보다 많다. 시군구 직영인 경우도 위탁체 또는 위탁자가 소유하는 경우가 9.3% 정도 된다.

〈표 IV-3-37〉 부지 및 건물 소유형태: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체 또는 위탁자	주택공사	기타	계(수)	X ² (df)
전체	85.9	5.0	6.6	2.5	100.0(514)	
지역						
대도시	89.9	4.9	3.6	1.6	100.0(245)	15.6(6)*
중소도시	83.1	2.6	11.7	2.6	100.0(153)	
읍면지역	87.1	5.2	5.2	2.6	100.0(1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87.3	4.2	6.8	1.7	100.0(117)	-
종교법인	84.4	12.5	3.1	-	100.0(64)	
학교법인	95.2	4.8	-	-	100.0(20)	
단체	91.3	4.3	4.3	-	100.0(23)	
개인	85.0	1.9	8.7	4.4	100.0(205)	
기타	77.8	-	11.1	11.1	100.0(76)	
시군구직영	84.0	9.3	5.3	1.3	100.0(9)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어린이집 조사」 자료.

바. 위탁심사의 개선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심사 개선사항 1순위로 41.4%가 심의위원의 공정성을 꼽았다. 다음으로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28.0%, 심의위원 선정 23.0% 순이다. 심의절차나 심의결과 공개 등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는 5% 미만으로 낮다. 2순위로 심의위원 공정성과 심의위원 선정이 가장 많다.

〈표 IV-3-38〉 위탁심사 개선사항: 어린이집 조사(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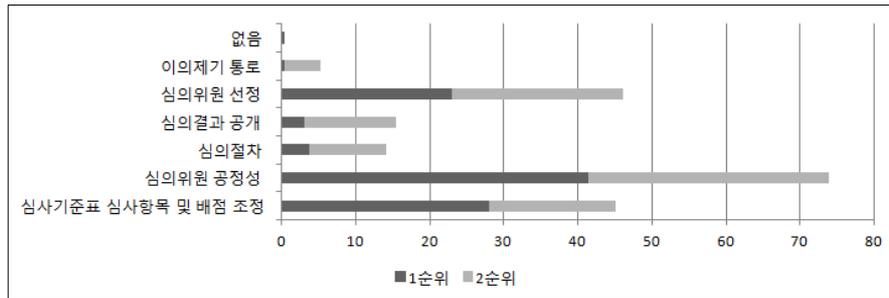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의위원 공정성	심의 절차	심의 결과 공개	심의위원 선정	이의 제기 통로	없음	계(수)
1순위	28.0	41.4	3.7	3.1	23.0	0.4	0.4	100.0(486)
2순위	17.1	32.4	10.4	12.3	23.1	4.8	-	100.0(463)
1+2순위	45.1	73.8	14.1	15.4	46.1	5.2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종합하면, 1순위와 동일하게 심의위원의 공정성이 73.8%로 가장 높고, 심의위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의 조정 순이다. 즉,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과정의 투명

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V-3-7] 위탁심사 개선사항

사. 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비용

중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위탁계약 시 계약내용을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이 삭제되어 법 개정 이후 위탁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대상 어린이집 대부분 법 개정 전 위탁운영권을 얻은 상태로 위탁계약 시 보증보험료 가입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IV-3-39>와 같이, 이행보증보험료는 평균 251만원 정도로 30만원 이하가 43.7%로 가장 많고, 50~70만원과 100만원 이상이 10%대이다. 보증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비율도 약 20% 가까이 된다.

지역별로도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30만원 이하는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15%p이상 많고, 100만원 이상은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9%p 정도 많다. 보증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일수록 많다.

위탁형태별로 보면, 30만원 미만은 30~50%대로 가장 많고 특히 보증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비율은 단체나 개인위탁이 20%로 높다.

보증보험료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원규모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39인 이하와 40~49인은 30만원 미만이 50%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100인 이상은 30만원 미만과 100만원 이상이 25.4%, 23.9% 순으로 많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 심층면담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구가 해당 지

역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증보험료를 대납해 주거나 지역 연합회에서 일괄 처리하여 개별 가입 시보다 보증보험료를 저렴하게 내는 경우도 있었다.

〈표 IV-3-39〉 위탁계약 시 보증보험료: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원

구분	30만원 미만	50~70 만원 미만	70~100 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없음	계(수)	평균
전체	43.7	14.8	9.8	12.8	18.9	100.0(439)	2,519,520.4
지역구분							
대도시	51.5	15.0	12.0	10.0	11.5	100.0(200)	3,221,648.7
중소도시	39.2	16.8	10.5	12.6	21.0	100.0(143)	890,107.7
읍면지역	34.4	11.5	4.2	18.8	31.3	100.0(96)	3,277,389.1
$X^2(df)/F$							2.5 [#]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44.3	10.3	17.5	11.3	16.5	100.0(97)	2,184,092.7
종교법인	40.0	14.5	14.5	14.5	16.4	100.0(55)	2,206,396.9
학교법인	38.9	16.7	11.1	16.7	16.7	100.0(18)	608,776.7
단체	55.0	15.0	5.0	5.0	20.0	100.0(20)	6,536,012.8
개인	44.3	16.0	6.2	12.9	20.6	100.0(194)	2,140,141.0
기타	50.0		12.5	12.5	25.0	100.0(8)	539,921.7
시군구직영	40.4	21.3	4.3	14.9	19.1	100.0(47)	4,238,387.6
$X^2(df)/F$							1.0
정원							
39인 이하	58.4	11.7	6.5	6.5	16.9	100.0(77)	1,566,257.9 ^{ab}
40~49인	56.7	13.3	3.3	5.0	21.7	100.0(60)	2,148,466.7 ^{ab}
50~80인	43.2	14.9	10.8	11.5	19.6	100.0(148)	1,248,084.1 ^b
81~99인	37.3	18.1	10.8	16.9	16.9	100.0(83)	3,725,173.5 ^{ab}
100인 이상	25.4	15.5	15.5	23.9	19.7	100.0(71)	4,890,389.2 ^a
$X^2(df)/F$							2.0 [#]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아. 재위탁 탈락 및 유지

앞서 살펴본 재위탁 횟수에서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재위탁 1회를 보육조례로 정하고 있고 조사 대상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단독 평가 후 재위탁 받았다고 응답하여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탁체나 위탁자가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현황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시군구 중 16.1%가 탈락한 위탁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일수록 탈락되는 시군구가 많다. 대도시가 25.4%인데 반해 읍면지역은 5%로 대도시가 5배나 많다.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개경쟁으로 선정 점수가 차점이 되어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운영자의 민원 제기, 행정처분 등의 공신력의 문제나 운영관리 소홀, 위탁심사 점수 저조 등을 들었다. 이 외에도 타 시군 이종 신청, 정치적인 고려사항 등의 이유가 소수 있었다.

반대로 재위탁이 유지되는 운영체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참여 시군구 중 79.3%가 재위탁이 유지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91.5%로 읍면지역 63.3%보다 30%p정도 많다. 대도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읍면지역보다 많아 재위탁이 탈락되거나 유지되는 등 위탁체 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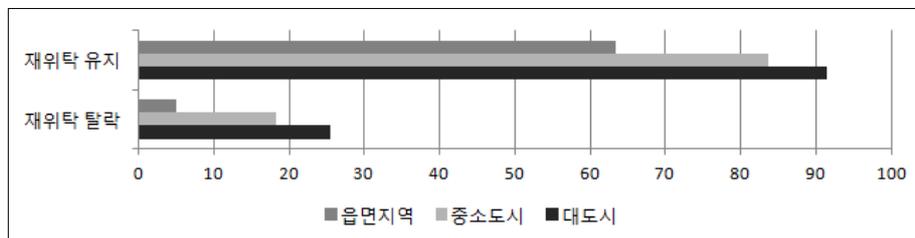
반대로 재위탁이 유지되는 위탁체들의 공통점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재위탁 심사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가 다음이었다. 이 외에도 운영기간 중 민원발생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표 IV-3-40〉 재위탁 탈락 및 유지: 시군구 조사

단위: %(시군구)

구분	재위탁 탈락			재위탁 유지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6.1	83.9	100.0(174)	79.3	20.7	100.0(174)
대도시	25.4	74.6	100.0(59)	91.5	8.5	100.0(59)
중소도시	18.2	81.8	100.0(55)	83.6	16.4	100.0(55)
읍면지역	5.0	95.0	100.0(60)	63.3	36.7	100.0(6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 자료.



[그림 IV-3-8] 재위탁 탈락 및 유지율

4. 소결

지방자치단체 보육조례와 제도 및 어린이집, 시군구 보육담당자, 보육정보센터장 대상으로 조사한 위탁운영 실태 및 요구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시군구가 직영하는 방법과 현재 위탁체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는 개인위탁이 42.2%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순으로 많았다.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개인위탁이 많았다. 특히 읍면지역은 시군구 직영 비율이 17.6%로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개인위탁이 39.8%로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시군구 직영 순이었다.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바람직한 위탁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이 36.2%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탁 23%, 시군구 직영 20.1%로 순이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사회복지법인을 가장 바람직한 위탁체로 꼽았고,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탁기간 5년으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의견조사를 통해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시군구 조사에서 실제 신규위탁 기간은 3년이 70.5%로 많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은 23.1%였다. 도시지역은 읍면지역보다 위탁기간 5년이 더 많았다. 재위탁 기간은 3년이 68.8%로 가장 많았고, 5년은 21.4%로 신규위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현 위탁 계약기간은 3년이 88.5%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5% 미만 수준이었다.

셋째, 위탁체나 운영자가 최대 위탁받을 수 있는 위탁횟수 제한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위탁 횟수는 평균 3회로 1~2회가 50% 이상으로 많고, 3회 15.4%, 6회 이상 15% 정도였다. 대도시가 평균 3.6회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평균 2.5회로 비슷한 수준이다. 대도시는 6회 이상 비율이 가장 많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1~2회가 가장 많다. 위탁형태는 종교법인이 평균 3.9회, 개인위탁 2.6회이고,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은 6회 이상이 23%대로 가장 많다. 위탁체나 위탁자의 총 운영기간은 평균 8.3년으로 1~5년이 41.4%로 가장 많고, 6~10년 20.1%, 11~15년과 16~20년이 각각 14.5%, 11.7%였다. 대도시는 16~20년이 18.6%로 다른 지역보다 4배 정도 많았고, 읍면지역은 1년 미만이 10.7% 정도였다.

넷째, 재위탁 방법을 단독 평가 후 재위탁이나 완전 공개경쟁, 공개경쟁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최초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80.9%로 가장 많았다. 지역이나 위탁형태별로도 공개경쟁이 가장 많았다. 시군구 조사에서 단독 평가 후 재위탁이 62.6%로 가장 많고, 완전 공개경쟁도 20.7%였다.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나 자동 재위탁, 기타 방법은 10% 미만이었다. 대도시일수록 단독 평가후 재위탁 비율이 높았다.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에 대해 단독 평가 후 재위탁과 공개경쟁 가산점 부여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완전 공개경쟁도 25.3% 정도로 많았다.

다섯째,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자격조건 마련 및 구성 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선정심사위원별 구성 비율은 보육·유아교육학과 교수가 20%, 부모대표가 19.3%로 많았다.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위탁 선정심사위원 자격조건으로 공정성이 54%로 많고,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도 33.3%, 수요자의 요구 반영이나 지역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10.9%, 1.1% 순이었다. 도시지역은 심사위원으로서의 공정성이 50% 이상이고, 읍면지역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40% 이상으로 많았다. 한편, 원장들은 위탁심의위원 자격 조건으로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47.1%로 많았고, 공정성 39.8%, 정치적 중립성 8.6% 순이었다.

여섯째,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적용 제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위탁 심사 시 적용하는 심사기준으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가 신규·변경위탁 85.6%, 재위탁 82.2%로 많았다. 신규·변경 위탁은 도시지역일수록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고, 지방 보육조례 관련 기준이나 지자체 자체 기준표는 읍면일수록 적용비율이 높았다. 재위탁도 신규·변경위탁과 동일하게 도시일수록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신규·변경위탁 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이 77.4%, 재위탁 시에도 78.9%로 많았다. 읍면지역은 재위탁 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적용 비율이 38.2%로 많았다.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의무 적용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시군구 보육담당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7.5%, 보육정보센터장은 68.9%, 어린이집 원장은 57.4%로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일곱째, 위탁체 선정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신규·변경위탁 심사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는 5점 평균 3.8점이었고, 보육정보센터장은 평균 4.2점이었다. 재위탁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시군구 담당자 평균 3.9점, 보육정보센터장 평균 4.3점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심사항목 중 재정능력의 적절성이 가장 낮았다. 배점의 적절성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규·변경위탁에서 시군구 담당자는 평균 3.6점, 보육정보센터장 평균 3.8점이었고, 재위탁은 시군구 담당자가 평균 3.7점, 보육정보센터장 평균 3.9점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점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규위탁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점수 배점을 줄이고, 운영체 시설운영 실적과 재정능력은 배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덟째, 위탁 심사자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조사에서 신규·변경위탁 시 추가 자료를 받는 비율은 55.2%, 재위탁은 54%였다. 신규·변경위탁과 재위탁 모두 도시지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았다. 추가 심사자료는 신규위탁 시 지역사회 기여 40.8%, 평가인증 결과가 37.4%였고, 재위탁 시에도 지역사회 기여가 39.1%, 평가인증 결과 37.4%로 많았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 시 추가 자료 제출 비율은 61.1%로 절반 이상이었다. 읍면지역이 추가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추가 제출자료는 지역사회 기여가 32.1%로 많고, 재직교사 근속년수와 평가인증결과가 29%였다. 읍면지역이 재직교사 근속년수 42.9%, 평가인증 결과 증빙자료 34.3%로 도시지역보다 많았다.

아홉째, 객관적인 위탁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관찰 의무화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신규위탁 시 서류심사는 91.0%, 발표 78.9%, 면접 72.9% 순으로 많았다. 어린이집 현장관찰은 12.0%로 가장 낮았다. 현장관찰은 대도시가 22.4%로 많았다. 재위탁 시 발표는 신규위탁보다 10%p 이상 줄어든 반면 현장관찰은 20%p 이상 높았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의 현장관찰 비율이 40.6%로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위탁심사 시 현장관찰이 실시되었다는 응답은 29.0% 정도였다. 현장관찰 시기는 1주일 전과 심사당일 순서로 많았다. 현장관찰 실시율은 대도시가 41.7%로 타 지역보다 많았다.

열번째, 위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탁 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심의결과 등을 공개하는 위탁운영 관련 공시 제도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체 모집 공고는 조사대상 어린이집 중 64% 정도가 공개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심의결과 29.2%, 선정결과 45.3%였다. 비공개는 14.3%였다. 위탁체 모집공고나 위탁절차 및 방법은 중소도시가 70%로 많고, 심의결과는 대도시가 33.2%, 선정결과 공개는 지역에 상관없이 40% 정도이다. 모두 비공개도 10%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다.

V.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제5장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건축년도, 건물형태, 정원, 운영시간 등의 일반사항을 살펴보고, 취약보육, 원아관리, 보육프로그램, 평가인증 및 운영위원회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와 재정운영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어린이집 특성

가. 일반 사항

1) 건축년도

어린이집 조사에 참여한 517개 어린이집의 건축년도를 조사한 결과, 1990년 이전에 건축한 어린이집이 19.6%, 1991~1995년이 19.1%로 건축한 지 20년 내외의 어린이집이 40%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표 V-1-1〉 어린이집 건축년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1990년 이전	1991- 1995	1996- 2000	2001- 2005	2006- 2008	2009~2012					계(수)
						2009	2010	2011	2012	소계	
전체	19.6	19.1	14.7	12.2	18.1	4.5	6.3	4.5	1.0	16.3	
지역											100.0(243)
대도시	26.3	27.6	14.8	12.8	9.1	2.5	2.9	2.9	1.2	9.5	100.0(152)
중소도시	13.8	13.2	14.5	9.9	26.3	7.2	9.2	5.9	-	22.3	100.0(114)
읍면	13.2	8.8	14.9	14.0	26.3	5.3	9.6	6.1	1.8	22.8	
정원											
39인 이하	9.5	9.5	10.7	7.1	34.5	7.1	15.5	6.0	-	28.6	100.0(84)
40~49인	12.7	19.7	12.7	15.5	16.9	2.8	7.0	9.9	2.8	22.5	100.0(71)
50~79인	23.6	15.5	21.1	9.9	16.1	4.3	5.0	3.7	0.6	13.6	100.0(161)
80~99인	22.5	23.4	9.0	16.2	18.0	3.6	2.7	3.6	0.9	10.8	100.0(111)
100인 이상	24.4	29.3	15.9	13.4	6.1	4.9	3.7	1.2	1.2	11.0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어린이집 건물이 1990년 이전과 1991~1995년에 건축한 비율이 20%대로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많다. 반면에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어린이집은 읍면지역이 많다. 이는 최근 농어촌이나 저소득밀집지역 중심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건축년도는 건물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 이상을 보내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오래된 어린이집의 재건축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원별로는 49인 이하는 늘어나는 추세이나 50인 이상은 어린이집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39인 이하는 2005년까지 10% 이하였으나 2006년 34.5%로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 건물형태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건물형태는 단독건물이 6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복합건물이 20%이고 아파트 관리동과 아파트가 5~10% 정도이다.

〈표 V-1-2〉 건물형태: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계(수)
	단독건물	아파트	아파트관리동	공공시설복합건물	기타	
전체	62.2	5.0	11.0	20.0	1.7	100.0(516)
지역규모						
대도시	64.6	5.7	7.3	21.1	1.2	100.0(246)
중소도시	54.5	3.9	17.5	22.1	1.9	100.0(154)
읍면	67.2	5.2	10.3	14.7	2.6	100.0(116)
$X^2(df)$			14.8(8) [#]			
정원						
39인 이하	26.2	20.2	35.7	15.5	2.4	100.0(84)
40~49인	38.0	7.0	15.5	38.0	1.4	100.0(71)
50~79인	70.7	1.2	6.0	20.4	1.8	100.0(167)
80~99인	75.9	0.9	3.6	18.8	0.9	100.0(112)
100인 이상	84.1	1.2	2.4	9.8	2.4	100.0(82)
$X^2(df)$			-			
2009년 조사 ¹⁾	67.7	3.5	-	23.5	5.1	100.0(316)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1) 유희정 외(2009). 전국 보육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년 보육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아파트 관리동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아파트 관리동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표 V-1-2 참조).

지역별로는 단독건물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10% 이상 많다. 공공시설 복합건물은 도시지역이 20%대로 읍면지역보다 많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공공시설 인프라가 많아 공공시설 복합건물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원별로 보면, 정원이 많을수록 건물형태가 단독건물인 경우가 많고 아파트와 아파트 관리동은 39인 이하가 20~30%이고, 공공시설 복합건물은 중간 규모의 40~49인이나 50~79인 이하 어린이집이 많다.

3) 정원

어린이집 전체 평균 정원은 40.9명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74.3명이다. 민간개인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10명 정도 적은 62.1명, 가정어린이집은 17.7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민간부문 어린이집보다 많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전체 평균 47.8명으로 대도시 42.3명, 중소도시 37.3명보다 많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도시일수록 규모가 커지는데 대도시가 80.1명, 읍면이 62.5명으로 20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반면에 민간개인어린이집은 읍면지역의 정원이 더 많고, 가정어린이집은 평균 17명으로 지역차가 없다.

〈표 V-1-3〉 어린이집 정원: 2012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민간개인	법인외	가정	직장	단위: 명
								부모협동
전체	40.9	74.3	97.9	62.1	71.3	17.7	73.2	31.0
대도시	42.3	80.1	103.8	59.7	61.3	17.9	70.4	34.0
중소도시	37.3	74.2	95.8	62.2	86.9	17.6	75.8	28.2
읍면	47.8	62.5	95.5	67.1	70.4	17.5	78.2	30.9

자료: 보건복지부(2012). 전국 어린이집 운영 자료(2012. 4월말 기준).

나. 운영시간

1) 평일 운영시간

가) 보육 시작시간

어린이집 평일 보육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 어린이집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의 문 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정규 보육업무 시작시간인 오전 7시 30분 전에 어린이집 문을 여는 비율은 81.2%로 대부분 시작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가 16.6%로 95% 이상이 8시 이전에 보육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표 V-1-4 참조).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80~90%가 오전 7시 30분 이전에 보육업무를 시작하지만 읍면지역은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시작하는 어린이집이 51.7%, 7시 30분에서 8시 사이가 44.0%로 도시보다 늦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이용 영유아의 등원시간에 따라 보육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보육 시작시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규모별로는 대부분 보육업무 시작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나 영아 보육을 주로 하는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7시 31분에서 8시 사이가 23.5%로 40인 이상보다 다소 많다. 이는 영아가 유아보다 등원시간이 이르고, 하원시간이 늦은 것으로 조사된 서문희·양미선(2011)의 연구와 대조적인 결과이다. 2012년 시작한 0~2세 무상보육으로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이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V-1-4〉 평일 보육 시작시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지역구분			정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9인 이하	40~49인	50~79인	80~99인	100인 이상	
7:30까지	92.3	85.7	51.7	71.8	78.9	82.0	82.1	90.2	81.2
7:31~8:00	6.5	12.3	44.0	23.5	19.7	16.2	16.1	8.5	16.6
8:00 이후	1.2	1.9	4.3	4.7	1.4	1.8	1.8	1.2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47)	(154)	(116)	(85)	(71)	(167)	(112)	(82)	(5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나) 보육 종료시간

한편, 보육업무 종료시간인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은 오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가 43.3%로 가장 많다. 오후 10시 이후가 약 10% 정도 되는데, 시간연장보

육 운영 어린이집 증가로 보육 종료시간이 늦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부분 오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보육업무를 종료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오후 8시에서 10시 사이에 30~40%가 어린이집 문을 닫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정규시간보다 이른 오후 6시 30분 이전이 19%, 6시 30분에서 7시 사이가 16.4%로 도시보다 이른 편이다. 읍면지역 70% 이상이 정규시간 이전에 보육 업무를 끝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문화·양미선(2011)의 보육시설 이용시간 연구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광역시나 중소도시보다 오후 5시 이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10% 정도 많았다. 즉, 읍면지역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이른 하원으로 보육 종료시간이 정규시간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정원별로도 전체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39인 이하 어린이집의 종료시간은 오후 6시 30분 이전이 12.9%로 40인 이상 어린이집보다 2배 이상 많다. 반면, 오후 10시 이후는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다. 이 또한 0~2세 무상보육으로 미취업모 자녀가 정규 보육시간보다 일찍 하원함에 따라 어린이집 종료시간이 빨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5〉 평일 보육 종료시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지역구분			정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9인 이하	40~49인	50~79인	80~99인	100인 이상	
18:30까지	2.0	2.6	19.0	12.9	7.0	4.8	4.5	2.4	6.0
18:31~19:00	2.4	9.1	16.4	9.4	8.5	8.4	7.14	3.7	7.5
19:01~19:30	49.8	37.0	37.9	45.9	38.0	50.3	38.4	37.8	43.3
19:31~20:30	2.4	1.9	-	-	-	3.6	0.9	2.4	1.7
20:31~21:30	16.6	26.0	11.2	17.6	21.1	13.2	20.5	23.2	18.2
21:31~22:00	15.0	14.9	7.8	12.9	14.1	10.2	16.1	15.9	13.3
22:01~22:30	6.5	2.6	5.2	-	5.6	4.8	7.1	7.3	5.0
22:31 이후	5.3	5.8	2.6	1.2	5.6	4.8	5.4	7.3	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47)	(154)	(116)	(85)	(71)	(167)	(112)	(82)	(5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다) 운영시간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평일 총 운영시간은 평균 12시간 51분으로 기준 보육

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1-6 참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의 국공립어린이집 평일 운영시간이 평균 11시간 36분으로 운영시간이 4년 전보다 1시간 이상 길어졌다.

운영시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11~12시간이 46.6%로 가장 많고 13~14시간 18.6%, 14~15시간 18% 순이다. 2009년 조사에서 10시간까지 16.3%, 13시간 이상은 15% 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확연히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와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평균 13시간 6분으로 동일하고, 읍면지역은 12시간 6분으로 짧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2009년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자료와 비교하면, 지역 및 정원별로도 운영시간이 전반적으로 1시간 정도 길어진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1-6〉 지역 및 정원별 운영시간(평일):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전체	2009년 조사 ¹⁾	지역규모			정원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39인 이하	40~49 인	50~79 인	80~99 인	100인 이상
10시간 까지	2.5	16.3	1.2	1.9	6.0	7.1	1.4	2.4	0.9	1.2
10~11시간	7.5	8.4	1.6	3.9	25.0	10.6	12.7	6.6	7.1	2.4
11~12시간	46.6	61.2	50.6	43.5	42.2	49.4	38.0	55.1	42.0	40.2
12~13시간	1.9	1.5	3.2	1.3	-	1.2	1.4	3.0	0.9	2.4
13~14시간	18.6	5.7	17.0	26.6	11.2	17.6	22.5	13.2	20.5	24.4
14~15시간	18.0	4.2	21.1	16.9	12.9	12.9	18.3	15.0	23.2	22.0
15시간 이상	4.8	2.3	5.3	5.8	2.6	1.2	5.6	4.8	5.4	7.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17)	(262)	(247)	(154)	(116)	(85)	(71)	(167)	(112)	(82)
평균	12시간 51분	11시간 36분	13시간 6분 ^a	13시간 6분 ^a	12시간 6분 ^b	12시간 21분 ^c	12시간 57분 ^{ab}	12시간 42분 ^{bc}	13시간 5분 ^{ab}	13시간 18분 ^a
표준편차	1시간 32분	2시간 1분	1시간 29분	1시간 26분	1시간 35분	1시간 32분	1시간 35분	1시간 19분	1시간 32분	1시간 29분
F				16.7 ^{***}				5.3 ^{***}		
2009년 조사 ¹⁾	-	-	12시간 15분	11시간 41분	10시간 54분	11시간 30분	11시간 36분	11시간 54분	12시간 12분	12시간 1분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1) 유희정 외(2009). 전국 보육보육실태조사 국공립보육시설 자료 재분석. 보건복지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운영시간대별로 보면, 11~12시간이 40~50%대로 가장 많고, 다음이 13~14시간과 13~14시간이 10~20%대로 많다. 특히, 읍면지역은 10~11시간이 25%로 도시보다 월등히 많다. 이는 읍면지역이 도시보다 보육 시작시간이 늦고 종료시간이 이르기 때문이다.

정원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100인 이상, 81~99인과 39인 이하가 1시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운영시간대별로 보면,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10시간 미만이 7.1%로 40인 이상보다 3배 이상 많다. 또한 39인 이하와 40~49인 어린이집은 10~11시간이 10%대로 50인 이상 어린이집보다 많다.

2) 시간연장보육 운영시간

기준 보육시간 이후 시간인 오후 7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보육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7>와 같이, 오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가 41.1%로 많고, 다음은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이 32.1%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오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와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가 각각 34.2%로 과반수 이상이 오후 9시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어린이집 문을 닫고 있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오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가 50.6%, 41.9%로 많다.

<표 V-1-7> 지역 및 정원별 시간연장보육 종료시간(평일):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지역			정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9인 이하	40~49인	50~79인	80~99인	100인 이상	
21:00까지	6.1	2.5	-	-	2.9	6.7	3.5	4.4	4.0
21:01~21:30	34.2	50.6	41.9	53.6	41.2	36.7	40.4	40.0	41.1
21:31~22:00	-	-	-	-	-	-	-	-	-
22:01~22:30	34.2	30.4	29.0	42.9	38.2	28.3	29.8	28.9	32.1
22:31이후	25.4	16.5	29.0	3.6	17.6	28.3	26.3	26.7	2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14)	(79)	(31)	(28)	(34)	(60)	(57)	(45)	(2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정원별로 보면, 39인 이하는 대부분 오후 10시 30분에 보육업무를 종료하고

있지만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과 10시 31분 이후가 50% 이상을 차지하여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더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3) 토요일 보육 운영시간

가) 운영 횟수

토요일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81.8%로 2009년 보육실태조사의 국공립어린이집 96.9%보다 10%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주5일제 확대에 따른 토요일 보육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월 평균 토요일 보육 운영 횟수는 3.1회이다. 대도시 평균 3.2회, 중소도시 3.1회로 읍면지역 2.7회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정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보육아동이 많은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 3.5회이고, 39인 이하는 평균 2.8회로 차이가 난다.

지역규모나 정원에 상관없이 4회 이상이 60~80%대를 차지한다. 즉, 절반 이상이 매주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1-8〉 토요일 보육 운영 횟수: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회

구분	미운영	운영					소계	계(수)	평균
		1	2	3	4회 이상				
전체	18.2	2.9	5.4	1.4	72.1	81.8	100.0(517)	3.1	
지역규모									
대도시	14.6	4.0	3.6	1.6	76.1	85.3	100.0(247)	3.2 ^a	
중소도시	16.9	1.9	7.1	1.3	72.7	83.0	100.0(154)	3.1 ^a	
읍면지역	27.6	1.7	6.9	0.9	62.9	72.4	100.0(116)	2.7 ^b	
$X^2(df)/F$				-				4.4 [*]	
정원									
39인 이하	22.4	4.7	5.9	1.2	65.9	77.7	100.0(85)	2.8	
40~49인	15.5	-	9.9	2.8	71.8	84.5	100.0(71)	3.2	
50~79인	21.3	2.8	3.9	0.6	71.3	78.6	100.0(178)	3.0	
80~99인	17.8	4.0	6.9	-	71.3	82.2	100.0(101)	3.0	
100인 이상	9.8	2.4	2.4	3.7	81.7	90.2	100.0(8)	3.5	
$X^2(df)/F$				-				1.9	

* $p < .05$,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나) 보육 시작시간

<표 V-1-9>는 토요일보육 운영 어린이집의 보육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분석한 결과이다.

토요일보육 시작시간은 오전 7시 30분 이전이 72.1%로 가장 많다. 평일 보육 시작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일수록 7시 30분 이전에 시작하는 비율이 높다. 대도시가 80.8%로 많고, 읍면지역은 30%p 이상 적은 46.5%이다. 반면에 읍면지역은 30분 늦은 7시 31분에서 8시 사이가 41.9%로 10%대의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8시 이후는 큰 차이가 없다.

정원별로는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오전 7시 30분까지 토요일보육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다. 39인 이하는 오전 7시 30분 이후 시간대가 각각 10%대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낸다.

<표 V-1-9> 토요일보육 시작시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지역규모			정원					전체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지역	39인 이하	40~49인	50~79인	80~99인	100인 이상	
7:30까지	80.8	74.4	46.5	62.1	70.0	72.9	72.6	80.8	72.1
7:31~8:00	10.5	14.3	41.9	15.2	23.3	17.1	21.2	12.8	17.8
8:01~8:30	4.1	4.5	4.7	10.6	1.7	2.9	5.3	2.6	4.3
8:31 이후	4.6	6.8	7.0	12.1	5.0	7.1	1.1	3.8	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9)	(133)	(86)	(66)	(60)	(140)	(95)	(78)	(438)
X ² (df)	46.7(6) ^{***}			-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다) 보육 종료시간

반면에 토요일보육 종료시간은 오후 2시 31분에서 3시 30분 사이가 6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90% 정도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토요일보육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오후 2시 31분에서 3시 30분 사이가 가장 많으며 특히 대도시 일수록 비율이 높다. 반대로 오후 1시 30분 이전은 읍면지역이 34.9%로 도시지역보다 2~3배 정도 많다. 정원별로도 전체 비율과 동일하게 오후 2시 31분에서 3시 30분 사이가 가장 높다. 특히 39인 이하는 오후 1시 30분 이전에 보육업무

를 마치는 비율이 20% 대로 40인 이상 보다 많다.

〈표 V-1-10〉 토요일보육 종료시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지역			정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9인 이하	40~49인	50~79인	80~99인	100인 이상	
13:30까지	7.3	15.8	34.9	22.7	13.3	11.4	17.9	14.1	15.3
13:31~14:30	5.5	8.3	17.4	4.5	3.3	10.0	10.5	11.5	8.7
14:31~15:30	76.4	62.4	44.2	59.1	70.0	70.7	67.4	57.7	65.8
15:30~17:30	4.5	6.0	3.5	7.6	5.0	2.9	1.1	10.3	4.8
17:31이후	6.4	7.5	-	6.1	8.3	5.0	3.2	6.4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20)	(133)	(86)	(66)	(60)	(140)	(95)	(78)	(439)
X ² (df)	58.1(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라) 운영시간

토요일보육 운영시간은 평균 7시간 33분으로 2009년 보육실태조사의 국공립어린이집 토요일보육 운영시간 7시간 16분보다 20여분 정도 길어졌다.

〈표 V-1-11〉 토요일보육 운영시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지역			정원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9인 이하	40~49인	50~80인	81~99인	100인 이상	
5시간 미만	3.7	9.8	21.8	18.2	8.3	8.6	6.3	6.4	9.1
5~6시간	6.4	13.5	23.0	10.6	6.7	10.0	18.9	11.5	11.8
6~7시간	8.7	7.5	14.9	6.1	10.0	8.6	10.5	12.8	9.6
7~8시간	70.3	55.6	35.6	51.5	61.7	64.3	60.0	52.6	59.0
8시간 이상	11.0	13.5	4.6	13.6	13.3	8.6	4.2	16.7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19)	(133)	(87)	(66)	(60)	(140)	(95)	(78)	(439)
X ² (df)	58.2(8) ^{***}			25.3(16) [#]					
평균	7시간 54분 ^a	7시간 36분 ^a	6시간 37분 ^b	7시간 22분	7시간 42분	7시간 34분	7시간 20분	7시간 51분	7시간 33분
표준편차	1시간 30분	1시간 42분	1시간 38분	2시간 4분	1시간 29분	1시간 18분	1시간 19분	2시간 2분	1시간 40분
F	20.3 ^{***}			1.4					

[#] $p < 0.1$, ^{***} $p < .0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7시간 54분, 7시간 36분으로 6시간 37분의 읍면지역과 1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운영시간 구간별로는 7~8시간이 가장 많으나 도시일수록 비율이 높다. 5시간 미만과 5~6시간은 읍면지역이 20%대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정원규모별로도 전체 비율과 동일하게 7~8시간이 가장 많지만, 39인 이하는 6시간 이하가 30% 정도로 40인 이상 어린이집보다 높은 편이다.

2. 취약보육

가. 취약보육 운영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2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 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는 취약보육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공립어린이 집의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취약보육서비스가 타 보육서비스보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보육 실현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 V-2-1>는 전국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표 V-2-1> 어린이집 유형별 취약보육 운영 현황: 2012년 4월

단위: 개소

구분	영아 전담	장애 아전 담	장애 아통 합	방과 후전 담	방과 후통 합	시간 연장	휴일 보육	24시 간	다문 화	전체
전체	1.6	0.4	2.0	0.4	0.7	19.4	0.6	0.7	36.7	(40,709)
가정	0.3	-	0.1	-	0.1	16.8	0.1	0.4	23.0	(21,377)
국공립	2.6	1.6	23.4	1.4	2.8	51.7	4.5	2.5	61.0	(2,160)
민간개인	2.0	0.2	1.4	0.3	0.8	17.8	0.4	0.7	50.6	(14,258)
법인	15.2	6.9	3.1	1.0	4.0	25.3	2.8	1.0	62.2	(1,449)
법인외	2.4	0.8	4.7	9.0	3.2	20.9	1.6	0.3	52.0	(877)
부모협동	-	-	1.0	-	1.0	3.8	-	-	3.8	(104)
직장	-	-	0.4	-	0.8	17.4	1.2	1.2	18.8	(484)

자료: 보건복지부(2012). 전국어린이집 운영 자료(2012년 4월 말 기준).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제공하는 취약보육은 시간연장보육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19.4%가 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보육을 제외한 영아전담, 장애아보육, 휴일보육 등의 취약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 미만이다(표 V-2-1 참조).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이나 법인어린이집이 취약보육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보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신나리 외, 2009).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 운영 비율은 51.7%로 절반 이상이며 전체 평균 19.4%의 2배가 넘는다. 장애아 통합, 휴일보육, 24시간 보육도 마찬가지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어린이집과 보육서비스의 차별화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는 취약보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음 <표 V-2-2>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 중 운영이 비교적 쉬운 다문화보육이나 시간연장보육에 편중되어 운영하고 있고, 그 비율이 61%,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장애통합도 23.4% 정도이나 나머지는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표 V-2-2> 국공립어린이집 취약보육 실시 여부: 2012

단위: %(개소)

구분	영아 전담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시간 연장	휴일 보육	24시간	다문화 보육	계(수)
전체	2.6	1.6	23.4	1.4	2.8	51.7	4.5	2.5	61.0	100.0(2,160)
지역										
대도시	3.2	1.4	28.5	2.9	4.8	56.3	5.5	4.0	57.3	100.0(1,020)
중소도시	3.2	2.2	25.5	-	1.1	54.1	2.6	0.9	59.4	100.0(651)
읍면	0.6	1.2	10.0	-	1.0	39.1	5.1	1.2	71.0	100.0(489)
정원										
39인 이하	3.5	4.9	2.0	4.9	-	38.4	0.6	1.7	45.3	100.0(344)
40~49인	8.7	3.5	10.0	2.8	-	49.8	4.2	2.8	56.4	100.0(289)
50~79인	2.2	1.0	21.8	0.7	1.9	49.4	5.5	1.7	63.4	100.0(696)
80~99인	1.0	-	34.2	-	2.7	58.7	5.2	3.1	65.4	100.0(482)
100인 이상	-	-	43.8	-	10.0	61.3	6.0	3.4	69.6	100.0(349)

자료: 보건복지부(2012). 전국어린이집 운영 통계자료(2012년 4월 말 기준).

지역별로 보면, 다문화보육은 읍면지역이 가장 많고 장애아 통합보육과 시간연장보육은 도시지역이 많다. 특히, 도시지역 절반 이상이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휴일보육은 대도시와 읍면지역 중소도시보다 많다.

정원별로는 전반적으로 정원이 많을수록 취약보육 실시 비율이 높아지는 경

향을 보인다. 시간연장보육은 100인 이상이 61.3%인 반면, 39인 이하는 38.4%로 20% 이상 차이가 난다. 장애아 통합은 100인 이상이 43.8%로 절반 가까이 실시하고 있지만, 39인 이하는 2%로 저조하다.

나. 취약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에서 영아보육과 시간연장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등의 실시 이유를 조사하였다.

영아보육은 위탁조건이 30.9%로 많고, 학부모 요청이나 원장의 보육철학이 20%대를 차지한다(표 V-2-3 참조). 지역별로는 도시일수록 위탁이나 재위탁 조건 때문에 영아보육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보다 학부모 요청이 많다(부표 V-2-1 참조).

시간연장보육은 학부모 요청이 40.4%로 절반 가까이 되고, 위탁 및 재위탁 조건, 지자체 요청도 20%대를 차지한다. 특히, 시간연장보육은 도시일수록 지자체 요청에 따라 실시한다는 비율이 높고, 읍면지역은 학부모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부표 V-2-2 참조).

장애아 보육은 원장의 보육철학이 41.4%로 많으며, 위탁 및 재위탁 조건이나 지자체 요청, 학부모 요청 등은 10% 대이다. 원장의 보육철학은 읍면지역일수록 응답 비율이 높다(부표 V-2-3 참조).

마지막으로 다문화 보육은 학부모 요청이 43.9%로 많고, 다음은 원장의 보육철학이 31.1%로 많다. 위탁 및 재위탁 조건과 학부모 요청은 읍면지역일수록 많은 편이다(부표 V-2-4 참조).

〈표 V-2-3〉 취약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위탁/재위탁 조건	지자체 요청	학부모 요청	원장의 보육 철학	인건비 지원	장애전담, 통합시설 지정	지역 특성	기타	계(수)
영아보육	30.9	13.6	28.7	23.2	-	-	-	3.6	100.0(501)
시간연장	20.4	23.5	40.4	14.3	-	-	-	1.3	100.0(230)
장애아보육	17.2	18.6	19.3	41.4	-	3.4	-	-	100.0(145)
다문화	12.9	10.4	43.9	31.1	1.1	-	0.7	-	100.0(28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다. 취약보육 활성화 위한 추가 지원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을 살펴본 결과는 <표 V-2-4>와 같다. 취약보육 대부분 추가 인력의 인건비 지원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먼저, 영아보육은 인건비 추가지원이 30.2%로 많고,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응답비율이 더 높다(부표 V-2-4 참조).

시간연장보육은 인건비 추가지원이 18.4%이고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인건비 80%가 지원되는 지원을 조정이 15.5%를 차지한다.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인건비 지원시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가 지원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나머지 인건비 20%와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의 추가 비용을 운영비로 부담하게 되어 인건비 관련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시보육과 휴일보육, 24시간 보육은 추가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13.7%, 12.6%, 13%로 다른 취약보다 높은 편이다. 일시보육은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이 도시일수록 높고, 휴일보육은 인건비 추가 지원이 읍면지역일수록 높다(부표 V-2-7, V-2-8 참조).

<표 V-2-4>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추가 지원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비 지원	인건비 지원율 조정	기타	없음	모름	계(수)
영아보육	30.2	34.8	8.1	7.7	17.0	0.4	1.5	0.2	100.0(517)
시간연장보육	18.4	47.0	8.5	5.4	15.5	0.4	4.6	0.2	100.0(517)
일시보육	13.2	57.8	5.2	3.3	6.0	0.4	13.7	0.4	100.0(517)
휴일보육	12.6	59.2	6.2	2.1	6.4	0.6	12.6	0.4	100.0(517)
24시간보육	8.9	57.1	6.6	5.2	8.1	0.6	13.0	0.6	100.0(517)
장애아보육	12.4	41.6	9.3	19.7	7.5	0.6	0.4	8.5	100.0(517)
다문화보육	23.0	36.8	18.0	2.7	12.0	0.4	6.8	0.4	100.0(5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

다음 <표 V-2-5>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제공해야 할 취약보육에 대해 1, 2위 순위로 조사한 결과이다.

1순위는 장애아 보육이 31.3%로 가장 많다. 영아보육과 시간연장보육도 각각 27.1%, 25.3% 순으로 많고, 나머지 취약보육은 10%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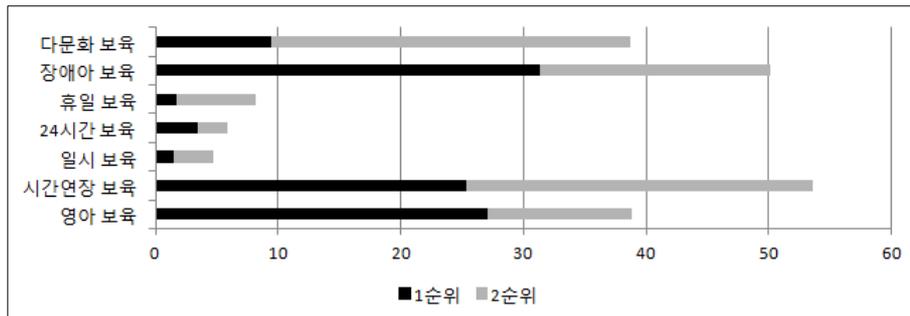
2순위는 다문화보육이 29.2%, 시간연장보육이 28.3%로 가장 많다. 장애아보육도 18.8%를 차지한다. 종합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인식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은 시간연장보육과 장애아 보육임을 알 수 있다.

〈표 V-2-5〉 우선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1+2순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영아 보육	시간연장 보육	장애아 보육	일시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보육	(수)
1순위	27.1	25.3	31.3	1.5	3.5	1.7	9.5	(517)
2순위	11.7	28.3	18.8	3.2	2.4	6.5	29.2	(506)
1+2순위	38.7	53.6	50.1	4.7	5.9	8.3	3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그림 V-2-1]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1+2순위)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 1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영아보육이나 다문화보육 비율이 높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읍면지역보다 장애아보육 비율이 10% 정도 많다(표 V-2-6 참조).

정원별로는 영아보육과 다문화보육은 40~49인 이하가 50인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많지만 장애아 보육은 반대로 낮다.

2순위에서는 중소도시가 시간연장보육과 장애아보육이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높지만, 영아보육과 다문화보육은 반대의 경향을 나타낸다. 휴일보육은 1순위에

서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높았지만, 2순위에서 크게 증가하였다(표 V-2-7 참조).

정원규모가 클수록 시간연장보육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50~79인 이하의 휴일보육이 10.5%로 나머지 규모보다 월등히 높고, 39인 이하의 일시보육이 8.2%로 높다.

〈표 V-2-6〉 국공립 우선 제공 취약보육(1순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영아 보육	시간연 장 보육	장애아 보육	일시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보육	계(수)
전체	27.1	25.3	31.3	1.5	3.5	1.7	9.5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25.9	24.7	35.6	0.8	3.2	1.2	8.5	100.0(247)
중소도시	23.4	27.3	34.4	1.3	2.6	1.3	9.7	100.0(154)
읍면	34.5	24.1	18.1	3.4	5.2	3.4	11.2	100.0(116)
정원								
39인 이하	24.7	27.1	32.9	1.2	5.9	2.4	5.9	100.0(85)
40~49인	32.4	28.2	18.3	-	5.6	1.4	14.1	100.0(71)
50~79인	27.5	25.3	31.5	2.8	2.2	1.1	9.6	100.0(178)
80~99인	25.7	21.8	35.6	1.0	4.0	1.0	10.9	100.0(101)
100인 이상	25.6	25.6	35.4	1.2	1.2	3.7	7.3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표 V-2-7〉 우선 제공 취약보육(2순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영아 보육	시간연 장 보육	장애아 보육	일시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다문화 보육	계(수)
전체	11.7	28.3	18.8	3.2	2.4	6.5	29.2	100.0(506)
지역규모								
대도시	14.6	25.2	18.3	3.7	2.4	4.5	31.3	100.0(246)
중소도시	7.4	33.1	25.0	1.4	2.0	6.8	24.3	100.0(148)
읍면	10.7	28.6	11.6	4.5	2.7	10.7	31.3	100.0(112)
정원								
39인 이하	8.2	24.7	16.5	8.2	3.5	5.9	32.9	100.0(85)
40~49인	14.3	25.7	24.3	1.4	5.7	4.3	24.3	100.0(70)
50~79인	12.9	27.5	15.2	2.3	0.6	10.5	31.0	100.0(171)
80~99인	9.9	31.7	21.8	4.0	1.0	5.9	25.7	100.0(101)
100인 이상	12.7	31.6	20.3	-	3.8	1.3	30.4	100.0(7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3. 원아 관리

가. 이용 아동 규모

다음 <표 V-3-1>은 2012년 4월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11년 1,348,729명에서 2만 5천여명 늘어난 1,373,555명이다. 이용 아동 중 2세 아동이 366,627명으로 가장 많고 1세, 3세, 4세 순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는 2011년보다 4천여명 늘어난 147,670명이다. 3세가 33,785명, 2세와 4세가 30,817명, 32,713명으로 만 2~4세 영유아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65% 이상을 차지한다. 법인어린이집과 민간개인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사한 연령 분포를 보인다. 영아 보육을 주로 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3-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2012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개인	가정	단위: 명	
							직장	부모협동
전체	1,373,555	147,670	108,919	51,029	716,788	318,222	2,638	28,289
0세	103,293	2,888	1,998	753	22,336	74,427	81	810
1세	269,081	16,991	12,288	5,285	97,737	132,046	275	4,459
2세	366,627	30,817	24,622	10,317	190,522	103,199	636	6,514
3세	267,936	33,785	26,115	11,978	182,029	6,453	598	6,978
4세	200,184	32,713	22,447	11,083	126,589	1,163	527	5,662
5세	151,823	28,249	18,565	8,959	91,151	696	500	3,703
6세이상	14,611	2,227	2,884	2,654	6,424	238	21	163
2011년	1,348,729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자료: 보건복지부(2012). 전국 어린이집 운영 통계자료(2012년 4월 기준).

나. 정원충족률

<표 V-3-2>와 같이, 2012년 4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평균 93%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86.8%보다 5% 이상 높다. 구간별로는 90~100%가 34.7%로 많고, 다음은 100%로 29.4%, 100~110% 미만 13.8% 순으로 과반수 이상이 정원충족률 90% 이상이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도시일수록 정원충족률이 높다. 대도시가 94.9%로 가

장 높고, 읍면지역은 87.1%로 가장 낮다. 구간별로는 정원충족률 90~100% 미만 이 가장 많지만, 90% 이상은 도시지역이 많고, 90% 미만은 읍면지역이 많다.

정원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80~99인이 평균 94.3%로 가장 높고, 39인 이하가 91.8%로 낮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전체 정원충족률보다 높은 편이다. 구간별로는 정원규모가 클수록 정원충족률 100% 미만 비율이 높다.

〈표 V-3-2〉 정원충족률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어린이집									계(수)	평균	전체
	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100~110% 미만	110% 이상				
전체	3.1	2.4	5.3	11.1	34.7	29.4	13.8	0.2	100.0(2,141)	93.0	86.8	
지역												
대도시	1.7	1.4	4.3	8.9	35.7	29.9	17.7	0.4	100.0(1,012)	94.9	89.4	
중소도시	1.7	1.8	2.9	12.0	35.6	33.3	12.5	0.2	100.0(649)	94.5	86.7	
읍면	8.1	5.2	10.4	14.6	31.3	23.1	7.3	-	100.0(480)	87.1	81.8	
X ² (df)/F				154.4 ^{***}						68.0 ^{***}	287.2 ^{***}	
정원												
39인 이하	5.1	2.4	3.9	10.1	20.5	45.2	12.2	0.6	100.0(336)	91.8	87.7	
40~49인	3.8	3.8	6.3	9.8	25.5	35.0	15.4	0.3	100.0(286)	92.5	86.0	
50~79인	3.6	1.7	6.1	11.1	34.1	28.6	14.7	0.1	100.0(693)	93.1	86.5	
80~99인	1.3	2.3	4.0	11.9	42.3	25.0	13.3	-	100.0(480)	94.3	84.9	
100인 이상	2.3	2.6	6.1	12.1	46.5	17.3	12.7	0.3	100.0(346)	92.7	81.6	
X ² (df)/F				133.6 ^{***}						2.0 [#]	60.7 ^{***}	

p < 0.1, *** p < .001

자료: 보건복지부(2012). 전국 어린이집 운영 통계자료(2012년 4월 기준).

다. 정원내 초과보육 현황

1) 반별 현원률

<표 V-3-3>는 반별 현원률로 1세반은 107.9%, 2세반은 107.2%로 영아반의 초과보육 비율이 높다. 이는 2012년 0~2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영아의 어린이집 쏠림현상이 심각해지면서 해결방안의 하나로 초과보육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1~2세는 아동대 교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초과 보육할 경우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원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는 0세반은 읍면지역이 112.7%로 초과보육율이 높다. 1세반도 읍면

지역이 121.7%로 정원의 20% 이상을 초과보육하고 있다. 이에 반해 3세반과 4, 5세반은 현원률이 100% 이하로 초과보육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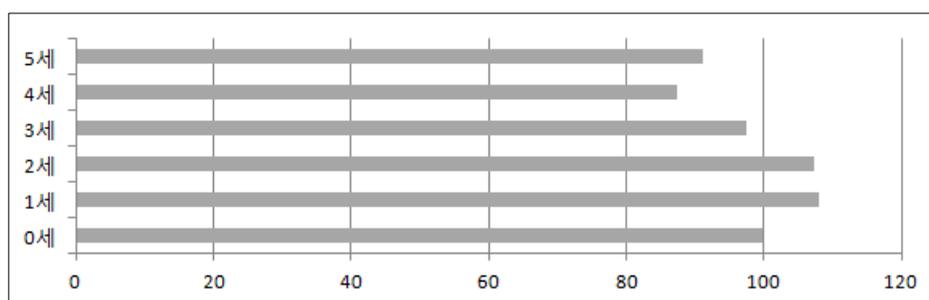
정원별로 보면, 모든 규모의 어린이집이 1, 2세반을 초과보육하고 있다. 특히, 2세반은 80~99인 어린이집이 109.4%, 100인 이상이 109.3%로 정원의 10% 가까이 초과보육 한다. 4세반은 100인 이상만 115%로 초과보육을 하고 있다.

〈표 V-3-3〉 반별 현원률: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계	99.8(26.3)	107.9(35.6)	107.2(14.8)	97.5(17.5)	87.4(18.6)	91.2(17.3)
지역						
대도시	98.3(18.4) ^b	104.1(22.5) ^b	106.9(15.5)	99.5(13.8) ^a	91.0(17.1)	92.8(17.0) ^a
중소도시	95.5(27.3) ^b	105.7(29.5) ^b	106.2(13.6)	98.7(13.2) ^b	87.5(17.5)	91.5(14.7) ^a
읍면지역	112.7(38.9) ^a	121.7(60.8) ^a	109.5(14.9)	91.5(26.0) ^b	81.2(21.1)	85.7(21.7) ^b
F	3.9 ^{**}	8.2 ^{***}	1.6	8.4 ^{***}	1.2	2.9 [#]
정원						
39인 이하	94.6(20.2)	108.4(42.9)	102.1(17.9)	87.8(24.1)	60.0(7.1)	-
40~49인	99.3(37.8)	111.4(32.7)	107.2(14.0)	92.5(21.7)	80.5(13.2)	65.0(30.4)
50~79인	100.4(26.6)	109.2(43.9)	106.9(14.2)	97.8(17.0)	92.9(18.5)	88.0(13.5)
80~99인	102.2(31.5)	108.7(26.0)	109.4(13.3)	101.8(13.1)	84.6(18.1)	92.6(16.2)
100인 이상	102.4(12.9)	101.3(21.1)	109.3(14.9)	100.1(12.2)	115.0(-)	95.3(17.9)
F	0.5	0.9	3.2 [*]	7.6 ^{***}	3.0 [*]	12.4 ^{***}

[#] $p < 0.1$, ^{*} $p < .05$, ^{**} $p < .01$, ^{***} $p < .001$, a, b는 Duncan 사후분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그림 V-3-1] 연령별 현원률: 어린이집 조사

2) 초과보육 운영 이유

정원 내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표 V-3-4>와 같이 대기자 급증이 30.7%로 가장 많고 전출입 등 유동 영유아 많아서가 26.1%,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19.7% 순이다. 나머지 이유는 5% 내외이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전반적으로 전체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읍면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르게 농촌특례 지역 때문이 18.3%로 많고 교사 채용의 어려움도 4.3%로 도시지역보다 다소 많다.

정원별로는 79인 이상 어린이집은 대기자 급증이 30% 이상으로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입소 대기 영유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운영의 어려움은 49인 이하 규모 어린이집이 30%대로 규모가 큰 시설보다 많다.

<표 V-3-4> 초과보육 운영 이유: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전출입 등 유동 영유아 많음	대기자 급증	운영의 어려움	농촌 특례 지역	정원 확보	교사 채용의 어려움	5세 누리과 정 운영	기타	계(수)
전체	26.1	30.7	19.7	5.8	5.5	2.6	2.3	7.2	100.0(345)
지역규모									
대도시	27.8	32.3	20.9	-	5.1	1.3	1.9	10.8	100.0(158)
중소도시	26.6	34.0	21.3	3.2	5.3	3.2	3.2	3.2	100.0(94)
읍면지역	22.0	24.7	16.1	18.3	6.5	4.3	2.2	5.4	100.0(93)
정원									
39인 이하	17.5	27.5	32.5	7.5	5.0	5.0	-	5.0	100.0(40)
40~49인	24.4	24.4	31.1	4.4	4.4	4.4	2.2	4.4	100.0(45)
50~79인	27.0	27.0	13.5	8.1	9.0	1.8	4.5	9.0	100.0(111)
80~99인	26.7	39.5	15.1	4.7	4.7	2.3	1.2	5.8	100.0(86)
100인 이상	30.2	31.7	20.6	3.2	1.6	1.6	1.6	9.5	100.0(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3)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

다음은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이 필요한 연령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38.8%가 만3세반의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만 0세와 1세, 4세반도 10%대이다(표 V-3-5 참조).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만3세반이 가장 많다. 특히 도시일수록 응답비율

이 높다. 만0세반은 중소도시 20.3%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만4세반도 18.3%로 타 지역보다 높다. 만5세반은 읍면지역이 12.1%로 도시보다 높다.

정원별로도 만3세반이 가장 많다. 만0세반은 39인 이하와 40~49인이 20%대로 50인 이상 어린이집보다 10%이상 많다. 만3세반은 정원규모가 클수록 응답비율이 높다. 4세와 5세도 49인 이하보다 50인 이상 어린이집의 응답비율이 높다.

〈표 V-3-5〉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연령: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X ² (df)
전체	17.2	17.1	7.2	38.8	13.4	6.4	100.0(516)	
지역규모								
대도시	17.0	19.8	6.5	41.3	11.7	3.6	100.0(247)	
중소도시	20.3	11.1	6.5	37.3	18.3	6.5	100.0(153)	21.0(10)*
읍면지역	13.8	19.0	9.5	35.3	10.3	12.1	100.0(116)	
정원								
39인 이하	28.2	24.7	5.9	27.1	7.1	7.1	100.0(85)	
40~49인	25.7	21.4	7.1	30.0	7.1	8.6	100.0(70)	
50~79인	11.2	15.7	7.3	42.1	16.3	7.3	100.0(178)	35.9(20)*
80~99인	11.9	13.9	7.9	43.6	17.8	5.0	100.0(101)	
100인 이상	18.3	12.2	7.3	45.1	13.4	3.7	100.0(82)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라. 입소자 관리

1) 입소 대기자수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수는 어린이집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조사된 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대기자수는 전체 평균 33.3명이다.

〈표 V-3-6〉 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대기자 수: 2009

구분	단위: 명					
	전체	국공립	법인	민간/법인의외/부모협동	가정	직장
인원수	33.3	78.3	27.5	12.9	2.9	49.3

자료: 유희정 외(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시설조사.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공립어린이집이 평균 78.3명으로 가장 많고, 민간 및 법인외, 부모협동은 12.9명, 가정어린이집은 2.9명으로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민간어린이집보다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입소 대기신청 시 중복 대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자 수는 과대 추정될 수 있으므로 30% 정도는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수가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대기자 수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61명이다.

지역별로는 영유아 수가 많은 서울이 108.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95.7명으로 100명 가까이 된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명 미만으로 영유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대기자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3-7〉 시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대기자 수: 2010

단위: 명

구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수	61	108.6	6.7	4.7	3.2	0.6	1.7	21.9	95.7	8.7	1.1	8.3	3.4	3.8	1.8	9.6	11.2

자료: 보건복지부(2010). 내부자료.

2) 입소대기 신청 및 관리방법

서울은 보육포털을 구축하여 입소 대기신청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입소 신청을 받고 있어 입소 대기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V-3-8>은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신청 방법을 조사한 결과이다. 직접 방문이 61.3%로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전화접수 39.5%, 인터넷접수 33.3% 순으로 많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66.4%가 인터넷 접수로 입소 대기신청을 받고 있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직접 방문이 각각 91.6%, 81%로 많다. 대도시의 인터넷 접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육포털사이트를 이용한 입소대기 신청으로 추정된다. 읍면지역은 교통편이나 어린이집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시지역보다 전화접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입소 신청자 관리 방법을 조사한 결과, 43.9%가 입소신청자 명부에 신청 순서에 따라 명단을 작성한다고 응답하였고, 포털사이트 관리는 31.5%, 입소대기 신청서 작성은 24.4%였다.

지역별로 보면, 입소대기 신청서는 중소도시가 44.2%로 타 지역보다 많다. 반

면 입소신청자 명부는 읍면지역이 73.3%로 많다. 이는 읍면지역이 전화를 이용해 입소대기 신청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신청서 작성보다는 명부 기입을 선호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관리는 대도시가 65.2%로 다른 방법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응답 시설은 대부분 서울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표 V-3-8〉 입소 대기신청(복수응답)과 입소신청자 관리방법: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입소 대기신청 방법				입소 신청자 관리방법				
	직접 방문	인터넷	전화	(수)	입소 대기 신청서	입소 신청자 명부 기입	포털 사이트 인터넷 관리	기타	계(수)
전체	61.3	33.3	39.5	(517)	24.4	43.9	31.5	0.2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33.2	66.4	23.1	(247)	10.9	23.9	65.2	-	100.0(247)
중소도시	91.6	3.9	45.5	(154)	44.2	53.9	1.3	0.6	100.0(154)
읍면지역	81.0	1.7	66.4	(116)	26.7	73.3	-	-	100.0(116)
정원									
39인 이하	83.5	11.8	49.4	(85)	29.4	57.6	11.8	1.2	100.0(85)
40~49인	66.2	31.0	38.0	(71)	23.9	46.5	29.6	-	100.0(71)
50~79인	56.3	35.9	38.3	(167)	24.0	40.1	35.9	-	100.0(167)
80~99인	59.8	37.5	40.2	(112)	35.0	42.9	32.1	-	100.0(112)
100인 이상	46.3	46.3	31.7	(82)	19.5	36.6	43.9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입소대기 신청 방법을 조사한 결과, 부모 중 81.4%가 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 11.1%, 전화 7.4% 순이다(표 V-3-9 참조).

거주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직접 방문이 90% 이상으로 대도시보다 많고, 대도시는 인터넷이 31.4%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전화접수는 큰 차이는 없으나 읍면일수록 응답률이 높다.

아동 연령별로도 전체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인터넷 접수는 자녀 연령이 어린 0세와 1세가 17.4%, 12.2%로 상대적으로 많다.

모 취업별로 보면,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직접 방문이 가장 많다. 인터넷 접수는 취업모가 13.7%로 미취업모 7%의 두 배정도 많다.

다음은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입소대기 신청한 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입소대기 신청한 어린이집을 모두 방

문했다고 응답한 부모는 54.2%로 절반이 넘으며, 일부만 방문한 경우는 22.4%로 부모들이 대체로 어린이집 방문 후 전화나 인터넷으로 입소대기 신청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접수했다는 비율은 23.4%로 응답자의 1/5이 넘는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해도 원하는 시기에 입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단 대기 신청부터 해 놓고 보자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3-9〉 입소대기 신청방법 및 어린이집 방문 여부: 부모조사

단위: 명(%)

구분	입소대기 신청방법					전화, 인터넷 신청시 방문 여부			
	직접 방문	인터넷	전화	기타	계(수)	모두 직접 방문	일부 직접 방문	방문한 적 없음	계(수)
전체	81.4	11.1	7.4	0.1	100.0(1,037)	54.2	22.4	23.4	100.0(192)
거주지역									
대도시	61.9	31.4	6.7	-	100.0(357)	44.1	27.9	27.9	100.0(136)
중소도시	92.1	0.3	7.3	0.3	100.0(302)	69.6	17.4	13.0	100.0(23)
읍면지역	91.3	0.5	8.2	-	100.0(378)	84.8	3.0	12.1	100.0(33)
X ² (df)		-					21.0(4) ^{***}		
연령									
0세	75.1	17.4	7.5	-	100.0(201)	64.0	20.0	16.0	100.0(50)
1세	79.7	12.2	8.1	-	100.0(222)	48.9	20.0	31.1	100.0(45)
2세	83.1	9.0	7.4	0.5	100.0(189)	61.3	16.1	22.6	100.0(31)
3세	82.5	9.9	7.6	-	100.0(171)	50.0	33.3	16.7	100.0(30)
4세	84.6	11.2	4.2	-	100.0(143)	40.9	31.8	27.3	100.0(22)
5세	87.4	2.7	9.9	-	100.0(111)	50.0	14.3	35.7	100.0(14)
X ² (df)		-					9.9(10)		
모 취업여부									
취업	78.4	13.7	7.9	-	100.0(643)	52.0	21.6	26.5	100.0(102)
미취업	86.0	7.0	6.7	0.3	100.0(386)	50.0	35.7	14.3	100.0(14)
X ² (df)		-					2.3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부모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모두 직접 방문하는 비율은 읍면지역일수록 높으며, 일부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다는 비율은 반대로 도시지역이 높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보면, 어머니의 취업에 상관없이 모두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50~52%로 차이가 없다. 일부 직접 방문하는 비율은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10%이상 높고, 방문한 적 없다는 비율은 취업모가 더 많다(표 V-3-9 참조).

3) 입소 대기아동 관리 주기

어린이집에서 입소 대기아동을 관리하는 주기는 70.8%가 결원 발생 시마다 수시로 관리한다고 응답하였다. 3개월마다는 14.3%, 1년에 한번 10.3%, 6개월마다 3.9% 순이다. 어린이집에서는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대기자에게 입소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대기자가 입소를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대기자 관리가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결원 발생 시마다 수시로 입소 대기자를 관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3-10〉 입소 대기아동 관리 주기: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3개월 마다	6개월 마다	1년에 한번	결원 발생 시 수시로	안 함	계(수)
전체	14.3	3.9	10.3	70.8	0.8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10.5	3.6	7.7	78.1	-	100.0(247)
중소도시	26.0	5.8	11.7	56.5	-	100.0(154)
읍면지역	6.9	1.7	13.8	74.1	3.4	100.0(116)
정원규모						
39인 이하	21.2	4.7	11.8	61.2	1.2	100.0(85)
40~49인	7.0	4.2	8.5	80.3	-	100.0(71)
50~79인	13.8	4.8	10.2	69.5	1.8	100.0(167)
80~99인	17.9	0.9	14.3	67.0	-	100.0(112)
100인 이상	9.8	4.9	4.9	80.5	-	100.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 어린이집 70% 이상이 결원 발생 시마다 수시로 입소 대기자를 정리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소도시는 56.5%로 차이를 보인다. 반면에 3개월마다는 중소도시가 26%로 타 지역보다 많고, 1년에 한번은 읍면지역이 많다. 읍면지역은 대기자 수가 적어 대기자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도시보다 관리주기가 길 수 밖에 없다.

정원별로 보면, 결원 발생 시마다 수시로 대기자를 관리한다는 응답은 60~80% 범위이다. 39인 이하는 21.2%가 3개월마다 입소 대기 아동을 관리한다고 응답하였다.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도 대기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결원 발생시마다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표 V-3-10 참조).

4) 이용 부모의 입소 신청 어린이집 수 및 입소대기 기간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전 대기 등록한 어린이집 수를 조사한 결과이다(표 V-3-11 참조).

이용 부모가 입소대기 등록한 어린이집은 평균 1.3개소로 1개소가 41.9%로 절반 가까이 되고, 2~3개소도 1/4 정도 된다. 대기 등록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비율은 28.8%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중 약 1/3은 대기 없이 바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표 V-3-11〉 대기등록 어린이집 수: 부모조사

구분							계(수)	평균
	없음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이상		
전체	28.8	41.9	15.0	8.9	2.0	3.3	100.0(1,037)	1.3
거주지역								
대도시	18.5	36.7	19.3	13.4	4.2	7.8	100.0(357)	1.9 ^a
중소도시	25.8	45.4	15.2	9.9	1.7	2.0	100.0(302)	1.2 ^b
읍면지역	41.0	44.2	10.8	3.7	0.3	-	100.0(378)	0.8 ^c
	$X^2(df)/F$							57.3 ^{***}
보육료 지원								
지원아동	29.5	42.0	14.8	8.6	2.0	3.0	100.0(928)	1.3
일반아동	22.9	41.3	17.4	11.0	1.8	5.5	100.0(109)	1.5
	$X^2(df)/t$							-1.9 [#]
모 취업여부								
취업	23.4	42.7	15.5	11.8	2.8	3.7	100.0(643)	1.4
미취업	25.5	42.6	14.9	10.6	2.1	4.3	100.0(386)	1.0
	$X^2(df)/t$							3.9 ^{***}

[#] $p < .1$,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부모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1.9개소, 읍면지역 0.8개소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 대도시는 1개소가 36.7%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 2~5개소는 전체 평균 비율보다 높다. 반면에 읍면지역은 1개소가 44.2%로 가장 많다. 없다는 비율도 41% 정도이다.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정원충족률이 낮아 대기기간 없이 입소 신청과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등록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것이다.

보육료 지원 여부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원아동은 1.3개소, 일반아동 1.5개소로 일반아동이 다소 많다. 대기등록 신청 시설수별로 보면, 1개소는 지원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많고, 대기 등록 2개소 이상은 일반아동이 더 많다.

어머니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1개소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대기등록 어린이집이 없다는 비율은 모두 20%대로 차이가 크지 않다(표 V-3-11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입소 전 대기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5.2개월 정도 대기등록 후 입소하고 있다. 기간별로 보면, 1~3개월이 22.4%로 가장 많고, 4~6개월이 19.6%로 절반 정도는 6개월 이내에 대기 신청한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있다.

〈표 V-3-12〉 어린이집 입소 전 대기기간: 부모조사

구분	단위: 명(%), 개월						계(수)	평균
	없음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3개월 이상		
전체	31.4	22.4	19.6	5.4	12.9	8.3	100.0(1,037)	5.2
거주지역								
대도시	21.0	18.8	18.5	7.3	17.9	16.5	100.0(357)	7.7 ^a
중소도시	28.8	25.5	21.9	6.3	10.9	6.6	100.0(302)	4.8 ^b
읍면지역	43.4	23.3	18.8	2.9	9.8	1.9	100.0(378)	3.1 ^c
X ² (df)/F				101.7(10) ^{***}				47.6 ^{***}
연령								
0세	28.4	23.4	20.9	9.0	12.4	6.0	100.0(201)	4.7
1세	28.8	24.3	18.9	5.9	14.4	7.7	100.0(222)	5.1
2세	34.4	15.3	22.2	5.3	14.8	7.9	100.0(189)	5.3
3세	28.7	31.0	17.0	2.3	11.7	9.4	100.0(171)	5.1
4세	30.8	23.8	19.6	3.5	8.4	14.0	100.0(143)	5.9
5세	42.3	13.5	18.0	5.4	15.3	5.4	100.0(111)	5.2
X ² (df)/F				43.2(25) [*]				0.5
보육료 지원								
지원 아동	32.0	21.9	19.7	5.3	13.0	8.1	100.0(928)	5.2
일반아동	26.6	26.6	18.3	6.4	11.9	10.1	100.0(109)	5.3
X ² (df)/t				2.8(5)				-0.2
모 취업								
취업	28.3	22.6	18.8	5.4	14.8	10.1	100.0(643)	5.7
미취업	36.8	22.3	20.7	5.2	9.6	5.4	100.0(386)	4.3
X ² (df)/F				17.4(5) ^{**}				3.5 ^{**}

* $p < .05$, ** $p < .01$,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c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부모조사」 자료

거주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7.7개월로 대기기간이 가장 길고 읍면이 3.1개월로 짧다. 대도시는 10~12개월이 17.9%, 13개월 이상이 16.5%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다. 입소 전 대기기간이 없다는 비율은 읍면이 더 많다.

모 취업별로는 취업모의 대기기간이 5.7개월, 미취업모 4.3개월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 1~3개월이 20%대로 가장 많다. 대기기간이 없다는 비율은 취업모 28.3%, 미취업모 36.8%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입소 우선순위에 맞벌이 부부 자녀 영유아에게 입소 1순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입소순위가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5) 입소대기 연장신청 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

가) 입소대기 연장신청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신청주기

부모가 영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최초 입소대기 신청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대기신청을 연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점수가 평균 3점으로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응답별로는 필요하다고 40.2%, 반드시 필요하다고 26.3%로 60% 이상이 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V-3-13〉 대기연장 신청제도 도입의 필요성(5점 척도):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점					계(수)	평균
	전혀 필요없음	필요없음	필요	반드시 필요	잘 모름		
전체	5.6	24.8	40.2	26.3	3.1	100.0(517)	3.0
지역규모							
대도시	5.3	17.8	38.1	35.6	3.2	100.0(247)	3.1 ^a
중소도시	5.8	30.5	41.6	20.1	1.9	100.0(154)	2.8 ^b
읍면지역	6.0	31.9	43.1	14.7	4.3	100.0(116)	2.8 ^b
$X^2(df)/F$			27.6(8)**				8.4***
정원규모							
39인 이하	5.9	23.5	51.8	16.5	2.4	100.0(85)	2.9
40~49인	5.6	23.9	38.0	28.2	4.2	100.0(71)	3.0
50~79인	5.4	23.4	38.9	28.1	4.2	100.0(167)	3.0
80~99인	5.4	26.8	34.8	32.1	0.9	100.0(112)	3.0
100인 이상	6.1	26.8	40.2	23.2	3.7	100.0(82)	2.9
$X^2(df)/F$			-				0.6

** $p < .01$, *** $p < .0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가 3.1점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2.8점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응답별로 보면, 필요하다는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이 더 높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도시가 35.6%로 읍면지역의 2배 이상이다. 즉, 대기자가 많은 대도시 어린이집이 대기연장신청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요없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더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전체 비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표 V-3-13 참조).

<표 V-3-15>와 같이, 부모조사에서도 응답 부모 77.5%가 입소대기 연장신청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3/4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대기연장 신청제도 도입 시 연장신청 주기에 대해 어린이집과 부모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은 1년 42.2%, 6개월 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6개월과 1년 주기가 읍면지역보다 많고, 읍면지역은 3개월과 결원이 생길 때마다 도시지역보다 많다. 대기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연장신청 제도 도입 시 대기자 관리의 어려움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반기별이나 1년 단위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원규모별로 보면, 정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1년 단위 연장신청 제도를 선호한다. 이 또한 정원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대기자도 많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표 V-3-14>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 시 연장 신청주기: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매월	3개월	6개월	1년	결원발생 시	계(수)	X ² (df)
전체	5.0	10.1	29.0	42.2	13.7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3.6	8.5	30.0	45.7	12.1	100.0(247)	
중소도시	5.8	5.8	27.9	49.4	11.0	100.0(154)	30.7(8) ^{***}
읍면지역	6.9	19.0	28.4	25.0	20.7	100.0(116)	
정원규모							
39인 이하	4.7	14.1	28.2	38.8	14.1	100.0(85)	
40~49인	2.8	8.5	29.6	42.3	16.9	100.0(71)	
50~79인	6.0	9.0	31.7	40.7	12.6	100.0(167)	10.3(16)
80~99인	4.5	12.5	22.3	44.6	16.1	100.0(112)	
100인 이상	6.1	6.1	32.9	45.1	9.8	100.0(82)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모조사에서는 4~6개월이 31.6%, 1개월과 3개월도 20%대를 나타낸다. 지역별로는 연장 신청주기 3개월은 읍면지역이 많고, 4~6개월이나 7~12개월은 대도시가 많다(표 V-3-15 참조).

〈표 V-3-15〉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신청주기: 부모조사

단위: 명(%)

구분	필요	연장신청 주기					계(수)	X ² (df)
		매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12개월		
전체	77.5(804)	21.3(71)	5.2(42)	29.9(240)	31.6(254)	12.1(97)	100.0(804)	
거주지역								
대도시	78.4(280)	17.9(50)	4.3(12)	24.6(69)	36.1(101)	17.1(48)	100.0(280)	
중소도시	79.5(240)	20.0(48)	3.8(9)	31.7(76)	33.3(80)	11.3(27)	100.0(240)	28.0(8)***
읍면지역	75.1(284)	25.7(73)	7.4(21)	33.5(95)	25.7(73)	7.7(22)	100.0(284)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부모조사」 자료.

어린이집 조사와 부모조사를 종합하면, 어린이집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대도시는 연장 신청주기가 6개월이나 1년 등 기간이 긴 쪽을 선호하고, 읍면지역은 주기가 짧은 쪽을 선호하여 지역적 차이를 드러낸다. 즉,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시 신청주기를 일괄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신청주기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 입소우선순위

1) 입소우선순위 외 적용 기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소우선순위 외에 어린이집에서 입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V-3-16>과 같다.

조사결과,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는 경우가 49.3%로 많고,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30.8%로 많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와 대기기간이 긴 경우는 10% 대이다. 입소우선순위 외에 적용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로 2/3는 예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대부분의 예외기준 적용 비율이 높다. 특히,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는 경우는 61.2%,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9.1%, 대기기간이 긴 경우가 21.6%로 도시지역의 2배 가까이 된다. 예외 기준이 없다는 비율은 도시일수록 높다. 대도시가 47%로 가장 많고, 중소도시 29.9%, 읍면지역 12.9% 순이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읍면지역의 경우 예외 기준을 적용하여 입소 아동을 결정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나 대기자가 많은 도시지역의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켜 어린이집 이용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정원별로도 규모가 클수록 형제자매가 다니고 있는 경우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는 비율이 높다.

〈표 V-3-16〉 입소순위 외 적용 기준: 어린이집 조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분	형제자매 다니고 있는 경우	친인척 다니고 있는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대기 기간이 긴 경우	기타	없음	(수)
전체	49.3	4.1	14.5	30.8	13.9	3.9	34.2	(517)
지역규모								
대도시	38.5	2.0	10.5	21.5	11.3	3.6	47.0	(247)
중소도시	57.8	6.5	16.9	31.8	12.3	5.8	29.9	(154)
읍면지역	61.2	5.2	19.8	49.1	21.6	1.7	12.9	(116)
정원								
39인 이하	42.4	-	9.4	29.4	11.8	4.7	35.3	(85)
40~49인	49.3	4.2	11.3	42.3	14.1	4.2	29.6	(71)
50~79인	48.5	3.0	13.8	31.7	16.8	2.4	35.3	(167)
80~99인	57.1	9.8	18.8	25.9	12.5	5.4	30.4	(112)
100인 이상	47.6	2.4	18.3	26.8	12.2	3.7	40.2	(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2) 연령 진급 시 재입소 방법

<표 V-3-17>와 같이 연령 진급시 재입소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재입소 의견조사 후 자동재입소가 83.6%로 가장 많고, 재원 아동 중 입소순위로 재입소 결정은 10.3%, 대기 아동 포함하여 입소순위로 재입소 결정 5.4% 순으로 많다.

지역별로는 재입소 의견조사 후 자동 재입소 한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지만 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높다. 읍면지역은 재원아동 중 입소순위로 재입소를 결정한다는 응답이 17.2%로 타 지역보다 2배 정도 많다.

정원규모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재원아동 중 입소순위로 재입소를 결정한다는 비율이 40~49인이 18.3%로 많고, 80~99인이 12.5%, 39인 이하도 10.6%이다.

〈표 V-3-17〉 연령 진급에 따른 재입소 방법: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재입소의견조사 로 자동 재입소	대기아동 포함하여 입소순위로 재입소	재원 아동 중 입소순위로 재입소	기타	계(수)
전체	83.6	5.4	10.3	0.8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86.6	4.5	8.1	0.8	100.0(247)
중소도시	85.1	5.8	8.4	0.6	100.0(154)
읍면지역	75.0	6.9	17.2	0.9	100.0(116)
정원					
39인 이하	83.5	5.9	10.6		100.0(85)
40~49인	74.6	4.2	18.3	2.8	100.0(71)
50~79인	85.0	6.6	7.8	0.6	100.0(167)
80~99인	82.1	5.4	12.5	-	100.0(112)
100인 이상	90.2	3.7	4.9	1.2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3) 입소우선순위 개편에 대한 인식

현행 입소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 9개 자격이 1순위에 배치되어 있고, 2순위는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가 속해 있다. 1순위에 배치되어 있는 자격이 많아 우선순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입소우선순위 개편 시 적절한 입소자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V-3-18>과 같다.

〈표 V-3-18〉 입소순위별 입소자격: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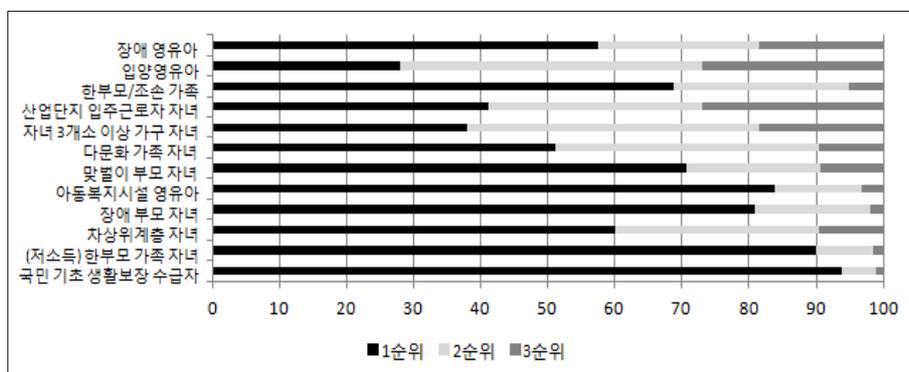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차상위 계층 자녀	장애 부모 자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다문화 가족 자녀	3명 이상 가구	산업단지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입양 영유아	장애 영유아	(수)
1순위	93.8	89.9	60.0	80.9	83.8	70.6	51.1	37.9	41.2	68.7	28.0	57.4 (517)
2순위	5.2	8.5	30.4	17.2	13.0	20.1	39.3	43.5	31.9	26.1	45.1	24.0 (517)
3순위	1.0	1.5	9.7	1.9	3.3	9.3	9.7	18.6	26.9	5.2	26.9	18.6 (5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1순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3.8%로 가장 많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89.9%, 아동복지시설영유아, 장애부모자녀, 맞벌이부모 자녀 모두 70~80%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자녀 3명이상 가구자녀, 산업단지입주근로자자녀, 입양 영유아는 50%에 못 미친다.

2순위로 입양 영유아가 45.1%로 많고, 다음으로 자녀 3명이상 가구 자녀 43.5%, 다문화가족자녀 39.3% 순이다. 3순위는 산업단지입주 근로자 자녀와 입양영유아가 동일하게 26.9%, 자녀 3명이상 가구자녀와 장애영유아가 18.6%로 높다.



[그림 V-3-2] 입소우선순위: 1+2+3순위

부모 대상으로 어린이집 입소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격을 조사하였다. <표 V-3-19>와 같이, 1순위로 맞벌이 부모 자녀가 43.6%로 가장 많고, 저소득 가구 32%가 그 다음이다. 나머지 자격조건은 5% 내외이다. 2순위로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모 자녀가 23.5%, 저소득가구 20%로 1순위와 동일하게 많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 19.1%, 3자녀 이상 가구 14.4%, 장애부모 7.4%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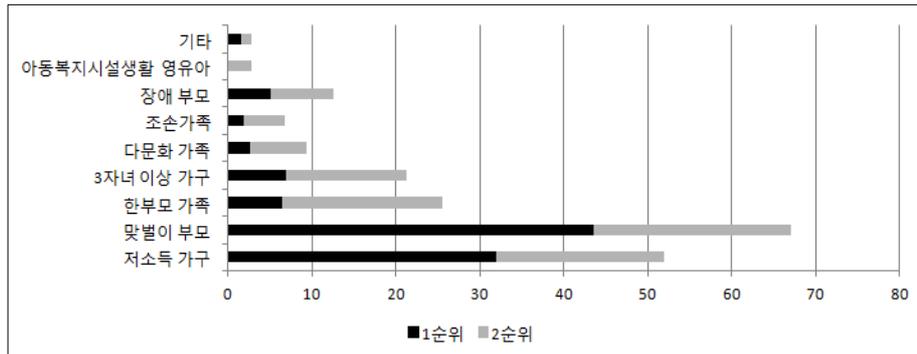
<표 V-3-19> 입소 우선순위(1+2순위): 부모조사

단위: 명(%)

구분	저소득 가구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장애 부모	아동복지 시설생활 영유아	기타	계(수)
1순위	32.0	43.6	6.4	6.9	2.6	1.9	5.1	-	1.5	100.0(1,037)
2순위	20.0	23.5	19.1	14.4	6.7	4.9	7.4	2.8	1.3	100.0(1,037)
1+2순위	52.0	67.1	25.5	21.3	9.3	6.8	12.5	2.8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조사」 자료.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면, 맞벌이 부모가 6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소득 52%, 한부모가족 25.5%, 3자녀 이상 가구 21.3% 순이다. 장애부모와 다문화가족도 10%대를 나타낸다.



[그림 V-3-3] 입소우선순위(1+2순위): 부모조사

앞서 부모조사에서 보았듯이 부모들은 맞벌이 부모를 중요한 입소우선순위의 하나로 꼽았으나 일부 부모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모 심층면담에서 입소순위 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어린이집 입소 전 일시 취업하였다가 몇 개월 후에 직장을 그만둔 어머니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일단 입소하면 연령별 진급 시 자동 재입소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소하고 보자는 부모의 이기적인 심정에서 나온 행태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진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맞벌이 부모의 자녀 적용 원칙은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1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조사에서 절반을 약간 웃도는 59%만 적용기준 원칙에 따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8.9%는 확인방법을 몰라서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32.1%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직증명서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등의 취업증명 서류는 1일 근로시간이나 월 근로시간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집에서 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취업 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보육프로그램

가. 보육과정 운영

1) 현황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시 표준보육과정이나 5세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만 0~5세 대상의 표준보육과정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육과정 운영 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세 누리과정은 만5세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이 없을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5세 누리과정 운영률은 73.3%로 표준보육과정보다 낮다. 운영 대상이지만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5%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일수록 5세 누리과정 운영비율이 높다. 미운영 비율은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높다.

정원규모별로도 규모가 클수록 5세 누리과정 운영률이 높다. 미운영 비율은 40~49인 어린이집이 7%로 다른 규모보다 높은 편이다(표 V-4-1 참조).

〈표 V-4-1〉 보육과정 운영 현황: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전체
	운영	미운영	운영	미운영	해당아동 없음	
전체	98.8	1.2	73.3	2.5	24.2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98.8	1.2	75.3	3.6	21.1	100.0(247)
중소도시	99.4	0.6	72.7	1.3	26.0	100.0(154)
읍면지역	98.3	1.7	69.8	1.7	28.4	100.0(116)
정원						
39인 이하	97.6	2.4	22.4	3.5	74.1	100.0(85)
40~49인	98.6	1.4	45.1	7.0	47.9	100.0(71)
50~79인	98.8	1.2	83.2	3.0	13.8	100.0(167)
80~99인	99.1	0.9	97.3	-	2.7	100.0(112)
100인 이상	100.0	-	97.6	-	2.4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2)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표 V-4-2>와 같이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은 활동준비시간 부족이 64.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교사대 아동비율이 19.9%로 1/5정도이다. 이 외에도 교사 전문성 부족이나 교재교구 부족은 10% 미만이다. 없다는 의견은 1% 미만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활동준비시간 부족은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약 10% 정도 많다. 교사대 아동비율은 대도시가 약 10% 정도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정원충족률이 높기 때문에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교재교구 부족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정원규모가 클수록 활동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교사전문성 부족은 49인 이하가 13%대로 나머지 규모보다 높다.

〈표 V-4-2〉 보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교사전문성 부족	활동준비 시간부족	교재교구 부족	없음	계(수)
전체	19.9	9.4	64.6	5.3	0.8	100.0(508)
지역						
대도시	24.7	9.9	63.0	2.1	0.4	100.0(243)
중소도시	15.2	8.6	70.2	5.3	0.7	100.0(151)
읍면지역	15.8	9.6	60.5	12.3	1.8	100.0(114)
정원						
39인 이하	22.0	13.4	54.9	7.3	2.4	100.0(82)
40~49인	13.0	13.0	65.2	8.7	-	100.0(69)
50~79인	19.4	8.0	65.1	6.9	0.6	100.0(175)
80~99인	20.0	10.0	68.0	1.0	1.0	100.0(100)
100인 이상	24.4	4.9	68.3	2.4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나. 특별활동 운영

1) 특별활동 수

<표 V-4-3>은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수를 영아와 유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것이다.

영아 대상의 특별활동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활동은 평균 1.4개이다. 특별활동 2개가 25%로 1/4 정도이며, 3개 22.6%, 1개 20.1% 순이다.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3.1%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평균 1.6개로 읍면지역 평균 1.1개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별활동 2개와 3개는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이 많고,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읍면지역이 많다. 특히 읍면지역이 42.2%로 절반 가까이 된다.

정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40~49인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2개 운영이 29.6%로 많다. 이에 반해 미실시 비율도 36.6%로 정원이 비슷한 어린이집들 간에 차이가 크다.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3개 운영이 25.9%로 많다.

〈표 V-4-3〉 영유아 대상 특별활동 수: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개

구분	영아						유아							
	미 실시	1개	2개	3개	계(수)	평균	미 실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3.1	20.1	25.0	22.6	100.0(517)	1.4	16.0	8.2	24.6	30.5	11.5	9.2	100.0(512)	2.4
지역														
대도시	25.9	20.2	28.3	25.6	100.0(247)	1.6 ^a	16.3	9.0	24.9	30.6	12.7	6.5	100.0(245)	2.5
중소도시	37.7	18.8	22.7	20.7	100.0(154)	1.3 ^b	19.1	4.6	19.1	32.2	12.5	12.5	100.0(152)	2.4
읍면지역	42.2	21.6	21.6	14.7	100.0(116)	1.1 ^b	11.3	11.3	31.3	27.8	7.8	10.4	100.0(115)	2.4
X ² (df)/F	14.3(6) [*]					7.5 ^{**}	16.5(10) [#]					0.7		
정원														
39인 이하	32.9	16.5	24.7	25.9	100.0(85)	1.5	20.2	1.2	23.8	34.5	7.1	13.1	100.0(84)	2.5
40~49인	36.6	9.9	29.6	23.9	100.0(71)	1.4	13.2	10.3	19.1	32.4	17.6	7.4	100.0(68)	2.5
50~79인	32.9	19.8	27.5	19.8	100.0(167)	1.4	15.6	12.0	21.0	30.5	12.0	9.0	100.0(167)	2.4
80~99인	30.4	25.9	20.5	23.2	100.0(112)	1.4	13.5	9.0	30.6	28.8	9.9	8.1	100.0(11)	2.4
100인 이상	34.1	25.6	23.2	17.1	100.0(82)	1.2	18.3	4.9	29.3	26.8	12.2	8.5	100.0(82)	2.4
X ² (df)/F	22.3(20)					0.4	22.3(20)					0.2		

[#] $p < 0.1$, ^{*} $p < .05$,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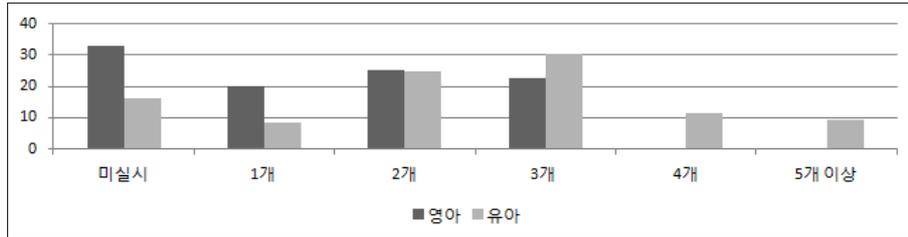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한편, 유아 대상의 특별활동 수는 평균 2.4개로 3개가 30.5%로 가장 많고, 2개도 24.6%이다. 미실시 비율은 영아의 1/2 정도인 16%이다(표 V-4-3 참조).

지역별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 특별활동 3~4개는 도시지역이 많고, 5개 이상은 중소도시와 읍면이 10% 이상으로 대도시보다 많다.

정원규모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39인 이하의 5개 이상 운영비율이 13.1%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보다 5%p 정도 많다. 39인 이하 어린이집은

미실시 비율이 20.2%로 많아 39인 이하 규모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V-4-1] 영유아별 특별활동 수: 어린이집 조사

2) 특별활동비

다음은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총 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나누어 특별활동 비용을 산출한 결과, 영아반은 총비용이 평균 25,313.0원으로 구간별로 보면 3만원에서 4만 5천원 사이가 39.6%로 많고, 4만 5천원 이상이 26.3%이다. 비용이 없다는 비율은 9.8%로 이러한 경우는 특별활동 비용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충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V-4-4> 영아반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계(수)	평균
	15,000 미만	15,000~30,000미만	30,000~45,000미만	45,000 이상	없음		
전체	2.0	22.3	39.6	26.3	9.8	100.0(346)	25,313.0
지역							
대도시	0.5	21.3	37.7	28.4	12.0	100.0(183)	27,151.7 ^a
중소도시	4.2	20.8	36.5	29.2	9.4	100.0(96)	24,388.1 ^{ab}
읍면지역	3.0	26.9	49.3	16.4	4.5	100.0(67)	21,616.0 ^b
X ² (df)/F			13.2(8)				
정원							
39인 이하	3.5	10.5	40.4	26.3	19.3	100.0(57)	30,336.1 ^a
40~49인	6.7	8.9	46.7	28.9	8.9	100.0(45)	26,605.1 ^{ab}
50~79인	-	25.0	45.5	22.3	7.1	100.0(112)	23,854.2 ^b
80~99인	2.6	32.1	28.2	29.5	7.7	100.0(78)	23,217.7 ^b
100인 이상	-	25.9	37.0	27.8	9.3	100.0(54)	24,986.3 ^b
X ² (df)/F			-				2.6 [*]

* p < .05,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가 27,151.7원으로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21,616원으로 가장 적다. 읍면지역은 1만 5천원에서 3만원, 3만원에서 4만 5천원 사이 비율이 도시보다 많다.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비율은 대도시가 12%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다(표 V-44 참조).

정원규모별로는 1만 5천원에서 3만원 사이는 50인 이상 어린이집이 1/4 이상을 차지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39인 이하가 19.3%로 40인 이상 어린이집보다 2배나 많다.

한편, 유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활동의 총비용은 평균 39,526.4원으로 영아보다 1만 5천원 정도 많다. 비용 분포별로는 3만원 미만이 29.3%로 가장 많고, 5만원 이상 26.1%, 3만원에서 4만원 25.4% 순으로 많다.

〈표 V-4-5〉 유아반 특별활동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원

구분	30,000원 미만	30,000~40,000원미만	40,000~50,000원미만	50,000원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9.3	25.4	19.2	26.1	100.0(364)	39,526.4
지역규모						
대도시	19.2	21.6	23.0	36.2	100.0(178)	45,016.2 ^a
중소도시	37.6	30.8	14.3	17.3	100.0(108)	34,643.8 ^b
읍면지역	41.4	26.4	17.2	14.9	100.0(78)	33,550.1 ^b
X ² (df)/F		37.4(6) ^{***}				19.0 ^{***}
정원						
39인 이하	35.6	28.9	11.1	24.4	100.0(40)	35,991.1 ^b
40~49인	34.0	32.1	17.0	17.0	100.0(44)	35,822.1 ^b
50~79인	35.3	26.0	19.3	19.3	100.0(126)	36,206.7 ^b
80~99인	25.7	28.6	18.1	27.6	100.0(89)	40,791.2 ^b
100인 이상	16.3	13.8	26.3	43.8	100.0(65)	48,533.8 ^a
X ² (df)/F		31.6(12) ^{**}				7.0 ^{***}

** p < .01, *** p < .0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대도시가 45,016.2원으로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33,550.1원으로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3만원 이하는 읍면지역이 41.4%로 많아 대도시의 2배가 넘는다. 반대로 대도시는 4만원에서 5만원, 5만원 이상이 23%, 36.2%로 10%대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많다.

정원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100인 이상은 48,533.8원으로 가장 많고 79인 이하

는 3만원대로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분포별로는 3만원 미만은 정원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이 높고, 4만원에서 5만원 사이는 반대로 정원이 클수록 많다. 10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은 5만원 이상이 43.8%로 절반 가까이 되어 특별활동비가 많다(표 V-4-5 참조).

4) 무료 운영 특별활동 수

보통 특별활동비는 부모가 부담하지만, 지역적 여건이나 어린이집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에서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부모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특별활동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55.1%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일수록 특별활동을 무료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약 10% 정도 차이가 난다. 정원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무료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다.

무료로 운영하는 특별활동 수는 평균 2개로 1개가 41.4%, 2개 33.7%로 1~2개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3개와 4개 이상도 10%대로 적지 않다.

〈표 V-4-6〉 무료 운영 특별활동수: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개

구분	무료 운영	무료 특별활동 수				계(수)	평균
		1개	2개	3개	4개 이상		
전체	55.1	41.4	33.7	13.7	11.2	100.0(285)	2.0
지역규모							
대도시	51.0	45.2	31.7	13.5	9.5	100.0(126)	1.9
중소도시	57.8	41.6	31.5	14.6	12.4	100.0(89)	2.0
읍면	60.3	34.3	40.0	12.9	12.9	100.0(70)	2.2
$X^2(df)/F$		3.1(6)					1.2
정원							
39인 이하	50.6	44.2	39.5	14.0	2.3	100.0(43)	1.7 ^b
40~49인	50.7	47.2	36.1	13.9	2.8	100.0(36)	1.7 ^b
50~79인	52.1	42.5	35.6	11.5	10.3	100.0(87)	2.0 ^{ab}
80~99인	63.4	45.1	25.4	14.1	15.5	100.0(71)	2.1 ^{ab}
100인 이상	58.5	27.1	35.4	16.7	20.8	100.0(48)	2.4 ^a
$X^2(df)/F$		16.2(12)					2.6 [#]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도시일수록 1개 실시한다는 비율이 높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45.2%, 41.6%로 읍면 34.3%보다 약 10%p 정도 많다. 반대로 2개는 읍면지역이 40%로 높다.

정원별로는 100인 이상이 2.4개로 39인 이하와 40~49인 1.7보다 유의미하게 많다. 특히 4개 이상은 100인 이상이 20%대로 49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보다 월등히 높다(표 V-4-6 참조).

<표 V-4-7>은 특별활동 무료 제공 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운영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로 월평균 286,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 비용 분포별로 보면, 50~100만원 미만이 16.8%, 30~50만원 16.1%로 가장 많고, 나머지도 10%대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은 월평균 약 469,000원을 부담하고, 중소도시는 200,000원, 대도시 245,000원 정도를 어린이집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 간에 2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10~20만원 정도의 지출은 대도시가 많고,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은 읍면지역이 많다. 정원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40~49인과 50~79인이 30만원대로 가장 많다.

<표 V-4-7> 특별활동 무료 운영 시 부담액: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원

구분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없음	계(수)	평균
전체	10.5	12.3	13.3	16.1	16.8	4.9	26.0	100.0(285)	285,779.8
지역규모									
대도시	11.9	15.1	13.5	15.1	10.3	6.3	27.8	100.0(126)	244,805.6 ^b
중소도시	13.5	12.4	15.7	12.4	14.6	-	31.5	100.0(89)	199,876.4 ^b
읍면	4.3	7.1	10.0	22.9	31.4	8.6	15.7	100.0(70)	468,753.6 ^a
X ² (df)			35.8(12) ^{**}						14.8 ^{***}
정원									
39인 이하	4.7	14.0	30.2	7.0	11.6	-	32.6	100.0(43)	195,488.4
40~49인	22.2	8.3	13.9	13.9	22.2	8.3	11.1	100.0(36)	356,493.1
50~79인	10.3	16.1	6.9	21.8	13.8	6.9	24.1	100.0(87)	309,879.3
80~99인	8.5	9.9	14.1	16.9	21.1	2.8	26.8	100.0(71)	270,676.1
100인 이상	10.4	10.4	8.3	14.6	16.7	6.3	33.3	100.0(48)	292,291.7
X ² (df)									1.3

** p < .01, *** p < .0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b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5. 보육서비스 질 관리

가. 평가인증

1) 현황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방안의 하나로 2006년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12년 5월말 기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신규 79.0%, 재인증 14.7%이다. 2005년~2011년 9기 신규인증 통과 어린이집은 총 32,411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은 2,017개소인 93.3%가 인증을 통과하였고, 민간어린이집은 80.7%, 가정어린이집은 75.3%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10%p 이상 차이가 난다.

시도별로 보면, 신규인증율은 광주가 100.7%로 가장 높고, 전북 95.7%, 인천 90.7% 순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남 77.3%, 충북 84.6%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90% 이상의 신규인증율을 나타낸다(부표 V-5-1 참조).

〈표 V-5-1〉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개인
전체	41,041	2,161	1,448	483	21,690	104	15,155
신규인증 (인증율)	32,411 (79.0)	2,017 (93.3)	1,503 (103.8)	289 (59.8)	16,336 (75.3)	38 (36.5)	12,228 (80.7)
재인증 (인증율)	6,029 (14.7)	1,201 (55.6)	915 (63.2)	90 (18.6)	1,710 (7.9)	9 (8.7)	2,104 (13.9)

주: 2012. 5. 31일 기준임. 민간개인어린이집에 법인외 포함됨.

신규인증은 2005년~2011년 9기 인증통과 현황, 재인증은 2010년~2011년 9기 재인증통과 현황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한편, 재인증통과 어린이집은 6,029개소로 국공립어린이집 1,201개소 55.6%가 재인증을 통과하였고, 민간개인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은 재인증율이 13.9%, 7.9%로 앞서 살펴본 신규인증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재인증율을 시도별로 보면, 전북이 28.1%로 가장 높고 전남 26.3%, 강원 26.2% 순이다. 경기도가 8%로 가장 낮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강원과 서울이 69.5%,

69.3%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인다(부표 V-5-2 참조).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인증유지율은 평균 61.4%로 국공립어린이집이 88.9%로 가장 높고, 다음이 법인 86.7%, 민간개인어린이집 62.2% 순이다. 나머지 시설유형은 60% 이하이다.

〈표 V-5-2〉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유지율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41,349	2,166	1,449	489	21,949	104	15,192
시설수	25,399	1,926	1,256	262	12,470	38	9,447
(인증유지율)	(61.4)	(88.9)	(86.7)	(53.6)	(56.8)	(36.5)	(62.2)

주: 2012. 6. 30일 기준. 민간개인어린이집에 법인의 포함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어린이집 조사에서 신규인증과 재인증으로 구분하여 평가인증 받은 해를 조사한 결과는 <표 V-5-3>과 같다.

〈표 V-5-3〉 평가인증 년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신규인증							재인증			
	2005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이후	계(수)	2010 이전	2011	2012	계(수)
전체	8.1	22.7	26.7	17.4	14.6	10.4	100.0(431)	7.8	67.3	24.9	100.0(361)
지역규모											
대도시	10.1	24.0	30.9	17.1	10.6	7.4	100.0(217)	10.6	71.8	17.6	100.0(188)
중소도시	7.1	23.0	23.0	12.7	17.5	16.7	100.0(126)	7.9	62.4	29.7	100.0(101)
읍면	4.5	19.3	21.6	25.0	20.5	9.1	100.0(88)	-	62.5	37.5	100.0(72)
$X^2(df)$			22.6(10) [†]					18.4(4) ^{**}			
정원											
39인 이하	1.7	10.2	20.3	15.3	27.1	25.4	100.0(59)	2.6	46.2	51.3	100.0(39)
40~49인	7.3	10.9	23.6	18.2	14.5	25.5	100.0(55)	8.3	63.9	27.8	100.0(36)
50~79인	8.7	28.0	30.0	15.3	12.7	5.3	100.0(150)	6.7	67.9	25.4	100.0(134)
80~99인	7.2	26.8	22.7	24.7	13.4	5.2	100.0(97)	6.8	72.7	20.5	100.0(88)
100인 이상	14.3	25.7	32.9	12.9	10.0	4.3	100.0(70)	14.1	73.4	12.5	100.0(64)
$X^2(df)$			65.7(20) ^{***}					24.0(8) ^{**}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신규인증은 2007년과 2006년이 26.7%, 22.7%로 절반 가까이 되고, 점차 줄어

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2006년과 2007년에 가장 많이 인증받았으며, 특히 2005년 이전에 신규인증 받은 비율이 가장 높다. 중소도시는 2008년 이후 10%대를 나타내며, 읍면지역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거의 90% 이상이 신규인증을 받았다.

정원별로 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2006~2008년 사이에 70% 이상이 신규인증 받았고, 49인 이하는 2010년 이후 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인증의 경우, 67.3%가 2011년에 평가인증 받았고 2012년 24.9%가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 이전은 대도시가 많고 2012년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재인증 비율이 높다.

정원별로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2010년 이전 14.1%로 100인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2012년 재인증은 39인 이하가 51.3%로 높다.

2) 평가인증 점수

한편, 평가인증 점수는 신규인증 평균 88.2점, 재인증 92.1점으로 재인증 평균 점수가 4점 정도 높다.

시설유형별로는 신규인증은 국공립어린이집이 91.1점으로 민간개인어린이집 89.4점보다 높다. 재인증도 국공립어린이집 94.1점, 민간개인어린이집 87.8점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높다.

〈표 V-5-4〉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평균 점수

구분	단위: 점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개인
신규	88.2	91.1	88.3	86.6	89.0	92.7	89.4
재인증	92.1	94.1	91.6	91.1	92.0	95.0	87.8

주: 2012. 5. 31일 기준. 민간개인어린이집에 법인의 포함됨.

신규인증은 2005년~2011년 9기 인증통과 현황, 재인증은 2010년~2011년 9기 재인증통과 현황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신규인증 시 점수를 조사한 결과, 91~95점이 37.2%로 가장 많고, 95점 이상도 31.5%로 90점 이상이 70% 정도 된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의 95점 이상 비율이 30%가 채 안된다. 86~90점은

29%로 읍면이 도시보다 많지만, 91~95점은 도시지역이 10%p 이상 많다.

정원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지만 95점 이상은 39인 이하가 40.7%로 가장 많고, 91~95점은 100인 이상이 44.9%로 많다.

〈표 V-5-5〉 신규 평가인증 점수: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80점 이하	81~85점	86~90점	91~95점	95점 이상	참여중	모름	계(수)
전체	0.6	3.9	22.8	37.2	31.5	3.5	0.6	100.0(492)
지역규모								
대도시	1.3	4.6	21.8	38.9	30.5	2.9	-	100.0(239)
중소도시	-	1.4	19.9	39.7	34.9	2.7	1.4	100.0(146)
읍면	-	5.6	29.0	29.9	29.0	5.6	0.9	100.0(107)
정원								
39인 이하	-	2.5	21.0	30.9	40.7	3.7	1.2	100.0(81)
40~49인	-	-	23.9	31.3	34.3	9.0	1.5	100.0(67)
50~79인	1.2	6.8	24.8	39.1	25.5	1.9	0.6	100.0(161)
80~99인	-	3.8	26.7	37.1	29.5	2.9	-	100.0(105)
100인 이상	1.3	2.6	14.1	44.9	34.6	2.6	-	100.0(7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재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95점 이상은 46.2%로 신규인증 31.5%보다 많다. 91~95점은 34.1%로 신규인증보다 낮아졌고, 85~90점도 12.9%로 10%p 이상 낮아졌다.

〈표 V-5-6〉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81~85점	86~90점	91~95점	95점 이상	참여중	계(수)	
전체	0.5	12.9	34.1	46.2	6.3	100.0(364)	
지역규모							
대도시	0.5	13.1	38.2	46.1	2.1	100.0(191)	
중소도시	1.0	8.9	26.7	51.5	11.9	100.0(101)	
읍면	-	18.1	33.3	38.9	9.7	100.0(72)	
정원							
39인 이하	-	10.3	20.5	48.7	20.5	100.0(39)	
40~49인	-	11.1	41.7	41.7	5.6	100.0(36)	
50~79인	1.5	8.2	38.8	47.8	3.7	100.0(134)	
81~99인	-	18.0	29.2	44.9	7.9	100.0(89)	
100인 이상	-	18.2	34.8	45.5	1.5	100.0(6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에 상관없이 95점 이상이 가장 많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재인증 점수 86~90점이 10%대로 중소도시보다 5~10%p 이상 많다.

정원별로는, 90점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86~90점은 80인 이상 어린이집이 18%로 많다. 즉,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신규인증 시에는 95점 이상 비율이 높지만, 재인증 시 90점 이하가 높아 재인증 시 평가인증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나.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구성원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수를 보면, 부모가 평균 2.8명으로 가장 많고, 보육교사 1.5명, 위탁체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가 1.3명, 1.2명 순이다.

〈표 V-5-7〉 운영위원회 구성원별 인원수: 어린이집 조사

구분	부모	지역사회 인사	보육교사	위탁체 대표	기타	단위: 명
전체	2.8	1.2	1.5	1.3	1.0	
지역규모						
대도시	2.9 ^a	1.2	1.6 ^a	1.0	1.0	
중소도시	2.8 ^{ab}	1.2	1.4 ^b	1.4	1.0	
읍면	2.6 ^b	1.2	1.3 ^b	1.3	1.0	
F	2.9 [#]	0.3	13.4 ^{***}	116.7 ^{***}	-	
정원						
39인 이하	2.3 ^c	1.1 ^b	1.0 ^c	2.3	-	
40~49	2.7 ^b	1.1 ^b	1.5 ^b	-	1.0	
50~79	2.8 ^{bc}	1.2 ^b	1.5 ^b	1.0	1.0	
80~99	3.0 ^{ab}	1.2 ^b	1.6 ^b	1.0	1.0	
100인 이상	3.3 ^a	1.4 ^a	1.9 ^a	1.2	1.0	
F	9.0 ^{***}	3.4 ^{***}	25.6 ^{***}	1.2 ^{***}	-	

[#] $p < 0.1$, ^{***} $p < .001$, a, b, c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부모와 보육교사, 위탁체 대표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부모는 대도시가 평균 2.9명으로 많고, 읍면지역이 평균 2.6명으로 가장

적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도시일수록 참여 인원수가 많아 대도시가 1.6명, 읍면 1.3명으로 차이가 난다. 위탁제 대표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다소 많다.

정원별로는 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보육교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대체로 정원규모가 큰 어린이집일수록 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보육교사가 많다.

2)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2012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운영위원회 운영횟수를 분기별 1회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2012년 9월 어린이집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반기별 1회 운영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다.

2012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는 평균 1.9회로 분기별로 개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회가 59.4%로 가장 많고, 1회 24.4%, 3회 10.4%, 4회 이상 2.1%순이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도 운영위원회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0.6%나 된다.

〈표 V-5-8〉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회							평균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무응답	계(수)	
전체	0.6	24.4	59.4	10.4	2.1	3.1	100.0(517)	1.9
지역규모								
대도시	0.8	25.1	57.5	10.1	3.2	3.2	100.0(247)	1.9 ^{ab}
중소도시	0.6	19.5	63.0	12.3	1.9	2.6	100.0(154)	2.0 ^a
읍면	-	29.3	58.6	8.6	-	3.4	100.0(116)	1.8 ^b
$X^2(df)/F$				-				2.5 [#]
정원								
39인 이하	1.2	29.4	55.3	9.4	2.4	2.4	100.0(85)	1.9
40~49인	-	22.5	60.6	12.7	2.8	1.4	100.0(71)	2.0
50~79인	0.6	25.1	58.1	10.2	2.4	3.6	100.0(167)	2.2
80~99인	-	20.5	65.2	8.9	1.8	3.6	100.0(112)	2.2
100인 이상	1.2	24.4	57.3	12.2	1.2	3.7	100.0(82)	2.1
$X^2(df)/F$				-				0.4

$p < 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평균 2회로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1.8회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다. 운영횟수별로는 2회가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1회가 20%대로 중소도시보다 많고, 3회 이상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정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대부분 2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횟수별로도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는다(표 V-5-8 참조).

3)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표 V-5-9>와 같이,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이 41.2%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지역위원 인선의 어려움이 26.5%, 운영위원의 낮은 참여도 11.9%, 운영위원회 체계 및 절차 숙지 부족 등의 순이다.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6.4% 정도로 매우 적다.

〈표 V-5-9〉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운영위원회 체계 및 절차 숙지부족	운영능력 및 경험 부족	운영위원 의 낮은 참여도	지역위원 인선의 어려움	운영위원 일정조정 기타 없음	계(수)	X ² (df)
전체	7.2	4.1	11.9	26.5	41.2	2.7 6.4 100.0(514)	
지역규모							
대도시	3.3	3.3	13.5	22.0	46.9	4.1 6.9 100.0(245)	
중소도시	9.2	4.6	9.2	30.1	37.3	2.0 7.8 100.0(153)	26.6(12)**
읍면	12.9	5.2	12.1	31.0	34.5	0.9 3.4 100.0(116)	
정원							
39인 이하	8.3	7.1	19.0	29.8	29.8	6.0 100.0(84)	
40~49인	7.0	4.2	9.9	23.9	40.8	8.5 5.6 100.0(71)	
50~79인	9.0	3.0	10.2	28.9	40.4	1.2 7.2 100.0(166)	-
80~99인	4.5	2.7	10.7	25.0	48.2	2.7 6.2 100.0(112)	
100인 이상	6.2	4.9	11.1	22.2	45.7	3.7 6.2 100.0(81)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지역별로 보면, 운영위원 일정조정 어려움은 도시일수록 많다. 대도시가 46.9%로 가장 많고, 읍면지역이 34.5%로 10%p 이상 차이가 난다. 이와 반대로

지역위원 인선의 어려움은 읍면지역일수록 높다. 읍면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가 제한되어 있어 대도시보다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읍면지역은 운영위원회 체계 및 절차 숙지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12.9%로 도시보다 월등히 높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장 대상의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운영위원의 낮은 참여도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중소도시보다 높다.

정원규모별로는 운영위원 일정조정의 어려움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응답비율이 높다. 반면에 운영위원의 낮은 참여도는 39인 이하 어린이집이 19%로 40인 이상보다 높다. 이는 어린이집 규모가 클수록 운영위원 구성원수가 많기 때문에 규모별로 느끼는 어려움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 재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뿐만 아니라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로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재무 회계는 일부 보육교사가 맡기도 하지만 주로 원장이 담당한다(부표 V-5-5 참조).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표 V-5-10>과 같이 유아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47.3%로 가장 많았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 부담과 보육교직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각각 22.7%, 20.2%로 인건비와 환경개선비로 인한 어려움이 대부분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유아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비율로 인한 어려움은 읍면지역이 많다. 읍면지역이 5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대도시는 40% 대로 10%p 이상 차이를 보인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비 부담은 대도시와 읍면지역이 25.9%, 20.7%로 중소도시 19%보다 높다(부표 V-5-6 참조). 이에 반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중소도시가 26.8%로 높고, 대도시 19%, 읍면지역 13.8%로 반대의 경향성을 나타낸다.

정원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지만, 유아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비율은 39인 이하보다는 40인 이상 규모의 어린이집이 높다. 이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이 큰 어린이집보다 유아반 보육교사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부표 V-5-7 참조). 친환경 식자재 구입에 따른 급간식비 부담은 영아 비율이 높은 39인 이하가 10.7%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보다 높다.

〈표 V-5-10〉 재정운영의 어려움: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으 로 인한 인건비부담	취약보육 교사인건 비 추가 지출 부담	건물노후 화에 따른 개보수비 부담	친환경식 자재 구입 급간식비 부담	기타	없음	계(수)
전체	47.3	20.2	2.1	22.7	4.3	1.7	1.7	100.0(516)
지역규모								
대도시	43.7	19.0	3.2	25.9	4.0	2.4	1.6	100.0(247)
중소도시	46.4	26.8	1.3	19.0	4.6	-	2.0	100.0(153)
읍면	56.0	13.8	0.9	20.7	4.3	2.6	1.7	100.0(116)
정원								
39인 이하	42.6	25.0	3.6	9.5	10.7	6.0	2.4	100.0(84)
40~49인	50.7	15.5	4.2	18.3	8.5	1.4	1.4	100.0(71)
50~80인	45.5	19.1	1.7	29.2	1.1	1.7	1.7	100.0(178)
81~99인	45.5	22.8	1.0	26.7	2.0	-	2.0	100.0(101)
100인 이상	54.9	18.3	1.2	20.7	3.7	-	1.2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표 V-5-11>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정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이다.

〈표 V-5-11〉 재정 투명성 확보 방법(1+2순위): 어린이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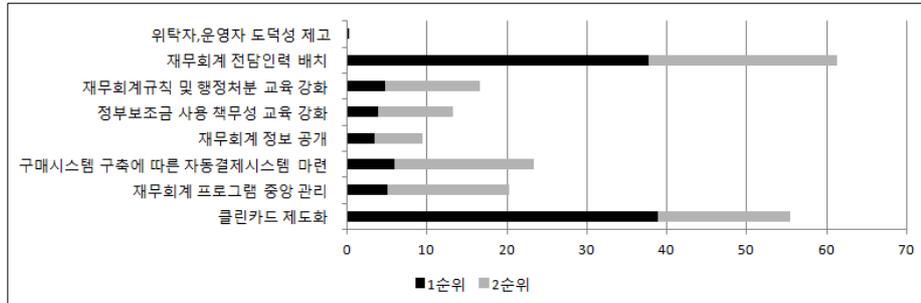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클린카드 제도화	재무회계 관리 프로그램 중앙관리	구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동결제 체계마련	재무회계 정보공개	정부 보조금 사용의 책무성 교육 강화	재무회계 규칙 및 행정처분 교육강화	재무회계 전담인력 배치	위탁자, 운영자 도덕성 제고	계(수)
1순위	38.9	5.0	6.0	3.5	3.9	4.8	37.7	0.2	100.0(517)
2순위	16.5	15.3	17.3	5.9	9.4	11.8	23.6	0.2	100.0(517)
1+2순위	55.4	20.3	23.3	9.4	13.3	16.6	61.3	0.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1순위로 클린카드 사용 제도화와 재무회계 전담 사무인력 배치가 38.9%, 37.7%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5% 내외이다. 2순위도 재무회계 전담인력 배치가 23.6%로 가장 많다. 클린카드 제도화나 재무회계프로그램 중앙관리, 구매시스템 자동결제시스템 마련, 재무회계 규칙 및 행정처분 교육 강화 등은 모두 10%대로 차이가 크지 않다. 종합하면, 재무회계 전담인력 배치와 클린카드 제도화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그림 V-5-1] 재정 투명성 확보 방법

6. 보육교직원 관리

가. 현황

<표 V-6-1>는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육교직원 수는 평균 10.7명으로 이들 중 보육교사가 평균 7.4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한다. 다음은 특수교사와 치료사로 평균 2.2명과 2명이며, 취사부가 평균 1.3명이다.

<표 V-6-1> 정원규모별 보육교직원수

구분	단위: 명(개소)							전체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특수교사	치료사	기타	
전체	7.4	1.0	1.0	1.3	2.2	2.0	0.5	10.7
39인 이하	4.3	-	-	0.9	3.5	2.3	0.2	6.7
40~49인	5.6	1.0		1.0	4.5	3.1	0.3	8.3
50~79인	6.7	1.0	1.0	1.0	2.1	3.4	0.5	9.4
80~99인	8.6	1.0	1.0	1.5	1.7	1.1	0.6	12.1
100인 이상	11.9	1.0	1.0	2.0	2.2	1.3	0.9	17.1
F	571.1 ^{***}	0.02	0.03	642.1 ^{***}	10.9 ^{***}	14.4 ^{***}	64.9 ^{***}	593.3 ^{***}
(수)	(2,160)	(147)	(91)	(2,160)	(272)	(72)	(2,160)	(2,160)
어린이집 전체	4.6	1.0	1.0	0.4	3.3	2.8	0.2	6.3

^{***} $p < .001$

자료: 보건복지부(2012). 전국 어린이집 운영 자료(2012년 4월 말 기준).

이를 정원별로 보면, 100인 이상은 총 보육교직원 수가 평균 17.1명으로 39인 이하 6.7명과 10명 이상 차이가 난다. 보육교사는 정원 100인 이상이 평균 11.9명, 39인 이하는 평균 4.3명이 근무하고 있어 7명 이상 차이가 난다. 취사부는 39인 이하가 평균 0.9명이고 100인 이상은 평균 2명이다.

한편,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자격별 비율을 산출한 결과,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1급은 64%, 2급 34.3%, 3급 14.2%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중 2/3는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보육교사 1급 비중이 20% 이상 높고, 2급과 3급은 낮다(표 V-6-2 참조).

지역별로 보육교사 1급과 3급 비중은 읍면지역이 높고, 반대로 보육교사 2급은 대도시가 높다.

정원규모별로 보면, 보육교사 1급 비율은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이 높고 보육교사 3급은 정원이 적은 어린이집이 높다.

〈표 V-6-2〉 보육교사 자격별 비율

구분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단위: %(개소) (수)
전체	14.2	34.3	64.0	(2,151)
대도시	12.4 ^c	36.6 ^c	61.2 ^c	(1,016)
중소도시	15.3 ^b	33.9 ^b	64.8 ^b	(649)
읍면	17.7 ^a	30.2 ^a	68.7 ^a	(486)
F	18.4 ^{***}	13.7 ^{***}	10.9 ^{***}	
정원				
39인 이하	21.9 ^b	35.0	61.4 ^a	(337)
40~49인	16.2 ^{ab}	34.2	64.1 ^b	(289)
50~79인	15.1 ^a	33.5	65.0 ^b	(695)
80~99인	11.5 ^a	33.4	65.5 ^c	(482)
100인 이상	8.6 ^{ab}	36.6	62.3 ^d	(348)
F	2.5 [*]	1.4	37.6 ^{***}	
어린이집 전체	34.0	48.4	40.5	(40,122)
민간개인	41.1	49.2	24.9	(5,498)

*** $p < .001$, a, b, c, d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 d$ 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전국 어린이집 운영 자료(2012년 4월 말 기준).

나.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및 처우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 받는다. 본 조사에 참여한 517개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평균 인건비는 6호봉으로 2012년 기준으로 1,677,840원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평균보다 다소 높은 6.7호봉이며 도시지역은 이보다 낮다. 중소도시 5.7호봉, 대도시 5.9호봉으로 1호봉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정원 50~79인이 6.4호봉으로 49인 이하 시설보다 1호봉 높다(표 V-6-3 참조).

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을 영아반 보육교사와 유아반 보육교사로 나누어 살펴 보면, 먼저 영아반 보육교사의 평균 인건비는 6.3호봉이며 유아반 보육교사는 이보다 낮은 평균 5.5호봉이다. 이는 정부의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율이 영아반보다 낮아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호봉수가 낮은 보육교사를 유아반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아반 보육교사는 3호봉 이하가 32%로 가장 많다. 평균 이하가 60% 정도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은 평균 7.2호봉으로 도시지역보다 1호봉 이상 높다. 정원별로도 39인 이하가 5.5호봉인 반면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6호봉이 넘어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

〈표 V-6-3〉 담당 아동 연령별 보육교사 호봉: 어린이집 조사

단위: %(명), 호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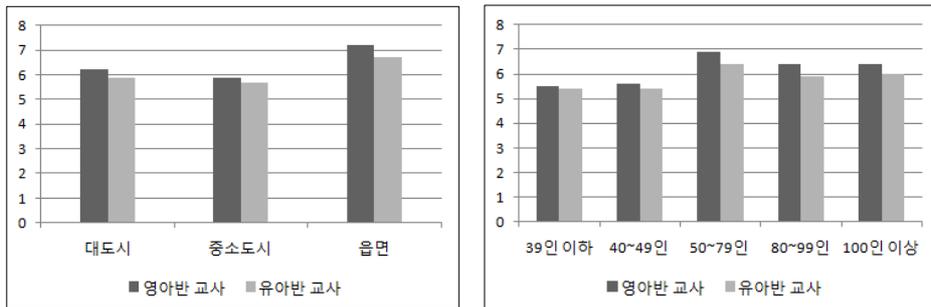
구분	영아 보육교사						유아 보육교사						전체 평균	
	3 이하	4~6 호봉	7~9 호봉	10~12 호봉	13 이상	계(수)	평균	3 이하	4~6 호봉	7~9 호봉	10 이상	계(수)		평균
전체	32.0	26.5	21.8	9.7	10.0	100.0(2,010)	6.3	32.3	34.2	22.9	10.7	100.0(1,338)	5.5	6.0
지역규모														
대도시	32.4	27.1	20.5	10.0	10.1	100.0(1,060)	6.2 ^b	31.6	37.2	19.9	11.5	100.0(675)	5.4 ^b	5.9 ^b
중소도시	34.8	27.5	21.1	8.7	8.0	100.0(589)	5.9 ^b	37.8	29.5	24.1	8.6	100.0(410)	5.2 ^b	5.7 ^b
읍면	26.3	23.0	27.1	10.2	13.3	100.0(361)	7.2 ^a	25.3	33.6	28.9	12.2	100.0(253)	6.0 ^a	6.7 ^a
X ² (df)/F							9.1 [*]						4.6 [*]	12.5 ^{***}
정원														
39인 이하	36.5	26.7	24.2	8.3	4.3	100.0(277)	5.5 ^b	43.9	29.8	15.8	10.6	100.0(57)	5.1	5.4 ^b
40~49인	30.9	33.8	22.4	8.5	4.4	100.0(272)	5.6 ^b	38.7	31.2	24.7	5.4	100.0(93)	4.9	5.4 ^b
50~79인	26.8	26.1	23.0	12.1	12.1	100.0(564)	6.9 ^a	26.2	36.5	24.8	12.5	100.0(416)	5.7	6.4 ^a
80~99인	33.6	23.5	21.7	9.6	11.4	100.0(446)	6.4 ^a	31.0	37.5	24.0	7.6	100.0(371)	5.3	5.9
100인 이상	34.8	25.3	18.6	8.2	13.1	100.0(451)	6.4 ^a	36.7	29.9	20.4	13.0	100.0(401)	5.5	6.0 ^a
X ² (df)/F							6.1 ^{***}						1.6	5.6 ^{***}

* $p < .05$, *** $p < .001$, a, b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한편, 유아반 보육교사는 4~6호봉이 34.2%, 3호봉 이하가 32.3%로 6호봉 이하가 66.5%를 차지한다. 6호봉 이하 비율이 영아반 보육교사보다 높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은 평균 6호봉으로 도시지역보다 높다.

정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49인 이하 어린이집은 4.9호봉으로 가장 낮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대부분 5호봉 이상이다.



[그림 V-6-1] 지역 및 정원별 보육교사 인건비: 어린이집 조사

2) 초과근무 및 수당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라 평일 8시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표 V-6-4>는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6.2시간으로 5~10시간이 21.7%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10%대이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7.3%로 보육교사 약 2/3 정도가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일수록 초과 근무시간이 많다. 읍면지역은 평균 7.2시간으로 대도시 평균 5.3시간보다 2시간 정도 많다. 시간대별로는 15시간 미만은 도시가 많지만, 15시간 이상은 읍면지역이 더 많다. 초과근무가 없다는 비율도 읍면지역이 47.4%로 절반 가까이 된다. 즉, 읍면지역 보육교사 절반 정도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지만, 초과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는 도시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있다.

정원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39인 이하와 40~49인의 초과근무시간이 7시간 내외로 50인 이상 어린이집보다 길다.

<표 V-6-4>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시간

구분	1~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15 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없음	계(수)	평균
전체	17.4	21.7	13.0	10.6	37.3	100.0(517)	6.2
지역규모							
대도시	22.7	23.5	11.7	6.9	35.2	100.0(247)	5.3
중소도시	14.3	21.4	19.5	11.7	33.1	100.0(154)	7.0
읍면	10.3	18.1	6.9	17.2	47.4	100.0(116)	7.2
$X^2(df)/F$			30.2(8) ^{***}				2.8 [#]
정원규모							
39인 이하	15.3	22.4	12.9	14.1	35.3	100.0(85)	6.9
40~49인	11.3	21.1	16.9	19.7	31.0	100.0(71)	7.7
50~79인	40.1	17.4	19.2	16.2	7.2	100.0(167)	5.9
80~99인	40.2	17.0	24.1	8.9	9.8	100.0(112)	5.6
100인 이상	25.6	23.2	8.5	7.3	35.4	100.0(82)	5.7
$X^2(df)/F$			20.6(16)				0.8

$p < 0.1$, *** $p < .0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초과근무 시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표 V-6-5>와 같다.

<표 V-6-5>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시간외 수당: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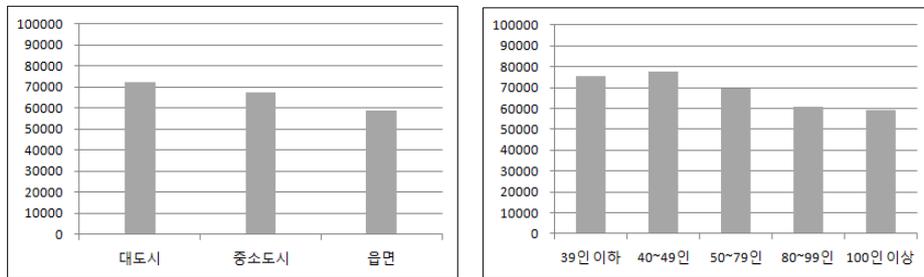
구분	3만원 미만	3~5만 원 미만	5~7만 원 미만	7~10만 원 미만	10~15만 원 미만	15만원 이상	없음	계(수)	평균
전체	3.8	13.1	29.1	15.7	23.3	4.2	10.9	100.0(313)	68,247.7
지역규모									
대도시	4.5	14.7	28.8	17.3	24.4	4.5	5.8	100.0(156)	72,101.5
중소도시	2.0	10.1	26.3	18.2	28.3	1.0	14.1	100.0(99)	67,613.7
읍면	5.2	13.8	34.5	6.9	12.1	8.6	19.0	100.0(58)	58,964.6
$X^2(df)/F$				24.4(12) [*]					1.6
정원									
39인 이하	3.7	5.6	24.1	14.8	24.1	11.1	16.7	100.0(54)	75,643.8
40~49인	-	18.4	34.7	12.2	24.5	6.1	4.1	100.0(49)	77,561.1
50~79인	3.2	9.7	30.1	17.2	26.9	2.2	10.8	100.0(93)	69,485.6
80~99인	6.1	19.7	25.8	16.7	21.2	1.5	9.1	100.0(66)	60,568.6
100인 이상	5.9	13.7	31.4	15.7	17.6	2.0	13.7	100.0(51)	59,148.9
$X^2(df)/F$				-					1.7

* $p < .0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초과근무 수당은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68,247.7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대 별로 보면 5~7만원이 29.1%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15만원 미만으로 23.3%를 차지한다. 초과근무를 하지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 10% 정도된다.

지역별로 보면 유의미한 차이 없이 대도시가 72,101.5원으로 가장 많고, 읍면 지역이 58,964.6원으로 가장 적다. 정원규모별로도 차이가 없지만 정원이 적은 어린이집일수록 수당이 많다.



[그림 V-6-2] 지역 및 정원별 보육교사 월평균 시간외 수당: 어린이집 조사

7. 소결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시간, 취약보육, 원아관리, 보육프로그램, 평가인증 및 운영위원회, 보육교직원 및 재정 관리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취약보육 활성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률은 민간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 높았다. 시간연장보육이 51.7%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다. 장애아 통합 23.4%,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영아보육은 5% 미만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취약보육 실시 이유는 영아보육이 위탁조건 30.9%, 시간연장은 학부모 요청 40.4%, 장애아 보육은 원장의 보육철학 41.4%, 다문화보육 또한 학부모 요청 43.9%이었다.

원장들은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건비 추가 지원, 인건비 지원을 조정 등 인건비 관련 요구가 많았다. 이 외에도 장애아보육은 기능보장비 지원이 19.7%였고, 다

문화보육은 운영비 지원이 18%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 1순위와 2순위 합산 비율이 시·간연장보육 53.6%, 장애아 보육이 50.1% 순으로 많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어린이집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보육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정원 내 초과보육 시 연령별 상한선 마련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1세반 현원률은 107.9%, 2세반 107.2%로 초과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읍면지역 0세반 현원률은 112.7%, 1세반 121.7%로 정원의 20% 이상을 초과보육하고 있었다. 반면, 3세반과 4, 5세반은 정원 미달이다. 1,2세반은 모든 정원규모의 어린이집이 초과보육하고 있었다.

초과보육 이유는 대기자 급증이 30.7%, 전출입 등 유동 영유아 발생 26.1%, 운영의 어려움도 19.7%였다. 원장들은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이 필요한 연령으로 3세반 38.8%, 0세와 1세, 4세반은 10%대였다. 3세반은 대도시가 41.3%, 읍면지역 35.3%로 도시일수록 많았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아반의 초과보육 운영을 제한하여야 하며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입소대기자 관리 체계화 및 대기 연장신청 제도화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부모의 입소대기 어린이집은 평균 1.3개소로 1개소가 41.9%로 가장 많고, 2~3개소는 25%였다. 신청 후 바로 입소하였다는 비율은 1/3정도였다. 대기기간은 평균 5.2개월로 1~3개월이 22.4%로 가장 많고, 4~6개월이 19.6%로 절반 정도는 6개월 이내에 신청 어린이집에 입소하였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입소대기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화접수 39.5%, 인터넷접수 33.3% 순이고, 부모조사에서는 직접 방문이 81.4%, 인터넷 11.1%, 전화 7.4% 순이다. 어린이집의 입소신청자 관리주기는 결원 발생 시 수시로 한다가 70.8%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3개월마다 14.3%, 1년에 한번 10.3%, 6개월마다 3.9%였다.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하다고 40.2%, 반드시 필요하다고 26.3%로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부모 7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장신청제도 도입 시 신청주기는 어린이집은 1년이 42.2%, 6개월이 29%로 가장 많고, 부모는 4~6개월이 31.6%로 가장 많고, 1개월과 3개월도 21.3%, 29.9%였다.

넷째, 입소우선순위 재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입소우선순위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3.8%로 많았고, 저소득 한부

모가족 자녀 89.9%, 아동복지시설영유아, 장애부모자녀, 맞벌이부모 자녀 모두 70~80% 이상이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자녀, 산업단지입주근로자자녀, 입양영유아는 50% 미만이었다. 2순위로 입양 영유아가 45.1%로 많고,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43.5%, 다문화가족 자녀 39.3% 순이다. 3순위는 산업단지입주 근로자 자녀와 입양 영유아가 동일하게 26.9%,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와 장애 영유아가 18.6%순이었다. 한편 부모는 1순위로 맞벌이 부모 자녀가 43.6% 많고, 저소득가구 32%였고, 2순위로 맞벌이 부모 자녀가 23.5%, 저소득가구 20%였다.

다섯째, 영아 대상 특별활동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영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활동은 평균 1.4개로 특별활동 2개가 25%, 3개 22.6%, 1개 20.1% 순이다. 특별활동 미운영 비율은 33.1%였다. 특별활동 운영비율은 대도시가 높고, 미운영 비율은 읍면지역이 높았다.

여섯째,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원장 교육이나 컨설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는 2012년 상반기 평균 1.9회로 2회가 59.4%로 가장 많고, 1회 24.4%였다. 중소도시가 평균 2회, 읍면지역이 1.8회로 차이가 난다.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위원 일정조정의 어려움이 41.2%, 지역위원 인선의 어려움 26.5%, 운영위원의 낮은 참여도 11.9%, 운영위원회 체계 및 절차숙지 부족 순이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은 6.4% 정도로 낮았다.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은 도시일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지역위원 인선의 어려움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많았다.

일곱째,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를 시사하였다.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 1순위로 클린카드사용 제도화와 재무회계 전담 사무인력 배치가 각각 38%로 많다. 2순위로 재무회계 전담인력 배치가 23.6%, 클린카드 제도화나 재무회계프로그램 중앙관리, 구매시스템 자동결제시스템 마련, 재무회계 규칙 및 행정처분 교육 강화 등은 모두 10%대였다. 종합하면, 재무회계 전담인력 배치와 클린카드 제도화가 가장 많았다.

여덟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보육교사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6.2시간으로 초과근무가 없다는 비율은 37.3%로 보육교사 약 2/3 정도가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하고 있다. 읍면지역은 초과근무가 없다는 비율이 47.4%로 많았다. 초과근무 시 지급한 시간외 수당은 교사 1인당 월평균 68,247.7원이고, 초과근무를 하지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약 10% 정도였다.

VI.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이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위탁운영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요구를 분석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책 제언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탁운영 개선,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

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확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부문 중심의 공급 확대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기방안: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000개소씩 추가 확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을 30%까지 늘린다. 2008년 정부가 발표한 「새로마지플랜 2010」에서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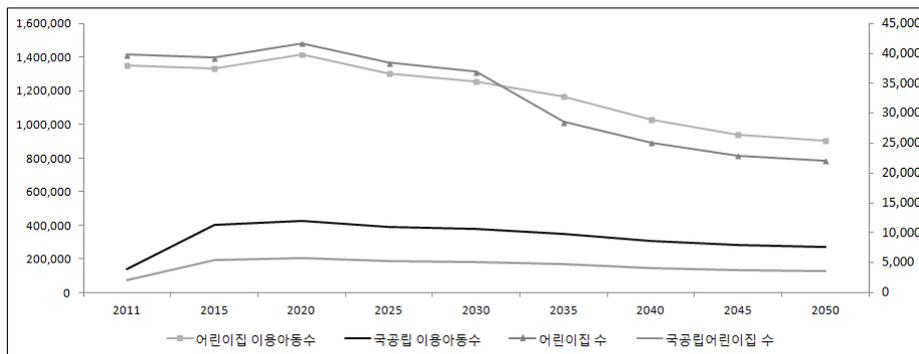
2015년까지 이용 아동 30% 수용을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5,379개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용 아동은 2011년 기준 143,035명에서 399,685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5,710개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을 기점으로 0~5세 영유아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공급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수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줄어듦 것으로 예측된다. 영유아 인구 감소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표 VII-1-1 참조).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필요한 국가 예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지원하는 국비 최고 지원단가 2.4억원⁶⁾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총 7,83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고, 신축비는 50:50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규모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부지 매입을 비롯한 건축비, 장비비 등의 총 설치비 20억원 기준으로 산출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총 예산은 6조 5천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설치 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기능보강비 등 운영비 지원이 뒤따라야 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국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림 VI-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계: 이용 아동 30% 기준

2) 중장기 방안: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5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 앞서 설명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계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와 이용 아동

6) 2012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기준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시도별 예산 범위내에서 398㎡까지 탄력 지원함. 지원단가는 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이며, 국비 최대지원액은 237,857천원임.

수를 산출하면 다음 <표 VII-1-1>와 같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를 국공립어린이집이 분담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172개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 아동수는 2011년 기준 143,035명에서 532,913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1년을 기점으로 영유아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2020년 7,613개소에서 2025년에는 확충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7,017개소로 감소하고, 2030년 6,748개소, 2040년 5,539개소, 2050년 4,868개소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아동 5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는 2015년 8,966개소가 확충되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이용 아동수는 2011년 143,035명에서 666,14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이후 영유아 인구 감소로 확충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은 8,772개소로 1,000개소 이상 감소하고, 2030년 8,435개소, 2040년 6,924개소, 2050년 6,085개소까지 줄어든다.

<표 VI-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계: 2015~2050

단위: 명, 개소

구분	2011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0~5세 영유아수	2,777,209	2,741,321	2,909,751	2,682,006	2,579,148	2,346,555	2,068,176	1,911,623	1,852,383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1)	1,348,729	1,332,282	1,414,139	1,303,455	1,253,466	1,167,686	1,028,862	939,106	904,188
어린이집 수2)	39,842	39,300	41,715	38,450	36,975	28,550	25,156	22,961	22,107
국공립 30% 확충									
이용 아동수	143,035	399,685	424,242	391,036	376,040	350,306	308,658	281,732	271,257
국공립 수2)	2,116	5,379	5,710	5,263	5,061	4,715	4,154	3,792	3,651
국공립 40% 확충									
이용 아동수	143,035	532,913	565,656	521,382	501,386	467,074	411,545	375,642	361,675
국공립 수2)	2,116	7,172	7,613	7,017	6,748	6,286	5,539	5,056	4,868
국공립 50% 확충									
이용 아동수	143,035	666,141	707,069	651,727	626,733	583,843	514,431	469,553	452,094
국공립 수	2,116	8,966	9,516	8,772	8,435	7,858	6,924	6,320	6,085

주: 1) 2012년 4월 말 기준 어린이집 이용률 48.6% 기준으로 산출.

2) 2012년 4월 말 기준 평균 정원 어린이집 40.9명, 국공립 74.3명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행정안전부(2011). 주민등록인구 통계.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자료(중위값 기준).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확보

1) 단기방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규모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규모를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2008년 11,575백만원에서 2009년 9,058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10년 2,695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삭감되었다. 2012년 다소 상승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전체 보육사업 국고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8년 0.8%에서 2009년 0.5%, 2010년 0.1%로 감소하였다. 보육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가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사업 예산 0.5% 수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VI-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규모

구분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보육사업 국고 예산 ¹⁾	1,417,780	1,710,430	2,127,509	2,478,380	3,028,56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²⁾	11,575	9,058	2,695	2,695	2,933
비율(%)	0.8	0.5	0.1	0.1	0.1

자료: 1)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각 년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2012). 내부자료.

2) 중장기방안: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참여 유도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50%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자원 조달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이때,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별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하도록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시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기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조정 및 지역별 균형배치

1) 단기 방안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우선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으로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이 33.7%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 순이었다. 2순위도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순으로 많았다. 특히, 도시지역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에 주로 확충이 이루어졌다. 2013년도 2012년과 동일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31.3%가 저소득 밀집지역을 지적하였고,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은 28.9%였다. 어린이집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도시 주거밀집지역,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30.6%, 25.1%로 많았다. 반면, 우선 설치지역으로 지정된 농산어촌 지역은 5%정도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며 추가 확충이 필요한 지역도 동일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과 저소득 밀집지역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1년 기준 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은 440개 읍면과 34개 동 총 474개 지역이다(보건복지부, 2011).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중 농어촌이 90% 이상으로 이 지역에 무조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농어촌 지역은 해당 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보육 수요가 낮고, 인근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유치원이 보육수요를 담당하고 있어 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불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육 수요가 없는 곳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중장기 방안 : 1개 읍면동에 1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개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자 수는 2011년 6월 기준 168,153명으로 정원의 1.08배였으나 2012년 181,017명으로 늘어 정원 대비 1.18배로 쏠림현상이 심각하다.⁷⁾

서문희 외(2009)의 연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선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저렴한 보육료가 52%로 절반 이상이었고, 신뢰 38.5%, 교사 자질이나 접근성, 보육 내용 등은 5% 미만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모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긴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저렴한 보육료는 10.7% 정도였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서 15%, 어린이집 환경이 좋아서 13%,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7.4%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부표 VI-1-1 참조). 이는 0~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이가 크게 줄면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부모들로 하여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이끈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비교하면 다음 <표 VI-1-3>과 같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평가인증 점수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규와 재인증 평균 점수가 모두 90점대이나 민간개인어린이집은 80점대로 차이가 있다. 특히 재인증 점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높다. 또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인증유지율도 국공립어린이집이 89.9%, 민간개인어린이집 62.2%로 국공립어린이집이 25%p 이상 높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비율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급 보육교사가 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 반해 민간개인어린이집은 1급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절반 수준도 안되는 24.9%이고, 2급과 3급 보육교사는 49.2%, 41.1%로 높아 보육교사의 질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대표적인 취약보육 운영 비율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률은 모두 평균보다 높다. 특히 운영하기 어려운 시간연장보육과 장애아통합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은 민간개인어린이

7) 뉴시스 신문기사 2012년 10월 4일자 기사

이집과 큰 차이를 보인다.

〈표 VI-1-3〉 국공립과 민간개인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비교

구분	단위: %, 점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개인어린이집
1. 평가인증 ¹⁾			
신규인증 접수	88.2	91.1	89.4
재인증 접수	92.1	94.1	87.8
인증유지율(%)	61.4	88.9	62.2
2. 보육교사(%) ²⁾			
1급	40.5	64.0	24.9
2급	48.4	34.3	49.2
3급	34.0	14.2	41.1
3. 취약보육 운영률(%) ³⁾			
시간연장보육	19.4	51.7	17.8
다문화보육	36.7	61.0	50.6
장애아통합보육	2.0	23.4	1.4
휴일보육	0.6	4.5	0.4
24시간보육	0.7	2.5	0.7

자료: 1)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2012년 5, 6월 말 자료).
 2), 3) 보건복지부(2012). 전국어린이집 운영 자료(2012년 4월말 기준).

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1개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2011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지역은 1,022개 읍·면과 938개동 총 1,968개 지역으로 최소 국공립어린이집 1,968개소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 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대한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다. 중앙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확대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에 의해 추진되었다. 또한 재정자주도가 높은 대도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외에도 지방비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의존도가 높다. 이 외에도 시군구 담당자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어려움으로 예산부족과 부지확보를 지적하였다. 특히 도시지역은 예산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많았고, 읍면지역은 예산부족 외에도 해당 연령 아동인구 감소 등

을 들었다.

중앙정부의 2012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단가는 1,201,300원/㎡으로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며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지원한다. 또한 최대 지원액은 237,857천원이다. 국고 지원액에는 설계용역비가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부지 확보 시 신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까지 고려한다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은 더욱 크다.

1) 단기 방안

첫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최대 면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최대면적을 확대한다. 현행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최대면적은 330㎡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정원 70명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면적⁸⁾을 산출하였을 때 평균 면적은 471㎡가 된다. 즉, 현행 최대 330㎡까지 지원하는 어린이집 면적 기준을 450㎡까지 늘린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단가 현실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단가를 30%까지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한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단가를 2007년 1,093,940원/㎡에서 2008년 1,201,300원/㎡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동일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최대 지원액도 마찬가지로 2007년 21,660천원에서 237,857천원으로 인상 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2007년 이후 매년 3~4% 상승하여 왔으나(통계청, 201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단가는 5년 전과 동일하다.

정부 지원단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가에 맞춰 설치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게 된다. 어린이집 부실 건축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설치 후 시설 보강을 위한 운영비나 개보수비 등을 추가로 발생시켜 어린이집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 지원단가를 30%까지 상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8) 어린이집 면적은 어린이집 전용 면적 영유아 1인당 4.29㎡와 보육실 면적 2.64㎡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중장기 방안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설치비 분담 비율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설치비 분담 비율을 조정한다.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50:50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70~90%까지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각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가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설치비 분담 방식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분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둘째, 중앙정부의 신축비 지원 시 건축비 이외의 부지 매입비 일부 중앙정부 부담

어린이집 설치비 중 부지 매입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시 부지 매입을 지원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부지 매입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며 지역에 따라 지가 차이가 크므로 차등 지원한다.

라. 어린이집 설치 관련법 개정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건축면적이 증가되어서는 안 되며, 증축 후 층수도 2층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도시공원 내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하, 층수 3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별도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고, 근린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정한다.

둘째,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의 유치원 우선 설치 조항을 개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건축용지에는 연면적 7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축하고 남은 면적에 어린이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어린이집보다 유치원 우선 설치를 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기관 이용시기가 빠르고, 보육 연령 범위나 이용 아동수가 많으므로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개선 방안

가. 비영리 법인 우선 위탁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우선 위탁권을 준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형태는 개인위탁이 42.2%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순이었다.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개인위탁이 많았다. 특히 시군구 직영은 읍면지역일수록 많았다. 또한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위탁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을 지적하였고, 개인위탁, 시군구 직영 순으로 많았다. 읍면지역은 시군구 직영, 대도시는 사회복지법인, 중소도시는 개인위탁을 지적하여 선호하는 위탁형태가 지역에 따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위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체의 비영리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서문희 외, 2007). 현재 개인위탁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위탁 시 이행보증보험 의무 가입제도를 폐지하였다. 즉, 개인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위탁은 개인보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나. 위탁체 선정심사 개선

1) 단기방안

첫째, 재위탁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제도화

재위탁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적용을 제도화한다. 위탁심사 시 적용하는 심사 기준으로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가 신규변경위탁 85.6%, 재위탁 82.2%로 많았고, 지자체 관련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준표 순이었다. 신규위탁 시에는 대도시의 위탁체 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았고, 읍면지역은 보육조례 관련 기준이나 지자체 자체 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았다. 재위탁 시에도 도시지역이 위탁체심사기준표 적용 비율이 높았다.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지자체 자체 선정 기준표 적용 비율이 많았다. 어린이집 조사에서도 신규위탁 시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적용 77.4%, 재위탁 시 78.9%였으며, 읍면지역은 재위탁 시 지방자치단체관련 조례 적용 비율이 38.2%로 많았다. 재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시군구 보육담당자 57.5%, 어린이집 원장 5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위탁운영도 늘어나고 있다. 위탁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재위탁 심사는 기존 위탁체에게 운영권을 재 부여하는 것이므로 심사기준은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다. 재위탁 시 위탁체 심사기준표 적용에 대하여 시군구 보육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절반 이상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변경 위탁뿐 아니라 재위탁 심사에서도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다.

둘째,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 의무화

재위탁 심사절차에서 현장관찰을 의무화한다. 신규위탁 심사시 서류심사는 91.0%, 발표 78.9%, 면접 72.9% 정도였으나 어린이집 현장관찰은 12.0%로 가장 낮았다. 현장관찰은 대도시가 22.4%로 많았다. 재위탁 시 현장관찰은 신규위탁보다 20%p 이상 높았다. 대도시 현장관찰 비율이 40.6%로 타 지역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위탁심사 시 현장관찰 실시 비율은 29% 정도였다. 이는 대도시가 41.7%로 타 지역보다 많았다. 현장관찰 시기는 1주일 전과 심사당일이 53.2%, 26.6% 순으로 많았다.

재위탁 심사관리기준표에서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배점이 가장 높지만 시설운영 평가는 위탁체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어린이집 운영 평가는 다른 심사항목과 달리 현장관찰을 통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는 현행 심사원칙을 재위탁 심사 시 현장관찰을 의무화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을 개정한다.

셋째, 심의절차 및 기준, 결과 공개 의무화

위탁체 선정 심의절차, 심의기준 및 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체 모집공고는 64% 정도가 공개되었고, 심의결과 29.2%, 선정결과 45.3%가 공개되었다. 비공개는 14.3%였다. 위탁체 모집공고나 위탁절차 및 방법 공개는 중소도시가 70.1%로 많고, 심의결과는 대도시가 33.2%, 선정결과 공개는 지역에 상관없이 40% 정도로 많았다. 모두 비공개는 10%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위탁체 선정에 있어 중립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선정절차 및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위탁체 공개모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위탁체 심의결과는 공개된 심사기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결과를 공지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준수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따라서 위탁체 선정이 지역색이나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위탁심사절차 및 심의결과 일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넷째, 위탁체 선정과정 모니터링제도 도입·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신규위탁 시 위탁체에게 위탁금을 부담시키는 시군구가 20%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신규위탁 시 위탁금을 명시하는 시군구가 7.5%, 위탁금을 명시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을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시군구가 10.9%였다.

심층면담에서 지자체가 위탁조건으로 위탁체에게 시설보수비나 기능보강비를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일부 법인들이 이를 원장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탁계약 시 가입하는 보증보험료도 원장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도 시군구가 사회복지법인을 선호함에 따라 일부 원장들이 위탁을 조건으로 법인에게 뒷돈을 건네고 이를 이용하여 위탁을 받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이처럼 환경개선비나 보증보험료 등을 원장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위탁 시 법인에게 일정금액을 건넨 경우,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활동

비나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육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나 개인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모니터링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중장기 방안

첫째, 심의위원 구성 비율 조정 및 자격조건 마련

먼저, 위탁체 선정심사위원의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45%,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 조사에서 선정심사위원별 구성 비율은 보육 및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가장 많았고, 부모 대표, 지자체 담당공무원, 보육교사, 민간어린이집 원장 순이었다.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비교하면, 현 구성비율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학과 교수 등의 보육전문가와 부모대표 비율은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보육교사 대표 비율은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 그러나 부모대표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육관련 전문성이 떨어져 서류나 면접 심사만으로는 위탁체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되어 있는 부모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심의위원 자격조건을 마련한다. 시군구 보육담당자들은 위탁 선정심사위원 자격조건으로 공정성이 54%로 많고,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도 33.3% 순으로 많았다. 읍면지역은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가 43.3%로 타 지역보다 많았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위탁 심의위원 자격 조건으로 보육현장 경험과 이해 47.1%로 많았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순이었다. 보육 및 유아교육 현장 경험 및 관련 업무 경력 등을 조건으로 위탁체 심의위원 자격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위탁체 선정심사위원은 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탁체 선정심사위원 자격기준 마련에 앞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자격기준이 마련한다.

둘째,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의 배점 조정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의 배점을 조정한다.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에 대해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이 3.7점으로 높았고, 재정능력이 3.5점으로 낮았

다. 심사항목별 적정점수는 어린이집 운영 계획 평균 28.1점으로 심사기준 40점보다 낮았고,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도 평균 27.2점으로 기준 점수 35점보다 낮았다. 이와 반대로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은 평균 20.5점으로 기준 점수보다 10점 이상 높았고, 운영체의 공신력과 재정능력도 13.3점, 10.9점으로 기준점수보다 다소 높았다.

재위탁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은 어린이집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이 3.9점으로 높고, 신규위탁과 동일하게 재정능력이 3.6점으로 낮았다. 적정점수도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이나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공신력 등은 기준점수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은 24.5점으로 낮았고, 재정능력은 8.4점으로 다소 높았다.

위탁체 선정관리기준표는 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무엇보다도 객관적이어야 하며 보육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신규변경 및 재위탁 심사관리기준표의 심사항목별 배점을 다음 <표 VI-1-4>와 같이 조정한다. 신규변경 위탁체 심사관리기준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30점,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도 30점으로 점수를 낮춘다. 반대로 운영체 시설 운영실적은 20점, 재정능력은 10점으로 상향조정한다. 운영체의 공신력은 종전대로 10점 배점한다.

재위탁 심사관리기준에서는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은 25점으로 낮추고 재정능력은 10점으로 높인다. 나머지 심사항목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표 VI-1-4> 위탁체 심사관리기준표 개정(안)

단위: 점

신규위탁			재위탁		
심사항목	현행	개정	심사항목	현행	개정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30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30	30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	30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30	25
운영체 시설 운영실적	10	20	어린이집 운영계획	25	25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운영체의 공신력	10	10
재정능력	5	10	재정능력	5	10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별표8의 2]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 방안

가. 취약보육 관리·감독 강화 및 지원 확대

1) 단기 방안

첫째, 취약보육 관리·감독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취약보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률은 민간이나 법인어린이집보다 높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이 51.7%로 전체 평균의 2배가 넘고, 장애아 통합 23.4%, 장애아전담, 휴일보육, 24시간 보육도 5% 이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이유는 영아보육이 위탁조건, 시간연장은 학부모 요청, 장애아 보육은 원장의 보육철학, 다문화보육 학부모 요청이 많았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으로 시간연장보육, 장애아 보육을 지적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시 계약사항으로 취약보육 2가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탁운영권을 회수하는 등의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취약보육 인건비 비율 조정

취약보육 인건비 지원 비율을 조정한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건비 추가 지원, 인건비 지원률 조정 등 인건비 관련 요구가 많았다. 이 외에도 장애아보육은 기능보강비 지원이 19.7%였고, 다문화보육은 운영비 지원이 18%였다.

정부지원시설은 취약보육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 고용 시 인건비 80%만 지원받는다. 따라서 인건비 20%와 4대 보험 가입비 등의 인건비 차액분은 어린이

집 운영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어린이집 재정운영 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 비율을 80%에서 90%로 늘려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보조교사 인건비를 보조한다.

2) 중장기 방안

첫째, 취약보육 할당제 도입

취약보육 할당제를 도입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취약보육은 시간연장보육과 다문화보육에 편중되어 있고 운영이 어려운 장애아전담, 휴일보육, 24시간 보육은 운영률이 매우 저조하다.

부모의 근로형태나 근로시간이 다변화 되면서 다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약보육 할당제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취약보육 할당제 도입 시 지역 내 보육수요 파악을 전제 조건으로 하며 이를 감안하여 취약보육 유형을 배분하도록 한다.

둘째, 취약보육별 지원 다양화 및 확대

취약보육 유형에 따라 지원을 다양화 하고 확대한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5~60% 정도로 많았다. 이 외에도 영아보육은 인건비 추가 지원이 30.2%로 많고, 시간연장보육은 인건비 추가 지원과 인건비 지원을 조정이 각각 18.4%, 15.5%였다. 일시보육과 휴일보육은 인건비 추가지원이 13.2%, 12.6%였고, 24시간 보육은 인건비나 운영비, 기능보강비 지원이 모두 10% 미만이었다. 장애아보육은 기능보강비 지원이 19.7%였고, 다문화보육은 인건비 추가 지원이 23%, 운영비 지원 18%, 인건비 지원을 조정이 12%였다.

취약보육 운영 시 인건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취약보육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아보육 운영 시 장애인 관련법 이행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환경개선비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취약보육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다양화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 입소대기자 통합 관리 및 대기 연장신청 제도화

1) 단기방안: 입소대기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어린이집에서 입소대기 신청을 받는 방법은 직접 방문이 절반 이상이고,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순으로 많았다. 부모는 입소대기 신청 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의 입소신청자 관리주기는 결원 발생시 수시로 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지만 3개월 14.3%, 1년에 한번 10.3%, 6개월 3.9%였다.

부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로 대기자 적체가 심각하나 입소대기자 관리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보육포털 사이트를 운영하여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대기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 외의 지역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모들이 육아정보 및 어린이집 정보를 얻거나 보육료 신청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의 기능을 확대하여 입소신청 및 대기자를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시스템 활용 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입소 대기자 및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성향 파악이 용이하여 보육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어린이집 이용 신청, 보육료 신청, 육아정보 등을 one-stop으로 이용 가능하여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중장기 방안: 입소대기 연장신청 제도화

입소대기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입소대기 연장신청제도 도입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66.5%, 부모 7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연장신청제도 도입 시 신청주기는 어린이집은 1년이 42.2%, 6개월이 29%로 가장 많고, 부모는 4~6개월이 31.6%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책임성 강화와 입소대기자 실수요 파악을 위하여 어린이집 입소신청 6개월 후에 입소신청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앞서 주장한 아이사랑포털을 이용한 입소신청 시스템 구축 시 이를 이용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다. 보육서비스 이용 우선순위 조정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은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재검토한다. 입소우선순위 개편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장애부모 자녀, 맞벌이 부모 자녀는 80% 이상으로 많았고, 자녀 3명 이상 가구자녀, 산업단지입주 근로자 자녀, 입양 영유아는 50% 미만이었다. 2순위로 입양 영유아, 자녀 3명이상 가구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순이다. 한편 부모는 1순위로 맞벌이 부모 자녀, 저소득가구 순으로 많았고, 2순위도 동일한 순서였다.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는 소득 중심에서 벗어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은 저소득층 가구, 맞벌이 부모 가구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순위별 보육 대상은 <표 VI-1-5>에 제시하였다.

<표 VI-1-5> 보육서비스 이용 우선순위(안)

구분	특징	대상
1순위	돌봄 서비스 취약 가구	장애부모 자녀, 장애 영유아, 한부모 가족 영유아, 조손가족 영유아
2순위	저소득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녀
3순위	맞벌이 부모 가구	부모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4순위	기타 돌봄서비스 취약 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입양 영유아

라.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강화

1) 단기 방안

첫째, 정원내 초과보육 시 연령별 상한선 기준 마련

정원내 초과보육 시 연령별 상한선 기준을 마련한다. 국공립어린이집 1세반 현원률은 107.9%, 2세반 107.2%로 영아반이 주로 초과보육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읍면지역은 0세반 현원률이 112.7%, 1세반 121.7%로 정원의 10~20% 이상을 초

과보육하고 있었다. 반면, 3세반과 4, 5세반은 현원률이 낮았다. 정원규모별로는 모든 정원규모의 어린이집이 1, 2세반을 초과보육하고 있었다. 초과보육 이유는 대기자 급증이 30.7%, 전출입 등 유동 영유아 발생 26.1%, 운영의 어려움이 19.7%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과보육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영아는 유아보다 보육교사의 관심과 보호가 더 필요한 연령이므로, 정원내 초과보육을 허용하더라도 0~2세 영아반은 20% 이상 초과보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둘째, 영아 대상 특별활동 관리·감독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 지도 감독을 강화한다. 영아 대상 특별활동은 평균 1.4개였다. 특별활동 2개가 25%로 많았고, 3개 22.6%, 1개 20.1% 순이었다.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33.1%였다. 대도시가 특별활동을 많이 운영하였고, 읍면지역은 특별활동 미실시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 특별활동 운영을 금지하는 참여 연령 제한 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가 미흡하여 현장에서는 영아 대상 특별활동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별활동은 영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도점검 및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특별활동 지도 관리를 강화한다.

셋째, 운영위원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원장 대상의 운영위원회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운영위원회 운영 횟수는 2012년 상반기 평균 1.9회로 2회가 59.4%로 가장 많고, 1회 24.4%였다.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위원 일정조정의 어려움이 41.2%, 지역위원 인선의 어려움 26.5%, 운영위원의 낮은 참여도 11.9%, 운영위원회 체계 및 절차숙지 부족 순이었다. 어려움이 없다는 의견은 6.4% 정도로 낮았다. 운영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은 도시지역이 높았고, 지역위원 인선의 어려움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대도시보다 많았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정보센터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컨설팅을 지원한다.

넷째,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1순위가 클린카드 사용 제도화와 재무회계 전담 사무인력 배치가 가장 많았다. 2순위도 재무회계 전담인력 배치가 23.6%로 많았고, 클린카드 제도화나 재무회계프로그램 중앙관리, 구매시스템 자동결제시스템 마련, 재무회계 규칙 및 행정처분 교육 강화 등은 모두 10%대였다. 종합하면, 재무회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클린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세입·세출을 관리하고, 매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하고 있으나 과정이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로서 재정운영이 다른 어린이집 유형보다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클린카드제도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종장기 방안

첫째,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한다. 어린이집 조사에서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이 필요한 연령을 조사한 결과 3세반이 38.8%로 가장 많았고, 0세와 1세, 4세반은 10%대였다. 3세반은 대도시가 41.3%, 읍면지역 35.3%로 도시일수록 많았다. 교사대 아동 비율은 연령별로 0세 1:3, 1세 1:5, 2세 1:7, 3세 1:15, 4세 이상 1:20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 한명이 담당하는 아동도 많아진다. 0세와 1세, 1세와 2세는 교사대 아동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나 2세와 3세는 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가 7명에서 15명으로 2배 이상 많아진다. 심층면담에서도 3세반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3세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춰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교사대 아동비율을 낮출 경우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늘어나는 반면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교사대 아동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간다.

둘째, 재무회계 전담 사무인력 배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회계 전담 사무인력을 배치한다.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1순위가 클린카드 사용 제도화와 재무회계 전담 사무인력 배치가 가장 많았다. 2순위도 재무회계 전담인력 배치가 가장 많았다. 국공립어린이집 재무회계는 주로 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어린이집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수립과 집행 주체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계획하고 재무회계 담당인력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로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맺는말

본 보고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 운영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조례를 검토하였으며,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 174명과 보육정보센터장 45명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태 및 필요성, 위탁운영 현황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517개소를 대상으로 원아 관리와 취약보육, 보육프로그램, 재정 및 보육교직원 관리 등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부모 1,037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위탁운영, 운영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수준보다 크게 확대되어야 하며,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과 저소득밀집지역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체 선정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서비스 질 확보를 위하여 특별활동 및 초과보육, 운영위원회, 재정운영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규모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민간어린이집과 차별화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기숙·정지연(2010). 국공립보육시설 대기자 실태조사를 통한 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이슈분석 제 1호. 한국보육진흥원.
- 경기도(20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내부자료).
- 국토해양부(20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 국토해양부(2011).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 국토해양부(20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국토해양부(201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국토해양부(201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국토해양부(2012). 도시계획 현황 자료.
- 권정윤·한유미(2007). 국공립보육시설과 사립 보육시설의 질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77-187.
- 김경화(2008). 어린이집 부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4), 7-27.
- 김명순·김혜금·안현숙·이운선·이나리·김의정·이수빈(2009).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
- 김명자(2011). 민간 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역할분담에 관한 학부모 인식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자(2008). 유형별 보육시설서비스 만족도 비교분석 : 경기도 파주시 국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자(2003). 보육시설장의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제도와 운영에 대한 인식: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아(2009).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2004). 시설유형별 보육서비스 질 비교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4), 147-182.

- 김진(2007). 합리적 자녀양육지원정책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학숙(2006). 강남구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욕구 조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우(2006). 국공립보육시설장의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2002). 국·공립 보육시설의 취업모 욕구대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2006). 보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남성애(2011). 보육시설 종사자가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실태와 개선방안: 충남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농림수산물식품부(2011).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 민행숙(2009).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주(2002).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개선 방안: 구리시 3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진(1999). 강원도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선정과 재정관리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희(2011).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혜리(2007). 보육예산 확보와 배분에 관한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45-71.
- 보건복지부(2009). 보육프로그램 교재·교구 활용방안.
- 보건복지부(2010). 법인보육시설 경영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2011).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보건복지부(2011). 영유아보육법.
-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각 년도). 각 년도 보육통계.
- 서문희·김은기·이정원·송신영·원종욱(2010).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양미선(2011).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영숙(1996). 국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지도감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5, 59-92.
- 서울특별시(20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내부자료).
- 손순옥(2008). 지방정부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지윤(2011).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과학연구, 20(1), 113-136.
- 신나리·이정원·송신영·이은경(2009). 취약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모델 정립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신윤정(2008). 출산·양육 관련 지역사회자원 욕구 사례 조사 결과. 보건복지포럼.
- 신윤정·이지혜(2009).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재진·김은지(2010). 미취학 아동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79(2), 5-36.
-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이영환·백혜리·이순영·최혜영·송영주·강정원·최은영(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소영(2000). 한국의 영유아 보육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사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배·권기성(2011).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이 클라이언트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01-126.
- 이순영(2009).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사고 실태 및 종사자 인식 연구 -서울시 강북구 국·공립, 민간(사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2003). 보육시설의 재정지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금(2002). 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전환 효과에 관한 지역 사례 연구: 경남·마산·통영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천광역시(201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안.
- 정원주(2004). 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4(2), 91-111.
- 조은경·현은강(1995).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요구분석 -인천 직할시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창간호 127-149.
- 주현경(2008). 보육예산의 문제점과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극동사회복지저널, 4, 167-195.
- 지식경제부(20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최도자(2008). 보육시설장이 인식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2(4)
- 최영(2010). 보육서비스 이용 부모의 보육접근성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 비교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64, 73-98.
- 최정희(2008)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제도에 관한 국공립 시설장의 인식 -15개 시도를 중심으로-.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자료.
- 통계청(201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1). 2011 소비자물가지수.
- 한효순(2007). 보육시설 유형별 취업모의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2011).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

홍승아·김은지·이영미(2010).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www.bonachildcare.com)

LG복지재단 홈페이지(<http://foundation.lg.or.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www.lif.or.kr)

Abstrac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Childcare Centres

Misun Yang Jihee Im

This study evaluates the overall public childcare installation and operation status, and seeks for areas of improvement in order to address regional imbalance, meet childcare demands, and enhance public welfare.

First, publications on domestic and overseas childcare centers were reviewed to gather information on the regulations and statistics of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survey of public officials, field experts, and parents using childcare facilities was conducted. Thirdly, an assessment of the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facilitie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was administered. Lastly, in-depth group interviews were held with public officials, heads of childcare centers, and parents using or waiting to use childcare facilities, along with consultation meetings with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to collect their opinions on the current policies on childcare.

Results are as follows: During from 2010 to 2013, the averag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added to each city was less than one, which falls far shorter than the recommended 6.9 childcare centers. Main reasons for the shortage are budgetary deficit and difficulty in securing sites for construction.

As for the commission types, individual commission took up the largest portion, followed b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religious corporations. The commission period of three years was the largest, and three times of consecutive commission was average, making the total operation period eight years. New commissions were selected mainly through open competitions, but not in the case of an extension, which indicated the need for a change in the selection method.

The admission rate for the socially vulnerable children was higher in

public childcare centers than in private or corporate facilities. As for the period of waiting for admission to a childcare center, both the directors of the centers and parents saw that a system to extend the waiting period was necessary. However, they did not see eye to eye on the issue of priority in admi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recommended on the procedure and measures to expand public childcare centres and to improve the commission and operating systems.

부 록

부록 1. 표본설계

부록 2. 부록 표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 조사표

부록 4. 시군구 공무원 조사표

부록 5. 보육정보센터장 조사표

부록 6. 부모 조사표

부록 1. 시설조사 표본설계

표본설계

1. 모집단

- 목표 모집단 : 2012년 5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총 2,156개소
- 조사 모집단 : 2012년 5월 등록된 국공립어린이집

2. 표본배분

1) 층구분

- 지역별로 도시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지역별 층화
- 어린이집 정원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5개 층으로 층화

〈표 1〉 모집단의 층화

구분	39명 이하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이상	계
대도시	104	147	329	226	213	1,019
중소도시	144	73	228	142	107	694
농어촌	96	66	186	65	30	443
계	344	286	743	433	350	2,156

2) 표본 규모의 산정

□ 모비율을 추정에 대한 표본규모 산정식 적용

– 층별 통계산출을 기준으로 목표오차를 산출

$$n = \frac{N \sum_h N_h P_h Q_h}{N^2 V' + \sum_h N_h P_h Q_h}$$

여기서 P_h 는 모비율($Q_h = 1 - P_h$), $V' (=B^2/4)$ 는 허용오차임.

– 이 경우 전국기준 허용오차는 약 $\pm 3.9\%$ 정도임.

3) 표본배분

□ 표본배분의 기준은 지역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비례배분을 원칙으로 함.

□ 모집단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층(3개)과 규모층(5개)에 대한 어린이집 개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례 배분하였음.

□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의 경우 조사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배분함.

〈표 2〉 표본배분 결과

구분	39명 이하	40-49명	50-79명	80-99명	100명 이상	계
대도시	25	34	76	52	49	236
중소도시	33	17	53	33	25	161
농어촌	22	15	43	15	8	103
계	80	66	172	100	82	500

4) 표본추출

□ 이때 어린이집 리스트는 지역별, 정원규모별로 정렬하여 15개층으로 구분된 모집단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정원을 크기척도(MOS)로 고려하여 층화 확률비례 추출함.

3. 추정

1) 가중값 조정

- 어린이집의 정원규모에 비례하여 확률비례추출하였기 때문에 추출단위가 불균등확률 추출됨.
- 따라서 이 경우 모집단의 특성값을 추정할 때 반드시 가중값을 적용하여야 함.
- 필요에 따라 무응답, 사후조정 등의 과정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추출가중값 : $W_{hi} = \frac{N_h}{n_h}$

- 무응답 조정가중값 : $W_{hi} \times W_{hi}^R$

- 사후조정가중값 : $W_{hi} \times W_{hi}^R \times W_{hi}^P$

2) 추정값

- 모비율에 대한 추정

- 층별 평균 추정 : $\hat{Y}_h = \frac{\sum_i^{n_h} W_{hi} y_{hi}}{\sum_i W_{hi}}$, 여기서 y_{hi} 는 1또는 0의

값을 가짐.

- 전국 평균 추정 : $\hat{Y} = \sum_h^H W_h \hat{Y}_h$.

- 분산추정

- 층별 분산추정 : $\hat{V}(\hat{Y}_h) = \frac{n_h(1-f_h)}{n_h-1} \sum_{i=1}^h (y_{hi} - \hat{Y}_h)^2,$
- 전국 분산 추정 : $\hat{V}(\hat{Y}) = \sum_h^H W_h \hat{V}(\hat{Y}_h)$

부록 2. 부록 표

〈부표 II-2-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내용	배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 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된 활동계획, 취약보육 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20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16점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12점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10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8점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6점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10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8점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6점
2.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 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점
· 참여 (중)	7점
· 미참여	3점
②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점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점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10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8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6점

(표 II-2-1 계속)

내용	배점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점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3점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점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3점
4.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 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점
·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 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8점
·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6점
5. 재정능력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3점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5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4점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3점

주: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하며,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부표 II-2-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내용	배점
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30점
① 시설운영 관리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교직원 관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 여부,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 유지 정도 등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우수한 경우	10-9점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보통인 경우	8-7점
·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이 미흡한 경우	6-4점
② 보육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우수한 경우	10-9점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보통인 경우	8-7점
·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	6-4점
③ 회계관리의 적정성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우수한 경우	10-9점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보통인 경우	8-7점
·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회계 관리가 미흡한 경우	6-4점
2.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0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 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점
· 참여 (중)	7점
· 미참여	3점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8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6점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4점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점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5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4점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3점

(부표 II-2-2 계속)

내용	배점
3. 어린이집 운영계획	25점
① 보육사업 계획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 운영 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10점 8점 6점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 : 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10점 8점 6점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5점 4점 3점
4.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우수하게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 정도가 우수한 경우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보통으로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 정도가 보통인 경우 ·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 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흡하게 처리하고,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 정도가 미흡한 경우 	10점 8점 6점
5. 재정능력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이상 5억 미만인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단체·개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5점 4점 3점 5점 4점 3점

주: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변경 위탁(공개경쟁)을 추진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부표 II-3-1〉 연도별 입소우선순위 : 2008~2012

구분	1순위	2순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차등보육료 2층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 부모) ·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저소득층(3~4층)의 영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결혼이민자의 자녀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60%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결혼이민자의 자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 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다문화가정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60% 이하)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 업중인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부표 Ⅱ-3-1 계속)

구분	1순위	2순위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부표 II-3-2〉 서울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2년 기준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원)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행사비 (원)	아침·저녁 급식비(1식)	체육복 (원)
광진구	5만원 원복(10만원/원) 추가수납	8만원	3만원	6만원	8만원	2,000	5만원
동대문	5만원	학부모와 실비 협의	-	37,500 수련회비 (40,000/원)	-	-	-
중랑	5만원	10만원	3만원	5만5천원	5만원	1,750	3만원
용산	5만원	12만원	3만원	5만원	-	1,000	5만원
성동	5만원	6만원	3만원	6만원	-	1,000	-
강북	5만원	15만원	2만원	6만원	5만원	-	-
도봉	5만원	7만원	2만원	4만5천원	3만원	-	-
노원	5만원	9만원	2만원	5만원	-	-	실비 수납
은평	6만3천원 (체육복 및 원복비 3만원 포함)	10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1,500	-
서대문	5만원	10만원	3만5천원	4만5천원	-	1,500	3만원
마포	5만원	7만원	2만원	5만원	-	-	4만원
양천	5만원	12만원	2만5천원	5만원	3만원	-	5만원
강서	5만원	12만원	2만원	5만원	5만원	1,000	8만원
구로	5만원	7만원	3만원	5만5천원	5만원	-	-
금천	4만3천원	7만3천원	-	3만7천원	4만5천원	1,000	2만7천원
영등포	5만원	12만원	-	5만5천원	-	-	5만원
동작	5만원	16만원	2만원	58,750	11만원	1,500	4만원
관악	5만원	9만원	부모 동의 수납	4만5천원	7만원	1,000	-
서초	5만원 (원복비 실비)	10만원	3만원	6만원	16만원	1,500	실비 가능
강남	5만원	21만원	5만원	6만원	16만원	1,000	-
송파	5만원	15만원	-	6만원	5만원	1,000	5만원
강동	10만원 (체육복비 포함)	5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	-

주: 강북구우 체육복비(30,000원/원)는 입학준비금에 포함된 금액임(별도수납을 금지함).

도봉구 체육복비는 행사비에 포함되며, 행사비는 현장학습비에 포함된 예산임.

동작구 개인 소모용 문구류비(30,000원/원), 위생품비(45,000원/원) 추가 수납

관악구 신학기 준비금(30,000원/원) 추가 수납

강남구의 경우 피복류(체육복, 원복) 구입비(50,000/원) 수납 가능

자료: 서울시(2012). 각 구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고시문.

〈부표 II-3-3〉 경기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한액: 2012년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연)		특별활동비 (월)	현장학습비 (분기)	행사비 (연)	아침·저녁 급식비(월)	시군특성화 (월)
	상해보험료	과복비					
수원	7천원	9만3천원	6만원	12만원	8만4천원	10만4천원	4만5천원
성남	8천원	9만2천원	6만3천원	10만원	12만원	1,000(1식)	4만원
부천	1만원	9만원	6만원	7만5천원	24만원	1500(1식)	4만원
용인	7천원	9만3천원	6만원	6만원	8만원	6만원	1만5천원
안산	8천원	9만2천원	7만원	12만원	12만원	-	3만원
안양	1만5천원	8만5천원	8만원	18만원	6만원	5만4백원	-
평택	1만원	9만원	5만원	12만원	12만원	6만원	2만원
시흥	8천원	9만2천원	5만원	9만원	12만원	1만원	2만5천원
화성	1만원	9만원	8만1천원	7만5천원	17만원	4만원	2만1천원
광명	시 지원	10만원	7만원	8만원	1만원	39천원	2만원
군포	7천원	9만3천원	6만원	9만원	12만원	1,000(1식)	5만원
광주	5천원	9만5천원	8만원	12만원	10만원	1,000(1식)	4만원
김포	1만5천원	8만5천원	4만5천원	21만원	15만원	57,200	1만5천원
이천	1만원	9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1,500(1식)	3만원
안성	1만원	9만원	6만원	10만원	8만원	6만원	3만원
오산	6천원	9만4천원	5만원	9만원	8만원	1,500(1식)	1만5천원
하남	1만원	9만원	9만원	9만원	12만원	4만원	3만5천원
의왕	6천원	9만4천원	7만원	12만원	8만원	1,200(1식)	3만5천원
여주	7천원	9만3천원	6만원	6만원	8만원	1,000(1식)	3만원
양평	5천원	9만5천원	7만원	9만원	12만원	6만원	2만원
파천	시지원	10만원	6만원	9만원	24만원	1,000(1식)	2만원
고양	8천원	9만2천원	5만원	13만5천원	24만원	1,500(1식)	5만원
남양주	1만원	9만원	8만원	12만원	6만원	6만원	5만원
의정부	5천원	9만5천원	5만원	12만원	12만원	4만원	4만원
파주	7천원	9만3천원	5만5천원	10만5천원	24만원	1,000(1식)	4만원
구리	1만원	9만원	8만원	12만원	60만원	62,400	5만원
양주	1만원	9만원	6만원	4만5천원	12만원	1,000(1식)	4만원
포천	1만5천원	8만5천원	7만원	6만원	24만원	5만원	3만원
동두천	1만원	9만원	6만원	7만5천원	12만원	4만원	3만원
가평	5천원	9만5천원	6만원	6만원	17만원	4만5천원	3만원
연천	1만원	9만원	5만원	6만원	24만원	2만원	12천원

주: 경기도 모든 시군구는 입학준비금 연 10만원으로 제한하며, 차량운행비는 이용자에 한하여 월 16,000원 수납 가능하도록 함.

자료: 경기도(2012). 각 시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고시문.

〈부표 IV-3-1〉 위탁심사 개선사항: 어린이집 조사(1순위)

단위: %(개소)

구분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의 위원 공정성	심의 절차	심의 결과 공개	심의 위원 선정	이의 제기 통로	없음	계(수)
전체	28.0	41.4	3.7	3.1	23.0	0.4	0.4	100.0(486)
지역규모								
대도시	25.5	46.4	3.8	3.0	20.4	0.4	0.4	100.0(235)
중소도시	32.9	37.6	4.0	1.3	23.5	0.7	-	100.0(149)
읍면	26.5	35.3	2.9	5.9	28.4	-	1.0	100.0(102)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30.1	46.0	3.5	3.5	15.9	0.9	-	100.0(113)
종교법인	23.8	39.7	9.5	3.2	22.2	1.6	-	100.0(63)
학교법인	33.3	42.9	-	9.5	14.3	-	-	100.0(21)
단체	21.7	47.8	-	4.3	26.1	-	-	100.0(23)
개인	27.1	38.9	2.5	3.0	27.6	-	1.0	100.0(203)
기타	12.5	62.5	-	-	25.0	-	-	100.0(8)
시군구직영	34.5	36.4	5.5	-	23.6	-	-	100.0(5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IV-3-2〉 위탁심사 개선사항: 어린이집 조사(2순위)

단위: %(개소)

구분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의 위원 공정성	심의 절차	심의 결과 공개	심의 위원 선정	이의 제기 통로	계(수)
전체	17.1	32.4	10.4	12.3	23.1	4.8	100.0(463)
지역규모							
대도시	20.2	26.6	11.0	12.4	23.9	6.0	100.0(218)
중소도시	16.3	36.1	8.8	10.9	25.2	2.7	100.0(147)
읍면	11.2	39.8	11.2	14.3	18.4	5.1	100.0(98)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19.2	26.9	15.4	8.7	24.0	5.8	100.0(104)
종교법인	21.3	29.5	11.5	11.5	19.7	6.6	100.0(61)
학교법인	20.0	35.0	15.0	10.0	20.0	-	100.0(20)
단체	14.3	38.1	9.5	19.0	14.3	4.8	100.0(21)
개인	16.2	33.8	7.6	14.6	22.7	5.1	100.0(198)
기타	-	25.0	25.0	-	50.0	-	100.0(8)
시군구직영	13.7	39.2	5.9	11.8	27.5	2.0	100.0(5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1〉 영아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위탁/재위 탁 조건	지자체 요청	학부모 요청	원장의 보육 철학	기타	계(수)
전체	30.9	13.6	28.7	23.2	3.6	100.0(501)
지역규모						
대도시	33.1	16.5	24.6	23.3	2.5	100.0(236)
중소도시	31.1	15.9	25.8	24.5	2.6	100.0(151)
읍면지역	26.3	4.4	41.2	21.1	7.0	100.0(114)
정원						
39인 이하	33.7	10.8	32.5	16.9	6.0	100.0(83)
40~49인	25.4	9.0	29.9	29.9	6.0	100.0(67)
50~79인	30.9	16.7	27.2	21.6	3.7	100.0(173)
80~99인	32.1	12.8	23.9	28.4	2.7	100.0(109)
100인 이상	31.3	15.0	33.8	20.0	-	100.0(8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2〉 시간연장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위탁/재위탁 조건	지자체 요청	학부모 요청	원장의 보육 철학	기타	계(수)
전체	20.4	23.5	40.4	14.3	1.3	100.0(230)
지역규모						
대도시	18.8	29.9	37.6	12.8	0.9	100.0(117)
중소도시	24.7	17.3	40.7	16.0	1.2	100.0(81)
읍면지역	15.6	15.6	50.0	15.6	3.1	100.0(32)
정원						
39인 이하	28.6	21.4	46.4	3.6	-	100.0(85)
40~49인	22.9	11.4	40.0	22.9	2.9	100.0(71)
50~79인	21.3	23.0	34.4	19.7	1.6	100.0(178)
80~99인	20.7	31.0	37.9	8.6	1.7	100.0(101)
100인 이상	12.5	25.0	47.9	14.6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3〉 장애아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위탁/재위탁 조건	지자체 요청	학부모 요청	원장의 보육 철학	장애전담·통 합시설 지정	계(수)
전체	17.2	18.6	19.3	41.4	3.4	100.0(145)
지역규모						
대도시	16.3	26.3	15.0	38.8	3.8	100.0(80)
중소도시	20.4	6.1	28.6	40.8	4.1	100.0(49)
읍면	12.5	18.8	12.5	56.3	-	100.0(16)
정원						
39인 이하	33.3	11.1	11.1	22.2	22.2	100.0(9)
40~49인	18.2	27.3	9.1	36.4	9.1	100.0(11)
50~79인	24.4	19.5	19.5	34.1	2.4	100.0(41)
80~99인	10.6	17.0	17.0	53.2	2.1	100.0(47)
100인 이상	13.5	18.9	27.0	40.5	-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4〉 다문화보육 실시 이유: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위탁/재 위탁조건	지자체 요청	학부모 요청	인건비 지원	원장의 보육 철학	지역적 특성	계(수)
정원	12.9	10.4	43.9	1.1	31.1	0.7	100.0(280)
지역규모							
대도시	11.6	17.9	39.3	2.7	28.6	-	100.0(112)
중소도시	12.4	5.6	46.1	-	33.7	2.2	100.0(89)
읍면	15.2	5.1	48.1	-	31.6	-	100.0(79)
정원							
39인 이하	10.8	5.4	54.1	2.7	27.0	-	100.0(37)
40~49인	10.8	8.1	45.9	-	35.1	-	100.0(37)
50~79인	17.9	10.5	43.2	1.1	27.4	-	100.0(95)
80~99인	7.8	15.6	39.1	1.6	35.9	-	100.0(64)
100인 이상	12.8	8.5	42.6	-	31.9	4.3	100.0(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5〉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추가 지원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조정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없음	모름	계(수)
정원	30.2	34.8	8.1	7.7	17.0	0.4	1.5	0.2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32.8	34.4	6.9	9.7	13.4	0.8	1.6	0.4	100.0(247)
중소도시	22.1	42.2	9.1	4.5	20.8	-	1.3	-	100.0(154)
읍면	35.3	25.9	9.5	7.8	19.8	-	1.7	-	100.0(116)
정원									
39인 이하	31.8	29.4	10.6	7.1	17.6	-	2.4	1.2	100.0(85)
40~49인	38.0	36.6	2.8	4.2	14.1	-	4.2	-	100.0(71)
50~79인	28.7	30.5	10.8	10.2	19.2	-	0.6	-	100.0(167)
80~99인	31.3	38.4	8.0	8.9	12.5	-	0.9	-	100.0(112)
100인 이상	23.2	42.7	4.9	4.9	20.7	2.4	1.2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6〉 시간연장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추가 지원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조정	기타	없음	모름	계(수)
전체	18.4	47.0	8.5	5.4	15.5	0.4	4.6	0.2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18.2	45.3	9.3	5.7	15.8	0.8	4.5	0.4	100.0(247)
중소도시	16.2	49.4	9.1	5.2	16.9	-	3.2	-	100.0(154)
읍면	21.6	47.4	6.0	5.2	12.9	-	6.9	-	100.0(116)
정원									
39인 이하	12.9	49.4	7.1	3.5	17.6	-	8.2	1.2	100.0(85)
40~49인	16.9	46.5	9.9	4.2	16.9	-	5.6	-	100.0(71)
50~79인	21.0	46.1	9.0	7.2	10.2	0.6	6.0	-	100.0(167)
80~99인	18.8	51.8	6.3	6.3	16.1	-	0.9	-	100.0(112)
100인 이상	19.5	40.2	11.0	3.7	22.0	1.2	2.4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7〉 일시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추가 지원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비 지원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기타	없음	모름	계(수)
전체	13.2	57.8	5.2	3.3	6.0	0.4	13.7	0.4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12.1	51.0	6.5	2.8	8.9	0.8	17.0	0.8	100.0(247)
중소도시	11.7	64.9	2.6	4.5	4.5	-	11.7	-	100.0(154)
읍면	17.2	62.9	6.0	2.6	1.7	-	9.5	-	100.0(116)
정원									
39인 이하	9.4	52.9	9.4	2.4	3.5	2.4	17.6	2.4	100.0(85)
40~49인	14.1	56.3	5.6	4.2	11.3	-	8.5	-	100.0(71)
50~79인	15.0	57.5	6.6	3.6	3.0	-	14.4	-	100.0(167)
80~99인	11.6	69.6	0.9	1.8	4.5	-	11.6	-	100.0(112)
100인 이상	14.6	48.8	3.7	4.9	12.2	-	15.9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8〉 휴일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추가 지원	추가 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비 지원	인건비 지원율 조정	기타	없음	모름	계(수)
전체	12.6	59.2	6.2	2.1	6.4	0.6	12.6	0.4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11.3	54.7	6.9	2.4	6.5	1.2	16.6	0.4	100.0(247)
중소도시	10.4	63.6	5.8	0.6	9.1		9.7	0.6	100.0(154)
읍면	18.1	62.9	5.2	3.4	2.6		7.8		100.0(116)
정원									
39인 이하	10.6	57.6	4.7	2.4	7.1	1.2	15.3	1.2	100.0(85)
40~49인	7.0	63.4	11.3	1.4	8.5	-	8.5	-	100.0(71)
50~79인	15.0	56.9	7.2	3.0	4.8	0.6	12.6	-	100.0(167)
80~99인	12.5	67.9	4.5	1.8	1.8	-	10.7	0.9	100.0(101)
100인 이상	14.6	50.0	3.7	1.2	13.4	1.2	15.9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9〉 24시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추가 지원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비 지원	인건비 지원율 조정	기타	없음	모름	계(수)
전체	8.9	57.1	6.6	5.2	8.1	0.6	13.0	0.6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8.1	51.4	9.3	4.9	8.9	0.8	15.8	0.8	100.0(247)
중소도시	9.1	61.0	3.9	5.8	8.4	0.6	10.4	0.6	100.0(154)
읍면	10.3	63.8	4.3	5.2	6.0	-	10.3	-	100.0(116)
정원									
39인 이하	5.9	52.9	5.9	4.7	10.6	2.4	15.3	2.4	100.0(85)
40~49인	5.6	56.3	8.5	7.0	11.3	-	11.3	-	100.0(71)
50~79인	8.4	60.7	9.0	5.6	5.1	-	11.2	-	100.0(178)
80~99인	9.9	61.4	5.0	5.0	5.9	-	11.9	1.0	100.0(101)
100인 이상	14.6	48.8	2.4	3.7	12.2	1.2	17.1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10〉 장애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추가 지원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비	인건비 지원비 율 조정	전문인 력 배치	기타	없음	계(수)
전체	12.4	41.6	9.3	19.7	7.5	0.6	0.4	8.5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12.6	38.9	8.9	20.2	6.5	0.8	0.8	11.3	100.0(247)
중소도시	8.4	47.4	10.4	18.2	9.1	0.6	-	5.8	100.0(154)
읍면	17.2	39.7	8.6	20.7	7.8	-	-	6.0	100.0(116)
정원									
39인 이하	11.8	40.0	9.4	18.8	8.2	1.2	-	10.6	100.0(85)
40~49인	12.7	45.1	4.2	19.7	8.5	-	-	9.9	100.0(71)
50~79인	12.0	35.9	12.0	21.6	8.4	-	0.6	9.6	100.0(178)
80~99인	11.6	47.3	8.0	22.3	5.4	0.9	-	4.5	100.0(101)
100인 이상	14.6	43.9	9.8	13.4	7.3	1.2	1.2	8.5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2-11〉 다문화보육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인건비 추가 지원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기능 보강비 지원	인건비 지원을 조정	기타	없음	모름	계(수)
전체 정원	23.0	36.8	18.0	2.7	12.0	0.4	6.8	0.4	100.0(517)
대도시	23.9	34.4	15.4	3.2	13.0	0.4	8.9	0.8	100.0(247)
중소도시	21.4	39.6	18.8	1.3	11.7	0.6	6.5	-	100.0(154)
읍면 정원	23.3	37.9	22.4	3.4	10.3	-	2.6	-	100.0(116)
39인 이하	27.1	25.9	24.7	3.5	5.9	-	10.6	2.4	100.0(85)
40~49인	22.5	40.8	14.1	1.4	12.7	1.4	7.0	-	100.0(71)
50~79인	25.3	40.4	18.5	2.8	9.0	-	3.9	-	100.0(178)
80~99인	17.8	39.6	20.8	4.0	9.9	1.0	6.9	-	100.0(101)
100인 이상	20.7	32.9	9.8	1.2	26.8	-	8.5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3-1〉 입소우선순위(1순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저소 독) 한부 모 가족 자녀	차상 위계 층 자녀	장애 부모 자녀	아동 복지 시설 영유 아	맞벌 이 부모 자녀	다문 화 가족 자녀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산업 단지 입주 근로 자 자녀	한부 모/ 조손 가족	입양 영유 아	장애 영유 아	(수)
전체	93.8	89.9	60.0	80.9	83.8	70.6	51.1	37.9	41.2	68.7	28.0	57.4	(517)
지역규모													
대도시	93.5	92.3	61.5	83.4	82.6	69.2	46.6	38.1	42.1	72.9	27.9	56.7	(247)
중소도시	92.2	87.7	55.2	77.3	85.7	77.3	49.4	37.0	44.2	66.2	28.6	59.7	(154)
읍면	96.6	87.9	62.9	80.2	83.6	64.7	62.9	38.8	35.3	62.9	27.6	56.0	(1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89.0	89.0	61.0	83.1	78.8	64.4	44.9	33.1	37.3	74.6	28.0	55.9	(118)
종교법인	92.2	89.1	57.8	79.7	84.4	67.2	48.4	46.9	43.8	65.6	29.7	45.3	(64)
학교법인	90.5	90.5	57.1	76.2	90.5	66.7	47.6	47.6	47.6	76.2	28.6	76.2	(21)
단체	100.0	95.7	65.2	87.0	82.6	82.6	56.5	47.8	60.9	73.9	34.8	69.6	(23)
개인	95.6	87.4	57.3	80.6	84.5	73.3	54.9	38.3	42.7	63.6	30.6	60.2	(206)
기타	100.0	100.0	66.7	100.0	100.0	88.9	77.8	44.4	33.3	100.0	22.2	88.9	(9)
시군구직영	96.1	96.1	65.8	76.3	85.5	71.1	48.7	30.3	34.2	68.4	18.4	50.0	(76)
정원													
39인 이하	91.8	88.2	55.3	83.5	82.4	78.8	56.5	42.4	40.0	61.2	17.6	58.8	(85)
40~49인	94.4	94.4	59.2	85.9	94.4	73.2	53.5	40.8	42.3	70.4	31.0	53.5	(71)
50~79인	95.8	90.2	60.7	79.5	88.4	76.8	54.5	38.4	37.5	67.9	28.6	61.6	(167)
80~99인	91.5	86.6	59.8	82.9	79.3	69.5	43.9	26.8	43.9	68.3	30.5	56.1	(112)
100인 이상	91.5	86.6	59.8	82.9	79.3	69.5	43.9	26.8	43.9	68.3	30.5	56.1	(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3-2〉 입소우선순위(2순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저소 득) 한부 모 가족 자녀	차상 위계 층 자녀	장애 부모 자녀	아동 복지 시설 영유 아	맞벌 이 부모 자녀	다문 화 가족 자녀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산업 단지 입주 근로 자 자녀	한부 모/ 조손 가족	입양 영유 아	장애 영유 아	(수)
전체	5.2	8.5	30.4	17.2	13.0	20.1	39.3	43.5	31.9	26.1	45.1	24.0	(517)
지역규모													
대도시	6.1	6.5	29.1	14.6	13.4	18.6	43.3	40.9	37.2	21.1	46.6	25.9	(247)
중소도시	5.8	9.7	33.1	20.8	13.0	19.5	39.6	47.4	23.4	30.5	44.8	21.4	(154)
읍면	2.6	11.2	29.3	18.1	12.1	24.1	30.2	44.0	31.9	31.0	42.2	23.3	(1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9.3	9.3	33.1	12.7	14.4	22.9	41.5	45.8	42.4	22.0	39.0	23.7	(118)
종교법인	7.8	6.3	37.5	18.8	15.6	21.9	42.2	32.8	39.1	29.7	45.3	31.3	(64)
학교법인	4.8	9.5	38.1	14.3	9.5	28.6	42.9	42.9	28.6	14.3	42.9	14.3	(21)
단체	-	-	26.1	13.0	13.0	8.7	30.4	30.4	21.7	17.4	43.5	21.7	(23)
개인	3.9	12.1	26.7	18.9	13.1	18.9	37.9	43.2	23.3	31.1	44.2	21.8	(206)
기타	-	-	33.3	-	-	11.1	11.1	44.4	44.4	-	55.6	11.1	(9)
시군구직영	2.6	2.6	28.9	22.4	10.5	19.7	42.1	53.9	35.5	25.0	56.6	28.9	(76)
정원													
39인 이하	4.7	11.8	24.7	16.5	15.3	15.3	31.8	32.9	37.6	32.9	52.9	23.5	(85)
40~49인	5.6	4.2	31.0	11.3	4.2	22.5	39.4	45.1	31.0	26.8	43.7	23.9	(71)
50~79인	3.0	9.0	29.9	19.8	16.2	24.6	38.9	44.9	32.3	22.8	44.9	27.5	(167)
80~99인	6.2	7.1	33.9	20.5	9.8	15.2	39.3	42.9	25.9	25.9	42.0	23.2	(112)
100인 이상	8.5	9.8	31.7	13.4	15.9	20.7	47.6	51.2	34.1	25.6	42.7	18.3	(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3-3〉 입소우선순위(3순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자	(저소 득) 한부 모 가족 자녀	차상 위계 층 자녀	장애 부모 자녀	아동 복지 시설 영유 아	맞벌 이 부모 자녀	다문 화 가족 자녀	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녀	산업 단지 입주 근로 자 자녀	한부 모/ 조손 가족	입양 영유 아	장애 영유 아	(수)
전체	1.0	1.5	9.7	1.9	3.3	9.3	9.7	18.6	26.9	5.2	26.9	18.6	(517)
지역규모													
대도시	0.4	1.2	9.3	2.0	4.0	12.1	10.1	21.1	20.6	6.1	25.5	17.4	(247)
중소도시	1.9	2.6	11.7	1.9	1.3	3.2	11.0	15.6	32.5	3.2	26.6	18.8	(154)
읍면	0.9	0.9	7.8	1.7	4.3	11.2	6.9	17.2	32.8	6.0	30.2	20.7	(116)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1.7	1.7	5.9	4.2	6.8	12.7	13.6	21.2	20.3	3.4	33.1	20.3	(118)
종교법인	-	4.7	4.7	1.6	-	10.9	9.4	20.3	17.2	4.7	25.0	23.4	(64)
학교법인	4.8	-	4.8	9.5	-	4.8	9.5	9.5	23.8	9.5	28.6	9.5	(21)
단체	-	4.3	8.7	-	4.3	8.7	13.0	21.7	17.4	8.7	21.7	8.7	(23)
개인	0.5	0.5	16.0	0.5	2.4	7.8	7.3	18.4	34.0	5.3	25.2	18.0	(206)
기타	-	-	-	-	-	-	11.1	11.1	22.2	-	22.2	-	(9)
시군구직영	1.3	1.3	5.3	1.3	3.9	9.2	9.2	15.8	30.3	6.6	25.0	21.1	(76)
정원													
39인 이하	3.5		20.0	-	2.4	5.9	11.8	24.7	22.4	5.9	29.4	17.6	(85)
40~49	-	1.4	9.9	2.8	1.4	4.2	7.0	14.1	26.8	2.8	25.4	22.5	(71)
50~80	1.2	0.6	7.8	3.0	4.8	13.8	12.6	15.6	25.1	4.8	24.6	16.2	(167)
81~99	-	2.7	5.4	-	1.8	8.0	6.2	18.8	36.6	6.2	29.5	15.2	(112)
100인 이상		3.7	8.5	3.7	4.9	9.8	8.5	22.0	22.0	6.1	26.8	25.6	(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5-1〉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 인증율

단위: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79.0	93.3	103.8	59.8	75.3	36.5	80.7
서울	82.2	92.9	72.1	55.4	78.8	54.2	85.3
부산	89.7	92.4	115.5	65.0	83.1	75.0	92.6
대구	88.6	94.9	103.3	66.7	86.2	20.0	88.7
인천	90.7	96.1	80.0	80.6	86.7	40.0	96.5
광주	100.7	66.7	110.3	64.7	103.9	16.7	98.6
대전	82.7	107.1	102.4	64.0	78.5	50.0	90.3
울산	75.2	100.0	100.0	71.4	69.3	-	77.7
경기	70.1	94.0	101.4	64.9	70.2	31.8	66.7
강원	83.1	98.8	106.0	36.4	69.5	50.0	91.5
충북	82.4	84.6	104.6	44.4	80.5	-	81.1
충남	67.6	95.3	101.5	63.2	59.7	-	70.8
전북	95.7	100.0	109.2	60.0	97.3	-	89.9
전남	84.8	77.3	101.7	44.4	83.3	100.0	81.5
경북	80.0	94.3	102.4	40.0	72.7	-	85.2
경남	71.8	96.2	103.0	50.0	66.5	-	76.4
제주	86.8	104.8	103.9	71.4	77.6	-	86.4

자료: 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2012. 5. 31일 기준).

〈부표 V-5-2〉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재인증율: 2011

단위: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전체	14.7	55.6	63.2	18.6	7.9	8.7	13.9
서울	19.9	69.3	44.2	18.7	13.1	4.2	14.3
부산	19.2	67.6	56.0	5.0	12.1	25.0	13.1
대구	20.7	46.2	81.3	25.0	7.4	20.0	20.7
인천	13.1	49.5	80.0	51.6	8.0	20.0	13.0
광주	12.1	23.3	41.1	5.9	7.7	-	11.0
대전	12.2	67.9	80.5	4.0	6.7	-	16.3
울산	19.7	54.8	76.9	35.7	15.5	-	18.4
경기	8.0	43.5	52.8	20.2	5.7	9.1	6.6
강원	26.2	69.5	76.1	-	8.5	-	27.2
충북	13.8	44.2	72.5	-	3.1	-	8.7
충남	10.5	26.6	49.3	26.3	3.5	-	11.6
전북	28.1	51.0	69.3	20.0	19.1	-	27.9
전남	26.3	41.3	58.7	11.1	10.9	100.0	27.8
경북	15.4	48.0	85.9	15.0	4.1	-	17.4
경남	13.2	59.1	55.4	13.6	7.0	-	15.5
제주	18.9	52.4	54.5	14.3	2.6	-	16.2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2012. 5. 31일 기준).

〈부표 V-5-3〉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신규인증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88.2	91.1	88.3	86.6	89.0	92.7	89.4
서울	87.6	90.9	91.0	85.9	88.0	93.3	89.5
부산	86.0	89.6	89.1	84.7	86.2	90.4	85.9
대구	87.3	89.8	89.0	86.6	87.6	94.1	84.8
인천	88.6	92.5	86.6	86.8	89.6	93.5	87.4
광주	87.2	89.0	87.0	85.5	88.2	90.9	85.9
대전	88.2	89.8	90.4	86.1	88.9	92.6	92.3
울산	88.7	93.4	89.9	87.0	90.2	95.3	-
경기	89.0	92.1	89.2	87.2	89.6	92.6	92.0
강원	88.3	89.9	87.6	87.0	89.6	94.8	80.1
충북	88.7	92.1	88.5	87.6	89.4	91.3	-
충남	88.8	89.8	88.1	87.4	89.8	93.1	-
전북	88.3	89.8	87.5	86.4	89.5	91.0	-
전남	86.8	88.4	86.6	85.5	87.8	88.4	92.4
경북	89.4	92.5	90.3	88.6	89.7	91.6	-
경남	87.6	90.5	87.7	85.9	88.3	93.3	-
제주	90.2	93.7	90.3	89.7	90.7	88.9	-

주: 신규인증 평가인증 평균 점수는 신규인증 일반참여(2005.1기~2011.9기), 신규인증 재참여(2005.1기~2011.7기)를 포함한 32,441개소로 산출(2012. 5. 31 기준).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부표 V-5-4〉 어린이집 유형별 평가인증 재인증 평균점수

단위: 점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전체	92.1	94.1	91.6	91.1	92.0	95.0	87.8
서울	93.2	94.5	93.9	92.2	92.4	94.1	87.7
부산	91.4	92.2	91.0	90.2	92.3	93.1	83.5
대구	91.5	95.2	91.4	91.1	91.7	95.4	88.7
인천	93.1	95.1	92.8	91.4	93.4	96.4	91.4
광주	89.3	93.0	89.4	87.8	90.0	92.7	-
대전	92.0	93.2	92.8	91.8	91.5	95.3	-
울산	92.9	96.3	95.1	91.6	92.9	96.8	-
경기	92.4	95.0	92.2	90.8	91.8	94.4	88.1
강원	91.9	92.7	91.6	91.5	92.2	-	-
충북	92.0	94.0	92.0	91.3	90.6	-	-
충남	92.2	92.4	92.4	91.7	92.6	94.4	-
전북	91.3	92.3	91.2	90.4	92.3	92.9	-
전남	90.0	91.4	90.1	89.8	89.3	94.3	86.5
경북	92.4	93.6	92.3	91.7	93.1	98.5	-
경남	91.2	93.2	91.2	89.9	91.8	95.7	-
제주	93.4	95.2	92.9	93.6	90.8	93.9	-

주: 재인증 평가인증 평균 점수는 재인증 일반참여(2010.1기~2011.9기), 재인증 재참여(2010.1기~2011.7기)를 포함한 6,029개소로 산출함(2012. 5. 31 기준).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2) 내부자료.

〈부표 V-5-5〉 재무회계 담당자: 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원장	사무원	교사	기타	계(수)
전체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71.3	8.5	18.6	1.6	100.0(247)
중소도시	76.0	14.3	7.1	2.6	100.0(154)
농어촌	79.3	4.3	15.5	0.9	100.0(116)
정원					
39인 이하	88.2	3.5	8.2	-	100.0(85)
40~49	80.3	2.8	15.5	1.4	100.0(71)
50~80	77.5	7.3	15.2	-	100.0(178)
81~99	76.2	10.9	11.9	1.0	100.0(101)
100인 이상	46.3	23.2	22.0	8.5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5-6〉 개보수비 어린이집 부담액: 국공립어린이집 조사

구분							단위: %(개소), 만원	평균
	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만원 이상	없음	계(수)	
전체	21.9	28.0	18.0	15.1	4.3	12.7	100.0(511)	1,225.5
지역규모								
대도시	27.0	15.6	17.2	4.9	15.6	19.7	100.0(244)	1,175.9
중소도시	28.9	21.7	14.5	5.9	9.2	19.7	100.0(152)	1,037.2
농어촌	28.7	18.3	11.3	0.9	11.3	29.6	100.0(115)	1,629.2
$X^2(df)/F$			15.4(10)					1.4
위탁형태								
사회복지법인	22.9	15.3	19.5	5.1	13.6	23.7	100.0(118)	1,548.6
종교법인	23.4	18.8	7.8	7.8	28.1	14.1	100.0(64)	1,506.6
학교법인	57.9	21.1	5.3	-	5.3	10.5	100.0(19)	691.0
단체	30.4	26.1	13.0	-	8.7	21.7	100.0(23)	774.3
개인	30.0	17.2	17.2	4.4	8.9	22.2	100.0(203)	1,152.9
기타	33.3	33.3	22.2	0.0	11.1	-	100.0(9)	866.6
시군구직영	25.3	18.7	10.7	2.7	12.0	30.7	100.0(75)	982.9
$X^2(df)/F$				-				0.7
정원								
39인 이하	44.7	15.3	10.6	1.2	-	28.2	100.0(85)	434.5 ^c
40~49	28.6	17.1	12.9	5.7	5.7	30.0	100.0(70)	850.0 ^{bc}
50~80	24.4	18.2	17.6	2.8	14.8	22.2	100.0(176)	1,223.0 ^{abc}
81~99	24.0	19.0	14.0	7.0	18.0	18.0	100.0(100)	1,521.1 ^{ab}
100인 이상	22.5	20.0	17.5	6.3	21.3	12.5	100.0(80)	1836.3 ^a
$X^2(df)/F$			47.0(20) ^{***}					3.0 [*]

* $p < .05$, ** $p < .0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5-7〉 영·유아반 보육교사 비율: 어린이집 조사

단위: %(명)

구분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장애아반 교사	기타	계(수)
전체	58.2	38.7	3.0	0.1	100.0(3,454)
지역규모					
대도시	59.2	37.7	3.0	0.1	100.0(1,791)
중소도시	56.9	39.6	3.5	-	100.0(1,035)
읍면	57.5	40.3	2.1	0.2	100.0(628)
정원					
39인 이하	78.0	16.1	5.6	0.3	100.0(355)
40~49인	71.4	24.4	4.2	-	100.0(381)
50~79인	55.8	41.1	2.9	0.2	100.0(1,011)
80~99인	52.8	44.0	3.2	-	100.0(844)
100인 이상	52.3	46.5	1.3	-	100.0(863)

주: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5-8〉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1순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클린 카드 사용 제도화	재무 회계 관리프 로그램 중앙 관리	구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동 결제체 계 마련	재무 회계 정보 공개	정부 보조금 사용의 책무성 교육 강화	재무 회계 규칙 및 행정 처분 교육 강화	재무회 계 전담 사무 인력 배치	위탁자, 운영자 의 도덕성	계(수)
전체	38.9	5.0	6.0	3.5	3.9	4.8	37.7	0.2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49.4	6.1	4.9	2.0	2.8	3.6	31.2	-	100.0(247)
중소도시	27.9	3.9	7.1	3.2	5.2	5.8	46.1	0.6	100.0(154)
읍면	31.0	4.3	6.9	6.9	4.3	6.0	40.5	-	100.0(116)
정원									
39인 이하	40.0	2.4	2.4	4.7	5.9	7.1	37.6	-	100.0(85)
40~49인	32.4	7.0	5.6	1.4	4.2	5.6	43.7	-	100.0(71)
50~79인	38.3	3.0	7.2	3.0	3.6	5.4	38.9	0.6	100.0(167)
80~99인	44.6	6.2	8.0	3.6	4.5	3.6	29.5	-	100.0(112)
100인 이상	36.6	8.5	4.9	4.9	1.2	2.4	41.5	-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5-9〉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2순위): 어린이집 조사

단위: %(개소)

구분	클린 카드 사용 제도화	재무 회계 관리프 로그램 중앙 관리	구매시스 템 구축에 따른 자동 결제체 계 마련	재무 회계 정보 공개	정부 보조금 사용의 책무성 교육 강화	재무 회계 규칙 및 행정 처분 교육 강화	재무회 계 전담 사무 인력 배치	업무효 율 위 한 회계 지침 일원화, 체계화	계(수)
전체	16.5	15.3	17.3	5.9	9.4	11.8	23.6	0.2	100.0(517)
지역규모									
대도시	14.2	13.7	20.6	7.3	10.3	11.2	22.7	-	100.0(247)
중소도시	18.4	17.7	12.2	6.1	6.8	10.2	27.9	0.7	100.0(154)
읍면	18.9	15.3	17.1	2.7	10.8	15.3	19.8	-	100.0(116)
정원									
39인 이하	14.8	14.8	21.0	7.4	8.6	11.1	22.2	-	100.0(85)
40~49인	10.3	16.2	14.7	14.7	8.8	14.7	20.6	-	100.0(71)
50~79인	13.9	16.5	18.4	3.8	10.1	15.8	21.5	-	100.0(167)
80~99인	17.6	12.0	15.7	6.5	9.3	7.4	31.5	-	100.0(112)
100인 이상	27.6	17.1	15.8	-	9.2	7.9	21.1	1.3	100.0(8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어린이집 조사」 자료.

〈부표 V-6-1〉 정원 및 지역규모별 민간개인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급수 비율

단위: %

구분	교사3급	교사2급	교사1급
전체	24.9	49.2	41.1
지역규모			
대도시	23.8 ^b	48.4 ^b	41.9 ^a
중소도시	26.0 ^a	49.0 ^b	40.8 ^b
읍면	24.8 ^b	51.3 ^a	39.8 ^b
F	13.9 ^{***}	12.9 ^{***}	7.3 ^{**}
정원			
39인 이하	31.4 ^a	49.8	39.0 ^c
40~49인	25.4 ^b	48.7	40.7 ^b
50~79인	22.1 ^c	48.6	42.9 ^a
80~99인	18.5 ^d	49.1	42.9 ^a
100인 이상	15.6 ^e	48.7	44.3 ^a
F	301.7 ^{***}	1.6	25.3 ^{***}
(수)	(5,498)	(14,141)	(14,141)

** $p < .01$, *** $p < .001$, a, b, c, d, e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로 $a > b > c > d > e$ 를 의미함.

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자격급수별 비율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2012). 전국 어린이집 운영 자료(2012년 4월말 기준).

〈부표 VI-1-1〉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옮긴 이유

단위: 명(%)

구분	집에서 가까 워서	보육 료가 저렴 해서	국공립 어린이 집이라 서	시간 연장 이용 위해	특별 활동 적게 해서	어린 이집 환경이 좋아서	평가 인증 시설이 라서	이사로 거주지 변경	기타	계(수)
전체	23.4	10.7	15.0	7.4	1.0	13.0	3.1	13.2	7.7	100.0(393)
연령										
0세	30.6	2.8	22.2	5.6	2.8	19.4	2.8	5.6	2.8	100.0(36)
1세	22.6	1.9	22.6	13.2	1.9	7.5	1.9	11.3	7.5	100.0(53)
2세	21.9	9.4	18.8	10.9	1.6	20.3	6.3	7.8	3.1	100.0(64)
3세	33.8	10.4	9.1	6.5	-	13.0	3.9	10.4	7.8	100.0(77)
4세	20.0	15.6	8.9	5.6	1.1	13.3	2.2	16.7	11.1	100.0(90)
5세	15.1	16.4	16.4	4.1	-	6.8	1.4	21.9	9.4	100.0(73)
거주지역										
대도시	24.3	9.6	18.4	8.1	0.7	14.7	0.7	11.0	6.6	100.0(136)
중소도시	25.5	12.4	13.1	7.6	2.1	14.5	4.1	8.3	6.2	100.0(145)
농어촌	19.6	9.8	13.4	6.3	-	8.9	4.5	22.3	10.7	100.0(112)
보육료 지원										
지원 아동	22.0	10.3	15.6	7.5	1.1	12.8	3.3	13.6	8.1	100.0(359)
일반아동	38.2	14.7	8.8	5.9	-	14.7	-	8.8	2.9	100.0(34)
모 취업										
종일제 출근	24.3	8.9	18.3	10.7	0.6	11.2	3.6	11.8	8.3	100.0(169)
시간제 출근	15.6	20.0	15.6	8.9	-	13.3	6.7	8.9	6.6	100.0(45)
휴직 중	60.0	-	40.0	-	-	-	-	-	-	100.0(5)
자영업	30.4	4.3	17.4	8.7	-	8.7	-	13.0	4.3	100.0(23)
재택작업	-	-	66.7	-	-	33.3	-	-	-	100.0(3)
구직 중	12.5	12.5	12.5	25.0	-	12.5	-	12.5	12.5	100.0(8)
미취업	24.1	12.0	9.0	-	2.3	15.8	2.3	17.3	7.5	100.0(133)
기타	-	-	-	-	-	-	-	100.0	-	100.0(1)
비해당	16.7	-	-	50.0	-	16.7	-	-	16.7	100.0(6)

부록 3. 국공립어린이집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

시도	시군구 · 읍면동	-	조사표 번호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집에 관한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절차 문의 : 포커스컴퍼니 설준호 팀장(02-3456-0234) / 이창환 연구원(02-3456-0230)

설문내용 문의 :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기관명	어린이집	시설장 성명	
기관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_____로 _____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전화번호	() - _____		
응답자 성명		조사일자	2012년 월 일
List ID			

1. 어린이집 설치 관련 질문

1. 귀 어린이집이 최초 개원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귀 어린이집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은 어디에 속합니까?
 ① 일반주택 지역 ② 상가 지역 ③ 농·어가지역
 ④ 산업 단지 ⑤ 공동주택단지 ⑥ 기타()
3. 귀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는 어디에 속합니까?
 ① 시·군·구 직영 ② 학교법인 위탁 ③ 사회복지법인 위탁
 ④ 종교 위탁 ⑤ 단체 위탁 ⑥ 개인 위탁
 ⑦ 기타()
4. 현 위탁운영체가 최초로 귀 어린이집을 위탁받을 당시 위탁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공개 경쟁 ② 입의(비공개 경쟁) 위탁 ③ 기타()
5. 현 위탁운영체가 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 총 기간과 횟수, 현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1) 총 기간	총 년 개월
2) 위탁 횟수	총 _____회 신규 위탁 _____회 / 재위탁 _____회 (☞ 2회 이상일 경우 문항 5-1로) (총 위탁횟수=신규위탁+재위탁)
3) 현 계약기간	_____년

5-1. (재위탁 받은 경우) 마지막 위탁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단독 평가 후 재위탁	② 자동 재위탁	③ 공개경쟁에 가산점 부여
④ 완전 공개경쟁	⑤ 기타()	⑥ 비해당(신규 위탁)

6. 귀 위탁운영체가 최근 위탁심사 시 적용된 심사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 하세요.
 ① 위탁체(신규·변경,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②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③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 기준표 ④ 기타()
7. 귀 위탁체가 최근 위탁(신규·변경, 재위탁) 심사받을 당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 하세요.
 ① 서류심사 ② 발표 ③ 현장 관찰 ④ 면접(질의응답) ⑤ 기타()
8. 귀 위탁운영체가 최근 심사받을 당시 적용된 심사항목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을 모두 √표 하고 항목별 배점을 적어 주십시오. (※ 가장 최근에 받은 위탁 유형만 작성해 주십시오.)

신규·변경 위탁 시			재위탁 시		
심사항목	여부	배점	심사항목	여부	배점
① 어린이집 운영 계획	<input type="checkbox"/>		① 운영체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input type="checkbox"/>	
②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②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③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input type="checkbox"/>		③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input type="checkbox"/>	
④ 운영체의 공신력	<input type="checkbox"/>		④ 운영체의 공신력	<input type="checkbox"/>	
⑤ 운영체의 재정 능력	<input type="checkbox"/>		⑤ 운영체의 재정 능력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합 계		100	합 계		100

II. 어린이집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

1. 귀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각각 적어 주십시오.

1) 평일 운영시간 (※어린이집 문 여는 시간과 문 닫는 시간 기준)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 토요일 운영시간 (※ 토요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각 항목에 '0' 기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월 총 _____ 회 운영
3) 시간연장 보육 (※ 시간연장보육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각 항목에 '0' 기입)	19시 30분부터 ()시 ()분까지
4) 시간제 보육 (※ 시간제보육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각 항목에 '0' 기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휴일보육 운영시간 (※ 휴일보육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각 항목에 '0' 기입)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 귀 어린이집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취약보육은 무엇입니까? 실시하고 있는 취약보육에 대한 실시 이유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취약 보육 구분	2. 실시 여부		2-1. 실시 이유	
	① 실시 ⇒	② 미실시	① 위탁/재위탁 조건 ③ 학부모 요청 ⑤ 원장의 보육 철학	② 지자체 요청 ④ 인건비 지원 ⑥ 기타()
1) 영아 보육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2) 시간연장 보육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3) 장애아 보육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4) 일시 보육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5) 24시간 보육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6) 휴일 보육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7) 다문화 보육	① 실시	② 미실시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2-2. 아래 7개 취약보육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을 한가지씩만 기입하여 주십시오.

취약 보육 구분	운영 시 필요한 추가 지원 (취약보육별 1가지씩 선택)	
	① 기존 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③ 운영비 지원(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⑤ 인건비보조금 지원을 조정	②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④ 기능보강비 지원(증개축비, 개보수비) ⑥ 기타()
1) 영아 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2) 시간연장 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3) 장애아 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4) 일시 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5) 24시간 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6) 휴일 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7) 다문화 보육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3. 다음의 취약 보육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취약보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영아 보육
- ② 시간연장 보육
- ③ 장애아 보육
- ④ 일시 보육
- ⑤ 24시간 보육
- ⑥ 휴일 보육
- ⑦ 다문화 보육

4. 귀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 ① 받았음 ☞ 문항 4-1로 ② 참여 중 ☞ 문항 4-1로 ③ 받지 않음 ☞ 문항 4-2로

4.1. (① ②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평가인증을 언제 받았고, 통과 시 점수는 몇 점입니까?
 ※ 신규만 받은 경우는 신규 해당란만 기입하고, 재인증 통과한 경우에는 신규, 재인증 란 모두 기입
 ※ 현재 평가인증 참여 중인 경우 인증 받은 해 '2012'로 기입

구분	인증 받은 해	평가인증 점수					
신규 인증	년	① 80점 이하	② 81~85점	③ 86~90점	④ 91~95점	⑤ 95점 이상	⑥ 참여 중
재인증	년	① 80점 이하	② 81~85점	③ 86~90점	④ 91~95점	⑤ 95점 이상	⑥ 참여 중

4.2. (③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평가인증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 선택)

① 평가인증 신청 예약이 많아서 ② 신규 시설이라서
 ③ 지표 및 지침서 이해의 어려움 ④ 교사 수급의 어려움
 ⑤ 재정 소요 부담 ⑥ 원장 및 교사 업무 과중
 ⑦ 조력 부족 ⑧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⑨ 지표 적용으로 인한 변화를 꺼려해서 ⑩ 기타()

5. 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2012년 올해 몇 회 운영하였습니까?

_____ 회 / 0회 운영위원회 없음 ☞ II-1. 원아 관리로

6. 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 외 구성원을 모두 √표 하고, 해당 운영 위원 인원을 적어 주십시오.

- ① 학부모 대표 ()명 ② 지역사회 인사 대표 ()명
 ③ 보육교사 대표 ()명 ④ 기타 (누구:) ()명

7. 귀 어린이집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1가지)은 무엇입니까?

- ① 운영위원회 체계 및 절차 숙지 부족 ② 운영 능력 및 경험 부족
 ③ 운영 위원의 낮은 참여도 ④ 지역 위원 인선의 어려움
 ⑤ 운영 위원 일정 조정의 어려움 ⑥ 기타()

II-1. 원아 관리

1. 귀 어린이집의 정원과 6월 현재 현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정원 총 _____명	현원 총 _____명
-------------	-------------

2. 귀 어린이집의 연령별·프로그램별 현원(2012년 6월 기준)과 반수를 각각 기입해 주십시오.
 (해당 연령 또는 프로그램 이용 이등 없는 경우 '0' 기입)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0~1세 혼합반	만1~2세 혼합반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3~5세 혼합반	장애아	다문화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반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3. 귀 어린이집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초과 보육을 하고 있습니까?

초과 보육을 하고 있다면, 몇 세반이며, 정원수 대비 초과한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 ① 예(_____세반 _____명) ☞ 문항 3-1로 ② 아니오

3-1. (①에 응답한 경우) 초과 보육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 인원수 많음 ② 대기자 급증
 ③ 교사 채용의 어려움 ④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⑤ 운영의 어려움 ⑥ 기타()

12. 귀하는 대기 등록 연장신청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린이집 방문 ② 인터넷 ③ 전화 ④ 스마트폰 앱 ⑤ 기타()
13. 귀 어린이집은 재원 아동이 연령별 진급으로 재입소할 경우, 입소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① 재입소 의견조사를 통해 자동 재입소 ② 추첨을 통해 결정
 ③ 대기 아동 포함하여 입소순위 파악하여 재입소 결정 ④ 재원 아동 중 입소순위 파악하여 재입소 결정
 ⑤ 기타()

II-2. 프로그램 운영

1. 귀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보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과 5세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1) 표준보육과정	① 예	② 아니오	
2) 5세 누리과정	① 예	② 아니오	③ 과정 없음
2. 귀 어린이집이 보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① 교사 대 아동비율 ② 교사 전문성 부족 ③ 활동준비시간 부족 ④ 교재교구 부족 ⑤ 기타()
3. 귀하는 보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조정한다면, 몇 세가 가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연령 선택)
 ① 0세 ② 1세 ③ 2세 ④ 3세 ⑤ 4세 ⑥ 5세
4. 귀 어린이집은 교사가 작성한 보육일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평가합니까?
 ① 예 ☐ 문항 4-1로 ② 아니오

4-1. (① 검토·평가 한다면) 주로 누가 검토·평가합니까? (1가지 선택)

1) 검토	① 원장	② 주임교사 또는 선임교사	③ 교사 간 평가	④ 기타()
2) 평가	① 원장	② 주임교사 또는 선임교사	③ 교사 간 평가	④ 기타()

5. 2012년 6월 한달 동안, 귀 어린이집에서 수업료를 별도로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명, 선택 여부, 참가 영유아수, 비용 등을 각각 기입하여 주십시오.

프로그램 명	선택 여부		참가 영유아수		1인당 수업료(1개월 기준)	
	필수	선택	영아	유아	영아	유아
1)	①	②	명	명	원	원
2)	①	②	명	명	원	원
3)	①	②	명	명	원	원
4)	①	②	명	명	원	원
5)	①	②	명	명	원	원

6. 귀 어린이집은 2012년 올해 수업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특별활동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이고 무엇입니까? (없으면 '0' 기입) ※ 외부강사(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활용 특별활동 포함.
 총 _____ 개 (프로그램 명 : _____)

6-1. (특별활동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귀 어린이집에서 강사료나 교재교구 구입 등으로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평균 총 _____ 원

7. 현재 지자체별로 특별활동 상한액을 고시하고 있으나 개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아의 발달적 측면에서 특별활동 개수는 몇 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 _____ 개

8. 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어린이집 자체 특성화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예: 녹색환경프로그램, 세시풍속프로그램, 인성교육프로그램 등)

II-3. 시설 관리

1. 귀 어린이집의 건축 연도는 언제입니까? _____년 _____월

2. 귀 어린이집의 건물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단독건물(주택 포함) ② 아파트 ③ 아파트 관리동
 ④ 공공시설 복합건물 ⑤ 상가건물 ⑥ 기타()

3. 귀 어린이집의 부지와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부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위탁체 또는 위탁자	③ 기타()
건물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위탁체 또는 위탁자	③ 기타()

4. 귀 어린이집은 최근 3년 간 증개축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항 4-1로 ② 없다

4-1. 증개축 비용은 누가 부담하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자부담 ② 정부지원금 ③ 위탁체 지원금 ④ 기타

4-2. 증개축 공사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 선택)

① 정원 증가를 위한 어린이집 규모 확대 ② 전반적인 어린이집 노후화
 ③ 정원 증가 없는 보육실 면적 확대 ④ 조리실 등 부대시설 확보
 ⑤ 원장실 공간 확보 ⑥ 교재교구실 공간 확보
 ⑦ 실내놀이터, 강당 등 유희공간 확보 ⑧ 장애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
 ⑨ 교직원 휴게실 공간 확보 ⑩ 기타()

5. 귀 어린이집은 개보수를 얼마나 자주 실시합니까?

- ① 6개월에 한번 ② 1년에 한번 ③ 2년에 한번
 ④ 3년에 한번 ⑤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⑥ 개보수 안함

6. 귀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기능보강비를 몇 회, 얼마나 지원받았습니까?(받아본 적이 없다면 모두 '0'기입)

총	회	총	만원
---	---	---	----

7. 귀 어린이집은 2011년 기준, 개보수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를 얼마나 지출하였습니까?

총 _____만원

7.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클린카드(보육시설 전용카드) 사용 제도화
- ② 재무회계 관리프로그램 중앙 관리
- ③ 구매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동결제 체계 마련
- ④ 재무회계 정보 공개
- ⑤ 정부보조금 사용의 책무성 교육 강화
- ⑥ 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처분에 대한 교육 강화
- ⑦ 재정관리 업무 분리(재무회계 전담 사무인력 배치)
- ⑧ 기타()

II-5. 인력 관리

1. 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보육교직원 유형별로 인원수를 적어 주십시오. 11페이지의 보육교사와 기타 보육교직원 현황을 보육교직원 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인 경우 보육교사에서 제외, 해당 항목의 보육교직원이 없을 경우 '0' 기입)

구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특수교사 (치료사포함)	영양사	시간연장/ 24시간 교사	방과후 교사	사무원	등하원 차량기사	기타 ()	총계
총 인원수	1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2011년 1년 동안(2011년 3월~2012년 2월까지) 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이직 현황을 적어 주십시오.

1) 보육교사수 총 _____명 중 2011년 1년간 이직 보육교사수 _____명
2) 보육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직원수 총 _____명 중 2011년 1년간 이직 교직원수 _____명

2-1. 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취사부 등)이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1가지 선택)는 무엇입니까?
 보육교사, 취사부 등 기타 교직원 각각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교사:	취사부 등 교직원:
-----	------------

- ① 어린이집에서 해고
- ② 계약기간 만료
- ③ 급여 불만족
- ④ 근무환경 조건 불만족
- ⑤ 일시적 휴직
- ⑥ 개인 사정
- ⑦ 정신적, 육체적 소진
- ⑧ 기타()

3. 2011년 한 해 동안 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주로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교육 실시 주체와 교육의 종류를 모두 √표 하고, 총 참여 인원을 적어 주십시오.(※ 보수 및 승급교육 제외)
 예) 상호작용, 인성교육, 생태프로그램, 안전교육 등

구분	교육 종류	참여인원
1) 어린이집 자체 교육	<input type="checkbox"/> ① 보육과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위생 <input type="checkbox"/> ③ 운영관리, 리더쉽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상담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총 _____명
2) 보육 관련 연합회 교육	<input type="checkbox"/> ① 보육과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위생 <input type="checkbox"/> ③ 운영관리, 리더쉽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상담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총 _____명
3) 보육정보센터 교육	<input type="checkbox"/> ① 보육과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위생 <input type="checkbox"/> ③ 운영관리, 리더쉽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상담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총 _____명
4) 온라인 교육	<input type="checkbox"/> ① 보육과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위생 <input type="checkbox"/> ③ 운영관리, 리더쉽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상담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총 _____명
5) 기타()	<input type="checkbox"/> ① 보육과정 운영 <input type="checkbox"/> ② 안전위생 <input type="checkbox"/> ③ 운영관리, 리더쉽 <input type="checkbox"/> ④ 부모상담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총 _____명

4. 현재 어린이집에 재직하는 보육교직원의 성별, 연령,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경력, 호봉, 한달 급여 및 기타 수당 등에 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보육교사는 재직하는 전체 교사 모두를 적어 주십시오.
 (*시간연장 및 24시간 보육교사, 방과후교사 포함. / 교사 겸직하는 원장, 특별활동 교사, 시간제 교사, 대체교사 제외함.)

1) 교직원 유형	2) 담당 이동연령	3) 성별	4) 만 연령	5) 최종학력	6) 최종학교 전공	7) 자격증 (모두 기재 요망)	8) 어린이집 경력	9) 호봉	10) 기타 수당 (월 기준)
① 보육교사 ② 시간연장교사 ③ 24시간교사 ④ 방과후교사 ⑤ 특수교사 ⑥ 취사부 ⑦ 기타 (직접기재)	(직접 기입)	① 남 ② 여		① 고졸 ② 대학졸 (3년제 이하) ③ 대학교재학 ④ 대학교 졸 (4년제이상) ⑤ 대학원재학 ⑥ 대학원졸	① 아동(복지)학 ② 유아교육학 ③ 사회복지학 ④ 보육학 ⑤ 특수교육학 ⑥ 보육교사교육원 ⑦ 기타(직접기재)	① 원장 ② 1급 보육교사 ③ 2급 보육교사 ④ 3급 보육교사 ⑤ 유치원교사 ⑥ 특수교사 ⑦ 기타 (직접기재)	어린이집 총 근무경력 * 총경력은 현 어린이집 경력 포함한 것 총 경력 현 어린이집 경력	현재 받고 있는 호봉	2012년에 받은 기타 수당 월 평균 액수 (자차 차우개산비, 농어촌특별수당, 등)
[예]									
01(①)	만 3 세	②	2 9	④	①	② ①	3 3	3	50,000원
01()	만 세								원
02()	만 세								원
03()	만 세								원
04()	만 세								원
05()	만 세								원
06()	만 세								원
07()	만 세								원
08()	만 세								원
09()	만 세								원
10()	만 세								원
11()	만 세								원
12()	만 세								원
13()	만 세								원
14()	만 세								원
15()	만 세								원
16()	만 세								원
17()	만 세								원
18()	만 세								원
19()	만 세								원
20()	만 세								원

* 보육교직원이 21명 이상인 경우 11쪽을 복사하여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5. 귀 어린이집에서 2012년 올해 보수·승급교육을 받은 교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보수교육: _____ 명	승급교육: _____ 명
---------------	---------------

6. 2012년 기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따라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과 시간외 수당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 초과근무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0' 기입, 초과근무 해도 시간외 수당 지급하지 않을 경우 '0'기입)

(예: 월 총 초과 근무시간(32시간), 총 시간외 수당(32만원) 총 보육교사수(7명)일 경우
보육교사 1인당 32시간/7명= 4.6시간, 320,000원/7명=45,710원 지급)

1인당 월 평균 _____ 시간 / 1인당 월평균 _____ 원

7. 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승급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 선택)

- ① 종일제 운영으로 근무시간이 길어서 ② 급여가 낮아서
- ③ 업무량이 많아서 ④ 어린이집 환경이 열악해서
- ⑤ 농어촌 지역이라서 ⑥ 누리과정, 급여상승 등의 이유로 유치원으로 이직하는 교사가 많아서
- ⑦ 기타() ⑧ 없음

8. 귀하는 교재교구, 기자재 및 비품, 식자재 등을 구매시스템에서 구입하고, 구입과 동시에 어린이집 계좌에서 자동 결제되는 전자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어린이집 인력운영의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구매시스템에 관련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입점하고, 관리는 정부에서 담당함.)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하다 ③ 매우 필요하다 ④ 잘 모르겠음

8-1. (문항 8에서 ①, ②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II.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 귀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떻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농어촌 중심으로 확충 필요 ② 도시 주거밀집 지역 중심으로 확충 필요
- ③ 저소득 지역 중심으로 확충 필요 ④ 전국적으로 확충 필요

2.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 현재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 선택)

- ① 교직원 인건비 지원 비율 개편 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③ 기능보강비 지원 ④ 보육행정 전산화 확대
- ⑤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⑥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 ⑦ 종일제 운영에 따른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확대 ⑧ 기타()

3. 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공보육으로서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1가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약보육 실시 ②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③ 취약지역(농어촌, 저소득 지역 등)에서의 보육서비스 제공
- ④ 지역 내 다양한 보육육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공(예: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육아상담, 육아정보 제공 등)
- ⑤ 국가정책의 선도적인 실천(예: 평가인증 우선 신청, 시범사업 우선 시행 등)
- ⑥ 재정 운영의 투명성 실천

4.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위탁체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신규 원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규 원장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재무회계 관리 ② 종사자 관리(의사결정,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③ 행정 관리
- ④ 보육과정 관리 ⑤ 안전, 건강 및 위생 관리 ⑥ 기타()

1. 원장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학력은?

- | | | |
|--|---|---|
|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 } | 3-1. (대학 졸 이상인 경우)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보육학 ② 유아교육학 ③ 사회복지학
④ 아동(복지)학 ⑤ 간호학 ⑥ 교육학
⑦ 영양학 ⑧ 기타() |
|--|---|---|

4. 귀하의 교사 및 원장 경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력이 없으면, '0' 기입)

교사 경력: _____ 년	원장 경력: _____ 년
----------------	----------------

5. 귀하께서 현재 이 어린이집에서 재직한 기간은? _____ 년 _____ 개월

6. 귀하가 2012년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한 기관과 위탁 횟수는 몇 번입니까?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적어 주십시오.

1) 기간	총 _____ 년 _____ 개월
2) 위탁기관 및 최초 위탁 횟수	위탁 어린이집 _____ 개소, 신규 위탁 _____ 회

7. 귀하는 이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2012년 현재까지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이 총 몇 회입니까?
총 _____ 회

8. 귀하는 2011년 원장 대상 교육·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적어 주십시오.(※ '원장 직무교육' 제외/ 신규 원장일 경우에는 공란 처리)

총 _____ 회 교육명 : _____

8-1. (문항 8에서 교육·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1가지 선택)		
① 보육정보센터	② 보육 관련 연합회	④ 보육관련 학회 및 기관
③ 선진지(어린이집, 인프라 시설 등) 방문 연수	⑤ 기타()	

9. 귀하는 지역사회의 복지 및 보육 관련 분야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하는 것을 모두 √표 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가능)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평가인증 조력 |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 | <input type="checkbox"/> ③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 <input type="checkbox"/> ④ 자율장학 | <input type="checkbox"/> ⑤ 지역 내 교사 교육 | <input type="checkbox"/> ⑥ 지역행사 참여 및 봉사활동 |
| <input type="checkbox"/> ⑦ 지자체 각종 위원회 위원 등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 | |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어려운 점이나 건의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부록 4. 시군구 보육담당자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시군구 조사

시도	구시군 · 읍면동	-	조사표 번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운영 등과 관련한 시군구 보육 담당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사관련 문의 : 임지희 연구원(02-398-7763, cutetom@kicce.re.kr)
양미선 부연구위원(02-398-7780, msyang@kicce.re.kr)

응답자 담당지역	_____시·도 _____시·군구	
전화번호	() -	Fax

I.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질문

1. 귀 시군구의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과 2013년 확충 계획을 적어 주십시오. 확충 실적이나 계획이 없으면 '0'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해당 년도는 공사 시작시점 기준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	개소	개소	개소
2) 민간어린이집 매입	개소	개소	개소	개소
3) 기존시설 매입 또는 리모델링	개소	개소	개소	개소
4)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개소	개소	개소	개소

12. 귀 시군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한 귀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재위탁 방법과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을 1가지씩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현 재위탁 방법	① 단독 평가 후 재위탁	② 자동 재위탁	③ 공개경쟁에 가산점 부여
	④ 완전 공개경쟁	⑤ 기타()	
2) 바람직한 재위탁 방법	① 단독 평가 후 재위탁	② 자동 재위탁	③ 공개경쟁에 가산점 부여
	④ 완전 공개경쟁	⑤ 기타()	

13. 귀 시군구가 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되는 위탁체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항 12-1로 ② 없음

12-1. (재위탁 심사 탈락 위탁체가 있는 경우) 주로 어떤 이유로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4. 귀 시군구가 담당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중 재위탁 심사에서 위탁이 유지되는 위탁체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문항 13-1로 ② 없음

13-1. (재위탁 유지 위탁체가 있는 경우) 주로 어떤 경우에 위탁이 유지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5. 최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변경 위탁 시 위탁체 선정기준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의 경우, 「위탁체 선정기준표」 사용은 권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재위탁 심사도 「위탁체 선정기준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다 ③ 잘 모르겠다

II.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련 질문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변경 위탁 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변경 위탁」에 대해서만 의견 주십시오.

1.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변경 위탁체 심사기준표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심사항목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 심사 항목별 배점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심사항목의 적절성					점수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	⑤ 매우 적절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	⑤ 매우 적절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①	②	③	④	⑤	40점	①	②	③	④	⑤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35점	①	②	③	④	⑤
3)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①	②	③	④	⑤	10점	①	②	③	④	⑤
4) 운영체의 공신력	①	②	③	④	⑤	10점	①	②	③	④	⑤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5점	①	②	③	④	⑤

1-1. (문항1의 심사항목의 적절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심사항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또한 부적절하다면 어떤 심사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	1) 부적절한 이유	2) 대체 심사항목
① 어린이집 운영 계획	⇒		
②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③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④ 운영체의 공신력	⇒		
⑤ 재정 능력	⇒		

1-2. (문항1의 배점의 적절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세부항목의 적정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총점 100점 기준)

-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__ 점 ②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점) __ 점
- ③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점) __ 점 ④ 운영체의 공신력(10점) __ 점
- ⑤ 재정 능력(5점) __ 점

2. 귀 시군구가 신규변경 위탁심사기준표의 세부항목 심사 시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규·변경 위탁심사기준표가 개정된다면 다음 세부항목 중 수정,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세부 심사항목	2-1. 세부항목 심사 시 평가 내용	2-2. 수정·보완 시 추가가 필요한 내용
1) 운영체의 운영 계획		
(1) 보육사업 계획: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 가능성, 지역적활성)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		
(3)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1) 평가인증 참여 여부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업적		
(4)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1) 시설운영 관리		
(2) 보육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3) 회계관리의 이행 여부		
4) 운영체의 공신력		
(1)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		
5) 재정능력		

(1) 법인 (3억 미만/3~5억/ 5억 이상)		
(2) 단체·개인 (1억 미만/1~3억/ 3억 이상)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위탁」에 대해서만 의견 주십시오.

3.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표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심사항목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의 재위탁을 결정하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 심사항목별 배점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세부 항목	심사항목의 적절성					점수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	⑤ 매우 적절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	⑤ 매우 적절
1)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①	②	③	④	⑤	30점	①	②	③	④	⑤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30점	①	②	③	④	⑤
3) 어린이집 운영 계획	①	②	③	④	⑤	25점	①	②	③	④	⑤
4) 운영체의 공신력	①	②	③	④	⑤	10점	①	②	③	④	⑤
5) 재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5점	①	②	③	④	⑤

3-1. (문항3의 심사항목의 적절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심사항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또한 부적절하다면 어떤 심사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	1) 부적절한 이유	2) 대체 심사항목
①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		
②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③ 어린이집 운영 계획	⇒		
④ 운영체의 공신력	⇒		
⑤ 재정 능력	⇒		

3-2. (문항3의 배점의 적절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세부항목의 적정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 (총점 100점 기준)

- ①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30점) ___점 ②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0점) ___점
 ③ 어린이집 운영 계획(25점) ___점 ④ 운영체의 공신력(10점) ___점
 ⑤ 재정능력(5점) ___점

4. 귀 시군구가 재위탁 위탁 심사기준표의 세부항목 심사 시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규·변경 위탁심사기준표가 개정된다면 다음 세부항목 중 수정,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세부 항목	4-1. 세부항목 심사 시 평가 내용	4-2. 수정·보완 시 추가가 필요한 내용
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1) 시설운영 관리: (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여부, 입소우 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유지 정도 등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		
(2) 보육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		
(3) 회계관리의 이행 여부: (예산·결산이 적합하고 집행과정과 회계관리 적정성)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1) 평가인증 참여 여부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업적		
(4)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능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 보육사업 계획: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 가능성, 지역적합성)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		
(3)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4) 운영체의 공신력

(1)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 정도)		
---	--	--

5) 재정능력

(1) 법인(3억 미만/3~5억/ 5억 이상)		
(2) 단체·개인(1억 미만/1~3억/ 3억 이상)		

5. 귀 시군구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위탁 심사자료 외에 위탁체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까?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로 나눠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신규위탁	재위탁		
① 재직 교사 경력	② 재직 교사 근속년수	③ 교사 이적률	
④ 표창, 보육관련 수상, 연구실적	⑤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 자료	⑥ 평가인증 결과 증빙 자료	
⑦ 서울형 유무	⑧ 기타()	⑨ 없음	

5-1. (질문 5에서 ①~⑧ 중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귀 시군구가 위탁심사 자료를 추가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6. 귀 시군구에서는 신규 위탁 신청 시 일정 금액을 위탁금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신규 위탁신청 시 위탁금액 명시하도록 함
- ② 신규 위탁신청 시 위탁금 명시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을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함
- ③ 위탁금 내지 않도록 하고 있음

III.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4.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① 9급 ② 8급 ③ 7급 ④ 6급 ⑤ 5급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변경 위탁 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변경 위탁」에 대해서만 의견 주십시오.

2.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변경 위탁체 심사기준표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심사항목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위탁체를 선정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 심사 항목별 배점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항목	심사항목의 적절성					점수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	⑤ 매우 적절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	⑤ 매우 적절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①	②	③	④	⑤	40점	①	②	③	④	⑤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35점	①	②	③	④	⑤
3)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①	②	③	④	⑤	10점	①	②	③	④	⑤
4) 운영체의 공신력	①	②	③	④	⑤	10점	①	②	③	④	⑤
5) 운영체의 재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5점	①	②	③	④	⑤

2-1. (문항2의 심사항목의 적절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심사항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또한 부적절하다면 어떤 심사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	1) 부적절한 이유	2) 대체 심사항목
① 어린이집 운영 계획	⇒		
②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③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④ 운영체의 공신력	⇒		
⑤ 재정 능력	⇒		

2-2. (문항2의 배점의 적절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세부항목의 적정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 (총점 100점 기준)

- ① 어린이집 운영계획(40점) ___점 ②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점) ___점
- ③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점) ___점 ④ 운영체의 공신력(10점) ___점
- ⑤ 재정 능력(5점) ___점

3. 귀 시군구가 신규변경 위탁심사기준표의 세부항목 심사 시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규·변경 위탁심사기준표가 개정된다면 다음 세부항목 중 수정,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세부 심사항목	3-1. 세부항목 심사 시 평가 내용	3-2. 수정·보완 시 추가가 필요한 내용
1) 운영체의 운영 계획		
(1) 보육사업 계획: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 가능성, 지역적합성)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		
(3)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1) 평가인증 참여 여부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업적		

(4) 원장(내장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		
3)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1) 시설운영 관리		
(2) 보육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3) 회계관리의 이행 여부		
4) 운영체의 공신력		
(1)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 또는 신청자의 운영 목적)		
5) 재정능력		
(1) 법인 (3억 미만/3~5억/ 5억 이상)		
(2) 단체·개인 (1억 미만/1~3억/ 3억 이상)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위탁」에 대해서만 의견 주십시오.

4.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기준표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심사항목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체의 재위탁을 결정하라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각 심사항목별 배점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세부 항목	심사항목의 적절성					점수	심사항목별 배점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	⑤ 매우 적절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대체로 적절	⑤ 매우 적절
1) 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①	②	③	④	⑤	30점	①	②	③	④	⑤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30점	①	②	③	④	⑤
3) 어린이집 운영 계획	①	②	③	④	⑤	25점	①	②	③	④	⑤
4) 운영체의 공신력	①	②	③	④	⑤	10점	①	②	③	④	⑤
5) 재정 능력	①	②	③	④	⑤	5점	①	②	③	④	⑤

4-1. (문항4의 심사항목의 적절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심사항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또한 부적절하다면 어떤 심사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	1) 부적절한 이유	2) 대체 심사항목
①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		
②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③ 어린이집 운영 계획	⇒		
④ 운영체의 공신력	⇒		
⑤ 재정 능력	⇒		

4-2. (문항4의 배점의 적절성에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세부항목의 적정 점수를 적어 주십시오. (총점 100점 기준)

- ①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30점) ___점 ②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30점) ___점
 ③ 어린이집 운영 계획(25점) ___점 ④ 운영체의 공신력(10점) ___점
 ⑤ 재정능력(5점) ___점

5. 귀 시군구가 재위탁 위탁 심사기준표의 세부항목 심사 시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규·변경 위탁심사기준표가 개정된다면 다음 세부항목 중 수정, 보완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세부 항목	5-1. 세부항목 심사 시 평가 내용	5-2. 수정·보완 시 추가로 필요한 내용
1)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 실적		
(1) 시설운영 관리: (어린이집관리 및 보육교직원관리,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어린이집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여부, 입소우 선순위 준수 여부,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유지 정도 등을 포함하는 시설운영 관리 실적)		
(2) 보육사업 계획의 이행 여부: (보육사업 계획대비 이행 실적)		
(3) 회계관리의 이행 여부: (예산·결산이 적당하고 집행과정과 회계관리 적정성)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1) 평가인증 참여 여부		
(2)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3)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업적		
(4)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능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 보육사업 계획: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실행 가능성, 지역적합성)		
(2)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		
(3)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4) 운영체의 공신력		
(1)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 위탁시 체결한 약정사항 이행 정도)		
5) 재정능력		
(1) 법인 (3억 미만/3~5억/ 5억 이상)		
(2) 단체·개인 (1억 미만/1~3억/ 3억 이상)		

6. 귀 시군구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위탁 심사자료 외에 위탁체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십니까?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로 나눠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신규위탁	재위탁
① 재직 교사 경력	② 재직 교사 근속년수
④ 표창, 보육관련 수상, 연구실적	⑤ 지역사회 기여 등 활동 자료
⑦ 서울형 유무	⑧ 기타()
	③ 교사 이직률
	⑥ 평가인증 결과 증빙 자료
	⑨ 없음

6-1. (질문 6에서 ①~⑧ 중 하나라도 응답한 경우) 귀 시군구가 위탁심사 자료를 추가로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7. 귀 시군구에서는 신규 위탁 신청 시 일정 금액을 위탁금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① 신규 위탁신청 시 위탁금액 명시하도록 함
 - ② 신규 위탁신청 시 위탁금 명시하지 않으나 일정 금액을 기능보강에 사용하도록 권장함
 - ③ 위탁금 내지 않도록 하고 있음

II. 인적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학 졸(3년제 이하) ③ 4년제 대학졸 ④ 대학원 졸
4. 귀하의 보육 관련 경력은 총 얼마입니까? 또한 현 보육정보센터에서의 경력은 얼마입니까?

총 보육 관련 경력 :	년	개월	현 보육정보센터 경력:	년	개월
--------------	---	----	--------------	---	----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6. 부모 조사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부모 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및 대기 등록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4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지역번호	조사원번호	조사표 번호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가구주명		응답자명	
아동명		전화번호	

조 사 지 침

- 첨부한 명단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입니다.
- 아동코드는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4자리 코드(예: A001)를 그대로 이기합니다.
- 연령 등을 파악해서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아동을 확인하고 그 아동을 중심으로 질문하여야 합니다.
- 한 가구에서는 한 아동만 대상으로 질문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귀댁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살이고, 이름은 무엇인지요?(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연령 등을 파악하여 조사 대상 명단에 있는 아동을 찾아서 그 아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조사 대상 아동의 출생 연월일은 언제입니까? (연령은 1월 1일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또한 아동의 성별을 기록합니다.

()년 ()월 ()일 출생으로 2012년 1월 현재 만 ()세 성별: ① 남 ② 여

1-1 1-2
연령 성별

2. 이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언제부터 이용했습니까?
(예: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용한 경우 11-03으로 기입)

()년 ()월부터 ~ 현재까지

2
년
개월

3. 이 자녀는 입소 우선순위에 의해 현재 다니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름

3

4. 귀하는 다음 입소 우선순위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순서대로 골라 주십시오.

- ① 저소득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② 맞벌이 부모
- ③ 한부모 가족 ④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⑤ 다문화가족 ⑥ 조손가족
- ⑦ 장애 부모 ⑧ 입양된 영유아
- ⑨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 ⑩ 아동복지시설 생활 중인 영유아

1순위
2순위

5. 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대기등록을 신청한 어린이집은 모두 몇 개소입니까?

※주의사항: 대기 등록하지 않고 바로 입소한 경우 '0'으로 기입

()개소

5
개소

6. 이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기등록 후 입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예: 1년 10개월 걸린 경우 01-10으로 기입)

()년 ()개월

6
개월

7. 대기등록 신청 시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하였습니까?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 1가지만 선택)

① 직접 방문 ② 인터넷 신청 ☐문항 7-1로 ③ 전화 신청 ☐문항 7-1로 ④ 기타

7

7-1. (문항 7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대기 등록한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모두 직접 방문 ② 일부만 직접 방문 ③ 방문한 적 없음 ④ 비해당

7-1

8. 대기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등록 자료를 갱신하는 '대기 재등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재등록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시 '00' 기입)

()개월

8
개월

9. 대기 재등록 제도가 실시된다면, 재등록 방법으로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어린이집 방문 ② 인터넷 ③ 전화 ④ 스마트폰 앱 ⑤ 기타()

9

10.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이전에 다른 어린이집을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전에 이용한 어린이집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가정어린이집 ☐문항 10-1로 ② 민간어린이집 ☐문항 10-1로
- ③ 국공립어린이집 ☐문항 10-1로 ④ 직장어린이집 ☐문항 10-1로
- ⑤ 법인어린이집 ☐문항 10-1로 ⑥ 영아전담 어린이집 ☐문항 10-1로
- ⑦ 이용한 적 없음

10

10-1.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순서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집에서 가까워서	② 보육료가 저렴해서
③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④ 특별활동을 적게 해서
⑤ 어린이집 환경이 좋아서	⑥ 교사의 수준이 높아서
⑦ 평가인증 시설이라서	⑧ 이사로 거주지가 변경되어서
⑨ 국공립어린이집이라서	⑩ 통합버스를 운영해서
⑪ 기타()	⑫ 비해당

10-1

1순위

2순위

11. 이 자녀가 집에서 어린이집에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총 몇 분입니까?
(먼저 가는 방법을 묻고 소요시간을 질문합니다.)

① 걸어서 ()분 ② 승용차로 ()분 ③ 어린이집 차로 ()분

11

분

12. 만약 거주지역 내에 우수한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자녀를 어느 정도 거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1) 차량(승용차, 어린이집 차량) 이용 시 ()분까지 가능
2) 걸어서 ()분까지 가능

12

12-1 분

12-2 분

13. 자녀가 다니기에 좋은 어린이집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0명 이하	② 21~39명 이하
③ 40~49명 이하	④ 50~80명 이하
⑤ 81~99명 이하	⑥ 100명 이상

13

14. 자녀 부모의 연령, 취업상태, 가구소득을 질문합니다.

구분	부	모
1) 부모의 만 연령		
2) 부모의 취업상태		
① 종일제 출근 ② 시간제 출근 ③ 휴직 중		
④ 자영업(가족 고용) ⑤ 재택(가내) 작업 ⑥ 미취업,교육훈련 중		
⑦ 미취업, 구직 중 ⑧ 미취업 ⑨ 비해당		
3)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만원	

부	모
만원	만원

※ 다음은 조사 명부를 보고 이기해 주세요.

1. 보육 연령	() 세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15px;" type="text"/> 세
2. 보육료 지원 자격	① 영유아(법정) ② 영유아 ③ 일반아동 ④ 기타(장애아,다문화) ⑤ 만 5세아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15px;" type="text"/>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 2012-2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발행일 2012년 11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15-2 93330